

博士學位論文

朝鮮의 鬱陵島·獨島 認識과 管轄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韓國史學專攻：洪政阮

博士學位論文

朝鮮의 鬱陵島·獨島 認識과 管轄

指導教授 權五榮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韓國史學專攻：洪政阮

朝鮮의 鬱陵島·獨島 認識과 管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 9. 30.)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韓國史學專攻：洪政阮

이 論文을 洪政阮의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認定함.

2016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목 차

국문초록	iv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기존 연구의 현황	9
1) 시기별 연구 동향	
2) 주요 주제별 연구 동향	
3. 연구 구성	31
II. 조선의 鬱陵島 정책과 于山島 인식	36
1. 울릉도 거주민 刷還政策	36
1) 왜구의 침입과 울릉도 거주민 刷還	
2) 울릉도 ‘空島政策’의 의미	
2. 安龍福 사건과 일본의 울릉도·독도 領有 否認	48
1) 일본의 竹島(울릉도) 渡海	
2) 安龍福의 일본 被拉과 「鬱陵島爭界」	
3) 일본 幕府의 「竹島(울릉도) 渡海禁止令」과 爭界의 타결	
4) 조선의 울릉도 搜討制度 확립	
3. 于山島 인식의 형성과 심화	71
1) 于山島 인식의 형성	
2) 安龍福 활동과 于山島 인식의 심화	
III. 조선의 울릉도 開拓政策의 배경과 전개	95

1. 일본의 울릉도·독도 領有 再否認	95
1) 일본 幕府의 「竹島(울릉도) 渡海禁止令」 재확인	
2) 일본 外務省 관리의 울릉도·독도 조선 부속 인식	
3)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울릉도·독도 領有 否認	
2. 조선의 울릉도 檢察使 과건	116
1) 1881년 울릉도 搜討使의 일본인 적발	
2) 1882년 울릉도 檢察使 과건	
3. 조선의 울릉도 개척과 일본의 「蔚陵島 渡航禁止令」	127
1) 울릉도 개척령 시행과 島長制 실시	
2) 조선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의 「蔚陵島 渡航禁止令」 실시	
 IV. 대한제국의 울릉도·독도 행정 강화와 「勅令 第41號」(1900) 반포 ...	145
1. 19세기 후반 일본의 울릉도 불법 渡海와 伐採를 둘러싼 갈등 ...	145
1)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 渡海 재개	
2) 蔚陵島監 裴季周의 渡日 訴訟	
3) 부산 해관 세무사 라포르트(E. Laporte)의 울릉도 조사	
4) 러시아의 울릉도 森林伐採權 획득	
2. 대한제국의 울릉도 문제 해결 노력과 한·일 공동조사 실시	165
1) 울릉도 視察委員 과건의 배경	
2) 한·일 울릉도 공동조사 실시 및 후속조치 협의	
3. 대한제국의 「勅令 第41號」(1900) 반포와 독도 관할	178
1) 「勅令 第41號」(1900)의 제정과 반포	
2) ‘于山島=石島=獨島’論	
3) 石島 지명 논쟁 검토	

V. 대한제국의 일본 독도 영토 편입否認과 독도 관할	197
1. 20세기 초 러·일의 울릉도 침탈	197
1)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과 警察官駐在所 설치	
2) 러시아 함선의 울릉도 현지 조사	
2. 일본의 ‘량고도(リヤンコ島, 독도)’ 불법 영토 편입	208
1) 러일전쟁과 울릉도·독도의 전략기지화	
2) 일본의 독도 강제 어업과 ‘량고도(リヤンコ島, 독도)’ 영토 편입	
3) 일본 독도 영토 편입 주장의 모순	
3. 대한제국의 일본 독도 영토 편입否認	223
1)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의 독도 시찰단 파견	
2) 울도군수 沈興澤 보고와 대한제국의 대응	
3) 대한제국과 울도군수 沈能益의 독도 관할 인식	
VI. 결론	242
참고문헌	248
외국어(日文)초록	262

朝鮮의 鬱陵島·獨島 認識과 管轄

홍정원

獨島 역사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한·일 간 쟁점들은 시기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독도에 관한 1차 사료가 한정적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객관적이지 못한 사료 해석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朝鮮이 鬱陵島와 독도를 관할했던 역사를 고찰하기 위해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들, 즉 于山島가 독도임을 보여주는 蔚珍縣令 鄭必達(1611~1693)의 기록, 「勅令 第41號」(1900)의 '石島' 지명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開闢』(1923) 기사, 「沈興澤報告書」(1906)에 대한 內部 指令을 소개한 『제국신문』(1906.5.1) 기사, 鬱陵島郡守의 독도 관할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沈能益報告書」(1909) 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한·일 간 쟁점인 우산도·석도 등 독도 지명 문제, 「竹島(울릉도) 渡海禁止令」(1696)·「太政官指令」(1877) 등에 나타난 일본의 독도 領有 否認,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에 대한 大韓帝國의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시기는 사료상에 우산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조선 초부터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이 이루어진 191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독도의 옛 명칭이 우산도였다는 사실은 『世宗實錄』 「地理志」의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이라는 기사에서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울릉도와 우산도의 거리 개념을 통해 두 섬을 설명한 것이 울진현령 정필달 詩의 주석 “正對鬱陵島 又有于山島 不緣海氣極清 不得見”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울진이 울릉도를 왕래하는 거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울릉도와 우산도 인식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 초기 울릉도 거주민을 刷還하여 섬을 비워두던 정책은 倭寇 침략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섬을 放棄한 것이 아니었

다. 17세기 말 안용복 被拉 사건으로 촉발된 「鬱陵島爭界」(일본명 「竹島一件」, 1693-1699) 결과, 일본 에도(江戶) 幕府는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외교문서로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막부는 松島(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거듭 확인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는 「竹島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메이지(明治) 정부 최고 행정 기관인 太政官은 '竹島外一島', 즉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 인정한 「太政官指令」(1877)을 내려 막부의 결정을 그대로 계승했다.

그럼에도 19세기 후반 일본인들은 울릉도에 潛入하여 불법 벌목과 어업을 일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제국은 울릉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1900년 「칙령 제41호」를 제정·반포했는데, 칙령 제2조에는 鬱島郡의 관할구역으로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를 규정했다. 석도는 돌섬의 뜻(石)을 사용하여 한자 표기한 것이고, 전라남도 해안에서 '돌'을 '독'으로도 발음하기 때문에 그 음(獨)을 한자로 표기하면 獨島가 된다. 『개벽』(1923) 기사에 의하면, 울릉도는 19세기 후반 全羅南道 麗水郡 三山面 三島(巨文島·草島·巽竹島) 방면의 어부가 울릉도를 왕래하면서 지명이 變稱되었다. 이때 우산도도 전라남도 사람들에 의해 독섬·돌섬(石島·獨島)이라는 명칭으로 변칭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러일전쟁을 수행하면서 전략적 목적하에 독도를 불법 편입(1905.2)했다. 이는 1906년 3월 울도군수 沈興澤에 의해 중앙에 보고되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本郡 所屬 獨島”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수의 관할하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에 대해 대한제국 최고 행정 기관인 議政府는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指令 第3號」(1906.5)를 내렸다. 또 『제국신문』 기사에 의하면, 內部도 심홍택 군수에게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본 理事와 교섭하여 처단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乙巳勒約(1905.11)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외교적 대응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한제국은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한 후에도 독도를 지속적으로 관할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심홍택에 이어 울도군수로 재임했던 沈能益의 보고서(1909)에 잘 드러난다. 그는 울도군 현황을 純宗 皇帝에게 보고하면서 동쪽 경계를 일본이 불법 편입한 독도가 아닌 일본 오키(隱岐)로 표기하여 독도가 울도군 관할임을 나타냈다.

주제어 : 鬱陵島, 獨島, 于山島, 石島, 독섬, 돌섬, 安龍福, 沈興澤, 沈能益, 鬱陵島爭界, 竹島(울릉도) 渡海禁止令, 太政官指令, 勅令 第41號

I. 서론

1. 연구 목적

獨島는 울릉도¹⁾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섬으로, 오랫동안 무인도였던 독도에 대한 역사 기록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 역사는 그 母島인 울릉도 역사를 중심으로 연구할 때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²⁾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으며 독도를 그 일부로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 울릉도는 512년 新羅가 于山國을 복속하면서부터 한국의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했고, 이후 『世宗實錄』 「地理志」(1454), 『東國文獻備考』(1770) 등을 비롯한 朝鮮의 수많은 관찬문헌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하여 왔다.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한 역사는 국가적으로 영토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에 따라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조선의 문물제도가 정비되어 가고 있었으며, 자신을 守成의 군주라고 인식하던 世宗代이다. 세종은 4郡 6鎭 설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옛 강역을 회복하여 祖宗의 뜻을 잇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던 군주였다.³⁾ 그는 울릉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1) 울릉도는 현재 한자로 ‘鬱陵島’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등 주요 사료나 그 밖에 조선 후기 공문서는 모두 ‘鬱’이 아닌 ‘鬱’자를 사용하여 ‘鬱陵島’라고 표기했다. 단, 예외적인 경우로 『東國文獻備考』, 『增補文獻備考』는 ‘鬱陵島’라고 표기했다(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13쪽).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료상의 울릉도 표기를 그대로 따라 『東國文獻備考』, 『增補文獻備考』 등을 제외하고는 ‘鬱陵島’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2) 송병기, 「高宗朝의 鬱陵島·獨島 經營」, 『獨島研究』,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159쪽.

3) 세종은 1433년(세종 15) 4월 평안도 북방 지역의 여진족을 婆猪江에서 토벌한 이후, 자신을 守成의 군주로 인식하면서 寧北鎭을 幹木河로 옮기고 慶源府를 蘇多老로 옮겨 옛 영토를 회복하고 조종의 뜻을 잇고자 했으며, 조종이 울타리(藩籬)를 설치했다면 자손된 자가 좇아서 이를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世宗實錄』 권 62, 세종 15년(1433) 11월 19일(戊戌)).

정책을 실시했다. 1438년(세종 20) 前 護軍 南蓋, 前 副司直 曹敏을 巡審 敬差官으로 임명하여 울릉도에 일본인의 潛入이 있었는지 살피고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刷還케 했다.⁴⁾ 울릉도 순심정차관 파견은 1417년(태종 17) 울릉도 거주민을 내륙으로 쇄환하는 조치가 취해진 이후 울릉도에 대한 행정 통치 실시라는 의미와 함께 肅宗代부터 시행한 搜討制度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⁵⁾ 세종은 문물제도 정비 및 영토의 확정 등 국가를 통치하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정치·경제·군사 등에 관한 전국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新撰八道地理志』(1432)를 편찬했고, 이는 거의 그대로 『世宗實錄』 「地理志」(1454)에 전제되었다.⁶⁾ 『세종실록』 「지리지」 蔚珍縣條는 울릉도와 于山島(독도)의 위치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신라 때 우산국이라고 기술했⁷⁾하고 있어서 울릉도와 우산도에 관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양란으로 인해 피폐해진 조선이 재정비되던 숙종대이다. 숙종대는 安龍福 被拉 사건(1693)으로 인해 朝·日 간에 울릉도에 관한 「鬱陵島 爭界」(일본명 「竹島一件」, 1693~1699)가 발생했으며, 淸과는 土門江과 鴨綠江을 疆域으로 획정한 「白頭山定界碑」(1712)를 설치하는 등 우리 강역에 관한 인식이 고조되었던 시기였다.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 조정은 울릉도에 3년에 한 번씩 搜討使를 파견하여 巡檢하는 수토제도를 결정했다. 이때 숙종은 “우리나라의 地方을 영구히 버릴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수토제 실시를 결정⁸⁾하는 등 울릉도 관할에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 조정이 울릉도 수토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하면서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도 더욱 심화되었다. 1769년(영조 45) 영의정 洪鳳漢은 울릉도에 人蔘이 나는 것을 왜인들이 알면 분쟁이 생길 것임을 지적하면서 울릉도 관련 문서들을 정리하여 외교적 문제에 대비하자고 국왕에게 건의했고, 英祖는 이를 곧 허락했다. 이에 따라 편찬된 백과전서 성격의 책이 『

4) 『世宗實錄』 권 81, 세종 20년(1438) 4월 21일(甲戌).

5)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30~31, 268쪽.

6) 정두희,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歷史學報』 69, 역사학회, 1976, 70~78, 99쪽.

7) 『世宗實錄』 「地理志」 권 153, 江原道 蔚珍縣條. 원문은 다음과 같다.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 鬱陵島 地方百里.

8) 『承政院日記』 19책, 숙종 23년(1697) 4월 13일.

東國文獻備考』(1877)이다.⁹⁾ 『동국문헌비고』는 “울릉과 우산은 다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倭가 이르는바 松島다”고 하여 우산도가 독도임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¹⁰⁾

셋째는 근대 영토의식이 도입되던 시기인 高宗代이다. 이때 조선 조정은 울릉도에 潛入한 일본인에 대한 대응으로서 울릉도 檢察使를 파견하고, 開拓을 결정(1882)했다. 또 청과는 間島 지역의 勘界 회담(1885·1887)을 진행했다. 고종은 1882년 일본인의 울릉도 잠입에 대해 일본 측에 항의 서한을 보낼 것을 울릉도 검찰사 李奎遠이 건의하자, “비록 작은 땅이라도 버릴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측에 관련 사실을 통고할 뿐 아니라, 울릉도 개척도 속히 시행할 것을 명했다.¹¹⁾ 또 고종은 울릉도에 대한 개척 추진과 함께 행정을 점차 강화시켜 나가 「勅令 第41號」(1900)를 제정·반포했다. 칙령 제2조는 鬱島郡의 관할구역을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독도)라고 규정했다. 또 1903년(광무 7) 법무국장 金錫圭가 『동국문헌비고』(1770)를 補修하여 간행할 것을 청함에 따라 이를 增補하기 시작했다.¹²⁾ 그 결과 간도지역에 대한 관심 등 『동국문헌비고』보다 확대된 영역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增補文獻備考』(1908)가 편찬되었다.¹³⁾ 『증보문헌비고』는 울릉도와 우산도에 관해 기존 『동국문헌비고』에 기술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제하고 있는데, 울릉도와 우산도 소속에 대해서는 ‘續 今爲鬱島郡’이라고 서술하여 두 섬이 「칙령 제41호」(1900)를 통해 鬱島郡에 소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¹⁴⁾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선의 독도 관할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일본 측 주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산도 지명 문제는 1950-60년대 「往復外交文書」¹⁵⁾ 때부

9) 『英祖實錄』 권 113, 영조 45년(1769) 10월 14일(壬戌); 박인호, 『朝鮮後期 歷史地理學 研究』, 이회문화사, 1996, 28~29쪽.

10) 『東國文獻備考』 「輿地考」 13, 關防 3, 海防 1, 東海 蔚珍. 원문은 다음과 같다.
輿地志云 鬱陵·于山 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11) 『高宗實錄』 권 19, 고종 19년(1882) 6월 5일(己未); 『承政院日記』 134책, 고종 19년(1882) 6월 5일.

12) 『高宗實錄』 권 43, 光武 7(1903) 2월 24일.

13) 박인호, 『朝鮮後期 歷史地理學 研究』, 이회문화사, 1996, 265~268쪽.

14) 『增補文獻備考』 上 31, 輿地考 19, 海防 1, 東海 蔚珍.

터 한·일 간에 논란이 되어왔다. 일본 정부가 처음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운 口述書인 「일본정부견해」1(1953.7.13)¹⁶⁾을 한국 측에 전달하자, 한국 정부는 즉각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구술서를 전달(「한국정부견해」1, 1953.9.9)했다. 이 한국 정부의 구술서는 『世宗實錄』 「地理志」를 제시하면서 武陵島(울릉도)와 于山島가 별개의 두 섬이며, 우산도가 즉 독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¹⁷⁾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一說에 우산도는 울릉도라고 한다(一說于山鬱陵本一島)”를 인용해서 우산도가 울릉도라고 주장했다.¹⁸⁾ 현재도 일본 정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첨부지도인 「八道總圖」 등을 거론하며 우산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⁹⁾

둘째는 安龍福 피랍 사건과 이에 따른 「鬱陵島爭界」에 대한 평가 문제이다. 안용복 진술에 따르면, 그는 1693년(숙종 19) 울릉도에서 일본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양가의 어민들에게 납치되어 일본에 갔다가 울릉도와 子山島(우산도, 독도)가 조선령이라는 關白의 書契를 받았다. 그런데 조선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쓰시마번(對馬藩)에 이 서계를 빼앗겼다고 한다. 또 안용복은 1696년(숙종 22) 스스로 울릉도에 건너가 이곳에 있던 일본인들을 울릉도와 독도에서 내쫓고 일본으로 쫓아가서 호키슈(伯耆主)에게 울릉도와 자산도(독도)가 조선령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²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왕복외교문서」에서 「한국정부견해」1(1953.9.9)

15) 한국 外務部는 독도 관련하여 한·일 간 왕복했던 외교문서들을 모아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3)-』(1977)을 편찬했는데, 「일본정부견해」1(1953.7.13), 「한국정부견해」1(1953.9.9), 「일본정부견해」2(1954.2.10), 「한국정부견해」2(1954.9.25), 「일본정부견해」3(1956.9.20), 「한국정부견해」3(1959.1.7), 「일본정부견해」4(1962.7.13) 등으로 분류했다. 본고는 이 분류를 따르며, 당시 한·일 간 오가던 구술서를 통칭하여 「왕복외교문서」로 일컫도록 하겠다.

16) 外務部, 「일본정부견해」1(1953.7.13),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3)-』, 1977.

17) 外務部, 「한국정부견해」1(1953.9.9),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3)-』, 1977, 31~32쪽.

18) 外務部, 「일본정부견해」2(1954.2.10),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3)-』, 1977, 45쪽; 「일본정부견해」3(1956.9.20), 139~140쪽.

19) 일본 外務省, 「竹島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 2008.

20) 『肅宗實錄』 권 30, 숙종 22년(1696) 9월 25일(戊寅).

부터 「한국정부견해」2(1954.9.25)·「한국정부견해」3(1959.1.7) 등 세 차례에 걸쳐 안용복의 진술 내용을 인용해 가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임이 인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본 정부는 안용복에 대한 한국 측 기록은 備邊司에서의 심문 과정에서 나온 진술에 의한 것으로서 대부분 허구라고 반박했다. 일본 측은 1693년 안용복 일행이 압송되어 왔을 때 에도(江戸) 幕府가 조선인들의 울릉도 어로 금지를 조선 측과 협상하도록 명령한 점을 감안하면, 막부가 안용복에게 서계를 썼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²¹⁾

현재도 일본 정부는 안용복이 서계를 받았다는 진술 내용은 일본 기록에 없으며, 1696년은 일본이 「竹島(울릉도)²²⁾ 渡海禁止令」(1696.1)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도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안용복에 대한 한국 기록은 國禁을 어기고 국외에 도항해서 취조를 받은 안용복 진술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에 맞지 않은 것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²³⁾

「울릉도쟁계」 결과 일본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인정하면서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는 「竹島 도해금지령」(1696.1)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일 간에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50-60년대 「왕복외교문서」 당시 1696년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그 부속섬(독도)이 한국의 영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인의 이 지역 출어를 금지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본 막부는 1837년(헌종 3) 울릉도에서 밀무역한 이와미국(石見國) 하마다번(浜田藩)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 八

21) 外務部, 「일본정부견해」2(1954.2.10.),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3)-』, 1977, 46쪽·「일본정부견해」3(1956.9.20.), 143쪽·「일본정부견해」4(1962.7.13.), 241~242쪽.

22) 일본 에도시대 ‘竹島’는 울릉도를 일컫는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松島’는 독도를 가리켰다. 이후 19세기 일본은 竹島와 松島에 대한 명칭 혼란을 겪다가 1880년 아마기함(天城威)의 현지 조사 결과인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의 보고(1881)에 의해 울릉도가 ‘松島’로 최종 정리되었다. 독도 명칭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하면서 ‘竹島’라고 일컫기 시작했다.

본고에서는 울릉도·독도의 일본식 표기인 ‘竹島’·‘松島’의 일본어 발음인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아닌 한자 그대로(竹島·松島) 표기하겠다. 그 외 일본 인명, 지명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일본식 발음을 우리말로 표기하고, 괄호로 일본어 원문을 병기하도록 한다.

23) 일본 외무성, 「竹島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 2008.

右衛門)을 사형에 처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부연했다.²⁴⁾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시 조선과 일본 간에 문제된 것은 울릉도였으며, 막부가 도해금지 조치를 취한 것도 울릉도에 대해서였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하치에몬 사건에 대해서는 松島(독도)에 도해한다는 명목으로 竹島(울릉도)로 건너갔기 때문에 「竹島 도해금지령」 이후에도 松島 도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²⁵⁾ 이러한 한·일 양국의 입장은 현재까지 유지되어 한국 정부는 「울릉도쟁계」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竹島 도해금지령」 때 松島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²⁶⁾

셋째는 1900년 「칙령 제41호」에 등장하는 ‘石島’에 대한 지명문제이다. 석도를 訓讀하면 ‘돌섬’이 되는데, 지금도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독섬’ 혹은 ‘돌섬’이라 부르고 있다. 전라남도 방언에 ‘돌’을 ‘독’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돌로 된 형상인 독도가 그들에 의해 ‘독섬’으로 호칭되었고, ‘독섬’에서 借音하여 ‘獨島’라고 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석도가 독도라면 왜 「칙령」에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독도의 옛 명칭이라고 한국 측이 주장하는 ‘우산도’는 도대체 왜 사용하지 않았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²⁷⁾

일본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이지 못한 사료 해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독도에 대한 1차 사료가 한정적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는 독도 역사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을 새로 소개하면서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를 지속적으로 관할하던 양상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본고에서 독도 역사에 대해 새로 소개하는 사료로는 우산도가 독도임을 보여주는 蔚

24) 外務部, 「한국정부견해」2(1954.9.25),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3)-』, 1977, 82~83쪽.

25) 外務部, 「일본정부견해」3(1956.9.20),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3)-』, 1977, 148~149쪽.

26) 외교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2012, 7쪽; 일본 외무성, 「竹島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 2008.

27) 일본 외무성, 「竹島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 2008.

珍縣令 鄭必達(1611~1693)의 기록, 「칙령 제41호」(1900)의 ‘石島’ 지명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開闢』(1923) 기사, 「沈興澤報告書」(1906)에 대한 내부 지령을 소개한 『제국신문』(1906.5.1) 기사, 울도군수의 독도 관할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沈能益報告書」(1909)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도 지명 문제 중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은 蔚珍縣令에 재임(1669~1673년)했던 정필달의 詩가 그동안의 논리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다. 정필달은 울릉도와 가장 가까운 울진현에 있는 凌虛樓에서 울릉도를 바라보고 지은 시에 주석을 달아 “울릉도를 정면으로 마주하여 또 우산도가 있다. 海氣가 지극히 맑지 않으면 볼 수 없다”²⁸⁾고 하여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세종실록』 「지리지」 기사를 통해 우산도가 독도라고 고찰했지만, 『세종실록』 「지리지」 이후 울릉도와 우산도의 관계를 거리 개념을 활용해서 서술했던 기사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시대 울릉도를 왕래하던 내륙 거점으로서 울릉도와 우산도의 지리적 인식이 강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인 울진현령을 역임한 정필달의 기록은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아울러 이 지역 출신 인물들의 기록에서 유사한 자료가 추가로 발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또 독도 지명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우산도에서 석도·독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독도는 19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우산도라는 문헌상의 옛 지명 대신 석도나 독도로 표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까지는 전라도 방언에 ‘돌=독’이기 때문에 돌섬·독섬으로 불리고, 이것이 한자로 石島·獨島로 표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기존의 우산도란 지명 대신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 데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 그런데 全羅南道 麗水郡 三山面 三島(巨文島·草島·巽竹島) 방면의 어부가 울릉도를 왕래하면서 울릉도 지명이 變稱되었다고 하는 『開闢』(1923) 기사²⁹⁾는 전라도 방언에 의한 독도 지명 정착 및 우산도에서 석도·독도로

28) 『八松先生文集』 권 3, 詩, 仙槎八景. 원문은 다음과 같다.

正對鬱陵島 又有于山島 不緣海氣極清 不得見.

변칭되는 연결고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1905)은 1906년 3월 鬱島郡守 沈興澤에 의해 중앙에 보고되었고, 의정부 參政大臣은 「指令 第3號」(1906.5)를 통해 일본의 독도 편입을 否認하는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편입 부인에 이어 일본 측에 항의를 했는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제국신문』(1906.5.1) 기사에 의하면 內部도 심홍택에게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본 理事와 교섭하여 처단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러한 내부의 지령이 실행되었다면 획기적인 사건이 되겠지만, 아직은 관련 자료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아 사실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단, 일본이 독도 편입을 시도했지만, 대한제국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일명 「沈能益報告書」이다. 울도군수 심홍택의 후임인 沈能益은 1909년 純宗皇帝에게 울도군의 현황을 보고(「慶尙南道鬱島郡地方狀況」)했는데, 울도군의 위치 및 경계를 밝히는 데서 그의 독도 관할 인식을 엿볼 수 있다.³⁰⁾ 이를 통해 「칙령 제41호」(1900)로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던 것이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는 일본에서 최근 소개된 여러 고문서, 근대 한·일 간 외교문서 및 공문서, 언론 기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그동안 실상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울릉도감 裴季周의 도일 소송, 울릉도 경찰관주재소 설치, 러시아 함선의 울릉도 방문 등을 고찰할 것이다. 아울러 본고에서 새로 소개하는 자료들은 독도 역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더욱 보강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항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29) 李乙, 「동해의 一點碧인 鬱陵島를 찾고서」, 『開闢』 4권 41호, 開闢社, 1923년 11월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30) 「慶尙南道鬱島郡地方狀況」(1909), 『宮內府雜綴』(藏書閣 소장).

2. 기존 연구의 현황

1) 시기별 연구 동향

한국의 독도 연구는 194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70여 년 동안 방대한 양의 연구성과가 발표되었다. 본고는 독도 연구의 주요 전환점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고, 각 시기별 독도 연구 경향의 특징들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연구 성과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³¹⁾

제1기는 1947년부터 1976년까지이다. 한국의 독도 연구는 일본의 독도 주장에 따른 대응 성격이 강했다. 그 첫 계기는 1947년 4월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사카이미나토(境港)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독도를 자신의 漁區라고 주장하며 독도에 어업 온 울릉도 어선을 내쫓은 사건에서 비롯되었다.³²⁾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지방(대구)에서 중앙으로 알려지게 됨에 따라 독도 소속 문제가 주목을 끌게 되었다. 남조선 과도정부는 민정장관 安在鴻을 위원장으로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일부 자료에는 ‘교섭위원회’로 표기)를 조직했으며, 조선산악회가 주관하는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을 구성하여 울릉도·독도 학술 조사(1947.8.16~28)를 진행했다.³³⁾

1947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申奭鎬는 조사에서 돌아온 이듬해인 1948년 한국 최초의 독도에 관한 연구 논문 「獨島

31) 한철호는 독도 역사 연구 동향을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 독도 연구도 한일 간의 정치·외교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도 연구 태동기(1945~1964), 관심기(1965~1982), 고조기(1983~1995), 확산기(1996~현재)로 구분하여 시기별 연구동향의 특징을 제시했다(한철호,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4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본고는 한철호의 관점대로 일본 측의 독도에 대한 주장과 맞물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각 시기별 연구 특성과 연관지어 제1기 1947~1976년, 제2기 1977~1996년, 제3기 1997~2004년, 제4기 2005~현재로 구분하여 시기별 연구동향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이 사건으로 7월 중순 남조선과도정부 농무부 수산국은 맥아더사령부에 맥아더라인 축소를 요구했다. 또한 7월 11일 극동위원회가 채택한 ‘항복 후의 대일기본정책’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자 독도에 대한 소속문제가 더욱 주목을 끌게 되었다(『대구시보』, 1947년 6월 20일; 『동아일보』 1947년 7월 23일; 『한성일보』 1947년 8월 13일; 外務部 政務局, 『獨島問題概論』, 1955, 34쪽; 정병준, 『독도1947』, 돌베개, 2010, 97~112쪽).

33) 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2010, 112~113쪽.

所屬에 對하여」³⁴⁾를 발표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獨島’가 표기된 현전하는 한국의 가장 오래된 문서인 「沈興澤報告書」 副本(1906)을 울릉군청으로부터 제공받아 그 내용을 전재하고 분석했다. 또 조사단 일원이었던 方鍾鉉은 1947년 기행문 「獨島의 하루」를 발표했다.³⁵⁾ 그는 독도의 외형이 돌과 같고, 전라남도 해안에서 ‘돌’을 ‘독’으로도 발음하기 때문에 ‘돌섬’이 ‘독섬’으로 일컬어지고, 이를 한자로 옮겼을 때 ‘石島’, ‘獨島’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는 「칙령 제41호」(1900)가 발굴³⁶⁾되기 전에 독도라는 지명만을 가지고 석도를 유추해 낸 것으로 매우 탁견이었다.³⁷⁾

한편, 일본의 독도 연구는 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인해 講和條約을 준비하면서 시작되었다. 1947년 6월 일본 정부는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Part IV. Minor Islands in the Pacific, Minor Islands in the Japan Sea」라는 팜플렛을 간행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부속도서라고 소개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의 역사지리학 전공자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가 이 팜플렛 간행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³⁸⁾ 또한 그는 1953년 8월 『竹島の領有』라는 소책자를 간행했는데,³⁹⁾ 이 책자는 당시 한·일 간에 독도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점에서 외무성 조약국의 독도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것이었다.

한·일 정부 간 독도 논쟁이 전개되었던 계기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일명 평화선) 선포였다(1.18), 이 평화선에 독도가 포함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 구술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1.28)한 데 이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의 근거를 내세운 구술서를 작성하여 한국 측에 송부했다(「일본정부견해」1, 1953.7.13). 이 문서를 접수한 한국 정부는 즉각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

34) 신석호, 「獨島 所屬에 對하여」, 『四海』 창간호, 1948.

35) 방종현, 「獨島의 하루」, 『京城大學 豫科新聞』 13, 1947; 『一簣國語學論集』, 民衆書館, 1963에 재수록.

36) 「칙령 제41호」(1900)는 1966년 李宗馥 교수(당시 한양대)가 처음 공개했다(홍종인, 「獨島를 생각한다」, 『週刊朝鮮』 427호, 1977.3.20).

37) 1947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의 파견과 활동에 대해서는 정병준, 『독도1947』(돌베개, 2010)에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38) 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2010, 46~49쪽.

39) 外務省 條約局, 『竹島の領有』, 1953.

박하는 구술서를 전달(「한국정부견해」1, 1953.9.9)했다. 이후 두 차례 더 양국 간에 독도에 대한 정부견해가 왕복하다가 1962년 7월 일본 정부 구술서를 끝으로 일단락되었다.

당시 한국 외무부에서는 외교자료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신석호, 李丙燾 등이 독도에 관한 사료를 조사하여 수차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독도의 역사적 논리를 정부에 제공했다.⁴⁰⁾ 한편, 일본 외무성에서는 일제강점기 京城帝國大學 및 朝鮮史編修會에서 근무하다가 전후 東洋文庫 및 東京大 교수를 역임했던 다가와 고조(田川孝三)가 큰 역할을 했다. 다가와 고조의 연구물 일체가 일본 외무성 문서로서 편철돼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외무성의 의뢰를 받아 연구에 착수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⁴¹⁾ 가와카미 겐조도 그의 저서에서 “역사에 대해서는 朝鮮史의 권위자인 다가와 고조의 懇篤한 지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⁴²⁾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에 대한 양국 간의 논쟁은 일단락되고, 곧바로 그동안의 독도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한국 사정을 해외에 알리는 책자의 발간 및 영자신문을 제작하던 大韓公論社는 독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들을 모아 『獨島』(1965)를 발간했다.⁴³⁾ 이 책은 朴正熙 대통령이 표지 題字를 쓰고 元容奭 대한공론사 사

40) 신석호, 「獨島의 來歷」, 『思想界』 8월호, 1960, 127쪽; 대한공론사, 『獨島』, 1965 재수록.

41) 일본 外交史料館, 『竹島問題調査資料』 2.

田川孝三, 「竹島問題研究資料: 文獻に明記された韓國領土の東極」, 1953.11.

_____, 「竹島問題研究資料: 竹島渡海禁制と松島」, 1953.11.

_____, 「竹島問題研究資料: ‘獨島’なる島名について」, 1953.11.

_____, 「竹島問題研究資料: 朝鮮政府の鬱陵島管轄について」, 1953.11.

_____, 「竹島問題研究資料: 于山島について」, 1953.12.

_____, 「竹島問題研究資料(歴一): 三峯島について」, 1954.12.

_____, 「竹島問題研究資料(歴二): 于山島と鬱陵島名について」, 1954.12.

42)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66, 1쪽.

43) 신석호 외, 『獨島』, 대한공론사, 1965.

이 책에는 신석호의 「독도의 내력」, 박관숙의 「독도의 법적지위」, 이병도의 「독도의 명칭에 대한 사적고찰」, 이선근의 「울릉도 및 독도탐험소고」, 최남선의 「독도는 엄연한 한국영토」, 박경래의 「독도영유권의 사법적인 연구」, 유홍렬의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 주효민의 「지정학적으로 본 독도위치」, 황상기의 「독도문제연구」, 박대련의 「독

장이 간행사를 작성한 것을 보면 정부 차원의 발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측에서도 한일협정 이후 독도에 대한 연구성과가 정리되었다. 가와카미 겐조는 『竹島の領有』(1953)를 기초로 이를 확대 개정한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1966)를 발간했다.⁴⁴⁾ 또 시마네현 총무부 廣報文書科에 근무했던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清三郎)는 1954년 시마네현의 향토자료들을 소개한 저서 『島根縣竹島の研究』를 발표했었는데, 한일협정 직후 이를 확대 개정한 『島根縣竹島の新研究』(1965)를 발간했다.⁴⁵⁾

이처럼 초기의 독도 연구는 1947년~1966년 동안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는데, 한·일 정부의 적극적 지원하에 각국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진행되었다. 그 이후 독도 역사 연구는 1977년까지 이렇다 할 연구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제2기는 1977년부터 1995년까지이다. 1977년 미국과 소련이 200해리 어업보존수역을 시행하자, 일본은 그해 5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 영해의 기점으로 거론함으로써 또다시 독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독도 연구가 진행되었다.⁴⁶⁾ 국사편찬위원장 崔永禧를 회장(연구책임자)으로 하는 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議會가 구성되었고,⁴⁷⁾ 1979년 여름에 ‘鬱陵島·獨島學術調查研究’

도는 한국영토」, 이승녕의 「내가 본 독도」, 한찬석의 「독도비사」, 최규장의 「독도수비 대비사」 등 역사, 국제법 분야의 대표적인 논문이나 유명인사의 언론 기고문 등이 실려 있다.

44)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66.

45) 田村清三郎, 『島根縣竹島の研究』, 島根縣, 1954.

_____, 『島根縣竹島の新研究』, 報光社, 1965.

46) 한철호,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4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205~206쪽.

47) 연구 담당자의 담당시기 및 분야는 신지현(국사편찬위원회, 認知와 領有), 이현중(국사편찬위원회, 조선 후기), 송병기(단국대, 근대), 강만길(고려대, 일본 문헌상의 독도), 최문형(한양대, 국제 관계와 독도), 최석우(신부, 구미 문헌상의 독도), 김원룡(서울대, 고고학), 백충현(서울대, 국제법), 임영정(국사편찬위원회, 총괄) 등이다. 그리고 독도 연구 1세대라 할 수 있는 이병도, 이선도, 신석호, 유홍렬, 이한기 등은 자문을 맡았

란 주제로 발표회를 가졌다. 이어 1982년 4월 간행을 대비한 최종 발표회를 거쳤지만, 책자 발간은 지체되어 1985년 6월 『獨島研究』가 발간되었다. 『독도연구』는 국내외 자료, 특히 규장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제1기의 연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소속 宋炳基는 江原道觀察使署理 春川郡守 李明來가 의정부 叅政大臣에게 제출한 「報告書號外」(1906)를 규장각에서 발굴함으로써 그동안 모호했던 蔚島郡守 沈興澤 보고서의 제출처가 강원도관찰사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⁴⁸⁾ 또 독도가 울도군의 소속, 다시 말하여 대한제국의 영토임이 울도군수는 물론, 강원도관찰사, 의정부 참정대신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이 문서를 통해 의정부 참정대신이 「指令 第3號」(1906)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했다는 기록도 동시에 발굴되어 한국의 독도 연구사에 있어 쾌거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독도연구의 진전은 1980년대 들어 여러 성과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처음이 1981년 백충현, 송병기, 신용하의 독도 좌담회였다.⁴⁹⁾ 이 좌담회에서는 「칙령 제41호」(1900)의 석도를 독도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시마네현 고시의 적법성 여부 등 지금도 주요 논점이 되고 있는 주제들이 주로 거론되었다. 당시 사회를 말았던 신용하는 이후 일본 공문서를 활용하여 일본 정부가 러일전쟁 때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 침탈을 시도했다는 것을 밝혔다.⁵⁰⁾ 송병기는 근대 한·일 외교문서를 분석하여 일본의 울릉도 침탈에 대한 조선과 대한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살폈다. 또 「칙령 제41호」(1900)에서의 석도가 독도라는 논리를 입증했고, 앞서 『독도연구』(1985)에서 소개했던 일명 「심홍택보고서」 및 의정부 참정대신의 「지령 제3호」(1906)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

다. 이처럼 자문을 맡은 1세대에 이어,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회에 참여했던 이들이 자연스럽게 독도 연구 2세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48) 이 문서의 발굴과 의의에 대해서는 송병기, 「癡菴發掘 沈興澤報告書 副本에 대하여」(『白山學報-癡菴申奭鎬博士誕生100周年紀念 韓國史學論叢-』 70, 백산학회, 2004)에 상세하다.

49) 백충현, 송병기, 신용하, 「독도문제 재조명」, 『한국학보』 24, 1981.

50) 신용하, 「朝鮮王朝의 獨島領有와 日本帝國主義의 獨島侵略-獨島 領有에 대한 實證的 一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의 독도 편입을 대한제국 정부가 부인했다고 발표했다.⁵¹⁾

한편, 일본에서는 호리 가즈오(堀和生)가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 「太政官指令」(1877) 및 해군사령부의 문서들을 발굴하여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이 러일 전쟁 과정에서 군사적 목적하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다.⁵²⁾

제3기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이다. 1996년 경제전관수역 200해리를 허용하는 유엔의 신해양법이 발효되자 일본은 독도 주장을 다시 강화해나갔다. 일본 정부는 2월 9일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독도 주둔 한국경찰수비대의 즉각 철수와 접안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했고, 2월 20일 독도를 포함한 경제전관수역 200해리를 선포하기로 의결했으며, 4월 1일 검인정 지리부도에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일본 국경 표시를 넣은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조치했다.⁵³⁾

이에 대해 한국 역사학계의 즉각적인 대응이 있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1996년 4월 12일 역사학자와 국제법학자들을 모아 연구회를 개최했다.⁵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도 1996년 8월 8일 ‘독도 영유문제와 민족의식’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⁵⁵⁾ 또 한일관계사연구회에서는 한·일 양국의 영토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3월 독도와 대마도 인식에 대한 연구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발간했다.⁵⁶⁾

51) 송병기, 「朝鮮後期·高宗朝의 鬱陵島 搜討와 開拓」, 『崔永禧先生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탐구당, 1987.

_____, 「朝鮮初期 地理志의 于山·鬱陵(武陵)島記事 檢討」, 『龍巖車文燮博士華甲紀念論叢 朝鮮時代史研究』, 신서원, 1989.

_____, 「日本の ‘량고’島(獨島)領土編入과 鬱島郡守 沈興澤 報告書」, 『尹炳奭教授華甲紀念韓國近代史論叢』, 지식산업사, 1990.

_____, 「鬱陵島의 地方官制 編入과 石島」, 『國史館論叢』 23, 國史編纂委員會, 1991.

52) 堀和生, 「一九〇五年 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朝鮮史研究會, 1987.

53) 한철호,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4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211쪽.

5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독도연구』, 1996.

5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1996.

56) 한일관계사연구회,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1996.

이 시기는 일본 자료를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慎鏞廈는 기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민족사적 관점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더욱 확대하여 분석⁵⁷⁾하는 한편, 독도학회(1996. 3 설립)를 주도하면서 “독도연구총서”를 간행했다. 송병기는 독도 역사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1997년 『울릉도와 독도』를 발간했다.⁵⁸⁾ 그는 奎章閣에 소장된 사료를 발굴하고, 근대 한·일 관계 자료들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독도 역사 연구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⁹⁾ 그는 또 독도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주요 자료들을 번역하고 해설을 붙인 『독도영유권자료선』을 펴냈다.⁶⁰⁾

일본 자료를 활용해 독도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의 결과, 이훈은 「對馬島 宗家文書」에서 에도시기 울릉도·독도 관계 자료를 발굴하여 일본의 「竹島 도해금지령」에 松島(독도)도 포함되었음을 밝히고, 우산도가 일본에서 일컫는 松島임을 고증했다.⁶¹⁾

일본에서는 나이토 세이쥬(內藤正中),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 등이 객관적인 독도 역사 연구를 지향하는 결과물을 발표했다. 나이토 세이쥬는 에도 막부시기의 울릉도 도해어업 및 안용복 사건에 따른 도해금지령, 그리고 19세기 말 일본인들의 울릉도 벌목과 독도 어업에 대해 상세히 연구했다.⁶²⁾ 이케우치 사토시는 竹島 도해면허가 기존설처럼 1618년이 아닌 1625년경에 발급된 것이며, ‘이번(今度)’의 도해를 승인하여 1회만 인

57)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_____, 『독도, 보배로운 한국영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총비판』, 지식산업사, 1996.

_____, 「韓國의 獨島領有와 日帝의 獨島侵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_____, 「歷史的 側面에서 본 獨島問題」, 『독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_____, 「獨島·鬱陵島의 名稱變化 연구-명칭 변화를 통해 본 獨島의 韓國固有領土 증명-」, 『한국학보』 91-92, 일지사, 1998.

_____,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58)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출판부, 1999.

59) 한철호,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4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214쪽.

60) 송병기,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출판부, 2004.

61) 이훈, 「조선 후기의 독도 영속 시비」,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1996.

62) 內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 多賀出版, 2000.

정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⁶³⁾ 또 일본 측이 「竹島 도해금지령」 당시 松島는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했고,⁶⁴⁾ 『隱州視聽合記』(1667)의 독도 관련 내용은 오키 소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고증했다.⁶⁵⁾

제4기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이다. 2005년 시마네현은 이른바 ‘竹島의 날’을 제정하면서 독도에 대한 강경한 논조를 이어가고 있는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⁶⁶⁾를 좌장으로 한 ‘竹島문제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시마네현의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여 한국은 교육부 산하에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을 만들었고, 이를 모태로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했다.⁶⁷⁾ 또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독도연구센터가 설치되었다.

여러 연구기관이 설립되면서 독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지도 발간되기 시작했다.⁶⁸⁾ 이와 함께 독도 연구자도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연구 시기가 근현대사까지 확장되었다.

근대사 분야에서는 한철호가 일본 메이지 시기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일본의 오가사와라(小笠原島)에 대한 空島政策을 검토하고, 일본 외무성 조약국이 편찬한 『國際法先例彙集(2)-島嶼先占-』(1933.10)을 검토하여 일본의 도서선점이 주로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에 기초해 이루어졌음을 밝혔다.⁶⁹⁾ 또 일본 水路部の 수로 조사 및 지도를 검토하여 당시 일본

63) 池内敏, 「竹島渡海と鳥取藩」, 『鳥取地域史研究』 1, 1999.

64) 池内敏, 「17~19世紀鬱陵島地域の生業と交流」, 『歴史學研究』 756, 2001

65) 池内敏, 「前近代竹島の歴史學研究序說」, 『靑丘學研究論集』 25, 2001.

66) 시모조 마사오의 독도에 대한 논조에 대해서는 박병섭, 「시모조 마사오의 논설을 분석한다」(『독도연구』 4,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08) 및 「시모조 마사오의 논설을 분석한다(2)」(『독도연구』 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09)에 상세하다.

67) 한철호,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4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216쪽.

68)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는 2005년부터 『독도연구』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 2013년부터 『영토해양연구』를 반기별로 발간하기 시작했다.

69) 한철호, 「明治時期 일본의 독도정책과 인식에 대한 연구 쟁점과 과제」, 『韓國史學報』 28, 고려사학회, 2007.

_____,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의 울릉도·독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9, 동북아역사재단, 2008.

_____, 「明治시기 일본의 도서선점 사례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그 의미」, 『서울국제법연구』 16권 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9.

정부가 독도 영유 인식이 없었으며 오히려 조선령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찰했다.⁷⁰⁾

허영란은 일본의 도서 편입 과정 및 20세기 전후 한국의 울릉도 개척과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실태를 분석했다.⁷¹⁾ 송휘영은 일본 고문서 및 수로지 등을 분석했고,⁷²⁾ 윤소영은 일본의 근대 관찬 地誌와 지리교과서 등을 연구했다.⁷³⁾ 김수희는 울릉도·독도 어업과 관련한 분야,⁷⁴⁾ 김영수는

-
- 70) 한철호, 「일본 해군 수로부의 오키 측량과 독도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65,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_____, 「일본 수로부 간행의 수로지와 해도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1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_____, 「일본 수로부의 「조선전안」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한국사연구』 169, 한국사연구회, 2015.
_____,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동북아역사논총』 50, 동북아역사재단, 2015.
- 71) 허영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13, 2006.
_____, 「1905년 ‘각의결정문’ 및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와 독도 편입」, 『독도연구』 1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 72) 송휘영, 「근대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대구사학』 106, 대구사학회, 2012.
_____, 「독도 관련 일본 고문서의 연구동향과 자료 검토」, 『일본문화연구』 50,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_____, 「죽도와일도의 해석과 메이지 정부의 울릉도·독도 인식」, 『일본문화연구』 52,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_____,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도항금지령」, 『독도연구』 19,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5.
_____, 「天保竹島一件」을 통해 본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일본문화연구』 68, 동아시아일본학회, 2016.
- 73) 윤소영, 「1900년대 초 일본 측 조선어업조사 자료에 보이는 독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_____, 「근대 일본 관찬 地誌와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 74) 김수희,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어업」, 『인문연구』 5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_____, 「개척령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38, 한일관계사학회, 2011.
_____, 「흑룡회의 독도 침탈 기도와 ‘양코도 발견’ 기록의 재검토」, 『전북사학』 41, 전북사학회, 2012.
_____, 「독도는 무주지인가?-1905년 일본의 죽도영토편입 조치와 ‘무주지선점’설 비판」, 『일본문화연구』 47, 동아시아일본학회, 2013.

19세기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명칭 혼란과 독도 자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⁷⁵⁾

현대사 분야까지 독도 역사 연구 범위를 확장시킨 데 있어서는 정병준의 연구가 큰 역할을 차지했다. 그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영국 외무성이 완성한 대일평화조약 초안에 첨부된 지도를 찾아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다.⁷⁶⁾ 그는 한국이 독도에 대한 본격적 조사활동을 개시했고,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허위정보를 담은 팸플릿을 제작했으며, 미국이 대일평화조약 초안에서 리앙쿠르암(독도)을 한국령으로 명시했던 1947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독도 1947』을 발간했다.⁷⁷⁾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독도에서의 한·일 간 충돌 및 1950~70년대 미국 CIA의 독도 인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⁷⁸⁾ 조성훈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의 독도 문

_____, 「일본식 오징어어업의 전과 과정을 통해서 본 울릉도 사회의 변화과정」, 『대구사학』 115, 대구사학회, 2014.

_____,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 강점」, 『독도연구』 1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_____,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과 오키도(隱岐島) 어민들의 독도 진출」, 『한일관계사학회』 51, 한일관계사학회, 2015.

_____, 「19세기 일본 산음지방의 울릉도·독도 기록과 ‘송도개척론(松島開拓論)」, 『독도연구』 19,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5.

_____, 「동해상에서 무주지 선점 법리를 이용한 섬 ‘발견’과 ‘명칭 변경」, 『영토해양연구』 10,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5.

75) 김영수, 「근대 독도·울릉도 명칭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시각」, 『역사와 현실』 73, 한국역사연구회, 2009.

_____,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 관례와 사료적 근거」, 『독도연구』 1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1.

76) 정병준, 「영국 외무성의 對日 평화조약 草案·부속지도의 성립(1951.3)과 한국독도영유권의 재확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2005.

_____, 「윌리엄 시발드(William J. Sebald)와 ‘독도 분쟁’의 시발」, 『역사비평』 71, 역사문제연구소, 2005.

_____, 「시론:한일 독도영유권 논쟁과 미국의 역할」, 『역사와 현실』 60, 2006.

_____, 「독도영유권 분쟁을 보는 한·미·일 3국의 시각」, 『사람』 26, 2006.

77) 정병준, 『독도1947』, 돌베개, 2010.

78) 정병준, 「1953~1954년 독도에서의 한일충돌과 한국의 독도수호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_____, 「미국 정보기관의 독도 관련 자료와 독도문제 인식-중앙정보국(CIA) CREST 비밀해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 및 벤 플리트 사절단의 보고서를 분석했다.⁷⁹⁾

조선시대 독도 연구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호동은 공도정책 용어 폐기를 주장하며 독도 단행본을 펴냈다.⁸⁰⁾ 윤유숙은 주로 17-19세기 朝日의 울릉도 도해 양상 등을 고찰했다.⁸¹⁾ 유미림은 朴世堂의 『西溪雜錄』 「鬱陵島」를 분석했으며, 裴季周의 후손이 소장하던 「鬱島郡節目」(1902)의 수출세 관련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⁸²⁾

소, 2013.

_____,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독도연구』 18,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5.

79) 조성훈,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대일전략과 독도 귀속문제」, 『국제지역연구』 17-2, 서울대국제학연구소, 2008.

_____, 「1954년 벤 플리트 사절단 보고서와 미국의 독도 인식」, 『동양학』 4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9.

80) 김호동, 「조선 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공도정책’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3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5.

_____,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7.

_____, 「독도 영유권 공고화와 관련된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 『대구사학』 98, 대구사학회, 2010.

_____, 「조선시대 독도·울릉도에 대한 인식과 정책」, 『역사학연구』 48, 호남사학회, 2012.

81) 윤유숙, 「근세 돛토리번(鳥取藩) 町人の 울릉도 도해」, 『한일관계사연구』 42, 한일관계사학회, 2012.

_____, 「18~19세기 전반 朝日 양국의 울릉도 도해 양상」, 『동양사학연구』 118, 동양사학회, 2012.

_____, 「1693년 조선인의 돛토리번(鳥取藩) 연행사건과 쓰시마번(對馬藩)」, 『동양사학연구』 123, 동양사학회, 2013.

82) 유미림, 「“우산도=독도”설 입증을 위한 논고-박세당의 「울릉도」와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8.

_____, 「일본의 울릉·우산 ‘二島’설 부정과 지리지 규식」, 『영토해양연구』 1,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1.

_____, 「근대기 조선 지리지에 보이는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호칭의 혼란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2,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1.

_____, 「1900년 칙령 제41호 제정 이후 울릉도 ‘수출세’의 성격」, 『영토해양연구』 7,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4.

_____, 「1905년 전후 일본 지방세와 강제어업, 그리고 독도」, 『영토해양연구』 9,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5.

_____, 「한국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기술과 그 계보에 관한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52, 동북아역사재단, 2016.

_____, 「공문서 작성 절차로 본 독도 관련 법령의 의미」, 『영토해양연구』 11,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6.

연구서를 발간했다.⁸³⁾

이 시기는 독도에 대한 대폭적인 연구가 진행된 만큼 역사학 분야에서 독도 관련 박사학위 논문도 배출되기 시작했다. 정영미는 『竹島考證』을 분석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섬의 명칭 혼란’을 분석했다.⁸⁴⁾ 정태만은 박사논문을 통해 일본 국회가 「일본영역참고도」(1951)를 통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⁸⁵⁾

일본에서는 外務省이 2008년 2월 「竹島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 팸플릿을 발간했다.⁸⁶⁾ 일본 정부는 이 팸플릿에서 독도가 17세기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였으며,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영유권을 재확인했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 주장을 10가지 주제로 나누어 비판하는 팸플릿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2008)을 발간했다.⁸⁷⁾ 일본 외무성의 팸플릿은 일본 내에서도 비판에 직면하여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는 일본 정부의 10개 포인트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한 저서 및 논문을 발표했다.⁸⁸⁾

일본 시마네현 竹島問題研究會는 그 동안 3기(2005년 1기, 2009년 2기, 2012년 3기)를 거치며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를 3차례(2007, 2012, 2015)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사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고 학문적인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시마네현에 산재해 있던 고문서들을 수집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고가 가능하

83) 유미림,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_____, 『일본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5.

84) 정영미, 「일본의 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섬의 명칭 혼란(島名の混亂)’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85) 정태만,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86) 일본 외무성은 「竹島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2008)를 토대로 2014년 3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과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입장과 한국의 불법 점거 개요’ 및 6문항의 Q&A를 추가한 팸플릿을 새로 발간했다.

87) 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2008.

88) 内藤正中, 『竹島=獨島問題入門-日本 外務省 『竹島』 批判』, 新幹社, 2008; 「竹島問題の問題點-日本外務省の『竹島』批判」, 『獨島研究』 4,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08.

다. 또 竹島問題研究會는 독도 역사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 및 시마네현 활동 현황을 문답식으로 엮어 『竹島問題 100問100答』을 발간했다.⁸⁹⁾

한편, 일본 연구자의 연구 성과도 많이 축적되었다.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는 오키(隱岐)의 무라카미가(村上家) 집안에 전해져 오던 안용복의 2차 도해(1696) 問情 기록인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를 후손에게 제공받아 발표했다.⁹⁰⁾ 그리고 안용복 사건을 검토하고 「울릉도쟁계(竹島一件)」의 의의 및 1905년 일본 독도 영토편입의 문제점 등을 연구했다.⁹¹⁾

이케우치 사토시는 그동안 발표했던 자신의 논문을 토대로 독도 역사 전문서인 『竹島問題とは何か(竹島문제란 무엇인가)』(2012)를 발간하면서 자신의 연구시기를 에도시대에서 근현대까지 확장시켜 나갔다.⁹²⁾ 그의 연구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세 가지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도는 한·일 모두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케우치는 한국의 경우, 우산도가 울릉도와 구별되는 섬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지만, 안용복 진술상의 子山島만 유일하게 독도를 가리키며, 「칙령 제41호」(1900)상의 석도가 독도와 일치한다는 직접적 증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竹島 도해금지령」(1696)은 松島가 포함된 것으로 이 금지령을 하치에몬 사건 때의 도해금지령(1837)이 계승했으며, 「태정관지령」(1877)의 ‘竹島外一島’에서의 ‘외일도’는 松島가 분명하다고 보았다.

둘째,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은 그 이전에 독도가 한국령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는 1900년 이전 울릉도민이 독도에 출어했다고 입증된 것이 전무한데, 1900~05년

89) 竹島問題研究會, 『竹島問題 100問100答』, WILL, 2014년 3월호. 이에 대해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竹島問題 100問100答』의 각 문항을 하나씩 비판한 『『竹島問題 100問100答』에 대한 비판』(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2014년 6월)을 발간했다.

90) 内藤正中, 「隱岐の安龍福」,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2, 鳥取短期大学, 2005.

91) 内藤正中, 「領土編入をめぐる諸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4, 鳥取短期大学, 2006.

_____, 「1905年の竹島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4, 鳥取短期大学, 2011.

_____, 「竹島一件と安龍福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6-37, 鳥取短期大学, 2013.

92)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3.

사이 독도에 대한 영유 의욕이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싹텃지만, 일본이 먼저 공식 영유를 성명했다고 주장했다.

셋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러스크 서한(1951.8.10)을 통해 볼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케우치 사토시의 독도 연구는 사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문적으로 확실하게 말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는 데 좋은 시점을 제공한다는 평가⁹³⁾를 받기도 한다. 한편, 이케우치의 연구에 대해 “19세기 이전 독도는 국제법이 말하는 ‘무주지’며, 1905년 내각회의 결정을 통해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 先取’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⁹⁴⁾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러한 평가는 그가 국제법적 분석틀 안에서 역사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케우치는 전문서인 『竹島問題とは何か』의 자세한 사료 제시 및 복잡한 논증 과정을 생략하여 일반 독자가 독도에 대해 알기 쉽도록 한 문고판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竹島, 또 하나의 한일 관계사)』(2016)를 발간했다.⁹⁵⁾ 이 문고판은 기존 저서에 한·일 양국 정부의 팸플릿에 대한 비판, 근대 일본의 해도와 수리지, 1950년대 한·일 양국 간 영유권 논쟁, 고유영토론 등을 추가했다.⁹⁶⁾

재일 연구자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竹島=独島問題研究net’을 운영하는 박병섭은 에도시대에서 근현대까지 일본 자료들을 충실하게 분석해가면서 다양한 독도 관련 논저들을 발표해 오고 있다. 그는 17세기 안용복 사건부터 시작해서 메이지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으며,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일본의 어업 관련 현황에

93) 김선희,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다케시마문제란 무엇인가?(竹島問題とは何か)》(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部, 2012)」, 『일본역사연구』 38, 2013, 213~214쪽.

94) 木村幹, 「池内敏著 竹島問題とは何か」, 『東洋史研究』 72卷4号, 2014, 110쪽.

95) 그 스스로도 이 책의 후기에서 “독도 문제를 편견 없이 이해하기에 적당한 문고판 크기의 개설서”로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池内敏,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2016, 257쪽).

96) 池内敏의 문고판 저서에 대해서는 박병섭, 「池内敏의 『竹島-또 하나의 일·한관계사』(『獨島研究』 2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6)에서 자세히 평가했다.

대해 상세한 연구를 진행했다.⁹⁷⁾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및 그 이후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을 일본 자료를 기초로 발표했다.⁹⁸⁾ 그는 한국 학계에서 파악하기 힘든 일본 자료들을 제공하여 독도 연구가 한층 진작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제4기(2005~현재)의 특징 중 하나는 한·일 양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입장을 인터넷이나 홍보자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97) 박병섭, 『안용복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_____, 「明治政府の竹島=独島認識」,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8, 鳥取短期大学, 2008.

_____, 「安龍福事件と鳥取藩」,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9, 鳥取短期大学, 2009.

_____,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独島問題(1)」,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1, 鳥取短期大学, 2010.

_____,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独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 鳥取短期大学, 2010.

_____,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_____,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 『獨島研究』 8,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0.

_____, 「러일전쟁과 독도의 가치」, 『獨島研究』 1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1.

_____, 「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5, 鳥取短期大学, 2012.

_____,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 -새 자료 및 연구를 중심으로-」, 『獨島研究』 12,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2.

_____,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獨島研究』 13,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2.

_____, 「17세기 일본인의 독도 어업과 영유권 문제」, 『獨島研究』 15,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3.

_____, 「元禄・天保竹島一件と竹島=独島の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40, 鳥取短期大学, 2015.

98) 박병섭,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1)」,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8, 鳥取短期大学, 2014.

_____,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獨島研究』 1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_____,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2)-(3)」,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9, 鳥取短期大学, 2014.

_____, 「1953년 일본순시선의 독도 침입」, 『獨島研究』 1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_____, 「광복 후 일본의 독도 침략과 한국의 수호 활동」, 『獨島研究』 18,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5.

_____,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獨島研究』 19,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5.

점이다.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 및 독도 전문 학술지가 간행되기 시작하면서 연구 성과가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시기적으로는 그동안 소홀했던 현대사 범위로까지 연구가 확대되었으며, 일본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주요 주제별 연구 동향

독도에 대한 연구 주제는 매우 다양하고 한·일 간에 쟁점도 복잡하지만, 조선의 울릉도·독도 관할에 대해 일본 정부가 비판하는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于山島 지명 문제, 安龍福 사건과 「鬱陵島爭界」의 평가 문제, 그리고 「勅令 第41號」(1900)의 ‘石島’ 지명 문제이다. 본고는 이 세 주제에 대한 한·일 연구자의 주요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은 1950-60년대 「왕복외교문서」 때 「한국정부견해」1(1953.9.9)에서 처음 밝혀지기 시작했다.⁹⁹⁾ 우산도를 독도로 처음 비정한 연구 성과는 1960년 신석호의 「獨島의 來歷」¹⁰⁰⁾이다. 그는 최초 독도 연구 논문 「獨島 所屬에 對하여」(1948)¹⁰¹⁾에서 三峯島가 독도의 옛 명칭이라고 했었는데, 더 나아가 『世宗實錄』 「地理志」(1454)의 ‘우산도’도 독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밝혔다.¹⁰²⁾

우산도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이병도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우산이 원래 本島(母島)인 울릉도의 옛 이름인데 그 후 본도는 우산 이외에 芋陵·羽陵·蔚陵·鬱陵·武陵·茂陵 등의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우산은 屬島(子

99) 外務部, 「한국정부견해」1(1953.9.9),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3)-』, 1977, 31~32쪽.

100) 신석호, 「獨島의 來歷」, 『사상계』, 1960.

101) 신석호, 「獨島 所屬에 對하여」, 『사해』 창간호, 1948.

102) 『世宗實錄』 「地理志」의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무릉, 두 섬은 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고 기록되어 있는데, 울진 동쪽 바다 가운데에는 울릉도와 독도 이외에 다른 섬이 없고, 울릉도와 독도는 날씨가 청명한 때 서로 바라볼 수가 있어, 우산도는 독도가 틀림없다는 것이다(신석호, 「獨島의 來歷」, 『사상계』, 1960).

島)인 독도로 專稱된 것으로 보았다.¹⁰³⁾ 이후 한국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우산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송병기에 의해서였다. 그는 『高麗史』는 고려시대 지리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울릉 1도설을 내세우면서 울릉·우산 2도설을 덧붙였는데, 15세기 초부터 울릉도 거주민 刷還을 위해 자주 관원들을 파견한 결과,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울릉·우산 2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술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울릉도 주민을 쇠환한 이후 울릉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미약해져, 『新增東國輿地勝覽』(1531)은 울릉·우산 2도설을 내세우면서도 ‘일설에는 우산·무릉은 본디 한 섬이라고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그는 안용복 사건 이후 搜討使가 울릉도를 왕래하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었고, 왕명에 의해 편찬된 『東國文獻備考』(1770)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두 섬임을 柳馨遠의 『輿地志』(1656)를 인용해 분명하게 기술했다고 강조했다.¹⁰⁴⁾

한편, 허영란은 한국 고문헌에 등장하는 다양한 명칭을 독도로 비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우산도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산도가 언제나 동일한 섬을 가리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어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명칭이 등장한 것이며 당대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¹⁰⁵⁾

일본 측에서는 일찍부터 우산도가 독도라는 한국 측에 비판을 가했다.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은 우산도에 15호 86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太宗實錄』의 기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八道總圖」 등을 근거로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¹⁰⁶⁾ 반면, 호리 가즈오(堀和生)는 가와카미 겐조가 16세기 이후 많은 문헌과 고지도에 나오는 우산도를 전부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신라시대부터 알려진 울릉도와는 별개인 우산도가 존재하며, 이 우산도는 독도라고 하면서 상기서는 조선의 正史 중에서도 ‘지리지’라는 점에서 국가의 영유의

103) 이병도, 「獨島 名稱에 對한 史的 考察-于山·竹島 名稱考」, 『불교사논총』, 1963.

104)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출판부, 1998.

105) 허영란, 「독도 영유권 문제의 성격과 주요 쟁점」, 『한국사론』 34, 국사편찬위원회, 2002.

106)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66.

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¹⁰⁷⁾

가와카미 겐조와 호리 가즈오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양측을 모두 비판하며 우산도가 울릉도인 경우와 독도인 경우를 나누어 분석했다. 그는 조선 문헌에서 우산도가 독도인 경우는 안용복의 진술 이후이며, 그 이전에는 울릉도를 가리키거나 『세종실록』 「지리지」처럼 울릉도와 다른 별개의 섬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의 고지도에 표기된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며, 1882년 고종이 鬱陵島檢察使 李奎遠과 나눈 대화를 근거로 우산도가 독도라는 설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¹⁰⁸⁾

우산도 지명 문제에 있어 『동국문헌비고』에서 인용된 유형원의 「여지지」는 계속 논쟁이 되고 있다.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申景濬이 『疆界考』에서 유형원의 「여지지」를 인용한 내용을 살펴면서 ‘우산과 울릉이 본래 한 섬이다’라는 내용까지만 「여지지」의 내용이고, 그 뒤 「圖志를 상고하면…」부터는 신경준 개인의 견해라고 하였다. 그래서 『동국문헌비고』의 「여지지」 인용이 『강계고』의 인용 내용과 다른 것은 신경준이 「여지지」의 기사를 改竄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¹⁰⁹⁾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유형원이 「여지지」를 작성한 1656년 시점에서 조선 사람이 일본에서 우산도를 松島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지지」에는 『동국문헌비고』에서 인용한 기술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¹¹⁰⁾

이에 대해 송병기는 『동국문헌비고』에서 인용한 유형원의 「여지지」 기사는 1472년 三峯島敬差官 朴宗元이 삼봉도 탐사에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기사에 실린 註로서, 이는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의 저자인 신경준이 울릉도와 우산도가 두 섬임을 유형원의 「여지지」를 인용해 지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¹¹¹⁾ 박병섭은 『동국문헌비고』는 일본 측의 주장처럼 「여지지」를 부정확하게 인용한 것이 아니며, 인용이 어디까지이고 신경준의 주장

107) 호리 가즈오(堀和生),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朝鮮史研究會, 1987.

108)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3.

109) 下條正男, 「日本の領土「竹島」の歴史を改竄せし者たちよ」, 『諸君!』, 2007年 9月号.

110) 池内敏, 앞의 책, 225~226쪽.

111)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이 어디부터인지를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¹²⁾ 유미림은 신경준이 「여지지」 견해를 자신의 견해와 부합된다고 여겨서 결론을 취한 것으로서 신경준은 「여지지」 저자 역시 2도설을 수용하여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이다”라고 결론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신경준은 ‘삼봉도’가 여러 圖志에 나온 ‘우산도’를 가리킨다고 보았으며, 이 우산도가 울릉도와 함께 모두 우산국 땅에 속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동국문헌비고』에서 인용한 유형원의 「여지지」가 현재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동국문헌비고』의 「여지지」 인용 기사가 이후 『萬機要覽』(1808)과 『增補文獻備考』(1908)에도 그대로 인용되면서 조선의 독도 관할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

둘째, 안용복 사건과 「울릉도쟁계」에 대한 평가 문제이다. 안용복 사건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은 결국 그가 備邊司에서 진술한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부이다. 안용복은 비변사에서 울릉도와 子山島(우산도)를 조선의 地境으로 정하고 關白의 書契를 받았다고 하며, 울릉도와 자산도에서 일본인들을 내쫓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가와카미 겐조는 안용복의 진술이 虛構와 誇張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 또한 명백한 虛言은 울릉도에 倭船이 많이 來泊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¹¹³⁾ 이케우치 사토시는 안용복이 조선 관헌에게 다양한 변명을 했는데, 객관적인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 실제 행동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¹¹⁴⁾

반면, 송병기는 안용복의 진술에 대해 「元綠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¹¹⁵⁾와 어긋남이 없어 대체로 진실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다만 일부

112) 박병섭, 「시모조 마사오의 논설을 분석한다」, 『독도연구』 4,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08.

113)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66.

114) 池内敏, 「竹島, 獨島 論争とは何か」, 『歴史評論』 733, 2011.

115) 「元綠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는 일본 오키섬에 거주하는 村上家 役人の 후손(村上助九郎)이 2005년 2월 자택에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를 정리하다가 발견되어 같은해 5월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학계에서는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가 논문으로 발표(『隱岐の安龍福』,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2, 鳥取短期大学, 2005)했으며, 한국 학계에서는 송병기가 나이토 교수로부터 이 문서를 제공받아 논문으로 발표(「安

허위진술이 있는 이유는 중죄를 모면하기 위한 선의의 거짓으로 보았다. 안용복은 1693년 돛토리번(鳥取藩)의 중신들에게 서계를 발급받았지만, 그가 관백의 서계라고 진술한 것은 상대방을 격상시켜 자신의 발언에 무게를 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1696년 안용복이 울릉도에 갔던 5월은 「竹島(울릉도) 도해금지령」이 결정(1월)되기는 했으나 돛토리번에 전달(8월)되기 전이므로 울릉도에 일본인이 도해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¹⁶⁾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도 안용복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것이 있지만,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의 기록에서처럼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으로 그려진 지도를 준비해왔다가거나, 1696년 막부에 소장을 제출했을 가능성까지 전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¹¹⁷⁾

「울릉도쟁계」과 관련해서는 일본 幕府의 「竹島 도해금지령」에 독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송병기는 일본 막부가 「竹島 도해금지령」을 내리기 전에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에 대해 돛토리번에 문의하여 일본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竹島 도해금지령」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¹¹⁸⁾ 이것은 국내 연구자 모두의 공통된 견해이며, 일본의 나이토 세이쥬나 이케우치 사토시의 견해도 동일하다. 나이토 세이쥬는 막부가 「竹島 도해금지령」을 내리면서 울릉도 도중 들리는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¹¹⁹⁾ 이케우치 사토시는 「竹島 도해금지령」 문구에 ‘松島(독도) 도해도 금지한다’는 말이 없더라도 두 섬 모두 포함된 것으로서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확인했으며,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판단했음이 확실하다고 보았다.¹²⁰⁾ 그리고 최근에는

龍福의 活動과 鬱陵島爭界, 『歷史學報』 192, 2006)했고, 손승철은 논문(「1696년 안용복의 제2차 도일 공술자료」,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을 통해 문서 원본 사진을 소개했다.

116)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117) 内藤正中, 「隱岐の安龍福」,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2, 2005.

118)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119) 内藤正中, 『竹島=獨島問題入門』, 新幹社, 2008.

120) 池内敏, 「竹島, 獨島 論争とは何か」, 『歴史評論』 733, 2011.

「竹島 도해금지령」의 당사자인 오야가(大谷家) 후손이 1740년(元文 5) 4월 「竹島 도해금지령」 후 상실된 가업의 보전을 막부에 청원한 문서에 ‘竹島·松島 두 섬의 도해금지를 명받은 이후’라는 문언이 접수된 기록에 주목하고, 막부도 오야가와 마찬가지로 1696년 「竹島 도해금지령」을 ‘竹島와 松島 두 섬에 대한 도해 금지령’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¹²¹⁾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50-60년대 「왕복외교문서」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竹島 도해금지령」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마네현의 竹島問題研究會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竹島 도해금지령」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동 금지령의 문언만을 그대로 해석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칙령 제41호」(1900)의 石島 지명에 대한 문제이다. 도도의 지명 유래는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구성으로서 독도 조사를 다녀온 서울대 방중현 교수가 처음 발표했다.¹²²⁾ 그는 독도의 외형이 돌과 같고, 전라남도 해안에서 ‘돌’을 ‘독’으로도 발음하기 때문에 ‘돌섬’이 ‘독섬’으로 일컬어지고 이를 한자로 옮겼을 때 ‘石島’, ‘獨島’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칙령 제41호」(1900)가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석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독도라는 명칭만을 가지고 고증했던 것이다. 「칙령 제41호」(1900)는 1966년李宗馥 교수(당시 한양대)가 처음 발굴했다.¹²³⁾ 그 이후 송병기와 신용하의 연구를 거치면서 한국의 여러 지명을 예로 들어가면서 석도가 독도라는 것이 더욱 체계화되었다.¹²⁴⁾ 최근에는 이기봉이 『한국지명총람』(20책)에서 표준말 ‘돌(石)’과 동일하게 사용된 ‘독’이 독도의 경우처럼 순한국말 지명에서 가장 앞에 표기된 경우를 조사하여 총 319개의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이 중

121) 池内敏, 『竹島 -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2016.

122) 방중현, 「獨島の 하루」, 『京城大學 豫科新聞』 13, 1947; 『一簣國語學論集』, 民衆書館, 1963에 재수록.

123) 홍종인, 「獨島를 생각한다」, 『週刊朝鮮』 427호, 1977.3.20.

124) 송병기, 「高宗朝의 鬱陵島·獨島 研究」, 『獨島研究』,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신용하, 「朝鮮王朝의 獨島領有와 日本帝國主義의 獨島侵略-獨島 領有에 대한 實證의 一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에는 전라도가 251개(78.7%)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¹²⁵⁾

반면, 시모조 마사오는 울릉도 부속섬에 대해 『한국수로지』(1910)에서 울릉도의 부속섬을 竹嶼와 鼠項島라 기술했고, 『일본수로지』(1920)에서는 竹島(죽서)와 雙項礁라 했으므로, 「칙령 제41호」(1900)에서의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향도는 ‘소코토(ソコウトウ)’, 쌍향초는 ‘소코쇼(ソウコウショウ)’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석도의 발음인 ‘소쿠도(ソクトウ)’와 비슷하므로 석도는 곧 관음도를 일컫는 명칭이라는 것이다.¹²⁶⁾ 이에 대해 박병섭은 시모조가 석도라고 주장한 관음도는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에는 ‘島項’, 1900년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의 보고서에서는 ‘島牧’으로서 모두 한국어인 ‘섬목’을 가리키는 한자표기였으므로 시모조가 내세운 ‘서향도(소코토)’는 ‘섬목’을 일본 발음대로 해서 표기한 것이지, ‘석도(일본식 발음: 소쿠도ソクト)’와는 관계가 없으며, ‘쌍향초(소코쇼)’는 관음도 동북에 있는 암초를 가리킨다고 반박했다.¹²⁷⁾

한편, 이케우치 사토시는 ‘석도(돌섬=독섬)’와 ‘독도(독섬)’의 발음이 경상도 내지는 전라도 방언의 음운변화로 생겼다는 것은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1900년 이전 독도를 ‘돌과 같다’고 기록한 한국 측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독도를 돌과 같은 섬이라고 유추하는 것은 현대적 감각을 역사 속으로 가지고 들어간 전도된 논의라고 주장했다.¹²⁸⁾ 그는 또 學部 편집국에서 간행한 「大韓全圖」(1899)에서의 우산도가 독도라면 울도 군수의 관할 영역으로 독도를 포함시킨다는 국가적인 의사표명을 한 「칙령 제41호」(1900)에서 왜 우산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또 일부 지역민이 사용했던 데 불과한 ‘돌섬’, 더욱이 한자로 ‘石島’라고 표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섬 이름을 굳이 왜 채택한 것인지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¹²⁹⁾

125) 이기봉, 「순한국말 지명과 한자 표기의 관계를 통해 본 석도·독도 고찰」, 『문화역사지리』 24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2.

126) 下條正男, 「獨島呼稱考」, 『人文自然人間科學研究』 19, 2008.

127) 박병섭, 「시모조마사오의 논설을 분석한다(2)」, 『독도연구』 7, 2009.

128) 池內敏, 「竹島, 獨島と石島の比定問題」, 『HERSETEC』 4권 2호, 2010.

129) 池內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3.

‘석도’ 지명 문제는 ‘석도=독도’라는 직접적인 근거 자료가 발굴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러한 자료는 발굴되지 않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칙령 제41호」(1900)의 제정 배경 및 전라도민에 의해 우산도에서 돌섬·독섬(석도·독도)로 명칭이 변경된 이유 등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3. 연구 구성

독도 역사에 대한 한·일 정부 및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확연한 이유는 독도에 관한 1차 사료가 한정적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사료를 분석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독도 역사 연구는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목적에 따라 사료를 취사하기도 하고, 비합리적인 분석을 하는 등 객관성을 결여하는 경향이 있다. 독도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독도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료를 활용해야만 한다. 17세기 安龍福의 일본 被拉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외교 쟁점화 되면서 그 부속섬인 독도도 한·일 역사 자료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 19세기 후반 일본인이 울릉도에 潛入하여 불법 어업과 벌목을 일삼기 시작하면서 울릉도가 한·일 간에 또다시 외교 쟁점화 되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사료, 특히 방대하게 남아있는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사료에 대한 연구가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제는 새롭게 공개된 다양한 사료를 통해 독도 역사에 대한 보다 실체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太政官指令」(1877)의 부속지도로서 지령상의 ‘竹島外一島’의 ‘1도’가 松島, 즉 독도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磯竹島略圖」,¹³⁰⁾ 1696년 일본 오키

130) 「磯竹島略圖」는 2005년 5월 일본 가나자와(金澤) 교회 목사 우루시자키 히데유키

(隱岐)에서의 안용복 問情 기록으로서 안용복이 渡日한 목적과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임을 밝혔던 사실이 드러나 있는 「元綠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등 독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료들이 새로 발굴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일본에 비해 새로 발굴된 중요한 사료가 드문 편이다. 하지만 「沈興澤報告書」¹³¹⁾처럼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사료는 아니더라도, 독도 역사에 새로운 관점, 또는 기존 연구성과의 미진한 부분들을 메울 수 있는 사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성과를 토대로 앞서 1절에서 언급했던 새로운 자료들을 더하여 사료상에 우산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조선 초부터 일본에 의한 강제 병합이 이루어진 1910년까지를 대상으로 조선에 이어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를 지속적으로 관할하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시기를 거쳐 메이지유신 이후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지속적으로 제외해왔던 사실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본고의 각 장별로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II장에서는 조선의 울릉도 정책이 주민을 刷還하고 섬을 비워두는 것이었음을 밝히고, 이것이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섬을 放棄한 것이 아닌 왜구에 대비한 정책이었다는 점을 고찰하겠다. 이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안용복 사건으로 촉발된 「鬱陵島爭界」(竹島一件,

(漆崎英之)가 「태정관지령」 원본을 열람하기 위해 일본 國立公文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公文錄』을 찾아보다가 마이크로필름에는 실려 있지 않은 「기죽도약도」가 봉투에 접혀서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6년 7월 언론(MBC)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漆崎英之, 「태정관에 의한 다케시마 외일도 관도 외 지령」, 『독도=다케시마 논쟁』(박병섭, 나이토 세이쥬 공저), 보고서, 2008; 「「太政官指令」 付図 「磯竹島略図」 発見の経緯とその意義」, 『獨島研究』 14,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3).

131) 1978년 4월 결성된 독도연구모임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의 일원이었던 송병기는 奎章閣에서 「各觀察道案」(議政府 外事局)에 편철되어 있는 강원도관찰사서리 춘천군수 李明來가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보낸 「報告書號外」(1906)를 발굴했다. 이 문서에는 일명 「심흥택보고서」가 그대로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말미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를 부인하는 의정부 참정대신의 「指令 第3號」도 실려 있다. 송병기는 이 문서의 내용을 분석한 논문을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의 보고서(한국사학회,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연구」, 1978)에 실고, 이 보고서를 재정리한 『獨島研究』(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를 통해 발표했다. 한편, 이 문서의 발견 경위 및 의의는 송병기, 「癡菴發掘 沈興澤報告書 副本에 대하여」(『白山學報-癡菴申奭鎬博士誕生 100周年紀念 韓國史學論叢-』 70, 백산학회, 2004)에 상세하다.

1693~1699)와도 관련이 깊다. 조선은 15세기 초부터 울릉도 주민을 쇠환하고 섬을 비워두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본 幕府는 「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외교문서로서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 확인하고, 「竹島(울릉도) 도해금지령」(1696)을 내렸다. 이 금지령에 松島(독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17세기 울릉도에 도해했던 오야가(大谷家) 후손의 인식, 즉 1740년 막부에 오야 가문의 곤란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던 탄원서의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 우산도 지명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한 『世宗實錄』 「地理志」부터 시작해서 蔚珍縣令 鄭必達의 시 등 다양한 사료를 활용해서 우산도가 곧 독도를 가리키던 명칭이었음을 밝히도록 한다.

제Ⅲ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竹島 도해금지령」(1696) 이후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를 부인하고 있었던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첫째, 울릉도에 도해했던 하치에몬(八右衛門) 사건을 처리(1837)하는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모두 일본령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울릉도 방면으로의 도해를 금지했던 일, 둘째, 메이지(明治) 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선의 내정을 시찰했던 외무성 출장자가 竹島·松島가 조선에 부속해 있다고 기술한 보고서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1870)했던 일, 셋째, 일본 최고 행정통치 기관인 太政官이 ‘竹島外一島’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 인정한 지령을 내무성에 내린 「太政官指令」(1877)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하도록 하겠다.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반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잠입하여 벌목과 어업을 일삼기 시작했다. 조선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울릉도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 내륙민들을 울릉도로 이주시키고 울릉도 행정을 점차 강화시켜 나갔다. 한편, 조선이 일본 정부에 일본인의 울릉도 잠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여 일본 정부가 「울릉도 도항금지령」(1883)을 내리게 한 외교적 교섭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Ⅳ장에서는 일본의 「울릉도 도항금지령」 이후 일본인의 울릉도 잠입이 1888년경부터 다시 본격화되면서 일어난 한·일 간의 외교적 교섭 양

상과 鬱島郡守 裴季周의 도일 소송에 대해 고찰하고, 특히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 행정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한 1900년 「칙령 제41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 앞서 언급했던 19세기 후반 全羅南道 麗水郡 三山面 三島(巨文島·草島·巽竹島) 방면의 어부가 울릉도를 왕래하면서 울릉도 지명이 변칭되었다는 『開闢』(1923)의 기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울릉도 사람들에게 우산도가 잊혀진 지명이 되고, 새로 독섬·돌섬(石島·獨島)이라는 명칭이 부여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거문도·초도·손죽도 서북쪽으로 가장 인접 지역에 있는 居金島 동남쪽에 있는 조그만 돌섬의 명칭이 ‘獨島’인 것은 결코 우연만이 아닐 것이다.

제 V 장에서는 러일전쟁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1905.2)과 이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갔음에도 일본은 울릉도에 경찰관주재소까지 설치하는 등 울릉도에 대한 침탈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갔다. 그런 와중에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 등 군사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동해 해전이 임박해오자 급기야 독도 편입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1906년 3월 울도군수 沈興澤에 의해 중앙에 보고되었는데, 의정부는 「指令 第3號」(1906.5)를 통해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렸다. 또 『제국신문』(1906.5.1) 기사에 의하면 내부도 심홍택에게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본 理事와 교섭하여 처단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일본이 독도 편입을 시도했지만,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를 지속적으로 관할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울도군수 심홍택의 후임인 沈能益 군수가 1909년 純宗皇帝에게 울도군의 현황을 보고한 문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본고는 이 보고서를 통해 울도군수가 울도군의 위치 및 경계를 밝히는 가운데 독도를 관할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독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와 시기만이 아닌 한국사와 일본사 전반을 두루 통찰할 수 있어야 하고, 문헌 사료 해석뿐만이 아니

라 고지도나 국제법 관련 지식도 필요하다. 물론 고지도나 국제법 분야는 본고의 연구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본고는 울릉도·독도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새로 발굴된 사료를 활용해 가면서 중요 사안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독도 지명인 “우산도=석도=독도”임을 입증하여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를 지속적으로 관할했던 역사를 통시대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반면, 일본 측은 에도 막부에서부터 메이지 정부에 이르기까지 독도에 대해 영유 의식이 없었음을 밝히고, 일 측의 독도에 관한 주장은 러일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목적 하에 불법 편입(1905)한 것을 근거로 하는데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조선의 鬱陵島 정책과 于山島 인식

1. 울릉도 거주민 刷還政策

1) 왜구의 침입과 울릉도 거주민 刷還

울릉도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于山國이라는 독자적인 체제로서 존재하다가 512년 新羅 異斯夫에 의해 新羅에 복속된 이후 매년 토산물을 바쳤다. 고려가 개창되어서도 계속 토산물을 바치며 존속했었는데, 11세기 초 동북여진족의 침략을 받아 거주민 일부는 여진족에 잡혀 가거나 내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¹³²⁾ 그 결과 1157년(의종 11) 울릉도에 파견되었던 溟州道監倉殿中內給事 金柔立의 보고에서처럼 7군락의 촌락 기지가 있을 뿐 거주민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¹³³⁾

울릉도에는 고려 말부터 다시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지만, 연해와 도서들에 倭寇의 침략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울릉도에도 왜구의 침입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조선 조정은 왜구에 대한 울릉도 대책으로 거주민을 刷還하여 섬을 비워두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선 초 울릉도에 대한 주요 기록들도 거의 모두 왜구 침략이나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이 있다.

울릉도 거주민의 첫 쇄환은 1403년 강원도관찰사의 啓言에 따라 국왕 太宗이 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나오도록 명령한 데에서 비롯되었다.¹³⁴⁾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백성들이 균역을 피해 울릉도로 들어가고, 거주민들이 있으면 왜구가 침입할 우려가 더 커지기 때문이었다. 이는 1416년 9월 前 萬戶 金麟雨의 아래 啓言에 잘 드러난다.¹³⁵⁾

132) 『高麗史』, 世家 현종 9년(1018) 11월 丙寅; 현종 13년(1022) 7월 丙子; 『高麗史節要』, 현종 13년 7월.

133) 『高麗史』, 世家 의종 11년(1157) 5월 丙子, 地理志 3, 東界 蔚珍縣; 『高麗史節要』, 의종 11년 5월.

134) 『太宗實錄』 권 6, 태종 3년(1403) 8월 11일(丙辰).

1416년 9월 호조참판朴翊은 옛날에 方之用이라는 자가 울릉도에 입거하여 倭倭로서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으니 울릉도에 대해 잘 아는 삼척사람을 보내자고 국왕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왕 태종은 전 만호 김인우를 불러 울릉도에 대해 물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인우는 “武陵島(울릉도)가 멀리 바다 가운데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없기 때문에 군역을 피하려는 자가 도망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으면 왜구가 들어와 도적질하고 이내 강원도에까지 침입할 것”이라고 아뢰었다.¹³⁶⁾ 실제로 1379년(우왕 5) 倭가 울릉도에 와서 보름간 머물다 돌아간 적이 있었고, 1417년(태종 17) 8월에도 왜가 于山 武陵에 들어왔다.¹³⁷⁾

김인우는 곧 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되어 울릉도에 가서 거주민 3명을 데려오고, 토산물인 大竹, 水牛皮(강치의 가죽), 生苧(생모시), 綿子(목화), 檢樸木(통나무토막) 등을 바쳤다(1417.2). 이때 울릉도에는 戶가 15口, 남녀 86명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¹³⁸⁾

조정에서는 울릉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태종은 우의정 韓尙敬과 六曹, 臺諫에 명해 울릉도 주민 쇄환에 대해 의논케 하였다. 자리에 모인 대부분은 울릉도 주민 쇄환에 반대하고 오곡과 농기구를 주어 생업을 안정케 하고 主帥를 보내어 주민들을 위무하며 土貢을 정하자는 의견을 내었다. 하지만 공조판서 黃禧는 이에 반대하고 속히 울릉도 주민 쇄환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태종도 이에 동의하고 김인우를 按撫使로 삼아 울릉도 주민을 쇄환토록 명했다.¹³⁹⁾ 울릉도 주민 쇄환이 定式化

135) 1403년 거주민들을 쇄환한 것은 倭船 8척이 강릉 羽溪縣과 長鬐 등지를 침입하고 있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太宗實錄』 권 6, 태종 3년(1403) 7월 26일(辛丑); 8월 1일(丙午);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25쪽).

136) 『太宗實錄』 권 32, 태종 16년(1416) 9월 2일(庚寅).

137) 『高麗史』, 列傳 47, 신우 5년 7월조; 『太宗實錄』 권 34, 태종 17년(1417) 8월 6일(己丑).

138) 『太宗實錄』 권 33, 태종 17년(1417) 2월 5일(壬戌). 원문에는 김인우가 ‘于山島’에서 돌아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 장 3절 「于山島 인식의 형성과 심화」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139) 『太宗實錄』 권 33, 태종 17년(1417) 2월 8일(乙丑). 다만, 안무사 김인우가 언제 다시 울릉도에 가서 주민을 쇄환해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1419년 울릉도

된 것이다.

울릉도 주민을 쇠환하고 그 섬을 비워두도록 한 정책은 엄격히 시행되었다. 1419년(세종 1) 義禁府는 노비 元湍 등이 울릉도에 숨어 살자고 모의했기 때문에 곤장 백 대를 때릴 것을 국왕에게 건의하였고, 국왕은 이를 윤허했다.¹⁴⁰⁾ 한편으로는 내륙으로 이주한 울릉도 주민들이 곤궁한 일이 없도록 경기도 平丘驛里에 도착한 울릉도 주민 17명이 식량이 떨어지자 사람을 보내 구제토록 하기도 했다(1419.4).¹⁴¹⁾

그러나 賦役을 피해 울릉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내륙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1417년경 김인우에 의해 내륙으로 쇠환되어 온 金乙之 등 28명이 다시 울릉도로 도망해 살았는데, 이 중 김을지 등 7명이 몰래 平海郡 九彌浦에 왔다가 1425년(세종 7) 발각된 일이 있었다. 이를 강원도관찰사가 보고하니, 김인우는 于山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되어 다시 울릉도로 들어가 20여 명을 쇠환하여 돌아왔다.¹⁴²⁾

이후에도 울릉도 주민들에 대한 쇠환은 계속되어 1438년(세종 20) 前護軍 南蒼, 前 副司直 曹敏을 巡審敬差官으로 임명하여 울릉도에 파견하였다.¹⁴³⁾ 두 경차관은 7월에 울릉도에서 남녀 66명을 데려오고, 沙鐵(광물), 石鍾乳(돌 고드름), 生鮑(전복), 大竹 등의 토산물도 바쳤다.¹⁴⁴⁾ 이때 울릉도에서 주민을 쇠환한 것은 단순히 부역을 피해 도망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계책이 아닌 왜구와 관련이 깊다. 전해인 1437년(세종 19) 강원도관찰사 柳季聞은 古老들에 의하면 옛적에 倭가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여 여러 해 영동에 침략한 바 있었음을 국왕에게 아뢰었다. 이에 대해 世宗은 매년 울릉도에 관원을 보내어 탐색하고 토산물을 채취하며, 혹은 馬場을 설치하면 倭奴들이 대국의 땅이라 여겨 몰래 점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이듬해에 남회와 조민을 보내어 울릉도를

주민 17명이 경기도 平丘驛里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 1419년 이전에 주민 쇠환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송병기, 앞의 책, 27~28쪽).

140) 『世宗實錄』 권 3, 세종 1년(1419) 3월 29일(癸酉).

141) 『世宗實錄』 권 3, 세종 1년(1419) 4월 1일(乙亥).

142) 『世宗實錄』 권 29, 세종 7년(1425) 8월 8일(甲戌)·10월 20일(乙酉).

143) 『世宗實錄』 권 81, 세종 20년(1438) 4월 21일(甲戌).

144) 『世宗實錄』 권 82, 세종 20년(1438) 7월 15일(戊戌).

탐색하고 주민을 쇠환케 한 것이다.¹⁴⁵⁾ 이때 쇠환된 주민들은 울릉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어겨 鞠問을 당하기도 했지만, 국왕은 이들이 질병이나 기아에 이르지 않도록 극진한 矜恤에 힘쓸 것을 강원도관찰사에게 명하기도 하는 등 울릉도 쇠환민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했다.¹⁴⁶⁾

이와 같이 울릉도 거주민 쇠환은 1403년(태종 3) 처음 시작되어 쇠환 정책이 결정된 1417년(태종 17) 및 1425년(세종 7), 1438년(세종 20) 등 총 네 차례 시행되었다. 앞서 세종이 매년 울릉도에 관원을 보내 탐색할 것을 언급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밖에 기록에 전하지 않는 울릉도 거주민 쇠환도 수차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울릉도 정책이 엄준하게 시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울릉도 거주민 쇠환 정책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도 엄격했다. 1438년(세종 20) 울릉도에 도망해 들어가 살던 주모자 金安을 絞刑에 처하였다.¹⁴⁷⁾ 그 이듬해(1439)에도 울릉도에 살던 金凡, 貴生 등을 교형에 처하였다.¹⁴⁸⁾ 앞서 서술했던 1419년(세종 1) 노비 원단의 경우를 미루어볼 때, 울릉도에 가서 살기를 모의하면 태형, 가서 살면 교형에 처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구에 대한 대책으로 島嶼 지역의 거주민을 쇠환한 것은 비단 울릉도만이 아니었다. 14세기 말~15세기 초 왜구는 서남해 도서 지역에 출몰하여 미역을 채취하거나 배를 만드는 등 섬 주민들을 약탈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선 조정은 서남해 도서들에 설치되어 있던 治所를 모두 내륙으로 이동시켰고, 섬 주민도 육지로 강제 쇠환했다.¹⁴⁹⁾ 섬에 사람이

145) 『世宗實錄』 권 76, 세종 19년(1437) 2월 8일(戊辰).

146) 『世宗實錄』 권 83, 세종 20년(1438) 7월 15일(戊戌).

147) 『世宗實錄』 권 83, 세종 20년(1438) 11월 25일(乙巳).

148) 『世宗實錄』 권 84, 세종 21년(1439) 2월 7일(丙辰).

149) 예를 들어 珍島의 경우, 1350년(충정왕 2) 왜구 침략으로 인해 珍島縣의 治所가 내륙으로 옮겨졌는데, 1409년(태종 9) 진도현은 해남과 병합되어 海珍郡으로 승격되면서 靈巖郡 昆湄縣에 치소를 두었다가, 섬이 안정을 되찾자 1414년(태종 14) 해진도의 치소는 본래 위치인 진도로 이동했다(『太宗實錄』 권 17, 태종 9년(1409) 2월 3일(丁丑)·권 27, 태종 14년(1414) 2월 26일(庚午); 『世宗實錄』 「地理志」, 全羅道 羅州牧 海珍郡; 『新增東國輿地勝覽』, 靈巖郡 古跡 昆湄廢縣); 김경옥, 『朝鮮後期 島嶼研究』, 혜안, 2004, 50~51쪽.

살지 않으면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 것이고, 왜구들은 약탈할 것이 없는 섬에 더 이상 출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世祖代에는 1461년(세조 7) 병조에서 “전라도 백성이 海島에 도망해 들어간 자가 많으니 청컨대 朝官을 보내어 쇄환하십시오”라고 국왕에게 건의하기도 했다.¹⁵⁰⁾ 이러한 도서 거주민을 쇄환하는 정책은 成宗代에 한층 더 강화되었다. 성종은 下三道 관찰사에게 ‘事目’을 내려 육지의 거민들이 여러 섬으로 도망하여 숨은 자가 많아 軍役에서 누락되고 賊變이 일어나도 구원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잠입자들을 모두 출륙시키라는 명을 내렸다.¹⁵¹⁾ 왜구로 인한 울릉도에 대한 대책과 동일한 것이었다.

2) 울릉도 ‘空島政策’의 의미

울릉도 거주민 쇄환 정책은 엄준하게 시행되었다. 이 정책을 두고 일찍이 신석호는 “울릉도를 완전히 空島로 만들어 놓았다”고 평했다.¹⁵²⁾ 최남선은 ‘空曠策’이라 하며, 이를 곧 ‘人民의 島中入居를 禁制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¹⁵³⁾ 이선근은 ‘空島政策’이라고 표현하고, 이는 오로지 외적 침략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책에서 울릉도 경영을 중단한 것이지 결코 영토 포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¹⁵⁴⁾ 그가 이렇게 울릉도 공도정책이 울릉도 영토 포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1950-60년대 한일 「往復外交文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일본정부견해」2(1954)에서 조선이 처음부터 울릉도에 대해 ‘비거주 섬 정책(policy of non-inhabated island)’을 써서 울릉도보다 더 멀리 고립되어 있는 독도에 대해 통제력을 확대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정부견해」3(1956)에서 “울릉도가 조선 초기 완전히 空島가 되어 조선 정부에 의해 사실상 放棄되었고, 일본인의 왕래가 점차 늘

150) 『世祖實錄』 권 25, 세조 7년 8월 6일(癸酉).

151) 『成宗實錄』 권 72, 성종 7년 10월 9일(己卯); 김경옥, 위의 책, 65~66쪽.

152) 신석호, 「獨島 所屬에 對하여」, 『史海』 창간호, 1948, 93쪽.

153) 최남선, 「鬱陵島와 獨島」, 『六堂崔南善全集』 2, 高麗大學校 六堂全集編纂委員會, 1973, 684~685쪽.

154) 이선근, 「獨島의 名稱에 對한 史的 考察」, 『獨島』, 대한공론사, 1965, 85쪽.

어나 임진란 후 약 100년에 걸쳐 일본인의 魚採地가 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¹⁵⁵⁾

일본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국정부견해」2(1954)에서 “울릉도에 대한 소위 ‘空曠策’은 울릉도와 그 속도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며 “3년에 한번씩 울릉도의 독도지역에 한국 수토관이 파견되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⁵⁶⁾ 또 「한국정부견해」3(1959)에서는 “일본인들의 왜구 노략을 위한 도해가 비단 울릉도 일대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허심탄회하게 상기 시인한다면…”이라고 하여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온 것이 왜구의 침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¹⁵⁷⁾

이처럼 1950~60년대 한일 「왕복외교문서」 당시 일본 측은 울릉도를 ‘空島’로 만들어서 조선 정부가 사실상 방기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조선 초기의 울릉도 정책을 ‘공도’라는 표현으로서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울릉도 ‘空曠策’을 펼쳤지만 이것이 영토 포기는 아니라고 하며 조선 후기 수토제도를 들어 일본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울릉도 정책을 표현한 한일 양국의 ‘공도’나 ‘공광’은 모두 같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도정책이라는 용어는 한국 내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이 용어가 울릉도 영유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일본에서 용어가 유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공도정책 용어 폐기 주장¹⁵⁸⁾에 의하면, 공도정책이란 용어가 일본 외무성 서기관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

155) 外務部, 「일본정부견해」3(1956.9.20),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42쪽.

156) 外務部, 「한국정부견해」2(1954.9.25),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89~90쪽.

157) 外務部, 「한국정부견해」3(1959.1.7),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92쪽.

158) 김호동, 「조선 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공도정책’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32, 2005;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7; 김호동, 「독도 영유권 공고화와 관련된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 『대구사학』 98, 대구사학회, 2010, 김호동, 「조선시대 독도·울릉도에 대한 인식과 정책」, 『역사학연구』 48, 호남사학회, 2012; 손승철, 「중·근세 조선인의 島嶼 경영과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39, 한일관계사학회, 2011.

正誠)가 울릉도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한 『竹島考證』(1881.8)에서 다음과 같이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¹⁵⁹⁾

또 『磯竹島覺書』는 『東國輿地勝覽』 및 『芝峯類說』을 인용하여 “조선 태종 때 그 섬으로 도망하는 流民이 많다고 듣고, 다시 명령하여 삼척 사람 金麟雨를 按撫使로 삼아 그 땅에서 사람을 나오게 하고 땅을 비웠다(刷出空其地). …그 전 왕조에서는 空島制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살던 사람이 때때로 그 섬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¹⁶⁰⁾

古史를 보자면 울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文祿(1592~1614) 이래 버려두고 거두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이 빈 땅(空地)이므로 가서 살았다. 즉 우리 땅인 것이다. 그 옛날에 두 나라의 경계가 항상 그대로였겠는가. 그 땅을 내가 취하면 내 땅이 되고, 버리면 다른 사람의 땅이 된다.¹⁶¹⁾

기타자와 마사나리는 울릉도가 김인우의 주민 쇄환으로 인해 ‘空其地’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울릉도 정책으로 ‘공도제’를 언급했다.¹⁶²⁾ 그리고 울릉도가 빈 땅(空地)이 되어 일본 사람들이 가서 살면서 일본 땅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공도정책 용어 폐기 주장에 의하면, 이와 같은 기타자와 마사나리의 주장이 조선의 수토정책을 공도제라 명명하고 울릉도가 빈 섬, 버려진 섬임을 『죽도고증』 곳곳에서 부각하여 ‘버려진 땅을 내가 취하면 내 땅이 된다’는 것을 외무성 등에 주지시키고자 하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¹⁶³⁾ 하지만 이런 논리는 다소 오류가 있다. 우선 기타자와 마사나리가

159) 김호동, 「독도 영유권 공고화와 관련된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 『대구사학』 98, 대구사학회, 2010, 84쪽.

160) 北澤正誠, 『竹島考證』 上(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Ⅱ』, 다다미디어, 2006, 29~31쪽).

161) 北澤正誠, 『竹島考證』 中(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Ⅱ』, 다다미디어, 2006, 249~251쪽).

162) 이에 대해 김호동은 울릉도 주민에게 조세 수취와 역역동원을 부과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쇄환’ 혹은 ‘쇄출’ 조치에 따른 결과로서 울릉도가 ‘空其地’된 것이지 결코 공도제란 정책이 시행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김호동, 위의 논문, 90쪽).

『죽도고증』에서 공도제라 명명한 것은 조선의 수토정책과는 관계가 멀다. 울릉도 수토정책은 1693년(숙종 19) 안용복의 일본 피랍사건 이듬해인 1694년(숙종 20)에 일단 확정되고 1697년(숙종 23) 결정되었다.¹⁶⁴⁾ 반면에 기타자와 마사나리가 공도제를 언급한 것은 시기적으로 17세기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 이전, 즉 조선 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수토제와 기타자와 마사나리가 언급하는 공도제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타자와 마사나리는 “울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文祿(1592~1614) 이래 버려두고 거두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울릉도가 조선령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타자와 마사나리의 울릉도 소속에 대한 인식은 아래에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1370년 전부터 임진왜란 때까지는 竹島(울릉도)가 조선의 영역이었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文祿·慶長 이래 元祿 9년에 이르기까지는 조선이 병란의 재해로 인하여 그곳을 도외시하게 되었고 우리 사람들이 占據하도록 내버려두게 되었던 것 같다.¹⁶⁵⁾

이에 의하면, 기타자와 마사나리는 “임진왜란 때까지는 竹島(울릉도)가 조선의 영역이라고 해도 좋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죽도고증』에 서술된 기타자와 마사나리의 공도제는 조선 전기의 주민 쇄환에서부터를 일컫는다. 하지만 공도제가 곧 영토 포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공도제 하에서의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했다. 다시 말하면, 기타자와 마사나리는 울릉도 공도제를 조선의 정당한 울릉도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163) 김호동, 위의 논문, 92쪽.

164) 『肅宗實錄』 권 27, 숙종 20년(1694) 8월 14일(己酉); 『承政院日記』 19책, 숙종 23년(1697) 4월 13일(壬戌).

165) 北澤正誠, 『竹島考證』 上(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Ⅱ』, 다다미디어, 2006, 41쪽).

기타자와 마사나리가 『죽도고증』에서 일본이 울릉도를 영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정부가 일본인의 울릉도 점거를 내버려 둔 데 있다고 서술했다. 그는 특히 李睟光의 『芝峯類說』의 “근래에 듣기로는 왜인들이 磯竹島(울릉도)를 점거했다고 한다”는 서술에 주목하여 “조선인 또한 은연중에 우리나라(일본) 사람이 竹島를 점거하도록 방임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¹⁶⁶⁾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이 빈 땅이므로 가서 살았다. 즉 우리 땅인 것이다. 그 옛날에 두 나라의 경계가 항상 그대로였겠는가. 그 땅을 내가 취하면 내 땅이 되고, 버리면 다른 사람의 땅이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¹⁶⁷⁾

울릉도가 비어있는 동안에 일본인들이 왕래하여 영유했다는 인식은 『죽도고증』 이전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의 『竹島考』(1828)에서도 볼 수 있다. 오카지마는 『죽도고』 서문에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竹島(울릉도)는 풍요의 땅이기는 하나 오랫동안 廢道였다. 에도(江戶) 중기에 호키국(伯耆國)에서 그 섬을 열고 배로 왕래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에게 속했던 땅을 다른 나라의 간악한 어부들이 멋대로 빼앗았으니 뜻 있는 자라면 누구나 그 일을 애석해하지 않으리라.¹⁶⁸⁾

이에 따르면 오카지마의 인식은 울릉도가 폐도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왕래했는데 조선이 그 영유권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竹島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2008)에서도 “70년에 걸쳐 아무런 방해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행했습니다”라고 하여 조선 정부에서 70년에 걸쳐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17세기 일본인의 울릉도 점거를 조선 정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앞서 『죽도고증』에 서술된 일본 사람들이 ‘점

166) 北澤正誠, 앞의 책, 49쪽.

167) 北澤正誠, 『竹島考證』 中(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Ⅱ』, 다다미디어, 2006, 251쪽).

168) 岡嶋正義, 『竹島考』 自叙(경상북도, 『竹島考』, 2010, 7쪽).

거’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후술하겠지만, 17세기 일본은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兩家が 1625년 막부로부터 竹島(울릉도) 도해면허를 발급받아 해마다 울릉도에 도해하여 어업을 했다. 단순히 어업을 위해 일시 도해했던 것일 뿐, 섬에 거주하며 실질적인 경영의 조치를 취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1693년(숙종 19) 안용복 피랍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즉 「鬱陵島爭界」(일본명 竹島一件)가 발생했다. 그 결과 1696년(숙종 22) 1월 일본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竹島(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竹島 도해금지령」은 단순히 도해만 금지한 것이 아니라 울릉도가 조선령이라는 것을 공식 인정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1698년(숙종 24) 3월 조선 예조참의 李善溥가 “울릉도가 우리 땅임은… 疆界가 自別합니다”라는 내용의 서계를 부산 왜관으로 전달(1698.4)했으며,¹⁶⁹⁾ 이 서계를 일본 막부가 공식 접수했고, 접수 사실을 다시 조선 측에 통보해 주었기 때문이다.¹⁷⁰⁾ 70여 년간 일본인이 울릉도에 왕래하며 어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정부의 방임, 또는 묵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몰래 도해했던 것을 인지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일본인의 울릉도 어업활동에 대해 인지하고서는 이를 강력히 일 측에 항의하고 막부로부터 울릉도 영유권을 공식 확인받았다.

17세기 후반 조선의 울릉도 영유권이 일본 막부에 의해 공식 확인되었다는 점에 대해 기타자와 마사나리도 제반 외교 문서를 상세히 소개한 후, “竹島에 울도란 옛날 이름을 부여해 준 것은 당시의 (일본) 정부인 것이다”라고 서술했다. 심지어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홀로 한숨이 나온다”고 표현할 정도였다.¹⁷¹⁾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조선 전기 울릉도에 대한 정책을 ‘공도정책’이라

169) 「書契」(2343), 『對馬島宗家文書』(國史編纂委員會 소장); 『邊例集要』 下 17, 鬱陵島 戊寅(1698) 4月; 北澤正誠, 앞의 책, 213~217쪽; 송병기, 앞의 책, 107~111쪽.

170) 『邊例集要』 下 17, 鬱陵島 戊寅(1698) 4月; 『朝鮮通交大紀』 권 8; 北澤正誠, 위의 책, 2006, 217~219쪽; 송병기, 위의 책, 111~114쪽.

171) 北澤正誠, 앞의 책, 253~257쪽.

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빈 섬에 일본인들이 어업하러 왔을 때 아무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몰래 도해해서 조선 측이 그들의 도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일본인들의 도해를 인정하거나 묵인, 방임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편, ‘空島制’이라는 용어가 일본인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울릉도에 관한 조선 문헌에도 유사한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었다. 예컨대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于山·武陵島 注記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우리 태조[태종] 때 流民들이 그 섬(울릉도)으로 도망해 들어간 자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듣고 두 차례나 삼척 사람 金麟雨를 명하여 按撫使로 삼아 쇄환하여 그 땅을 비웠다(我太祖時 聞流民逃入其島者甚多 再命三陟人金麟雨爲按撫使刷出 空其地).¹⁷²⁾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 땅을 비웠다(空其地)” 중 ‘그 땅(其地)’은 그 앞에 나오는 ‘그 섬(其島)’, 곧 울릉도를 가리킨다. “그 땅을 비웠다”는 것은 ‘그 섬을 비웠다는 것’, 곧 ‘空島’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東國文獻備考』 「輿地考」(1770) 강원도 울진현조에도 나온다.

또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강원도 울진현조나 申景濬의 『疆界考』(1756) 울릉도조에서는 1438년(세종 20)에 울릉도의 유민을 모두 쇄환했기 때문에 “그 땅이 드디어 텅 비었다(其地遂空)”라고 기술했다. ‘공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조선 전기뿐 아니라 후기에도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¹⁷³⁾

우리가 역사상의 어떠한 현상을 용어로서 설명할 때는 그 당시 사용되었던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 전기 울릉도에 대한 ‘空其地’, ‘其地遂空’라는 표현은 모두 주민들을 쇄환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172) 『世宗實錄』 「地理志」, 江原道 蔚珍縣條.

173) 송병기, 앞의 책, 25~26쪽.

조선이 울릉도 주민을 쇄환하는 과정에는 1403년(태종 3) 국왕이 울릉도 주민 쇄환을 명한 적이 있었고,¹⁷⁴⁾ 1416년(태종 16)에는 前 萬戶 金麟雨를 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하고 이듬해 울릉도로 파견하여 주민들을 쇄환해 오게 했다.¹⁷⁵⁾ 내륙으로 쇄환했던 울릉도 주민들이 다시 울릉도로 몰래 들어가자 1425년(세종 7)에는 김인우를 于山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하여 주민들을 쇄환케 했다.¹⁷⁶⁾ 이처럼 울릉도 주민들을 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던 시기인 1438년(세종 20)에는 前 護軍 南薈와 前 副司直 曹敏을 울릉도 巡審敬差官으로 임명하여 울릉도 개척 가능성을 살피고 몰래 들어간 주민들을 쇄환하게 했다.¹⁷⁷⁾ 그리고 쇄환해온 주민들에게 울릉도에 몰래 들어간 이유를 鞫問하는 한편 극진한 矜恤을 실시했다.¹⁷⁸⁾

조선 조정은 울릉도 주민들을 쇄환만 했던 것이 아니라 울릉도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엄금하고 있었다. 그러한 예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419년(세종 1) 노비 元湍 등이 울릉도에 숨어 살자고 모의한 것이 발각되어 곤장 백 대형에 처해진 것,¹⁷⁹⁾ 1438년(세종 20) 울릉도에 도망해 들어가 살던 주모자 金安,¹⁸⁰⁾ 그 이듬해(1439)에도 울릉도에 살던 金凡, 貴生 등을 교형에 처한 일 등이 있었다.¹⁸¹⁾ 이러한 처벌들은 울릉도에 대한 정책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은 교형, 가는 것을 모의하는 것은 태형에 처하는 것으로까지 어느 정도 定式化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은 울릉도 개척 가능성 조사 및 주민 쇄환을 위해 여러 차례 관원을 파견했고, 쇄환한 백성의 궁핍에 힘쓰는 한편, 울릉도에 잠입하는 백성들은 그 情狀을 물어 처벌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선은 울릉도 주민을 쇄환하여 그 섬을 비워놓으면서도 울릉도 관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4) 『太宗實錄』 권 6, 태종 3년(1403) 8월 11일(丙辰).

175) 『太宗實錄』 권 32, 태종 16년(1416) 9월 2일(庚寅)-권 33, 태종 17년(1417) 2월 8일(乙丑).

176) 『世宗實錄』 권 29, 세종 7년(1425) 8월 8일(甲戌).

177) 『世宗實錄』 권 76, 세종 19년(1437) 2월 8일(戊辰).

178) 『世宗實錄』 권 83, 세종 20년(1438) 11월 25일(乙巳).

179) 『世宗實錄』 권 3, 세종 1년(1419) 3월 29일(癸酉).

180) 『世宗實錄』 권 83, 세종 20년(1438) 11월 25일(乙巳).

181) 『世宗實錄』 권 84, 세종 21년(1439) 2월 7일(丙辰).

일본에서 공도정책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기타자와 마사나리도 공도정책 시기였던 조선 전기 울릉도가 조선령이라고 직접 서술하고 있다. ‘空島政策’은 문자 그대로 ‘섬을 비워두는’ 울릉도에 대한 정책 중 하나이지 섬을 포기했던 것이 절대 아니었다.¹⁸²⁾

후술하겠지만, 조선의 울릉도 관할 의지는 안용복 사건으로 촉발된 일본과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교섭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 1693년 안용복 사건 이후에 울릉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 搜討使를 정기적으로 파견했던 사실 등을 통해 보면 울릉도를 지속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조정이 울릉도에 대해 적극적인 개척을 결정하는 것은 1882년(고종 19)부터였다. 울릉도 개척 또한 일본인의 울릉도 잠입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2. 安龍福 사건과 일본의 울릉도·독도 領有 否認

1) 일본의 竹島(울릉도) 渡海

조선 초기 울릉도 거주민을 쇠환하던 정책은 1403년(태종 3) 강원감사의 건의에 의해 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나오게 한 이래 1417년(태종 17) 正式化되었다.¹⁸³⁾ 그 결과 울릉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되었고, 동해 방면 섬들에 대한 내륙인들의 지리적 인식도 점차 낮아져서 三峰島니, 蓼島니 하는 新島說이 나돌게 되었다.

太宗이 울릉도 거주민을 내륙으로 불러들이기 시작(1403)한 지 얼마

182) 일본의 경우에도 오가사와라섬(小笠原島)에 대해 1863년 일본인 관리 및 이주민들을 섬에서 철수시키고 1875년까지 약 12년 넘게 공도정책을 실시했던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1876년 내무성의 소관으로 정하는 편입 조치를 취했다(한철호,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의 울릉도·독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9, 2008; 한철호, 「明治시기 일본의 도서선점 사례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그 의미」, 『서울국제법연구』 16권 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9).

183) 『太宗實錄』 권 6, 태종 3년(1403) 8월 11일(丙辰); 권 33, 17년(1417) 2월 8일(乙丑).

지나지 않은 1407년(태종 7) 일본 쓰시마(對馬)의 守護 소 사다시게(宗貞茂)는 조선 측에 茂陵島(울릉도)에 여러 촌락을 거느리고 옮겨 살기를 청하였다.¹⁸⁴⁾ 물론 조선 조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임진왜란 직후인 1614년(광해 6)에도 일본 쓰시마번은 울릉도를 차지할 목적으로 이곳에 와서 살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 조정은 울릉도가 조선령임은 『輿地勝覽』에도 기록되어 있고, 方物을 거두기도 하고 島民을 조사 정리하기도 한 典故가 명확하다는 서계를 보냈다.¹⁸⁵⁾

이와 같은 조선 조정의 울릉도에 대한 영유의지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전반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가 시작되었다. 1617년 일본 돗토리번(鳥取藩)에 거주하는 오야 진키치(大谷甚吉)는 藩領 요나고(米子)로 돌아오는 도중에 竹島(울릉도)에 표착했다. 그는 竹島에 사람이 살지 않고 산물이 매우 많아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하타모토(旗本, 에도 시대 將軍 가문 직속의 가신단 중 일원)인 아베 시로고로(阿部四郎五郎)의 주선으로 竹島 도해를 막부에 청원했다. 竹島 도해 청원에 대해 막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해면허를 돗토리번주에게 내려 주었다.

몇 해 전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에서 竹島(울릉도)에 배를 타고 건너갔었다고 한다. 그와 같이 이번에도 도해를 희망한다고 요나고 주민 무라카와 이치베, 오야 진키치가 청원하여 장군의 판단을 청하였던 바, 그렇게 해도 좋다는 분부가 계셨다. 이러한 장군의 뜻에 따라 竹島 도해를 명하는 바이다.

5월 16일

나카이 시나노노카미 나오마사 인
 이노우에 가즈에노카미 마사나리 인
 도이 오이노카미 도시카쓰 인
 사카이 우타노카미 다다요 인¹⁸⁶⁾

184) 『太宗實錄』 권 13, 태종 7년(1407) 3월 16일(庚午).

185) 『光海君日記』 권 82, 6년(1614) 9월 2일(신해); 『增正交隣志』 志, 「鬱陵島磯竹島辨正顛末」.

186) 원문은 다음과 같다(『伯耆志』 卷 7; 池內敏, 「竹島渡海と鳥取藩-元祿竹島一件考·序

마쓰다이라 신타로를 비롯한 제위 귀중

竹島 도해면허의 발급 시기는 『竹島考』(1828), 『伯耆志』(19세기 중반) 등에 1618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도해면허 발급 시기에 대해 동 문서에 서명한 4명이 모두 로쥬(老中, 에도 막부 최고위직)가 되는 1622년 이후이며, 1637년 조선에 표류한 일본 선원들이 13년 전에 울릉도 도해 허가를 받았다고 했으므로 162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논증했다.¹⁸⁷⁾

일본 막부 竹島 도해면허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찍이 1950~60년대 한 일 「往復外交文書」에서부터 논쟁이 되어 왔다. 한국 측에서는 竹島 도해면허를 막부가 ‘朱印狀’을 내려준 것으로 보고, 이것을 소지한 어민들에게 매년 울릉도에 출어케 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 ‘朱印’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 외국과의 무역을 공인한 선원에 한하여 하급된 증명으로, 이를 통해 보면 울릉도 지역이 한국의 주권 하에 있었음을 일본에서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¹⁸⁸⁾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兩家が 막부로부터 받은 것은 ‘주인장’이 아니라 竹島(울릉도) 도항 허가증으로서 竹島의 배타적

說-, 『鳥取地域史研究』 1, 1999, 32쪽 참조).

從伯耆國米子竹島江[先年]舟相渡之由[候] 然者如其今度致渡海[度]之段 [米子町人] 村川市兵衛大屋甚吉申上付て 達上聞候之處 不可有異儀之旨被仰出候間 被得其意 渡海之儀可被仰付候 恐ヶ謹言

五月十六日

永井信濃守 尙政 判
井上主計頭 正就 判
土井大炊頭 利勝 判
酒井雅樂頭 忠世 判

松平新太郎 殿[人々御中]

* ‘[]’ 안은 『大日本史料』 12편 29, 元和 4년 5월 16일조에 있는 「大谷氏舊記」의 기사에서 보충한 것임(池内敏, 위의 논문).

187) 池内敏, 「竹島渡海と鳥取藩-元祿竹島一件考·序說-」, 『鳥取地域史研究』 1, 1999, 39~42쪽; 일본 외무성은 「竹島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2008) 팜플렛에서 도해면허 발급 시기를 본문에 1618년이라 하고, 주석으로 1625년이라는 설도 있다고 부언했다.

188) 外務部, 「한국정부건해」2(1954.9.25),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83쪽.

이용 허가권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양가가 울릉도로 가는 중간 정박지로서 독도를 활용하였고, 이로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의 일부로 인식되었다고 주장했다.¹⁸⁹⁾

‘주인장’은 선박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허가해 주는 문서이다. 예를 들어 주인장은 ‘일본에서 베트남까지 가는 배(自日本到安南國舟也)’라는 형식의 서류이며, 여기에는 도항처 및 발급 연월일이 기재되었다. 또 주인장은 도항이 끝날 때마다 반환하는 일회성의 것이었다. 따라서 竹島 도해면허는 외국으로 나가는 배를 허가하는 주인장과는 성격이 다르다.¹⁹⁰⁾

竹島 도해면허의 발급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막부는 기록상 1617년에 울릉도에 표착한 오야 진키치로부터 ‘竹島’라는 새로운 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竹島 도해면허를 내어주면서 이 섬에 대한 소속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새로운 섬에 “그와 같이 이번에도 도해를 희망한다(如其今度致渡海[度])”는 요청에 대해 허가를 내어줬을 뿐이다.¹⁹¹⁾ 따라서 竹島 도해면허는 막부가 인식하지 못하던 새로운 섬에 대한 도해를 1회에 한해 내려준 것이다. 중요한 점은 竹島 도해를 허가했던 막부가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竹島(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竹島 도해를 금지(1696.1)하고 돛토리번으로부터 도해면허를 회수했다는 사실이다.

2) 安龍福의 일본 被拉과 「鬱陵島爭界」

일본 돛토리번(鳥取藩)의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兩家は 幕府의 竹島(울릉도) 도해면허를 활용하여 해마다 울릉에 도해하여 어업을 계속해왔다. 그 사이 조선에서는 울릉도 거주민을 쇠환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오

189) 外務部, 「일본정부견해」3(1956.9.20),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42~145쪽.

190) 池內敏, 앞의 논문, 33~34쪽; 이계황,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와 조·일 외교고섭, 『일본역사연구』 33, 2011, 80~83쪽.

191)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는 동 문구에서 ‘이번(今度)’에 주목하여, 竹島 도해면허는 1회에 한해 발급된 것이라고 밝혔다(池內敏, 「竹島渡海と鳥取藩-元祿竹島一件考-序說-」, 『鳥取地域史研究』 1, 1999, 34쪽).

야·무라카와 양가가 독점적 어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령인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어업 행위는 조선과의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내륙 연해민들이 다시 울릉도에 왕래하기 시작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693년(숙종 19, 元祿 6) 11월 초 조선 연해민의 울릉도 왕래를 금지해 달라는 일본 측 서계를 받은 조선의 備邊司 회의에서 좌의정 睦來善이 한 啓言을 통해 1693년 안용복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내륙 연해민의 울릉도 왕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상도 연해 어민들이 풍랑으로 인해 武陵島로 漂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찍이 연해 수령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듣건대 해변의 어민들이 자주 무릉도 및 他島를 왕래하면서 大竹을 伐取하고 또한 전복을 판다고 합니다.¹⁹²⁾

좌의정 목래선은 일찍이, 즉 1693년 시점 이전에 해변의 어민들이 자주 무릉도(울릉도) 및 타도를 왕래했었다는 사실을 아뢰었다. 여기서 ‘타도’가 어느 섬인지 불명확하지만,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이전의 기록상 동해상에 무릉도와 함께 거론되어 있는 섬은 우산도가 유일하다.¹⁹³⁾

언제부터 조선인이 다시 울릉도에 왕래했는지 불분명하지만, 1692년 무라카와가가 울릉도에 도해했을 때 일행보다 많은 조선인이 울릉도에 있어서 어업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일본 오키(隱岐), 요나고(米子)로 돌아왔다.¹⁹⁴⁾ 그 이듬해(1693) 4월 이번에는 오야가가 울릉도에 도해했을 때에도 울산에서 출항한 40여 명의 조선인들이 어업을 하고 있었다.¹⁹⁵⁾ 2년

192) 『備邊司謄錄』 숙종 19년(1693) 11월 14일; 『承政院日記』 18책, 숙종 19년 11월 13일. 원문은 다음과 같다.

…慶尙道沿海漁民 雖稱因風 漂泊於武陵島云云 而得聞於曾經沿海守令之言 海畔漁氓 頻頻往來 武陵島及他島 伐取大竹 且捕鰻魚云.

193) 송병기, 앞의 책, 45~47쪽.

194) 「元祿六年西四月朝鮮人召つれ參候時諸事控」, 『大谷家文書』;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66, 145쪽; 이계황, 앞의 논문, 85~87쪽.

195) 『肅宗實錄』 권 26, 숙종 20년(1694) 2월 23일(辛卯).

에 걸쳐 울릉도에서 독점 어업을 하지 못하게 된 일본 어민은 安龍福과 朴於屯을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인질로 삼아 일본으로 납치해갔다. 일명 안용복 被拉 사건¹⁹⁶⁾이 발생한 것이다.

안용복 사건은 울릉도와 독도 역사상 일대 전환기가 되었던 사건으로서 조·일 간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외교 교섭을 일컫는 ‘鬱陵島爭界’(일본명 竹島一件)로 비화되었다. 안용복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속중실록』 등에 기록된 안용복 진술의 진위 여부를 놓고 일찍이 한일 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본고에서는 안용복 사건을 간략히 서술하고 이 사건이 갖는 독도에 대한 의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693년 4월 18일 오야가 선원들에게 피랍된 안용복과 박어둔은 ‘새벽에 松島(독도)라는 곳에 도착했다’¹⁹⁷⁾고 한다. 안용복이 일본으로 피랍되어 가면서 독도를 지나갔던 것이다.¹⁹⁸⁾ 안용복이 독도를 본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1693년 11월 쓰시마(對馬)에서의 안용복 진술 기록에 의하면, 그는 울릉도에 머물렀던 기간(3.27~4.18)에도 울릉도의 동북에 큰 섬을 보았는데, 이 섬을 아는 자로부터 우산도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한다. 안용복은 당시까지 우산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대체

196) 일반적으로 1693년, 1696년 두 차례에 걸친 안용복의 일본 도해를 일컫는 ‘안용복 사건’에 대해 송병기는 1693년 ‘안용복 일본 피랍’, 1696년 ‘안용복 일본 밀항’으로 구분하였다.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도 송병기의 견해에 동조하였다. 그리고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은 1693년과 1696년을 합쳐 ‘광의의 안용복 사건’, 1696년만을 논할 때는 ‘협의의 안용복사건’이라고 했으며, 박병섭은 1693년을 제1차 도일사건, 1696년을 제2차 도일사건이라고 구분했다(内藤正中, 「竹島一件と安龍福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6-37, 鳥取短期大学, 2013, 26쪽).

197) 『因府歷年大雜集』 元祿 5년[6년] 7월 24일; 박병섭, 『안용복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29~30쪽; 송병기, 앞의 책, 50~51쪽.

198) 안용복이 동래부에서 한 진술에는 “제가 잡혀 들어올 때에 하룻밤을 지나고 다음날 저녁을 먹고 난 후 섬 하나가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는데, 竹島에 비해 자못 컸다”(『邊例集要』 下 17, 鬱陵島條, 1694년 1월)고 한다. 울릉도와 독도가 하루 거리이고, 20일에 오키 후쿠우라(福浦)에 도착한 점을 감안할 때 19일 새벽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송병기, 위의 책, 51쪽). 한편, 이 섬이 ‘죽도’에 비해 자못 컸다고 하는데, ‘죽도’가 일본에서 말하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울릉도 동북에 있는 땃섬(죽도)인지는 알 수 없다.

로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로 보였다고 진술했다.¹⁹⁹⁾ 방향은 동북 방향이라고 하여 독도의 위치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울릉도에서 하루 거리에 있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이것은 당시 울릉도에 어업했던 사람들이 우산도를 독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안용복은 오키 후쿠우라(福浦)에 도착(4.20)하여 在番役人에게 조사를 받은 후 돛토리번 요나고로 보내졌다(4.27). 요나고에서는 돛토리번의 가로(家老, 藩의 최고위 관리) 아라오 슈리(荒尾修理) 등의 조사를 받았다. 돛토리번은 안용복 조사 결과를 에도(江戸) 藩邸를 통해 막부 月番 로쥬(老中) 쓰치야 사가미노카미(土屋相模守)에게 보고하면서 조선인의 竹島出漁 금지를 요청했다(5.10).²⁰⁰⁾

돛토리번의 보고에 대해 막부 로쥬 쓰치야는 조선인들을 나가사키(長崎)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또 쓰시마번에도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에서 쓰시마로 이송해 귀국시키되 조선 측에 조선인의 竹島 출어 금지를 교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5.13).²⁰¹⁾

한편, 막부는 간쥬카시라(戡定頭, 회계 최고 책임자) 마쓰다이라 미노노카미(松平美濃守)에게 竹島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마쓰다이라는 竹島 도해에 대해 에도(江戸)에 있는 돛토리번저(鳥取藩邸)에 질의(5.21)했고, 이에 대해 돛토리번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고했다(5.22).

竹島는 떨어져 있는 섬인데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애당초 호키노카미가 지배하는 곳도 아닙니다(竹島ははなれ島に人住居者不仕候尤伯耆守支配所ニても無之候).²⁰²⁾

이처럼 에도의 돛토리번저는 竹島가 자신의 소속이 아님을 막부 질의가

199) 『竹島紀事』 元祿 6年 11月 1日.

200) 『控帳』 元祿 6年 4月 28日; 『御用人日記』 元祿 6年 5月 13日; 內藤正中, 앞의 책, 71~74쪽; 池內敏, 앞의 책, 277~280쪽; 朴炳涉, 앞의 책, 32~34쪽; 송병기, 앞의 책, 52쪽.

201) 『御用人日記』 元祿 6年 5月 13日; 『竹島紀事』 元祿 6年 5月 26日; 朴炳涉, 앞의 책, 32~34쪽; 송병기, 위의 책, 52쪽.

202) 『御用人日記』 元祿 6年 5月 21日.

있던 다음날 곧바로 막부에 보고했다.²⁰³⁾ 아울러 竹島가 요나고에서 해상으로 약 160리에 달하고, 竹島 도해에 대한 朱印이 없다는 것, 전복을 잡아 막부에 헌상하며, 전복과 강치잡이에 대한 세금은 없다는 것 등을 보고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돛토리번에 연락해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6월 27일 돛토리번저는 竹島에 대해 막부에 다시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는 오야·무라카와가가 도해 면허를 받았는데, 주인은 없다는 사실 등을 재확인하여 奉書의 사본과 함께 제출했다.

한편, 조선 측에 어민들의 竹島 출어 금지를 교섭하라는 막부의 지시에 따라 쓰시마번에서는 差倭 橋眞重이 안용복을 대동하고 소 요시쓰구(宗義倫) 도주의 서계(1693.9월 일자)를 가지고 부산 倭館에 도착했다(11.2). 서계는 ‘本國 竹島’로의 조선인 出漁 금지를 요청하는 것이었다.²⁰⁴⁾ 이에 대해 조선 측에서는 ‘貴界 竹島’로의 출어를 금지시키되 ‘弊境之鬱陵島’임을 알리는 내용의 예조참판 權璫의 회답 서계(1693.12월 일자)를 전달했다.²⁰⁵⁾ 이것은 울릉도가 조선령이라고 하면서도, 竹島는 일본 疆界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의 서계를 받은 후 울릉도에 관한 조정의 논의에서 “300년 동안이나 버려둔 땅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齟齬를 일으키고 우호를 상실하는 것은 또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라는 좌의정 陸來善, 우의정 閔黯의 건의²⁰⁶⁾에서 잘 알 수 있다. 조선로서는 울릉도로 인해 일본과 마찰이 일어날까 우려하여 소극적인 대응을

203) 송병기는 竹島가 돛토리번 소속이 아니라는 돛토리번의 보고는 울릉도와 자산도(독도)가 조선령이라는 안용복의 주장을 돛토리번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했다(송병기, 앞의 책, 55쪽). 반면, 박병섭은 돛토리번이 竹島 도해가 막부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竹島를 막부의 관할 하에 있다고 인식한 답변이라고 주장했다(박병섭, 「안용복사건과 돛토리번」, 『獨島研究』 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09, 17쪽).

204) 『肅宗實錄』 권 26, 숙종 20년(1694) 2월 23일(辛卯); 『邊例集要』 下 17, 鬱陵島, 癸酉(1693) 12월; 『同文彙考』 3(影印) 爭難 癸酉, 島主押送 竹島漁採人書; 申景濬, 『疆界考』, 「鬱陵島」·「安龍福事」; 『東國文獻備考』 「輿地考」 13, 關防 3, 海防 1, 東海蔚珍; 『朝鮮通交大紀』 8; 『善隣通交事考』, 「告竹島一件事考」; 『竹島紀事』, 元祿 6年 11月 1日.

205) 『肅宗實錄』 권 26, 숙종 20년(1694) 2월 23일(辛卯); 『善隣通交事考』, 「告竹島一件事考」; 『竹島紀事』, 元祿 7年 1月 15日, 2月 15日.

206) 『肅宗實錄』 권 25, 숙종 19년(1693) 11월 18일(丁巳).

하면서도,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유지하는 것을 도모한 회답이었다.

울릉도가 조선령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선의 서계를 받은 쓰시마번은 강하게 반발했다. 쓰시마번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조선 측에 어민들의 竹島 출어 금지를 교섭하라는 지시를 성사시킴과 동시에 울릉도를 자신의 관할하에 두고자 했던 쓰시마번의 오랜 숙원을 풀고자 했던 것이다. 쓰시마도주는 조선 측의 서계 문구 중 ‘울릉도’를 삭제해달라는 서계를 작성하여 굴진중을 다시 조선에 파견했다. 굴진중은 1694년 5월 28일 쓰시마를 출발하여 윤5월 13일 부산 왜관에 도착했다.

쓰시마번의 요구에 대해 조선 조정은 예전과 달리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1694년 동래에서 안용복이 接慰官 兪集一에게 한 진술이 크게 영향을 주었다. 안용복은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대우가 좋았는데 나가사키(長崎)에서부터 侵責이 시작되었고, 쓰시마도주의 서계에 ‘竹島’라는 말은 곧 장차 에도(江戶)에 공을 과시하기 위한 계책이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유집일은 倭差를 꾸짖기를, “우리 나라에서 장차 일본에 글을 보내 안용복 등을 침책한 상황을 갖추어 말한다면, 모든 섬들이 어찌 아무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왜차들이 서로 돌아보며 실색하고 굴복했다고 한다.²⁰⁷⁾

이와 같은 유집일의 보고를 접한 조선 조정은 전년도에 보냈던 서계(1693.12)를 회수하고 영의정 南九萬이 강경한 입장으로 고쳐 쓴 예조참판 李畬 명의의 서계(1694.9)를 왜관에 전달했다. 그 주요 내용은 강원도 울진현의 울릉도를 竹島라고 함은 섬 하나에 두 이름인 것이며, 쓰시마의 서계 가운데 竹島를 일본 소속이라 하여 우리 어선의 왕래를 금지시키려 하고 오히려 일본인들이 우리 지경에 들어와 우리 백성을 잡아간 잘못을 논하지 않는 것은 誠信의 도리가 아니니, 앞으로는 일본 연해민들의 울릉도 왕래를 금지토록 하라는 것이었다.²⁰⁸⁾

강경한 입장의 조선 측 서계에 대해 굴진중은 약 1년여 간 왜관에 머물며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울릉도에 대한 조선 조정의 강경 방침에는

207) 『肅宗實錄』 권 27, 숙종 20년(1694) 8월 14일(己酉).

208) 『肅宗實錄』 권 27, 숙종 20년(1694) 8월 14일(己酉).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마침내 끝진중은 1695년 6월 쓰시마로 귀국했다.

쓰시마번에서도 조선 측이 울릉도에 대해 강경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안용복의 진술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쓰시마번은 안용복이 조선에서의 조사에서, ‘竹島(울릉도)에서 묶여서 에도로 보내졌는데, 에도에서는 이런 취급을 한 것이 잘못이라 하며 정중히 대접하여 나가사키까지 보내주었지만, 나가사키에서 쓰시마번 관리들에게 인계된 후 다시 죄인 취급을 받았으며, 竹島에 왕래하지 못하게 한 것도 에도가 아닌 쓰시마번의 뜻’이라고 진술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 진술에 따라 조선 조정이 일본에서의 안용복 처우 변화 및 竹島로의 조선인 도해 금지 요청 등을 막부 생각과는 다른 쓰시마번의 私見일 것으로 추측하고 쓰시마번을 의심하고 있다고 쓰시마번은 생각했다.²⁰⁹⁾ 쓰시마번은 안용복이 이나바(因府)의 城府를 에도로 착각한 데서 조선 조정의 의심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보고, 이 점을 조선 측에 충분히 밝히면 해명이 될 것으로 여겼다.²¹⁰⁾

이처럼 조선 조정과 쓰시마번 모두 안용복의 진술 중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처우가 좋았는데 나가사키에서부터 침책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의미를 두었다. 특히 쓰시마번은 이 진술이 조선 조정이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당시 강경한 입장의 서계를 작성했던 영의정 남구만은 1696년(숙종 22) 안용복의 2차 도일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조정 회의에서, “안용복이 癸酉年(1693) 울릉도에 갔다가 왜인들에게 납치되어 호키슈(伯耆州)에 들어갔더니, 本州(호키슈)에서 울릉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公文을 만들어 주고 贈物도 많았는데, 나올 때 쓰시마를 경유하게 되어 공문과 증물을 쓰시마 사람에게 모두 빼앗겼다고 했으나, 그 말을 반드시 믿을만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²¹¹⁾고 말

209) 『竹島紀事』 元祿 8年 6月; 『竹島紀事』 元祿 8年 11月 25日.

210) 『竹島紀事』 元祿 8年 6月; 박병섭, 앞의 논문, 22~23쪽.

한편, 쓰시마번은 우리 백성을 에도까지 끌고 갔다고 기술한 조선 측 서계를 받은 후 처음에는 안용복과 박어둔이 나가사키를 에도로 착각해 조선에 돌아가 에도로 보내졌다고 진술했을 것으로 생각했다(『竹島紀事』 元祿 7年 9月 12日). 그런데 조선과의 교섭 과정에서 쓰시마번은 안용복과 박어둔이 이나바를 에도로 착각했을 것으로 생각을 바꾸었다(『竹島紀事』 元祿 8年 6월).

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조정의 결정에는 나가사키에서부터 침책이 시작되었다는 안용복의 진술만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조정은 안용복의 진술 중 “쓰시마도주의 서계에 竹島라는 말은 곧 장차 에도에 공을 과시하기 위한 계책”²¹²⁾이라는 내용에 더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일본 幕府의 「竹島(울릉도) 渡海禁止令」과 爭界의 타결

쓰시마번(對馬藩)은 조선과의 울릉도 영유권 교섭에 진전이 없자 攝政 刑部大輔 소 요시자네(宗義眞)가 1695년(숙종 21) 10월 에도(江戸)로 올라가 關白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를 배알한 데 이어 執政(老中) 아베 분고노카미(阿部豊後守)를 방문하여, 이제까지의 교섭 전말을 보고하고 막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번내의 온건론자 스야마 쇼에몬(陶山庄右衛門)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였다.²¹³⁾

막부는 1693년 5월에 이어 다시 울릉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여 에도에 있는 돗토리번저(鳥取藩邸)에 울릉도 소속과 일본 어민의 渡海에 대해 7가지 사항의 질의서를 보냈다(1696.12.24). 특히 7가지 질의 중 처음과 끝은 다음과 같이 竹島와 그 외 돗토리번 소속에 대한 것이었다.

- (1) 이나마(因幡)·호키슈(伯耆州)에 부속된 竹島는 어느 때부터 두 나라(이나마·호키슈)에 부속되었는가(因州·伯州え附候竹島は、いつの頃より兩國之附屬候哉).
- (7) 竹島 외 양국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竹島の外兩國え附屬の島有之哉).

막부의 위 질의에 대해 에도 돗토리번저는 그 다음날(25일) 즉시 회답

211) 『肅宗實錄』 권 30, 숙종 22년(1696) 10월 13일(丙申).

212) 『肅宗實錄』 권 27, 숙종 20년(1694) 8월 14일(己酉).

213) 『肅宗實錄』 권 27, 숙종 20년(1694) 8월 14일(己酉)·권 30, 22년(1696) 10월 13일(丙申); 『邊例集要』 下 17, 鬱陵島, 丁丑(1697) 1·3月; 『善隣通交事考』 4, 告竹島一件事考; 『朝鮮通交大紀』 8; 『竹島紀事』 元祿 9年 10月; 송병기, 앞의 책, 66쪽.

을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竹島는 이나바·호키슈의 부속이 아닙니다(竹島は因幡·伯耆附屬にては無御座候).
- (7) 竹島·松島 그 밖에 두 나라의 부속섬은 없습니다(竹島·松島其外兩國之附屬の島無御座候).

竹島 소속에 대한 막부의 첫째 질의에 돛토리번은 번을 구성하고 있는 두 國인 이나바와 호키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즉 울릉도가 돛토리번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竹島 외 다른 부속섬이 없냐는 막부의 일곱번째 질의에 대해 竹島, 松島(독도) 외 어떠한 부속섬도 없다고 답변했다. 즉 울릉도와 독도 모두 일본령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돛토리번은 앞서 1693년 5월에도 竹島에 대한 막부의 질의를 받고 호키노카미(伯耆守)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고 답변했었다.²¹⁴⁾ 비록 번의 어민들이 竹島에 도해를 했지만 돛토리번이 竹島를 관할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더욱이 1695년 12월의 답변에서는 竹島 외에 추가로 松島도 돛토리번에 속하지 않음을 밝혔다.

돛토리번의 답변을 받은 로쥬(老中) 아베 분고노카미(阿部豊後守)는 관백 도쿠가와 쓰나요시(徳川綱吉)의 재가를 받아 1696년 1월 9일 쓰시마번의 가로(家老) 히라다 나오에몬(平田直右衛門)을 불러 竹島가 조선의 관도임을 諭示하며 「竹島 도해금지령」의 방침을 정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그 주요 내용은 竹島가 “이는 일찍이 조선의 地界임에 틀림없는 것이다(是曾て彼か地界たる其疑なきに似たり)”, “단지 우리나라 백성이 가서 어채하는 것을 금지할 따름이다(唯我人の往き漁するを禁せらるへきのミ)”라는 것이었다.²¹⁵⁾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명확히 인정했던 것이다.

한편 막부는 1695년 12월 25일 돛토리번의 답변이 있기까지 松島(독도)

214) 『御用人日記』, 元祿 6年 5月 21日.

215) 『邊例集要』 下 17, 鬱陵島, 丁丑(1697) 1·3月; 『朝鮮通交大紀』 8; 『善隣通交事考』 4, 告竹島一件事考.

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막부는 1696년 1월 「竹島 도해금지령」(1.28)을 내리기 직전, 돛토리번저에 松島에 대해 질의했다 (1696.1.23). 비록 막부의 질의 내용은 현전하지 않지만, 현전하는 돛토리번의 답변(1.23 또는 25)²¹⁶⁾을 보면 松島의 위치 및 소속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松島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쿠우라(福浦)로부터 松島까지 80리 정도
- 松島로부터 竹島까지 40리 정도

別紙

- 松島까지 호키국으로부터 해로 약 120리 정도입니다.
- 松島로부터 조선에는 80~90리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松島는 어느 國에 부속되는 섬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松島에 어렵하러 간 것은 竹島에 도해할 때의 도중에 있기 때문에 들러서 어렵을 했습니다. 他領으로부터 어렵하러 간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합니다.²¹⁷⁾

이와 같이 막부는 竹島뿐만 아니라 松島가 돛토리번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 결과 1696년 1월 28일 막부는 아래와 같이 향후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竹島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216) 돛토리번의 답변 일자는 『磯竹島覺書』·『竹嶋之書付』에 1월 23일, 『鳥取藩史』에 1월 25일로 기록되어 있다.

217) 「竹嶋之書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福浦より松嶋江八十里程
- 松嶋より竹嶋江四十里程

別紙

- 松嶋江伯耆國より海路百貳拾里程御座候事
- 松嶋より朝鮮江は八九拾里程も御座候様及承候事
- 松嶋は何れ之國江附候嶋ニても無御座候由承候事
- 松嶋江獵參候儀 竹嶋江渡海之節島筋ニて御座候故立奇獵仕候 他領より獵參候儀は不承候事

몇 해 전 마쓰다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가 이나바·호키를 다스릴 때 품의한 호키국 요나고의 町人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오야 진키치(大屋甚吉)가 竹島 도해는 지금까지 어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竹島 도해를 금지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는 분부가 있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²¹⁸⁾

막부 로쥬 도다 야마시로노카미(戶田山城守)가 4명의 로쥬들이 列坐한 가운데 「竹島 도해금지령」 각서를 쓰시마번의 소 요시자네(宗義眞)에게 직접 건넸다. 또 로쥬 도다는 돗토리번 에도 留守居(諸藩이 에도에 둔 직책으로 막부나 다른 번과의 공무 연락 담당) 요시다 헤이마(吉田平馬)를 불러 여러 로쥬들이 連署한 「竹島 도해금지령」 奉書を 건네 돗토리번주 이케다 쓰나키요(池田綱清)에게 진하였다.²¹⁹⁾

이렇게 해서 안용복의 일본 피랍사건으로 촉발된 조·일 간의 울릉도 영유권 교섭에 대한 일본 내의 결정은 일단락되었다. 이 과정에서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돗토리번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확인하였다. 특히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로쥬 아베 분고노카미는 명확히 언급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이 있다. 막부는 竹島와 松島가 모두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했음에도 왜 竹島에 대한 도해만 금지했는가 하는 점이다. 일찍이 1950~60년대 「往復外交文書」에서 일본 정부는 「竹島 도해금지령」이 울릉도에 대한 도해만 금지한 것이며, 독도에 대한 도해는 계속 허용되었다고 주장했다.²²⁰⁾ 또 현재도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²²¹⁾ 하지만 막부가 「竹島 도해금지령」을 내리면서 松島에 대해서는

218) 『竹島紀事』, 元祿 9年 1月 28日.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先年松平新太郎因州·伯州領知之節相窺之伯州米子の町人村川市兵衛·大屋甚吉竹島江渡海至于今雖致漁候 向後竹島江渡海之儀制禁可申付旨被仰出之後 可被存其趣候 恐々謹言

219) 『竹島紀事』, 元祿 9年 1月 28日; 『御用人日記』, 元祿 9年 1月 28日; 송병기, 앞의 책, 71쪽.

220) 外務部, 「일본정부견해」3(1956.9.20),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47~149쪽.

221) 일본 외무성, 「竹島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 2008.

금지령 등의 언급이 없는 것은 「竹島 도해금지령」이 도해면허에 대한 금지령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竹島 도해금지령」이 내린지 얼마 안 된 1696년 2월 9일 돛토리번주가 竹島 도해면허 봉서를 막부에 반납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²²²⁾ 막부로서는 松島(독도) 도해까지 금지한 결정이었더라도 1625년경 자신들이 발급한 竹島 도해면허에 대한 금지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竹島 도해금지령」에 독도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도해금지령을 준수하고 있는 오야가(大谷家) 후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울릉도 방면 어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오야가는 1730~40년대에 직접 막부에 생업의 유지를 탄원했다. 1740년(元文 5) 4월 에도에 온 오야가 제4대 구에몬 가쓰후사(勝房)는 「竹島 도해금지령」 후 상실된 가업을 보전하기 위해 오사카(大阪) 가이마이(廻米, 각지방에서 모은 쌀의 수송) 참여와 나가사키간부쓰렌쥬(長崎貫物連中, 나가사키 건어물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참여 등 두 가지를 지샤부교(寺社奉行, 절이나 신사의 인사·잡무·소송 등 담당) 4명²²³⁾ 앞에서 직접 요망했다.

이때 4명의 지샤부교와 오야 구에몬과의 일문일답에서 지샤부교 일동은 오야가의 竹島에서의 어업을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竹島·松島 두 섬의 도해금지를 명받은 이후는 하쿠슈 요나고 성주가 도와주셔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탄원서에 적었는데, 돛토리번 요나고 家老부터 祿米라도 받아 왔는가”라고 오야 가쓰후사에서 물었다. 또 지샤부교로부터 에도에 있는 나가사키부교(長崎奉行) 오기하라 호키노카미 요시마사(荻原 伯耆守 美雅)를 방문하도록 명을 받은 오야 가쓰후사는 오기하라에게 또 다시 ‘竹島·松島 두 섬의 도해금제’를 명받은 이후의 상황을 설명했다.²²⁴⁾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위의 대화에서 다음 두 가지 점을 확실히

222) 『磯竹島覺書』; 『磯竹島事略』.

223) 4명의 지샤부교는 牧野越中守 貞通, 本田紀伊守 正珍, 大岡越前守 忠相, 山名因幡守 豊就이다.

224) 『村川家文書』, 「古文書之謄寫」; 池内敏, 「國境 未滿」, 『日本史研究』 630, 2015, 17~18쪽.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첫째, 막부도 竹島 도해 사업자인 오야가와 마찬가지로 1696년 「竹島 도해금지령」을 ‘竹島와 松島 두 섬에 대한 도해 금지령’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竹島 도해사업 대신 오사카 카이마이, 나가사키 무역을 탄원한 오야가가 「竹島 도해금지령」 이후에 松島 도해만을 계속 이어가는 일은 도저히 상정 불가능하다는 것이다.²²⁵⁾ 이를 통해 볼 때, 일본의 「竹島 도해금지령」에는 문언상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독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일 간의 울릉도 영유권 교섭은 일본 막부의 「竹島(울릉도) 도해금지령」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것은 일본 국내적 조치일 뿐 아직 조선 측 통보 문제가 남았다. 막부 로쥬 도다 야마시로노카미(戶田山城守)는 「竹島 도해금지령」을 명하면서 쓰시마번에게 조선 측에 이를 통보할 것을 명했다. 하지만 쓰시마번의 소 요시자네(宗義眞)는 조선에 대한 통보는 도해할 배를 신축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핑계를 대며 가을이나 겨울에 가능하다고 하면서 구두로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쓰시마번이 조선 측에 통보를 한 이후 돛토리번 측에 도해금지령을 알려야만 쓰시마번이 아닌 다른 경로로 조선 측에 유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건의했다.²²⁶⁾ 쓰시마번으로서는 조선 측과 竹島에 대한 교섭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 결과가 다른 경로를 통해 전달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돛토리번 측에는 「竹島 도해금지령」이 내려진 1696년 1월 28일 당일에 일단 통보되었다. 로쥬 도다가 돛토리번 에도 留守居 요시다 헤이마(吉田平馬)를 불러 奉書를 건내어 돛토리번주 이케다 츠나키요(池田綱清)에게 전한 것이다. 그럼에도 쓰시마번의 노력이 있었는지, 돛토리번 오야·무라카와 양가에게 「竹島 도해금지령」이 전달된 것은 그해 8월 1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²²⁷⁾

조선으로의 「竹島 도해금지령」 통보는 1696년 10월 16일 전 島主 소 요시쓰구(宗義倫)의 문상을 위해 쓰시마를 방문한 역관 同知 卞廷郁, 判

225) 池内敏, 『竹島 -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2016, 80~81쪽.

226) 『竹島紀事』元祿 9年 1月 28日.

227) 『控帳』元祿 9年 8月 1日.

事 宋裕良에게 우선 구두로 전달되었다. 아울러 安龍福의 2차 도일에 대한 유감의 뜻도 전했다. 그리고 쓰시마번은 위 두 사항에 대해 쓰시마번의 奉行 平眞顯 등 6명의 家老가 서명하여 동래부 訓導·別差에게 보내는 한문 口上書를 조선 역관에게 전해 주었다.

「竹島 도해금지령」에 대한 쓰시마번 구상서의 주요 내용은 竹島에 대한 막부의 지시가 “本邦과는 너무 멀고 귀국과는 가까운 까닭으로 두 나라 사람들이 뒤섞여서 필시 몰래 통하고 사사로이 交易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라 하고 즉시 슈을 내려 영구히 사람이 들어가서 고기잡이를 못하게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²²⁸⁾

쓰시마에 갔던 조선의 역관들이 귀국한 것은 1697년 1월 10일이었다. 쓰시마번에서는 裁判 다카세 하치에몬(高勢[瀬]八右衛門)이 동행하여 왔다. 재판 다카세는 「竹島 도해금지령」 통보에 대한 조선 측의 서계 발급을 요청했고, 2월 동래부사에 의해 조정에 보고되었다. 그 보고에는 「竹島 도해금지령」을 내리는데 현 도주의 공이 많았다는 館倭의 말도 들어있었다.²²⁹⁾

이에 따라 조선 조정에서는 예조참의 朴世燾 명의의 서계를 1697년 4월 동래부에 내려 보냈다.²³⁰⁾ 그 주요 내용은 ‘貴州(쓰시마번) 여러 봉행의 서신을 읽어보아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울릉도가 조선령임은 『輿圖』(東國輿地勝覽)에 들어있는 것으로 疆界가 자별하며, 귀주에서 처음 잘못 알았으나 마침내 敦復하였다’는 것 등이었다. 이로써 조선 조정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인정한 일본 막부의 결정에 대해 외교 문서로서 수고하는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했다.²³¹⁾

하지만 조선 측의 서계에 대해 부산 왜관의 館守 도보 신고로(唐坊新五郎)나 재판 다카세 하치에몬은 서계에 쓰시마번의 봉행만을 거론해 도주(宗義眞)의 역할이 무시되었고, 에도에는 竹島로 알려졌기 때문에 울릉도

228) 『竹島紀事』 元祿 9年 10月; 『通航一覽』 137, 朝鮮國部 113, 竹島附唐島濟州, 告竹島一件事考; 『公文綠』 內務省之部, 明治 10年 3月.

229) 『邊例集要』 下 17, 鬱陵島, 丁丑(1697) 1月.

230) 『邊例集要』 下 17, 鬱陵島, 丁丑(1697) 3·4月; 『竹島考證』 中.

231) 송병기, 앞의 책, 104~112쪽.

를 빼거나 그 밑에 竹島라는 注를 달아주어야 하며, 책망의 뜻도 있으므로 서계가 수정되지 않으면 도주가 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²³²⁾

왜관의 서계 수정 요구에 대해 조선 조정은 수정된 2차 서계를 1697년 7월 왜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역시 왜관 측으로서는 자신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수 도보와 재판 다카세는 서계의 재수정을 동래부에 요청했다. 동래부사는 왜관 측의 서계 재수정 요청을 거절했다.²³³⁾ 조선으로서는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이미 막부 측이 인정한 이상 왜관의 서계 재수정 요구를 일일이 들어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서계 재수정 협상이 결렬되자 왜관 측은 네 차례나 허가 없이 왜관 문밖에 나아가(蘭出) 서계의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제2차 시위는 재판 다카세가 직접 지휘한 것이었다.²³⁴⁾

조선 조정은 시위를 직접 지휘한 다카세가 왜관에 머물러 있는 한 서계를 재수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재판 다카세는 1698년 3월 쓰시마로 다시 되돌아갔고, 이어 3월자 예조참의 李善溥 명의의 3차 서계가 왜관에 전달되었다(4.4).²³⁵⁾ 최종적으로 쓰시마번에 전달된 예조참의 이선부의 서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번에 譯使가 貴州로부터 돌아옴으로 인하여 左右께서 직접 부탁한 말을 상세히 전하여 곡절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울릉도가 우리 땅임은 「輿地圖」(동국여지승람)에도 실려 있는 바이고 文跡도 昭然하여 그곳과는 멀고 이곳과는 가까운 것을 막론하고서라도 疆界가 自別합니다. 귀주에서 이미 울릉도와 竹島는 섬은 하나이고 이름은 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름이 비록 다르더라도 그 곳이 우리 땅임은 마찬가지 사실입니다.

232) 『邊例集要』 下 17, 鬱陵島, 丁丑(1697) 6月; 『竹島考證』 中.

233) 위와 같음.

234) 『邊例集要』 下 13, 蘭出, 丁丑(1697) 8月.

235) 『邊例集要』 下 13, 蘭出, 戊寅(1698) 1·3·4月; 『竹島紀事』 元祿 11年 4月; 『竹島考證』 中.

그런데 귀국에서 슈을 내려 영구히 사람이 가서 고기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辭意가 정녕스러우니 가히 오래도록 다른 사단은 없을 것이므로 자못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리에게 분부하여 때때로 검찰하고 살펴 두 지역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뒤섞이는 폐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²³⁶⁾

최종적으로 결정된 예조참의 이선부의 서계는 왜관 측의 요청을 대체로 수용한 것이었다. 전 도주 소 요시자네의 공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左右’를 넣어 상대를 격상시켰고, ‘竹島’ 명칭도 포함시켰으며, 책망의 뜻도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해 주었다. 이 서계는 쓰시마번을 거쳐 1698년 6월 에도로 전달되었다. 쓰시마번의 가로 히라타 나오에몬(平田直右衛門)은 7월 중순 노중 아베 분고노카미에게 이 서계를 보고하였고, 아베는 7월 하순에 관백에게 啓達하였다.²³⁷⁾

1699년(숙종 25) 3월 20일 쓰시마번의 사자 아비루 소베에(阿比留惣兵衛)는 형부대보 소 요시자네가 예조참의 이선부에게 보내는(1699. 1월 일자) 회답서계를 가지고 부산에 도착했다. 이 회답서계는 다음날 동래부 훈도·별차를 통해 조선 측에 전달되었다.²³⁸⁾ 이 회답서계의 주요 내용은

236) 「書契」(2343), 『對馬島宗家文書』(國史編纂委員會 소장); 『邊例集要』 下 17, 鬱陵島 1698. 4월; 『竹島考證』 中; 원문은 다음과 같다.

…頃因譯使 回自貴州 細傳左右面托之言 備悉委折矣

鬱陵島之爲我地 輿圖所載 文跡昭然 無論彼遠此近 疆界自別 貴州既知鬱島與竹島爲一島而二名 則其名雖異 其爲我地則一也

貴國下令 永不許人往漁採 辭意丁寧 可保久遠無他 良幸々々 我國亦當分付官吏 以時檢察 俾絕兩地人往來般雜之弊矣

昨年漂氓事 濱海之人 率以舟楫爲業 颿風焱忽 易及飄盪 以至冒越重溟 轉入貴國 豈可以此 有所致疑於違定約而由他路乎 若其呈書 誠有妄作之罪 故已施幽殛之典 以爲懲戢之地 另勅沿海 申明禁令矣 益務誠信 以全大體 更勿生事於邊疆 庸非彼此之所大願者耶… 不宣

戊寅年三月 日 禮曹叅議 李善溥

237) 『邊例集要』 下 13, 闕出, 戊寅(1698) 4·5월; 『善隣通交事考』4, 「告竹島一件事考」; 『竹島紀事』 元祿 11년 4월 4·9·10·13일, 6월 10·12일, 7월 16·17·20·21일, 元祿 12년 3월 20·21·26일.

238) 『善隣通交事考』4, 「告竹島一件事考」; 『竹島紀事』 元祿 12年 1月; 『公文錄』 內務省之部 1,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明治 10年 3月 17日 付屬文書 4(일본 國立公文書館 소장).

조선 예조참의 이선부의 1698년 3월자 서계를 ‘東武(막부)’에 계달했다는 것이었다.

이상의 과정을 정리하면, 일본 막부의 「竹島 도해금지령」은 쓰시마번을 통해 조선 측에 통보되었고, 통보를 접한 조선 조정은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분명히 명시한 서계를 작성하여 쓰시마번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쓰시마번은 조선 측의 서계를 에도 막부에 보고하였고, 에도 막부가 이 서계를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서계를 조선 측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일본 막부의 「竹島 도해금지령」은 단순히 일본 어민들의 도해만 금지한 것이 아니라 울릉도가 조선 강계 내에 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이었다. 이는 금지령을 내리기 전 막부 로주 아베 분고노카미의 유시(1696.1.9) 및 조선과 쓰시마번 사이에 왕래한 최종 서계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竹島 도해금지령」은 松島도 포함된 것이었다. 이는 막부가 도해금지령을 내리기 전인 1695년 12월 및 169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松島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는 점, 또 1740년 오야가 후손이 자신의 생계를 보존해 달라고 막부에 탄원한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막부와 오야가 모두 ‘竹島·松島 渡海禁制’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4) 조선의 울릉도 搜討制度 확립

安龍福의 일본 被拉으로 인해 발생한 「鬱陵島爭界」(1693~1699)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조선 조정의 울릉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쓰시마 도주 소 요시쓰구(宗義倫)가 書契를 보내어 울릉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울릉도쟁계」가 발생하자 조선에서는 울릉도 방어책을 강구하는 의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694년(숙종 20) 7월 前 武兼宣傳官 成楚珩은 울릉도가 국가의 요충인데, 근자에 일본이 감히 ‘求居之計’를 내고 있다고 하니 이곳에 특별히 鎭을 설치하여 저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²³⁹⁾ 또

239) 『承政院日記』 19책, 숙종 20년(1694) 7월 16일.

8월에는 영의정 南九萬이 三陟僉使를 울릉도에 파견해 형세를 조사하여 民戶를 이주시키거나 鎭을 설치함으로써 일본의 침범에 대비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²⁴⁰⁾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張漢相이 삼척첨사로 발탁되었다. 장한상은 총 150명의 일행을 거느리고, 騎船(사람을 싣는 배)과 卜船(짐을 싣는 배) 각 1척, 汲水船 4척을 동원하여 1694년(숙종 20) 9월 19일 삼척을 출발,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10여 일을 체류하면서 울릉도를 살피고 10월 6일 삼척으로 돌아왔다.²⁴¹⁾ 장한상의 울릉도 審察에 관해서는 「蔚陵島事蹟」²⁴²⁾에 자세히 전하는데, 독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쪽으로 5리쯤에 작은 섬이 하나가 있는데, 高大하지 않으며 海長竹이 한 면에 叢生하고 있다. 비 개고 [구름] 걷힌 날 산으로 들어가 中峯에 오르면 南北 兩峯이 높다랗게 마주보고 있는데 이를 三峯이라고 한다. 서쪽을 바라보면 大關嶺의 구불구불한 모습이 보이고 동쪽을 바라보면 바다 가운데 한 섬이 보이는데 아득히 辰方에 위치하며 그 크기는 蔚島의 3분의 1 미만이고 [거리는] 300여 리에 불과하다.²⁴³⁾

辰의 방위는 동남동이므로 장한상이 울릉도의 3분의 1 미만이고 거리

240) 『肅宗實錄』 권 27, 숙종 20년(1694) 8월 14일(己酉).

241) 『肅宗實錄』 권 27, 숙종 20년(1694) 8월 14일(己酉); 張漢相, 「蔚陵島事蹟」(국사편찬위원회 소장).

242) 「蔚陵島事蹟」은 장한상 외후손 申光璞이 정리한 것인데, 1978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이 울릉도에서 입수하여 처음 발표했다(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議會, 『獨島研究』, 1985, 176쪽). 또 「울릉도사적」과 유사한 내용이 朴世堂, 『西溪雜錄』 「蔚陵島」에도 실려있다(유미림, 『박세당의 「울릉도」와 장한상의 「울릉도사적」 역주 및 비교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243) 원문은 다음과 같다.

東方五里許 有一小島 不甚高大 海長竹叢生於一面 雨霽[雲]捲之日 入山登中峯 則南北兩峯 岌崇相面 此謂三峯也 西望大關嶺逶迤之狀 東望海中有一島 杳在辰方 而其大未滿蔚島三分之一 不過三百餘里.

「雨霽[雲]捲之日」의 ‘[雲]’는 字典에 없다. 동 시대 朴世堂(1629~1703)의 『西溪雜錄』 蔚陵島條는 「蔚陵島事蹟」의 내용을 싣고 있는데 여기서는 ‘[雲]’를 ‘[雲]’으로 바로잡고 있다(유미림, 앞의 책, 21쪽; 송병기, 앞의 책, 123쪽).

가 300여 리에 불과하다고 확인한 섬은 바로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비록 독도의 크기와 거리는 실제와 차이가 있지만,²⁴⁴⁾ 이는 실제 측량에 의한 것이 아닌 目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능하다. 장한상의 이 기술은 현전하는 문헌상 조선 관료가 독도를 울릉도에서 바라보고 남긴 유일한 기록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장한상은 울릉도 심찰 결과를 山川·道里를 적어 넣은 지도와 함께 조정에 보고하였다. 그 요지는 倭人이 왕래한 흔적은 있으나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 海路가 순탄치 않아 일본이 橫占한다 하더라도 막기 어렵다는 것, 土石으로 쌓은 작은 堡를 설치하려 하여도 땅이 좁고 큰 나무들이 많아 人民을 이주시키기 어렵다는 것, 토질을 알아보려고 밀보리를 심고 왔다는 것 등이었다.²⁴⁵⁾

울릉도에 백성을 이주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장한상의 보고가 있자, 조정에서는 곧(1694.8) 울릉도에 관한 새로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영의정 남구만은 울릉도 搜討를 건의했다.

[남]구만이 들어와 아뢰기를 ‘民을 入居시킬 수 없으니 1~2년 간격으로 搜討함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上께서 이에 좃다.²⁴⁶⁾

국왕은 백성의 이주 대신 울릉도를 1-2년에 한 번씩 수토하자는 남구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본인의 불법 왕래를 막기 위한 울릉도 수토 방침이 일단 확정되었다. 그러나 울릉도 수토는 당장 실시되지 못했고, 울릉도를 수토를 몇 년에 한 번씩 할 것인지 결정하여 수토가 定式化된 것은 1697년(숙종 23)에 가서였다.

쓰시마번이 전 도주 소 요시쓰구의 문상차 건너간 譯官 同知 卞廷郁, 判事 宋裕良에게 막부의 「竹島 도해금지령」을 알린 것은 1696년(숙종

244) 독도의 면적은 0.186km²로, 울릉도(72.99km²)의 약 391분의 1 크기이다.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87.4km리로 약 230리다.

245) 『肅宗實錄』 권 27, 숙종 20년(1694) 8월 14일(己酉); 張漢相, 「蔚陵島事蹟」.

246) 『肅宗實錄』 권 27, 숙종 20년(1694) 8월 14일(己酉). 원문은 다음과 같다.

九萬入奏曰 不可使民入居 間一二年搜討爲宜 上從之.

22) 10월이고, 역관들이 귀국한 것은 다음해 1월이었다. 이처럼 「울릉도 쟁계」이 일단 매듭지어 가자 정부는 곧(4월) 울릉도 수도에 관한 논의를 재개하였다. 1697년(숙종 23년) 4월 13일 備邊司 堂上들과 같이 入侍한 영의정 柳尙運은 울릉도 문제가 명백히 귀일되어 일본은 일본인의 어채를 금하겠다고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때때로 사람을 보내어 수도할 뜻을 서계에서 밝힌 바 있는데, 울릉도가 우리 영토이기는 하나 해외의 絶島요, 무인도이기 때문에 해마다는 어렵지만 간간히 사람을 보내어 巡檢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왕 肅宗은 “우리나라의 地方을 영구히 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해마다 들여보내는 것은 많은 폐단이 있으니, 間二年, 즉 2년을 걸러서 입송할 것을 지시했다.²⁴⁷⁾ 유상운의 건의처럼, 3년에 한 차례씩 울릉도에 관원을 파견해 수도하는 것을 定式化한 것이다.

울릉도 수도제도가 정식화된 이후 처음 수도사가 파견된 것은 1699년(숙종 25)이었다. 강원도관찰사가 비변사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울릉도에 파견된 관원은 越松浦萬戶 田會一이었다. 전회일은 수도차 이 해 6월 4일 發船하여 임무를 마치고 6월 21일 돌아왔다. 그는 울릉도의 지도와 함께 토산물인 篔竹·香木·土石 등을 바쳤다.²⁴⁸⁾ 울릉도 수도는 극심한 흉년을 당하여 정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²⁴⁹⁾ 1894년 12월(양1895.1) 慶尙道慰撫使 李重夏가 울릉도 개척에 따라 더 이상의 수도제는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수도하는 船格과 什物의 폐지를 건의함에 따라 폐지²⁵⁰⁾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꾸준히 계속되었다. 울릉도는 수도제도 대신 1895년 1월(양2월) 專任島長을 임명하는 것으로 경영상의 변화가 일어났다.²⁵¹⁾

울릉도 수도제도의 기원은 世宗代에 실시했던 울릉도 巡審敬差官 파견

247) 『承政院日記』 19책, 숙종 23년(1697) 4월 13일. “尙運曰 鬱陵島事 今已明白歸一倭人則禁本國人漁採爲言 我國則以時時送人搜討之意 答送於書契中矣 海外絶島 雖不可每年入送 既係地方 且是無人之島 不可不間間送人巡檢以來 故敢此仰達 上曰 我國地方 不可以永棄 逐年入送 亦多有弊 間二年入送 可也.”

248) 『備邊司謄錄』, 숙종 25년(1699) 7월 15일.

249) 『肅宗實錄』 권 59, 숙종 43년(1717) 3월 17일(壬申)·권 61, 44년(1718) 2월 30일(己酉).

250) 『高宗實錄』 권 32, 고종 31년(1894) 12월 27일(己巳).

251) 『高宗實錄』 권 33, 고종 32년(1895) 1월 29일(辛丑); 『官報』, 개국 504년 정월 29일.

(1438)이라고 할 수 있다.²⁵²⁾ 순심경차관 파견도 수토제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의 울릉도 잠입에 대한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종은 왜구의 울릉도 잠입을 우려하여 울릉도에 해마다 관원을 보내거나 혹은 馬場을 설치하면 왜가 감히 몰래 점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²⁵³⁾ 前 護軍 南蓋, 前 副司直 曹敏을 순심경차관에 임명하여 울릉도에 파견하였던 것이다.²⁵⁴⁾ 이처럼 울릉도에는 일본인의 울릉도 잠입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조선 조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후술하겠지만, 일본인의 울릉도 잠입은 19세기 후반 다시 재개되어 1882년에도 관원(울릉도 검찰사 李奎遠)을 파견하여 내륙민의 이주 가능성을 살펴본 후 울릉도 개척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3. 于山島 인식의 형성과 심화

1) 于山島 인식의 형성

(1) 『實錄』에 나타난 무릉도와 우산도

고려와 조선 문헌에 울릉도의 한자 표기는 鬱陵, 鬱陵, 蔚陵, 于陵, 芋陵, 羽陵, 武陵, 茂陵 등 다양하다. 울릉도 지명 유래에 대해 일찍이 李丙燾는 울릉도 왕래가 잦았던 내륙 지역인 현 경상북도蔚珍의 옛 지명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그는 울진의 高句麗 지명이 ‘于珍也’였고, 新羅에서는 ‘蔚珍郡’이 되었다고 하면서, 우진야의 ‘于’와 울진의 ‘蔚’이 울릉도에 건너가 ‘于山’, ‘芋陵’, ‘蔚陵’, ‘鬱陵’ 등의 명칭이 되고, 또 ‘于山’, ‘芋山’의 稱은 울릉도의 屬島로 그곳과 왕래가 잦은 독도에 가서 이름이 붙었다고 분석했다.²⁵⁵⁾

252) 송병기, 앞의 책, 30·128쪽.

253) 『世宗實錄』 권 76, 세종 19년(1437) 2월 8일(戊辰).

254) 『世宗實錄』 권 81, 세종 20년(1438) 4월 21일(甲戌)·7월 15일(戊戌).

신용하는 일본 문헌(『權記』, 『公任集』)에 울릉도를 ‘우루마(ウルマ)島’라 하고 한자로 ‘宇流麻島’로 표기된 점에 착안, 울릉도가 ‘우르되’(방언 발음 ‘우루매’, ‘우루메’, ‘우르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다. ‘우르’는 ‘을라(君長)’, ‘어라(於羅瑕, 백제 최고위 관직)’ 등 한국 고대어, ‘어른’, ‘우(위.上)’, ‘우리러’ 등 한국 현대어와 동일 계통으로써 君長, 왕(主上, 聖上), 王儉을 의미한 고대어였고, ‘되’는 ‘산’, ‘릉’을 의미한 고대어라고 했다. 따라서 ‘울릉’은 ‘우르’를 ‘울’로 줄여서 한자로 음역한 것이고, ‘되’를 ‘릉’으로 의역하여 합성한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릉’은 ‘우르’의 ‘르’를 생략한 것이다. ‘무릉’은 ‘武’의 중국 발음이 ‘우’이므로 중국식으로 음역 표기한 것이고, ‘茂’는 ‘武’의 유사음을 異字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 ‘우산’도 역시 ‘우르’의 ‘르’를 생략하고, ‘되’를 ‘山’으로 한자 표기한 것이다. 아울러 ‘蔚珍’도 울릉도로 가던 나루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우르되’와 관련된 지명으로 보았다.²⁵⁶⁾

한편, 고구려 시기 于珍이 蔚珍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이 지역 방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肅宗代 영의정을 지낸 南九萬의 장손인 南克寬(1689~1714)은 『夢嚙集』(연대 미상)에서 우리나라 방언을 정리하며 “蔚珍의 ‘蔚’ 음이 ‘宇’(蔚珍之蔚音宇)”라고 설명했다.²⁵⁷⁾ 즉 ‘울=우’로 발음되기 때문에 蔚珍과 于珍은 한자 표기만 달랐지 우리말로는 같은 이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울=우’로 발음되기 때문에 ‘울릉(鬱陵·蔚陵)’, ‘우릉(于陵·芋陵·羽陵)’ 등의 한자로 표기되었고, 우릉과 비슷한 발음인 ‘무릉(武陵·茂陵)’으로도 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우산’과 ‘울릉’의 ‘우’와 ‘울’은 여러 한자로 표기되고 있지만, 모두 ‘우’, ‘울’의 음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고, ‘山’과 ‘陵’은 큰 뾰(성인봉)가 있는 울릉도의 형상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우산과 울릉(무릉)은 하나의 우리말 지명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 근거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원래 한 섬을 가리키던

255) 李丙燾, 「獨島 名稱에 對한 史的考察-于山·竹島 名稱考-」, 『佛敎史論叢』, 1963, 71쪽.

256) 신용하, 『韓國과 日本의 獨島領有權 論爭』,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46~50쪽.

257) 南克寬, 『夢嚙集』 坤, 雜著, 謝施子.

‘우산’과 ‘울릉(무릉)’이 한 섬은 우산도, 또 다른 한 섬은 울릉도로 명칭이 轉移되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 우산도는 무릉도 기록과 함께 서술되어 있다. 武陵島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옛 명칭으로서 고려 공민왕대(14세기 말)부터 불리기 시작했다. 조선 태조·태종대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태종대에는 茂陵島라고도 했으며, 세종~성종대에는 武陵島보다 茂陵島로 쓰인 경우가 더 많았다.²⁵⁸⁾

우산도가 조선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416년(태종 16) 武陵等處 按撫使로 임명된 金麟雨가 이듬해 2월 5일 “우산도에서 돌아와 토산물을 바치고 거주민 3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섬의 戶는 15口이고, 남녀 합쳐 86명”이라고 한 『太宗實錄』의 기사이다.²⁵⁹⁾ 무릉도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명칭이었다는 점, 그리고 독도에 실질적으로 15가구 86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기서의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다.²⁶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김인우를 무릉도에 파견하면서 왜 ‘무릉등처’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점이다. 이는 동해상에 무릉도 하나의 섬이 아닌 그 밖의 섬도 감안한 명칭임에 분명하다. 조선 초기 무릉도와 우산도가 등장하는 주요 기사를 검토해 가면서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1> 조선 초기 무릉도, 우산도 관련 주요 기사

연번	연도	주요 내용	출전
a	1392년(태조 1)	도평의사사에서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낼 사람을 武陵島로 보내기를 요청	『太祖實錄』, 1년 7월 30일(己酉)
b	1403년(태종 3)	武陵島 거민의 내륙 이주 시작	『太宗實錄』, 3년 8월 11일(丙辰)

258) 송병기, 앞의 책, 24쪽.

259) 『太宗實錄』 권 32, 태종 16년(1416) 9월 2일(庚寅)-권 33, 태종 17년(1417) 2월 5일(壬戌).

260) 일찍이 일본 정부는 우산도가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동 기사를 내세웠으며(外務部, 「일본정부견해」3(1956.9.20),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41쪽), 2008년 일 외무성의 「竹島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에서도 이 기사를 인용하여 우산도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상기시킨다고 주장했다.

c	1412년(태종 12)	流山國島 사람 12명이 고성에 와서 말하기를, 11호 60여 명이 살고 있는 武陵島에서 생장했는데, 지금은 本島에 옮겨와 살고 있다고 증언	『太宗實錄』, 12년 4월 15일(己巳)
d	1416년(태종 16)	김인우를 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하기로 결정 武陵島 곁에 小島가 존재	『太宗實錄』, 16년 9월 2일(庚寅)
e	1417년(태종 17)	2월 5일, 武陵等處按撫使 김인우가 우산도에 15호 86명이 살고 있다고 보고 2월 8일, 于山·武陵의 주민을 쇄출하기로 하고, 김인우를 안무사로 삼아 우산·무릉 등처의 주민을 출륙시키기로 결정 8월, 왜구 ‘于山·武陵’	『太宗實錄』, 17년 2월 5일(壬戌)· 2월 8일(乙丑)· 8월 6일(己丑)
f	1425년(세종 7)	김인우를 于山·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 武陵島에서 20인 쇄환(무릉도에 가던 46인이 탄 배가 표류, 36인 사망하고 10인은 石見州에 상륙)	『世宗實錄』, 7년 8월 8일(甲戌)· 10월 20일(乙酉)· 10월 26일(辛卯)
g	1436년(세종 18)	강원도관찰사 유계문 ‘武陵島 牛山’ 설읍 건의	『世宗實錄』, 18년 윤6월 20일(甲申)
h	1437년(세종 19)	강원도관찰사 유계문에게 ‘武陵島’ 설읍 재건의	『世宗實錄』, 19년 2월 8일(戊辰)
i	1438년(세종 20)	武陵島巡審敬差官으로 남회와 조민을 파견	『世宗實錄』, 20년 4월 21일(甲戌)

1417년(태종 17) 2월 5일 ‘우산도’라는 지명이 처음 사용되기 전에는 무릉도 외의 섬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것은 (c) 1412년 '本島'와 (d) 1416년 무릉도 곁에 있는 '小島' 뿐이다. 그런데 현재의 독도를 무릉도의 본도라고 일컫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본도의 둘레가 8息(약 240리)이고 콩 한 말을 심으면 2-30석이 난다고 하는 등 독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무릉도 곁의 소도를 독도로 비정할 수도 있겠으나, 근거는 미약하다. 여하튼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동해에 무릉도 외에 또 다른 섬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보가 조정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릉등처'라는 표현을 써서 무릉도 외에 또 다른 섬이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무릉도 외에 또 다른 섬이 있다는 사실이 인지된 이후 무릉도와 우산도가 함께 기록되기 시작했다. (e) 1417년(태종 17) 2월 8일 우산·무릉도의 주민을 쇄출하기로 결정하고, 김인우를 우산·무릉 등처로 다시 파견토록 하고, 8월 기사에는 왜구가 ‘우산·무릉’에 들어왔다. (f) 1425년(세종 7)에

는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삼았으며, (g) 1436년(세종 19)에는 강원도관찰사 유계문이 무릉도 牛山에 설읍을 건의했고 (h) 1437년(세종 20) 재차 무릉도에 설읍을 건의했다. 그리고 (i) 1438년(세종 21)에는 무릉도순심경차관으로 前 護軍 南營, 前 副司直 曹敏을 파견하였는데, 여기서 우산도를 거론하지 않았으며 ‘등처’라는 표현도 삭제되기에 이르렀다.

상기 우산이 거론되거나 무릉도만 거론되는 (e)부터 (i)까지의 기사는 조금씩 표현과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 2월 8일 기사는 ‘우산·무릉도’가 함께 서술되었고 ‘우산·무릉 등처’라고 했으나, 그 동일한 기사에서 ‘우산’ 사람 3명에게 각기 옷 1습씩을 내려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독도에 사람이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여기서의 ‘우산’을 독도로 비정하기는 곤란하다. 바로 3일 전인 2월 5일 기사에서 무릉등처안무사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의 ‘우산’도 독도를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럴 경우 무릉도와 우산의 구분이 애매해진다. 무릉도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기록이 다수 등장하기 때문이다.

(e)의 왜구 관련 기사의 원문은 ‘倭寇于山武陵’이다. 기사가 너무 짧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왜구가 우산과 무릉에서 도적질을 했거나 침입했다는 의미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는 우산과 무릉이 각각의 두 섬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섬을 나타낸 것인지이다.²⁶¹⁾ 이 또한 다소 불분명해 보일 수밖에 없다.

(f) 기사는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삼았다는 것인데, 이 해(1425년)의 무릉도 관련기사는 총 5건이 있다.²⁶²⁾ 5건 기사 중 3건은 김

261)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이 기사를 우산무릉이 한 섬이라고 주장(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3, 218쪽)하고 있으나, 그 이후 등처라는 표현, 그리고 이로부터 15년 후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新撰八道地理志』에서 우산과 무릉이 두 섬이라고 명확히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섬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한다.

262) 『世宗實錄』 권 29, 세종 7년(1425) 8월 8일(甲戌)·10월 20일(乙酉)·10월 26일(辛卯)·11월 20일(乙卯)·12월 28일(癸巳).

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칭하면서 우산도가 거론되지만,²⁶³⁾ 나머지 2건의 기사는 무릉도에 들어갔다는 기사만 있을뿐 우산도는 거론되지 않았다.²⁶⁴⁾ 흥미로운 것은 “우산무릉등처안무사 김인우가 本島에 피역한 남녀 20인을 수포하여 돌아와 복명했다(于山·茂陵等處按撫使金麟雨搜捕本島避役男婦二十人來復命)”는 기사이다.²⁶⁵⁾ 1412년(태종 12) 무릉도에서 생장한 流山國島 사람들이 ‘本島’에서 옮겨와 살고 있다고 한 이래 다시 본도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우산과 무릉 중 어디를 가리켜 본도라고 하는지 불분명하다. 다만, 앞서 1412년 기사의 ‘본도’는 무릉도와는 다른 별개의 섬으로 보이는 반면에 1425년 기사의 ‘본도’는 이후 기사가 무릉도만을 거론한다는 점에서 무릉도인 것으로 보인다.

(g) 기사는 1436년(세종 18) 강원도관찰사 유계문이 ‘武陵島 牛山’에 읍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여기서의 牛山은 于山の 오기인지 불명확하고, 武陵島에만 ‘島’자가 있고 牛山에는 ‘島’자가 없다. 따라서 우산이 무릉도와 또 다른 한 섬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무릉도와 관련된 지명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무릉도 우산은 토지가 비옥하고 산물도 많으며, 동서남북으로 각각 50여 리, 연해의 사면에 석벽이 둘러있고...”²⁶⁶⁾라고 한 것으로 보아 ‘무릉도 우산’은 한 섬을 가리키는 명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 기사를 보면 이듬해 국왕이 무릉도에 읍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면서 강원도관찰사 유계문에게 무릉도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지시하는데, 여기서는 ‘牛山’은 빠지고 무릉도만 거론되고 있다.

(i) 기사는 1938년(세종 21) 전 호군 남회와 전 부사직 조민이 무릉도 순심경차관에 임명되어 무릉도를 조사하고, 도망해 들어간 사람들을 쇠환하여 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우산도를 거론하지 않았으며 ‘등처’라는 표현도 삭제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관련 기사가 이 해에 3건이 있고, 이듬해에 1건이 있는데, 모두 무릉도만 서술하고 있다.²⁶⁷⁾ 무릉도에 대한

263) 『世宗實錄』 권 29, 세종 7년(1425) 8월 8일(甲戌)·10월 20일(乙酉)·10월 26일(辛卯).

264) 『世宗實錄』 권 30, 세종 7년(1425) 11월 20일(乙卯)·12월 28일(癸巳).

265) 『世宗實錄』 권 30, 세종 7년(1425) 10월 20일(乙酉).

266) 『世宗實錄』 권 73, 세종 18년(1436) 윤6월 20일(甲申).

267) 『世宗實錄』 권 81, 세종 20년(1438) 4월 21일(甲戌)·7월 15일(戊戌)·7월 26일(戊戌).

설명도 내륙에서 하루 낮과 밤의 거리에 있고, 동서가 하루 노정이고, 남북이 하루반의 노정이라고 하며, 사철·석종유·생포·대죽 등의 산물이 난다고 하는 등 울릉도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이 관련 기사들은 모두 무릉도에 대한 언급만 있고 우산이라는 지명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후 조선 전기에는 무릉도나 우산도에 관한 기록이 거의 실리지 않았다. 이는 울릉도 거주민을 내륙으로 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한 결과 연해민들의 왕래도 끊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릉도나 우산도도 점차 잊혀져 갔다. 대신 동해에 三峯島나 蓼島니 하는 섬들이 있다는 신도설이 세종·성종대에 특히 永安道(함길도) 연해민들 사이에서 나돌게 되었다.²⁶⁸⁾

이상 조선 초기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무릉도와 우산도의 기사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볼 때, 무릉도가 울릉도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산도는 울릉도와는 또 다른 섬을 가리키나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조선 중앙에서의 기록에 언급될만한 동해상의 섬은 울릉도와 독도 밖에 없기 때문에 우산도가 독도를 가리킨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우산도가 독도를 가리킨다고 단정하기는 근거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世宗實錄』 「地理志」(1454)의 단계로 가면 위치 비정이 보다 분명해진다.

(2) 「地理志」 및 鄭必達의 詩에 나타난 우산·무릉(울릉) 2도 인식

울릉도와 우산도에 관련한 조선 초기 대표적인 지리지로는 『世宗實錄』 「地理志」(1454)를 들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강원도 울진현조에는 武陵島(울릉도)와 우산도가 두 섬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그 지리적 관계 또한 서술되어 있다.

于山·武陵 두 섬이 縣의 正東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 于山國이라 일컬었다. 혹은 鬱陵島라 한다. 地方이 100里이다.²⁶⁹⁾

申) 11월 25일(乙巳); 『世宗實錄』 권 84, 세종 21년(1439) 2월 7일(丙辰).
268) 송병기, 앞의 책, 32~39쪽.

이 글에서 본문은 “우산·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우산과 무릉에 대한 주석인데, “두 섬은 서로 떨어져짐이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에만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²⁷⁰⁾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신라 때 우산국이라 일컬었다”고 하여 우산도와 무릉도가 우산국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어서 “혹은 울릉도라고 한다. 지방이 100리이다”고 하는 등 울릉도에 대한 서술만 기록되어 있다. 문장상으로만 본다면 우산과 무릉을 합쳐서 ‘혹은 울릉도라고 한다’는 것인지, 우산과 무릉 중에 한 섬이 울릉도라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종실록』 「지리지」가 편찬된 시기의 우산도와 무릉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아야 한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1454년(단종 2)에 편찬되었으나, 그 내용은 현재 전하지 않는 『新撰八道地理志』(1432)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이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서문에 세종의 명으로 州郡의 연혁을 상고하여 1432년(세종 14) 이 글을 완성했다는 서술 및 본문상에 주군의 연혁이 변동된 것이 1430년(세종 12)년을 끝으로 하여 이후 1454년까지의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²⁷¹⁾ 따라서 『세종실록』 「지리지」가 실제로 작성되었던 1432년의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앞 절에서 정리한 표를 보면, 조선 초기 『실록』에는 ‘우산’이라는 지명이 1417년~1436년에 걸쳐 실려 있다. 이 기간은 1417년(태종 17) 무릉

269) 원문은 다음과 같다.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地方百里.

270)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했다(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66, 278~283쪽). 하지만 울릉도 해수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울릉도를 조금 올라가면 독도가 보인다. 또한 울릉도 동쪽 방향의 지형상 해안가보다는 위로 올라와야 평지가 있고 사람이 거주하기 적당하다.

271) 정두희, 「조선 초기 지리지의 편찬(I)」, 『역사학보』 69, 1976, 66~68쪽.

등처안무사인 김인우가 우산도에 가서 주민을 쇄출했다고 하는 등 우산도를 독도로 보기 어려운 기술이 있기도 하다.²⁷²⁾ 하지만 같은 해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여 우산도를 무릉도가 아닌 별개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1425년(세종 7)에도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한다.²⁷³⁾ 이 기간의 특징은 조정에서 관리를 울릉도에 자주 파견하여 주민을 쇄환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쇄환한 주민들의 증언 및 파견한 관리의 보고 등 우산도와 무릉도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우산도와 무릉도를 두 섬으로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17년(태종 17) 울릉도 거주민 쇄환이 정식화됨에 따라 우산도에 대한 인식은 미약해지기 시작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강원도 울진현 조에서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2도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1도설을 부연했다.

于山島 鬱陵島

혹은 무릉 혹은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 있다...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은 본디 한 섬이라고 한다.²⁷⁴⁾

이 인용문에서 본문은 우산도 울릉도이다. 우산도와 울릉도를 설명하는 註에 혹은 무릉, 혹은 우릉이라고도 한다는데, 이 역시 우산도와 울릉도 중 어느 섬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아마도 앞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불분명했던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²⁷⁵⁾

272) 『太宗實錄』 권 33, 태종 17년(1417) 2월 5일(壬戌).

273) 『世宗實錄』 권 29, 세종 7년(1425) 8월 8일(甲戌).

274) 원문은 다음과 같다.

于山島 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在縣正東海中... 一說 于山鬱陵 本一島.

275) 김호동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우산도와 무릉도 사이를 여백으로 한 것은 우산도가 무인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적을 것이 없어 여백으로 남겨두고 울릉도에서 주기를 통해 두 섬의 관계와 울릉도의 역사 등을 서술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김호동, 「조선시대 독도·울릉도에 대한 인식과 정책」, 『역사학연구』 48, 호남사학회, 2012, 96~100쪽). 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두 섬 이상을 묶어서 설명할 때 대부분 섬 이름을 띄어서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섬이 많은 전라도 진도군조를 보면, ‘栗島 松島 鷹飛里島 楮島 注叱島 接杯島 石南島 周俱十里’, ‘錚島 鼓島 俱小島’라고 하는 것 등이다. ‘俱’자가 있기 때문에 앞에 열거한 섬 모두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음

이처럼 조선 전기에는 우산도가 울릉도와는 다른 별개의 섬으로 분명하게 인식되었다.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는 우산도가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으로서 거리 관계까지 명확히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울릉도 거주민 쇠퇴으로 인해 오래 가지 못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단계에 오면 우산도가 울릉도라는 일설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세종실록』 「지리지」에서의 우산도 인식은 해당 편찬 시기만의 특별한 인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조선 전기에는 강원도에서 울릉도를 바라보며 지은 문인들의 글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 1592년 平海에 유배되었던 李山海(1539~1609)의 『鵝溪遺稿』, 寧海 출신 申活(1576~1643)의 『竹老先生文集』, 江陵 출신 沈彦光(1487~1540)의 『漁村集』 등이 그것이다.²⁷⁶⁾ 이 시기 저술은 강원도에서 바라보이는 울릉도만 기술되어 있고, 우산도에 대한 인식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울릉도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여 「鬱陵島爭界」에 거론되었던 李睟光(1614~1628)의 『芝峯類說』도 울릉도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기재했지만, 우산도 인식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울릉도와 우산도의 관계를 『세종실록』 「지리지」에서의 서술과 유사하게 설명한 蔚珍縣令 鄭必達(1611~1693)의 글이 있어 주목된다. 그의 문집 『八松先生文集』에서 울진의 팔경을 읊은 글을 보면 아래와 같다.

능허루(凌虛樓) 현의 북쪽 5리 밖 옛 성 위에 있다(在縣北五里古城上)

(능허루) 난간 그림자가 깊은 바다 위로 드리워졌네 闌干倒影落層溟
 울도(울릉도)를 바라보니 작기가 부평초 같네 鬱島平看小似萍
 앉아있기를 한참만에 비로서 하늘과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네
 坐久始知天宇逼
 이 몸은 마치 푸른 하늘 위에서 가마를 타고 노니는 듯 此身疑是駕青冥

이 분명하다.

276) 이에 대해서는 유미림, 「한국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기술과 그 계보에 관한 고찰」(『동북아역사논총』 52, 동북아역사재단, 2016, 239~241쪽)에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울릉도를 정면으로 마주하여 또 우산도가 있다. 海氣가 지극히 맑지 않으면 볼 수 없다<正對鬱陵島 又有于山島 不緣海氣極清 不得見>)²⁷⁷⁾

정필달은 울진현에 있는 능허루에서 울릉도를 바라보고 지은 시에 주석을 달아 울릉도 외에 우산도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海氣가 지극히 맑지 않으면 볼 수 없다(不緣海氣極清 不得見)”고 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風日清明 則可望見)”와 유사하게 설명했다. 다만 보는 지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능허루에서 우산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울릉도에서 우산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이 문장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하다. 그런데 강원도 동해안에서 울릉도 외에 다른 섬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능허루에서 우산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²⁷⁸⁾ 그렇다면 당연히 울릉도에서 우산도가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울릉도를 바로 마주하여 또 우산도가 있다”는 앞 문장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正對’는 정면으로 마주한다거나 똑바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 사이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주석은 울릉도와 우산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문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우산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전술했지만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에만 볼 수 있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정필달은 1669년부터 1673년까지 울진현령을 지냈는데,²⁷⁹⁾ 이 시는 울진현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울릉도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섬이었고, 아직 안용복의 활동 시기(1693~1696) 이전이었다.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정보는 문헌상으로 습득하거나 아니

277) 『八松先生文集』 권 3, 詩, 仙槎八景.

278) 한편, 朴世堂의 『西溪雜錄』 「鬱陵島」에는 “蓋二島去此 不甚遠 一飄風可至于山島勢卑 不因海氣極晴朗 不登最高頂 則不可見 鬱陵稍峻”이라 하여 『世宗實錄』 「地理志」와 유사하게 표현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두 섬을 바라보는 시점이 ‘蓋二島去此’라고 해서 글이 서술되고 있던 寧海 지역에서 바라본 것이 아닐까 한다. 유미림은 여기서의 우산도가 독도라고 하면서 박세당에 의해서 독도가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고 있다(유미림, 『박세당의 「울릉도」와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 연구 및 비교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23, 58~59쪽).

279) 『八松先生文集』 권 7, 行錄·墓碣銘.

면 지역민들을 통해 청취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세종실록』 「지리지」를 읽었을 수도 있지만, 그의 관력을 보면 실록을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울진 지역민들에게 청취한 정보로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인식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동해의 연해 어민들이 울릉도에 어업을 다녔다는 것은 1693년 11월 일본측으로부터 조선 연해민이 울릉도에 가서 고기잡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書契를 받고 열린 비변사 당상 회의 때 좌의정 睦來善이 한 계언을 통해 알 수 있다.

…경상도 연해 어민들이 비록 풍랑으로 인하여 무릉도에 표박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일찍이 연해 수령의 말을 통해서, 바닷가 어민들이 무릉도와 그 밖의 섬(他島)을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대죽을 벌채하고, 또 복어를 포획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²⁸⁰⁾

일찍이 연해 수령을 지낸 사람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연해 어민들이 풍랑을 핑계로 자주 무릉도(울릉도) 및 그 밖의 섬을 왕래하면서 대죽을 베고 전복을 잡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타도’는 우산도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한다.²⁸¹⁾ 위 목래선의 계언은 경상도 어민들을 예로 들었지만, 연해 수령에게 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꼭 경상도 지역만을 국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정필달이 울진현령으로 있던 시기에도 연해민들이 울릉도에 어업을 다녔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울릉도는 울진현에 속해 있었고, 왕래도 주로 울진에서 했다. 비록 몰래 울릉도를 왕래했었겠지만, 울진현의 어민들은 울릉도와 우산도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정필달은 이들을 통해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80) 『備邊司謄錄』 숙종 19년(1693) 11월 14일; 『承政院日記』 18책, 숙종 19년(1693) 11월 13일. 원문은 다음과 같다.

…慶尙道沿海漁民 雖稱因風 漂泊於武陵島云云 而得聞於曾經沿海守令之言 海畔漁民 頻頻往來 武陵島及他島 伐取大竹 且捕鰻魚云.

281) 송병기, 앞의 책, 46~47쪽.

2) 安龍福 활동과 于山島 인식의 심화

(1) 安龍福의 于山島(우산도) 인식

安龍福은 1693년 4월 울릉도에 도해한 일본인에 의해 被拉되어 일본 돗토리번(鳥取藩)으로 끌려갔다가 나가사키(長崎), 쓰시마번(對馬藩) 등을 거쳐 東萊로 송환되어 왔다. 쓰시마번은 안용복이 쓰시마번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했던 아래 내용을 1693년 12월 동래에 있던 差倭 橋眞重에게 전달했다.

인질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루어진 問情에 답하기를, “이번에 간 섬(울릉도)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간 섬의 동북에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머물던 중에 두 번 보았습니다. 그 섬을 아는 자가 말하기를 于山島라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끝내 가 본 적은 없지만, 대략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로 보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라는 섬에 대해서는 아직껏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질의 주장은 허실을 가리기 어렵지만, 판단에 참고하시라고 전하니 잘 탐문해 주십시오.²⁸²⁾

안용복은 쓰시마번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울릉도 이름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안용복의 상기 진술 외에도 그는 나가사키나 쓰시마, 부산 倭館 등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무루구세무(ムルぐセム)’라고 부르는 섬이 일본의 竹島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나가사키·쓰시마)”, “울릉도라

282) 『竹島紀事』, 元祿 6年(1693) 11月 1日. 원문은 다음과 같다.

質人爰許逗留之內相尋候節申候ハ 今度參候嶋之名者不存候 今度參候嶋より北東ニ当り大き成嶋有之候 彼地逗留之內漸二度見江申候 彼嶋を存たるもの申候ハ 于山嶋与申候通申聞候 終ニ參りたる事ハ無之候 大方路法一日路余も可有之哉与相見江申候由申候 鬱陵嶋与申嶋之儀者曾而不存候由申候 乍然質人之申分虚實難斗候得共爲御心得申進候 其元ニ而能御聞可被成候

고 하는 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다(부산 왜관)”고 진술했다.²⁸³⁾ 이것은 아마도 나가사키 부교소(奉行所)에서부터 시작된 侵責의 결과 울릉도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 인용문에서도 인질의 주장은 허실을 가리기 어렵다고 덧붙이고 있다.

또 안용복은 울릉도 동북에 우산도가 있다고 진술했다. 울릉도에 머물던 중에도 두 번을 보았고, 하루 정도 거리라고 하여 여기서의 우산도가 독도임이 분명해 보인다. 다만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에 있음에도 동북이라고 진술한 것은 오류이지만, 울릉도에서 하루 거리의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²⁸⁴⁾ 중요한 것은 이 섬에 대해 아는 자는 이 섬을 우산도라고 부른다고 진술했다는 점이다. 이 진술은 이미 울릉도를 왕래하던 조선 연해민들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으며, 독도가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용복은 동래에 돌아와서 한 조사에서도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잡혀가면서 “울릉도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다음 날 저녁을 먹고 난 후 한 섬이 바다 위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섬이 竹島에 비해 자못 크다”고 진술했다.²⁸⁵⁾ 그런데 일본 측 기록에는 “새벽에 松島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²⁸⁶⁾ 하지만 이 역시 하루 정도 거리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안용복은 1693년 울릉도에서 우산도를 보았고, 일본으로 피랍되어 가면서도 이 섬을 지나갔기 때문에 우산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분명했다. 이는 1696년의 2차 도해가 되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안용복이 2차 도해를 마치고 돌아와 1696년 9월 備邊司에 한 진술에 따르면, 그는 그해 5월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나 왜 조선 땅인 울릉도에 왔느냐

283) 『竹島紀事』, 元祿 6年(1693) 7月 朔, 9月 4日.

284) 일 측의 독도 연구에 초석을 다진 다가와 고쥬(田川孝三)도 안용복이 진술한 우산도를 독도로 비정했다(田川孝三, 「于山島について」, 『竹島問題研究資料』 10, 島根縣圖書館 소장, 1953, 100쪽; 박병섭, 앞의 논문, 292쪽).

285) 『邊例集要』 下 17, 鬱陵島, 甲戌(1694) 1월조.

286) 『因府歷年大雜集』, 元祿 5年 7月 24日, 元祿 5년은 元祿 6년의 오기; 박병섭, 위의 논문, 290쪽.

고 꾸짖었더니, 일본인들이 우리들은 본디 松島에 산다고 했다고 한다. 이내 안용복은 일본인들에게 “松島는 子山島(于山島)로서 거기도 우리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왜 사는가?”라고 하며 이들을 울릉도에서 쫓아냈다고 한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배를 몰아 자산도에까지 쫓아 그들을 꾸짖어 쫓아냈다고 진술하였다.²⁸⁷⁾ 안용복이 비변사에서 한 진술에서 그는 자산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산도가 일본인들이 당시 독도를 가리키던 松島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독도를 거쳐 일본 오키에 가서 그곳의 役人에게 조사를 받았다. 그 기록이 무라카미가(村上家) 집안에 전해져 오던 문서인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에 남아 있어 일본에 도해한 안용복 일행의 신원 및 도해 목적 등이 상세히 밝혀졌다.²⁸⁸⁾ 특히 이 자료에는 독도에 관련된 기술이 있어 주목되는데, 그 동안 이 문서 가장 마지막 장에 실려 있던 「朝鮮之八道」에 주목해왔다. 이는 안용복이 지참하고 온 「조선팔도지도」에서 팔도의 이름과 특히 강원도 부분에 “이 도 안에 竹島, 松島가 있다(此道ノ中ニ竹島松島有之)”고 특별히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제작된 조선의 지도 중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명칭인 竹島, 松島라고 표기하지 않았을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竹島와 松島라고 표기한 것은 이 문서를 작성한 오키의 야쿠닌(役人)이 안용복이 제시한 팔도의 지도를 보고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키의 야쿠닌이 울릉도와 독도를 竹島와 松島라고 표기할 수 있었던 것은 동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안용복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 울릉도가 竹島, 자산도

287) 『肅宗實錄』 권 30, 숙종 22년(1696) 9월 25일(戊寅); 안용복의 진술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일본의 연구자는 대체로 안용복이 1696년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일본 기록에 의하면 이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다는 점, 돛토리번이 울릉도 도해면허를 1696년 2월 9일 막부에 반납되었기 때문에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도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돛토리번의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두 가문은 1692년, 1693년 두 해에 걸쳐 울릉도에서 수확이 없었고, 1694년에도 날씨 때문에 울릉도에 접근하지 못했으며, 1695년에도 울릉도에 많은 조선인들이 와 있어 수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금 사정상 다수의 일본인이 울릉도에 갔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竹島問題研究會, 『竹島に關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2007, 4쪽; 池內敏, 앞의 책, 167~168쪽).

288) 內藤正中, 『隱岐の安龍福』,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2, 鳥取短期大学, 2005.

가 松島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²⁸⁹⁾

- 一 안용복이 말하기를 竹島를 대나무의 섬(竹ノ島)라고 합니다. 조선국 강원도 동래부 안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를 대나무의 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팔도의 지도에 이것을 적고 가지고 있습니다.
- 一 松島는 위의 같은 도 안에 ^{ソウサン}子山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를 松島라고 한하는데, 이것도 팔도의 지도에 적혀 있습니다.²⁹⁰⁾

안용복은 울릉도가 竹島, 자산도가 松島라고 진술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안용복의 진술 기록에는 독도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于山’이라고 하지 않고 ‘子山’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숙종실록』에 기록된 안용복의 비변사 진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위 문서에는 자산 위에 후리가나(ふりがな)로 ‘소우산(ソウサン)’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는 안용복이 우산도를 한자로 ‘子山’으로 표기했지만 진술할 때는 ‘소우산’으로 발음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우산은 한자로 ‘小于山’일 가능성이 크므로 안용복은 자산을 소우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소우산과 대비되는 ‘大于山’의 인식을 갖고 있었을 수 있다. 울릉도와 독도가 母子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산국을 구성하고 있던 울릉도와 독도를 안용복은 대우산과 소우산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은 추론에 대해서는 향후 근거자료의 발굴을 기대해 본다.

현전하는 기록상 독도를 지나가고 상륙한 조선시대 사람은 안용복이 유일하다. 그는 독도를 자산도 또는 소우산으로, 그리고 일본인은 松島라고 부른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를 주장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289) 池内敏, 앞의 책, 204~205쪽.

290)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一 安龍福申候ハ竹嶋ヲ竹ノ嶋ト申朝鮮國江原道東萊府ノ内ニ鬱陵嶋ト申嶋御座候是ヲ竹ノ嶋ト申由申候則八道ノ圖ニ記之所持仕候

一 松嶋ハ右同道之内子山^{ソウサン}ト申嶋御座候是ヲ松嶋ト申由是も八道之圖ニ記申候

(2) 于山島 인식의 심화

안용복 사건 이전 조선 전기에는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관찬 지리지에서 우산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드러나지만 민간 저술에서의 우산도 인식은 미약했다. 그런데 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 후기 고문서, 고지도 등의 자료에는 우산도가 보다 분명하게 서술되거나 표기되기 시작했고, 안용복에 대한 평가도 적극적으로 기술되기 시작했다. 그 첫 시작은 李瀾(1681~1763)의 「鬱陵島」²⁹¹⁾였다. 그는 울릉도의 역사를 신라의 우산국 정복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장한상의 울릉도 審察과 안용복 사건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안용복 사건에서는 울릉도가 지증왕 때부터 신라에 예속되어 천년을 이어왔는데 일본이 갑자기 爭端을 일으킨다고 지적하고, “울릉도가 우리나라에 속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며, 그 부근의 섬도 또한 울릉도의 부속에 지나지 않는다(鬱陵之屬我邦則百分明白 而其旁近島嶼 亦不過鬱陵之屬島)”고 주장했다. 여기서 ‘울릉도 부근 섬’이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음 이어지는 설명에서 안용복이 島主(오키도주)에게 “울릉 우산은 본래 조선의 속한다(鬱陵芋山本屬朝鮮)”고 말했다거나, 안용복이 울릉도에 도해한 일본인들에게 “松島도 본래 우리 우산도(松島本我芋山島)”라고 말했다는 것 등을 실은 것으로 보아 ‘울릉도 부근 섬’은 우산도, 즉 독도가 아닌가 한다.

울릉도에 대해 이익의 아들인 李孟休(1713~1750)의 『春官志』(1744, 1781 증보)에서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²⁹²⁾ 『춘관지』는 「鬱陵島爭界」 항목을 두어서 안용복 사건으로 인한 朝·日 간의 울릉도 영유권 분규를 ‘울릉도쟁계’라는 이름으로 처음 규정했다. 이맹휴는 “倭가 다시는 울릉도

291) 『星湖僿說』 3, 天地門, 「鬱陵島」.

292) 『春官志』 3, 附錄, 「鬱陵島爭界」. 장순순과 유미림은 이맹휴가 예조정랑으로서 외교 문서를 접할 수 있었으며 일본 관련 지식이 많았다는 점을 들어 이익이 이맹휴에게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했을 것으로 보았다(장순순,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對日談論으로서 울릉도·독도」, 『韓日關係史研究』 51, 한일관계사학회, 2015, 149쪽; 유미림, 「한국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기술과 그 계보에 관한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52, 동북아역사재단, 2016, 251쪽).

를 일본 땅이라고 지칭하지 못하는 것은 안용복의 공”이라고 하면서 안용복을 높이 평가하여 아버지 이익이 안용복을 ‘영웅호걸’로 평가했던 것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우산도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이익의 학통을 계승한 申景濬(1712~1781)의 『疆界考』(1756) 및 그가 편찬에 참여했던 『東國文獻備考』(1770)에서였다. 우선 신경준은 『강계고』에서 우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내가 살피(생각)건대 「輿地志」에 이르기를, “일설에는 于山과 鬱陵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 『圖志』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倭가 이르는 바 松島인데 대개 두 섬은 모두 다 于山國[의 땅]이다”라고 하였다.²⁹³⁾

신경준은 자신의 저서 『강계고』에 지금은 失傳하고 전하지 않는 柳馨遠(1622~1673)의 「輿地志」(1656)를 인용하여 울릉도와 우산도가 두 개의 섬이며, 우산도는 일본인이 松島라고 한다고 서술했다. 또 이 두 섬 모두 옛 우산국의 땅이라고 하여, 우산국에 울릉도뿐 아니라 우산도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신경준은 『강계고』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의 편찬에 참여했다.²⁹⁴⁾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한 계기는 영의정 洪鳳漢의 건의에 의해서였다. 그는 울릉도에서 인삼이 산출되는 것을 왜인들이 알게 되면 울릉도를 두고 일본과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울릉도에 대한 문서들을 정리할 것을 영조에게 건의했다.²⁹⁵⁾ 그런만큼 『동국문헌비고』는 울릉도에 대한 서술에 더욱 신경을 써서 편찬했을 것으

293) 『疆界考』, 鬱陵島(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원문은 다음과 같다.

愚按輿地志云 一說于山鬱陵本一島 而考諸圖志 二島也 一則倭所謂松島 而蓋二島 俱是于山國也.

294) 『耳溪集』 卷 28, 「左承旨旅菴申公墓碣銘」에 “明年(1770, 영조 46)… 上又選文學之士八人 撰文獻備考 設編輯廳 公則掌輿地考”라고 보인다; 송병기, 앞의 책, 131~133쪽.

295) 『英祖實錄』 권 113, 영조 45년(1769) 10월 14일(壬戌); 『頤齋亂藁』 권 14, 1770년 1월 16일; 박인호, 『朝鮮後期 歷史地理學 研究』, 이회문화사, 1996, 28~29쪽.

로 생각된다. 그런데 『동국문헌비고』는 「여지지」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앞서 『강계고』에서의 「여지지」 인용문 보다 간결하게 서술했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다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왜가 이르는바 松島다’라고 하였다.²⁹⁶⁾

이 인용문에서는 『강계고』에서의 “내가 살피(생각)건대(愚按)”를 삭제하는 한편, 울릉·우산 두 섬 중에 “하나는 왜가 이르는바 송도”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우산은 왜가 이르는바 송도다”라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밝혔다. 『동국문헌비고』의 이 기록은 이후 국왕의 정무지침서로 활용되었던 『萬機要覽』(1808년경)에 가감 없이 전재되었다. 그리고 또 『동국문헌비고』를 수정 증보한 『增補文獻備考』(1908)에도 그대로 전해졌다.

『강계고』와 『동국문헌비고』에서 인용하는 유형원의 「여지지」 인용 기사가 서로 다른 일찍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신경준이 『강계고』에서 유형원의 「여지지」를 인용한 내용을 살피면서 ‘우산과 울릉이 본래 한 섬이다’라는 내용까지만 「여지지」의 내용이고, 그 뒤 ‘圖志를 상고하면…’부터는 신경준 개인의 견해라고 하였다. 그래서 『동국문헌비고』의 「여지지」 인용이 『강계고』의 인용 내용과 다른 것은 신경준이 「여지지」의 기사를 改竄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유형원의 「여지지」라고 추정하는 『東國輿地志』²⁹⁷⁾에는 “一說에 이르기를 于山·鬱陵은 본래 한 섬이다”라고 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과 같게 적혀 있기 때문에 우산과 울릉을 두 섬이라고 한 『강계고』나 『동국문헌비고』의 「여지지」 인용문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⁹⁸⁾

또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유형원이 「여지지」를 작성한 1656년 시

296) 『東國文獻備考』 「輿地考」 13, 關防 3, 海防 1, 東海 蔚珍(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문은 다음과 같다.

輿地志云 鬱陵·于山 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297) 朴仁鎬, 「柳馨遠의 東國輿地志에 대한 一考察 - 歷史意識과 關聯하여」, 『清溪史學』 6, 1989; 오상학,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 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18:1, 2006, 99쪽의 주 34.

298) 下條正男, 「日本の領土「竹島」の歴史を改竄せし者たちよ」, 『諸君!』, 2007年 9月号.

점에서 조선 사람이 일본에서 우산도를 松島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산인(山陰) 지방의 일본인들이 독도를 松島로 일컫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640~1650년대 경이다. 에도시대 조·일 관계의 특징은 쓰시마번을 통한다는 것인데, 쓰시마번 기록에 독도를 松島라고 기록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836년경으로 추정되는 에도 루스이(留守居)의 書狀이다. 그렇기 때문에 1656년에 유형원이 松島를 알았을 가능성은 없으며, 따라서 유형원의 「여지지」에는 『동국문헌비고』에서 인용한 기술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²⁹⁹⁾

이러한 일 측의 비판에 대해 「여지지」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반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신경준이 굳이 「여지지」를 인용해 가며, 「여지지」에 없는 내용을 서술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신경준이 『강계고』나 『동국문헌비고』에서 「여지지」를 인용한 것은 成宗 초(1472)에 敬差官 朴宗元이 三峯島를 찾아 나섰다가 실패한 사실을 서술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註에서이다. 이를 통해 신경준이 「여지지」를 인용한 것은 울릉도 외에 또 다른 섬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 다음에 안용복에 대한 설명에서도 우산도가 일본이 일컫는 松島라는 안용복의 진술이 기술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지지」에 있지도 않는 내용을 박종원 기사의 주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이 간다.

특히 신경준과 동시기에 활동했던 安鼎福(1712~1791)은 『雜同散異』에서 유형원의 「여지지」 기사를 인용하며 “輿地志云 蔚陵·于山 皆于山國地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고 기술했다.³⁰⁰⁾ 이는 『동국문헌비고』에서 인용한 「여지지」와 동일한 내용이다. 안정복은 李瀾(1681~1763)의 우뚝한 제자로서 『星湖僊說』을 축약하여 『星湖僊說類選』을 엮어냈다. 『성호사설』에는 「울릉도쟁계」(1693~1699)와 안용복의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한 「蔚陵島」편이 실려 있다. 또한 안정복은 1759년(영조 35) 이익에게 울릉도가 왜에게 노략질당하는 것을 걱정하는 편지를 올리기도 했고, 1765년

299) 池內敏, 앞의 책, 225~226쪽.

300) 安鼎福, 『雜同散異』 「海防」, 아세아문화사 영인, 1981.

(영조 41)에는 李家煥에게 보낸 서한에 안용복이 없었다면 울릉도가 필시 왜인에게 점거 당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섬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³⁰¹⁾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안정복은 울릉도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두루 섭렵하여 울릉도에 대한 지리적 인지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전하는 『잡동산이』는 편찬되기 전 초고의 상태이고, 그 저작 연대도 불분명하여 『강계고』나 『동국문헌비고』 보다 앞서 저술된 것인지, 아니면 『동국문헌비고』를 참고하여 저술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신경준과 안정복은 지리 저술에 있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역사지리 비정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경준이 『강계고』를 완성한 1756년(영조 32)은 안정복이 『東史綱目』 「地理考」를 완성하고 있던 때인데, 신경준은 『강계고』에서 『동사강목』을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1756년(영조 32) 처음 완성하고 1778년(정조 2)까지 수정해 나갔는데, 신경준의 『강계고』나 『동국문헌비고』 「여지고」를 인용하지 않았다.³⁰²⁾ 오히려 안정복은 유형원의 「여지지」를 지리 고증하는데 크게 참고했다.³⁰³⁾ 이러한 점에서 안정복이 『잡동산이』의 울릉도 기사에서 「여지지」를 인용한 것은 신경준의 영향이라기보다 안정복 자신이 「여지지」를 직접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울릉도 수토사 朴錫昌은 1711년(숙종 37) 울릉도를 수토하고 돌아와 우산도를 독도가 아닌 울릉도 동북쪽에 있는 竹島에 표기한 「蔚陵島圖形」을 작성했다. 이 지도는 울릉도 동북쪽에 있는 섬인 현재의 竹島(땃섬) ‘海長竹田’, ‘所謂于山島’라고 기록했다.³⁰⁴⁾ 이보다 앞서 1693년(숙종 19) 안용복 피랍사건이 발생하자 조정에서는 張漢相을 울릉도에 파견(1694)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었다. 이때 장한상이 기록한 「蔚陵島事蹟」에는 ‘東方五里許 有一小島 不甚高大 海長竹叢生於一面’이라

301) 安鼎福, 『順庵集』 권 10, 「東史問答」; 권 7, 「書」.

302) 朴인호, 『朝鮮後期 歷史地理學 研究』, 이회문화사, 1996, 144~145쪽.

303) 朴인호, 『조선시기 역사가와 역사지리인식』, 이회, 2003, 195~196쪽; 강세구, 「柳馨遠·李瀾과 安鼎福의 學問的 傳承關係」, 『實學思想研究』 5-6, 母岳實學會, 1995, 121~122쪽.

304) 「蔚陵島圖形」,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규12166).

고 기술되어 있다.³⁰⁵⁾ 울릉도에서 동방 5리쯤에 있는 작은 섬은 죽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죽도를 설명한 것이 분명하다. 즉, 장한상이 해장죽이 총생한다고 표현한 죽도에 대해 박석창도 ‘海長竹田’이라고 기록했던 것이다.

장한상은 울릉도 성인봉에 올라 동남쪽 300여 리 방향에 울릉도의 3분의 1에 불과한 섬을 보았다고 했다. 이 섬이 독도임은 틀림없지만, 장한상은 이 섬에 대해 어떠한 지명도 거론하지 못했다. 이는 그가 우산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박석창은 울릉, 우산이 두 섬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우산도가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는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위 우산도’에서 ‘소위’라고 거론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일 측에서는 박석창이 죽도를 우산도로 표기했다고 하여 조선시대 우산도는 죽도라고 주장하지만,³⁰⁶⁾ ‘소위’라는 표현은 오히려 박석창이 죽도를 우산도로 확신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울릉도 외에 우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울릉도 수토에 나선 박석창이 미처 우산도를 찾지 못하고 울릉도 옆의 죽도에 우산도라는 지명을 붙인 것이다. 조선 후기 「울릉도도형」 계통의 지도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계승해서 죽도를 우산도로 표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죽도를 우산도로 지칭하는 인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거나 확산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는 우선 「울릉도도형」에는 비변사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지도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 많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搜討官 越松萬戶 韓昌國의 울릉도 수토 기록에 ‘죽도’라는 지명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³⁰⁷⁾ 한창국은 1794년(정조 18)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울릉도를 수토하고 돌아왔다. 수토 중인 4월 25일 기록에는 楮田洞 앞에 자리하고 있는 세 개의 섬에 대해 보고했는데, 북쪽의 것은 防牌島, 가운데의 것은

305) 張漢相, 『鬱陵島事蹟』.

306) 竹島問題研究會, 앞의 책, 2007.

307) 『正祖實錄』 권 40, 정조 18년(1794) 6월 3일(戊午).

竹島, 동쪽의 것은 瓮島이며, 세 섬 사이의 거리는 1백여 步에 불과하고 섬의 둘레는 각각 수십 把씩 된다고 했다.³⁰⁸⁾ 이후 문헌 기록상 죽도의 정확한 위치와 지명은 1882년 울릉도검찰사 李奎遠이 울릉도를 감찰하고 작성한 「鬱陵島外島」에도 나타난다. 이렇듯 18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죽도의 지명이 ‘소위 우산도’가 아닌 죽도로서 제대로 일컬어지기 시작했다.

18세기 通信使行의 경험이 있던 元重擧(1717~1790)와 成大中(1732~1809)도 울릉도에 관한 글을 작성했다.³⁰⁹⁾ 울진현령을 지냈던 성대중의 아들인 成海應(1760~1839)도 울릉도와 안용복과 관련한 두 편의 글³¹⁰⁾을 남겼는데, 성대중으로부터 울릉도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¹¹⁾ 그런데 이들에게서는 안용복 사건을 서술하면서 우산도가 언급될 뿐, 우산도에 대한 지리적인 고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산도에 대해서는 韓致齋(1765~1814)의 조카 韓鎭書(1777~?)가 엮은 『海東釋史續』에서 설명하고 있다.³¹²⁾ 그는 “『文獻備考』에 우산도는 왜가 이른바 松島다(文獻備考 于山島 卽倭所謂松島也)”, “『輿地勝覽』에 “우산도와 울릉도는 본디 한 섬으로, 사방 100리이다(輿地勝覽 于山鬱陵 本一島)”를 그대로 인용하여 울릉·우산 1도설과 2도설을 모두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水道提綱』에 실려있는 千山島는 于山島의 誤記라고 지적했

308) 여기서 방패도와 용도는 현재 불려지지 않고 있는 섬으로 어떤 섬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방패도와 관련해서 「鬱陵島圖形」(국립중앙도서관, 古 2702-8)을 보면, ‘大干島’와 ‘小干島’가 울릉도의 동쪽 부속섬으로 그려져 있는데, 대간도는 큰방패섬, 소간도는 작은방패섬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위치상 현재의 죽도와 관음도로 보인다(국립중앙도서관, 『독도관련자료 해제집』, 2009). 한편, 한창국이 보고한 죽도는 현재의 죽도(댓섬)와 명칭이 동일하고, 울릉도 동쪽 5리 거리에 海長竹이 자라는 섬이 있다는 특징을 설명한 문헌 기록(張漢相, 『鬱陵島事蹟』)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현재의 죽도(댓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09) 『乘槎錄』 3, 「安龍福傳」; 『青城雜記』 3, 「醒言」. 원중거와 성해응의 울릉도 및 안용복 기술에 대해서는 진재교, 「元重擧의 「安龍福傳」 연구-「안용복」을 기억하는 방식-」(『震檀學報』 108, 진단학회, 2009); 이원택, 「성해응의 지정학과 울릉도·우산도 인식」(『한국사상사학』 41, 2012); 장순순, 앞의 논문, 2015); 유미림, 「한국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기술과 그 계보에 관한 고찰」(『동북아역사논총』 52, 동북아역사재단, 2016) 등에 상세하다.

310) 『研經齋全集』 5, 「鬱陵島志」, 「題安龍福前後」.

311) 이원택, 위의 논문, 252쪽; 장순순, 위의 논문, 164~165쪽.

312) 『海東釋史續』 13, 「地理考」 13, 「山水」 1.

다.

李圭景(1788~1856)은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鬱陵島事實辨證說」 항목을 두고 여러 서적을 인용하여 울릉도 역사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³¹³⁾ 특히 안용복사건과 「울릉도쟁계」을 상세히 다루었는데, 이익의 『성호사설』을 그대로 인용하여 안용복을 평가하기도 했다. 우산도에 대해서는 “「輿地圖」의 울릉에 우산도는 따로 그리지 않고 울릉도 위에 어떤 한 섬을 그려 놓고는 于山이라 칭하였다(輿地圖 鬱陵 未及畫于山島 而或畫一島于鬱陵上頭 稱于山)”고 서술했다.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보면, 이규경은 우산도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우산도 서술 다음에 안용복이 두 차례(1693·1699) 일본에 건너가 울릉과 우산 두 섬을 언급했던 것이 기술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규경은 울릉과 우산이 2도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3) 『五洲衍文長箋散稿』經史篇 1, 論史類 1, 「鬱陵島事實辨證說」.

Ⅲ. 조선의 울릉도 開拓政策의 배경과 전개

1. 일본의 울릉도·독도 領有 再否認

1) 일본 幕府의 「竹島(울릉도) 渡海禁止令」 재확인

安龍福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조·일 간의 울릉도 영유권 교섭 결과 일본 에도(江戶)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령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竹島(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1696.1). 당시 일본의 해양정책이 기본적으로 海禁政策이었던만큼 이것은 매우 강경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일본 연해민들이 몰래 울릉도에 도해했다가 막부에 의해 발각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명 하치에몬(八右衛門) 사건이라고 한다. 하치에몬 사건은 하마다번(浜田藩)의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 八右衛門)이 1833년(天保 4) 하마다번의 승인을 은밀히 얻어 울릉도로 밀항하여 벌목 및 채삼을 하고 돌아온 후, 1836년 막부 관리에게 발각되어 처형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일찍이 1950-60년대 「往復外交文書」에서 논쟁이 되었다. 처음 하치에몬 사건을 언급한 것은 한국 측이었다. 한국은 「한국정부견해」2(1954)에서 1837년 울릉도에 밀무역한 하치에몬을 사형에 처한 것은 조선 정부에 대한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조선 정부의 울릉도와 독도 두 섬에 대한 주권을 존중한 약속이라고 명시했다.³¹⁴⁾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정부견해」3(1956)에서 하치에몬 사건에 연루되었던 하마다번 가로(家老)인 오카다 타노모(岡田頼母)의 家人 하시모토 산베(橋本三兵衛)가 “가까운 松島(독도)로 도해한다는 명목으로 竹島(울릉도)로 건너가…”라고 하치에몬에게 조언한 내용이 하치에몬 사건 판결문에 실려 있기 때문에 竹島 도해가 금지된 이후에도 松島 도해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³¹⁵⁾ 이처럼 한일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하치에몬

314) 外務部, 「한국정부견해」2(1954.9.25),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82~83쪽.

315) 外務部, 「일본정부견해」3(1956.9.20),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서 일 측의 위와 같은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하치에몬 사건의 조사 기록인 「竹島渡海一件記」에 따르면, 그는 하마다번의 廻船業(일본 연안의 화물 운송업)을 하는 집안 출신으로 홋카이도(北海道)의 마쓰마에(松前)를 향해 종종 항해할 때마다 울릉도 근처를 통과했는데, 이를 통해 울릉도에 물산이 풍부하고 물고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周防守(에도시기 영주에게 주어지는 명예직 같은 것으로 여기서는 당시 하마다번주를 의미)의 에도 저택에 가서 울릉도 부근에 물고기가 많으니 도해 면허를 주면 해마다 漁稅를 바치겠다고 청원했다.³¹⁶⁾ 그러나 울릉도는 이미 도해가 금지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못했다. 그러자 하치에몬은 다시 周防守의 영지 저택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청원했다. 이들이 하마다번의 가로 오카다 타노모의 수하 하시모토 산베에 등에게 이야기하여 가로를 설득케 했다. 가로 오카다 타노모도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당시 하마다번의 재정 사정이 궁핍했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를 허락한다는 뜻을 내비쳤다.³¹⁷⁾

1833년 울릉도에 도해한 하치에몬은 그곳에서 인삼으로 보이는 풀 15~16뿌리 및 느티나무, 뽕나무, 삼나무, 뱀나무 등으로 생각되는 목재도합 40~50그루 등을 가지고 돌아왔다.³¹⁸⁾ 하치에몬이 울릉도에서 돌아온 후 1836년 6월 오사카마치부교(大阪町奉行)에 의해 울릉도 불법 도해가 적발³¹⁹⁾되어 체포되었다. 부교가 하치에몬을 조사했더니 이 사건에 하

1977, 148~149쪽.

316) 森須和男, 『八右衛門とその時代』, 浜田市教育委員会, 2002, 14~15쪽; 杉原隆, 「八右衛門, 金森建策, 松浦武四郎の‘竹圖地圖’について」, 『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會, 2007, 22~23쪽.

317) 『竹島考證』下(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Ⅱ』, 다다미디어, 2006, 261~265쪽).

318) 森須和男, 위의 책, 28쪽.

319) 막부가 하치에몬의 울릉도 도해를 적발한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기록에 차이가 있다. 고미야마 야스스케(小宮山綏介)의 『徳川太平記』에는 막부가 마미야 린조(間宮林藏)을 온미쓰(隱密)로 파견했는데, 그가 하치에몬이 울릉도에서 異國人과 밀무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오사카 마치부교 야베 사다타카(矢部定謙)의 부하가 하치에몬을 체포했다고 한다. 후지카와 세이사이(藤川整齋)의 『天保雜記』에는 선원 3~4명이 오사카에서 적절하지 못한 물품을 판매하다가 오사카 마치부교소(奉行所)에 체포

마다번이 간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막부의 최고 사법기관인 評定所로 이 사건을 넘기고 6월에 하치에몬을 평정소 산하의 지샤부교(寺社奉行)로 인계했다. 평정소는 일본 각지의 관계자를 조사한 후, 하마다번 전 번주를 칩거시키거나 하치에몬 및 그와 결탁한 하마다번의 하시모토 산베(橋本三兵衛)를 처형하는 등 관계자를 엄벌했다.³²⁰⁾

하치에몬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던 1836년 7월, 막부는 쓰시마번(對馬藩)에 “두 섬(竹島, 松島)은 모두 울릉도인가, 아니면 竹島는 울릉도이지만, 松島(독도)는 조선 밖의 땅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쓰시마번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松島에 관해서는… 竹島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이 건너가 어로활동 하는 것을 정지한 섬으로 알고 있으나, 딱히 그렇게 정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선 지도로 말하자면 蔚陵·于山 2섬이라고 생각됩니다.³²¹⁾

이에 의하면, 쓰시마번은 1696년 일본 막부의 「竹島 도해금지령」이 내려지면서 松島도 도해가 금지된 곳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쓰시마번은 ‘딱히 그렇게 정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하여 「竹島 도해금지령」에 松島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동 도해금지령에 松島가 명문화되지 않았고, 1695년 12월 竹島 소속에 대한 막부의 질의에 대해 돗토리번이 竹島뿐 아니라 松島

되었다고 한다(윤유숙, 「18~19세기 전반 朝日 양국의 울릉도 도해 양상」, 『동양사학 연구』 118, 2012, 동양사학회, 301~302쪽).

320) 박병섭,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3, 2012, 142쪽.

321) 동 질의와 답변이 쓰시마번 宗家文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훈(「조선 후기의 독도 영속 시비」,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1996, 41~42쪽)에 의해 처음 공개되었다.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연대 미상의 동 자료를 이 문서의 발송인이 모두 1836년 쓰시마번 에도 루스이(留守居)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치에몬 사건과 관련된 문서라고 평가했다(池内敏, 「17~19世紀 鬱陵島海域の生業と交流」, 『歴史學研究』 756, 2001, 30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松島之儀… 竹島同様日本人罷渡致漁候儀 御停止之嶋与ハ被考候得共 差極候儀者御答仕兼候 朝鮮地圖を以相考候得者 蔚陵·于山二島有之与相見申候.

도 돛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쓰시마번의 답변은 「竹島 도해금지령」 이후 松島에 대해서도 일본인들이 도해하고 있지 않는 실정 및 도해금지령에 松島도 포함된다는 쓰시마번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쓰시마번의 답변을 보면, 쓰시마번은 竹島와 松島를 조선 지도에서 울릉도와 우산도에 해당하는 두 섬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松島를 우산도라고 보던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을 나타내주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東國文獻備考』(1770)에서는 “우산은 왜가 이르는바 松島다”라고 하여 우산도가 일본에서 부르는 松島임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당시 조선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일본 막부에서는 쓰시마번을 통해 竹島와 松島의 소속에 대한 정보까지 조사한 후 1836년 12월 막부 평정소는 자결한 가로 오카다 타노모의 수하 하시모토 산베와 하치에몬 두 사람에게 사형을 판결했다(12.23).³²²⁾ 그리고 1837년 2월 막부는 異國으로의 도해를 금지하는 명령을 오메쓰케(大目付, 막부나 大名의 정무 감독) 앞으로 하달하여 전국의 막부와 다이묘령(大名領)에 오후레(御觸, 관청의 공고)로 알리도록 조치했다. 전국 각지에 내려진 異國으로의 도해 금지 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의 섬(竹島, 울릉도)은 예전에 호키노쿠니(伯州)의 요나고 주민들이 도해하여 어업 등을 행한 곳이었으나, 元祿시대에 조선국에 건네준 이래 도해금지를 명한 곳이었다. 무릇 ‘異國으로의 渡海는 엄중하게 금지된 사항이므로 향후 위의 섬(竹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점을 명심

322) 하치에몬의 죄상에 대해 두 가지 기록이 있다. 『天保雜記』에 수록된 막부 판결문에는 “이국인과 만나서 통교하지는 않았고, 草根 등을 가지고 돌아온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국의 屬島에 도해한 것은 國體에 불미스러운 행위이므로 사형에 처한다”하고, 『通航一覽續輯』에는 “하치에몬이 에도나 諸國에서 刀劍類를 사들여 하마다번 御用物の 會符를 사용하여 하마다로 보냈고, 어선의 모습으로 竹島에서 이국인과 교역했다”고 하여 하치에몬이 울릉도에서 밀무역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윤유숙, 앞의 논문, 306~307쪽).

하여 도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일본 각 지역을 항해하는 廻船은 해상에서 異國船과 만나지 않도록 항로 등에 주의할 것을 이전에 공지한 대로 지켜야 하며, 앞으로는 가능한 먼 바다로의 항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³²³⁾

그리고 위 이국으로의 도해 금지령을 高札(알림판)에 적어 바닷가 지역의 村과 町에 빠짐없이 걸어두라고 명했다. 이 금지령은 울릉도가 조선령이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하에 내려진 것으로 이국으로의 도해와 더불어 먼 바다에 나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독도가 일본 연안에서 먼 바다에 속하기 때문에 독도로의 도해도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³²⁴⁾

그럼에도 일본 측은 1950-60년대 「왕복외교문서」에서 하치에몬 사건을 언급하며 「竹島 도해금지령」 이후에도 독도에 대한 도해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³²⁵⁾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도 하마다번의 가로가 松島에 도해한다는 명목으로 竹島에 가도록 하치에몬에게 알려준 것을 들어 松島 도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³²⁶⁾

1950-60년대 일 측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 연구자들에게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라 할 수 있는 일본 외무성의 팜플렛 「竹島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2008)에서부터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공식 자료에 하치에몬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하치에몬 사건을 통해 松島 도해가 가능하다고 간주했던

323) 『御觸書天保集成』 62, 高札之部, 岩波書店, 1941, 135쪽; 윤유숙, 앞의 논문, 313~314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右島往古は伯州米子のもの共渡海 魚漁等致し候といえとも 元祿之度朝鮮國へ御渡しニ相成候以來 渡海停止被仰付候場所ニ有之 都て異國渡海之儀は 重キ御制禁ニ候條 向後右嶋之儀は同様相心得 渡海致すましく候 勿論國々之廻船等 海上ニおるて異國船ニ不出會様 承筋等心掛可申旨 先年も相觸候通称相守 以來は可成丈遠沖乗不致様 乘廻リ可申候

324) 内藤正中, 『竹島=獨島問題入門』, 新幹社, 2008, 32~33쪽.

325) 外務部, 「일본정부견해」3(1956.9.20),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48~149쪽.

326)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66, 191~192쪽.

예전 1950-60년대의 주장을 수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하치에몬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건 당사자인 하치에몬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조사기록 『竹島渡海一件記』에 첨부된 「竹島方角圖」에는 竹島와 松島를 조선 내륙과 같은 붉은 색, 일본 오키와 내륙은 노란색으로 채색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³²⁷⁾

하치에몬 사건으로 인해 1837년 일본 막부가 울릉도를 비롯한 먼 바다로의 항행을 금지한 이래 한동안 일본인의 울릉도·독도로의 도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막부 말기에 이르면 초슈번(長州藩)의 志士들이 울릉도 개척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征韓論을 주장했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이 있다. 그는 1858년 2월 19일 가쓰라 고고로(桂小五郎)에게 보낸 서한에 “해외 진출의 첩병인 우리 번이 진출하는 것이 제일 좋다. 조선, 만주에 진출하려고 하면 울릉도는 최고의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³²⁸⁾

또 요시다 쇼인의 영향을 받은 가쓰라 고고로, 무라타 조로쿠(村田藏六)는 連名으로 「竹島開拓建言書草案」을 로쥬(老中) 구세 히로치카(久世廣周) 앞으로 보냈다. 이 建言書(관청이나 윗사람에게 의견을 적은 서류)는 비록 藩主가 보낸 건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지만, 울릉도에 대한 일본 지사들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진출을 위해 정한론자들이 울릉도에 대한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1837년 막부가 이국로의 도해를 금지한 이후 일본인의 울릉도 방면으로의 도해 금지는 당분간 엄격히 지켜졌다.

2) 일본 외무성 관리의 울릉도·독도 조선 부속 인식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가 들어서고(1868) 조선과의 외교를 위해 ‘天皇親政’을 알리는 서계를 조선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서계 내

327) 박병섭, 앞의 논문, 143쪽.

328)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3, 70~71쪽.

용을 문제 삼아 접수를 거부했다. 일본 메이지 정부는 이 문제의 타개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조선과의 국교 개시 문제 등을 정탐하기 위해 1869년 12월 外務省 出仕(메이지 초기 정원 외 관리)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사이토 사카에(齊藤榮) 등을 조선에 파견했다. 사다 일행은 1869년 12월 요코하마항(橫濱港)을 출발하여 1870년 쓰시마(對馬)에 도착해 이즈하라번(嚴原藩, 쓰시마번의 메이지시대 名)의 조사를 마치고, 2월 22일 부산 왜관에 도착하여 조선을 내탐했다. 그들은 조사를 마치고 귀국하여 10개의 항목으로 된 보고서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외무성에 제출했다(1870.4.15). 이 보고서의 마지막 항목에는 「竹島·松島가 조선의 부속으로 된 경위(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라는 제목의 보고문이 있다. 이 보고문은 제목만으로도 사다 하쿠보 등 외무성 출장자들이 독도를 조선의 부속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은 松島(독도)는 竹島(울릉도) 옆에 있는 섬인데, 松島 건에 관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竹島에 대해서는 겐로쿠(元祿) 때의 왕복 서함, 절차 서류의 사본이 있다.³²⁹⁾ 겐로쿠 연간 이후에는 잠시 조선에서 거주를 위해 사람을 파견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이전과 같이 사람이 없었다....³³⁰⁾

보고문 제목은 竹島와 松島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이지만, 보고 내용에는 松島(독도) 건에 관해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고 기술했다. 이것은 사다 하쿠보 등의 출장자들이 竹島와 松島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松

329) 밑줄은 2차 자료인 『日本外交文書』에는 빠진 내용으로 1차 자료인 『公文別錄』 1, 朝鮮事件 明治元年~明治四年(일본 國立公文書館 소장) 원문에는 실려 있는 내용이다. 원문은 “元祿度之往復手續書 寫の通ニ有之”이다(박병섭,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 『獨島研究』 12,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2, 165쪽).

330) 『日本外交文書』 3, 일본 외무성 조사부, 1938, 文書番號 87.

一. 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

此儀ハ松島ハ竹島ノ隣島ニテ松島ノ儀ニ付是迄掲載セシ書留モ無之竹島ノ儀ニ付テハ元祿度後ハ暫クノ間朝鮮ヨリ居留ノ爲差遣シ置候處當時ハ以前ノ如ク無人ト相成...

島를 알게 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울릉도에 대해 “겐로쿠(元祿) 연간 이후에는 잠시 조선에서 거주를 위해 사람을 파견한 적이 있다”고 하여 「鬱陵島爭界」(1693~1699)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무성 출장자 일행은 「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가 조선령으로 인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보고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독도도 이때 울릉도와 함께 조선령으로 인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를 처음 거론한 연구자는 일본 요시오카 요시노리(吉岡吉典)였다. 그는 메이지 정부가 1869년 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사다 등을 조선에 파견했는데, 당시 외무성이 지령했던 조사 사항에는 독도의 조선 부속에 대한 항목이 있으며, 그 결과 작성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 ‘조선 부속의 시말’에 대한 보고도 있다고 기술했다.³³¹⁾ 야마베 겐타로(山邊健太郎)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를 소개하면서 그 시말에 언급된 松島는 독도를 가리키며, 이 보고는 공문서로서 戰前부터 일본 외무성이 편집한 『일본외교문서』 제3권에 나오고 있다고 기술했다.³³²⁾

이렇게 일본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호리 가즈오에 의해 다시 평가되었다. 그는 이 보고에 의하면, 출장자들은 독도가 元祿 연간의 「竹島一件(울릉도쟁계)」에서 조선에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이 보고서가 ‘단순한 보고’라고 하면서 독도에 대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³³³⁾ 나이토 세이쥬(內藤正中)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가 울릉도와 독도는 이웃이며 독도와 관계된 기록이 없고 울릉도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며, 한국 측의 주장처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의 부속령이라

331) 寺尾五郎·吉岡吉典·桑谷桑男, 「竹島問題」, 旗田巍 等, 『アジア・アフリカ講座Ⅲ: 日本と朝鮮』, 勁草書房, 1965, 112~114쪽; 한철호, 「明治時期 일본의 독도정책과 인식에 대한 연구 쟁점과 과제」, 『한국사학보』 28, 2007, 327쪽.

332) 山邊健太郎, 『日韓併合小史』, 岩波書店, 1966, 17~19쪽; 한철호, 위의 논문, 328쪽.

333)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朝鮮史研究會, 1987, 104쪽; 한철호, 위의 논문, 330쪽.

고 확인한 명백한 실증자료’는 아니라고 평가했다.³³⁴⁾

일본인 연구자들은 대체로 호리나 나이토의 위와 같은 견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 자세한 시말은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표제만으로 독도를 한국령으로 확인한 증거로 보는 한국 측의 견해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³³⁵⁾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 울릉도는 이의가 없지만 독도에 관해 ‘지금까지 게재된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고 함으로써 조선에 부속했다는 근거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870년 당시 독도가 조선에 부속되었다면 조선에서도 독도를 인식했어야 하는데,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에서도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독도가 조선에 부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시모조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다가 언급한 松島가 독도라면 『隱州視聽合記』(1667) 등에 이미 松島가 실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게재된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고 기술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사다가 언급한 松島는 현재의 독도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³³⁶⁾

한국에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 대해 소개한 강만길은 내탐원들이 울릉도와 독도가 각각 다른 두 섬임을 알았고 그러면서도 이 두 섬이 모두 ‘조선 부속’임을 분명히 보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³³⁷⁾ 일본 측에서의 평가보다는 적극적이지만,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출장자들의 인식 및 보고 내용이라는 정도의 평가였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는 신용하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이 내탐서에 대해 메이지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

334) 内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 多賀出版, 2000, 129쪽; 한철호, 위의 논문, 330~331쪽.

335) 塚本孝, 「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國際法の適用事例-先占法理と竹島の領土編入を中心に-」, 『東アジア近代史』 3, ゆまに書房, 2000, 89쪽; 「竹島領有權紛爭が問う日本の姿勢」, 『中央公論』, 2004, 117~118쪽; 「竹島領有權問題の経緯(제3판)」, 『国会図書館 ISSUE BRIEF』 701, 2011, 4쪽; 한철호, 위의 논문, 331~332쪽.

336) 下條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藝春秋, 2004, 116~124쪽; 한철호, 앞의 논문, 332~333쪽.

337) 강만길, 「日本側 文獻을 통해 본 獨島」, 『獨島研究』,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294~295쪽.

로 다시 확인한 1869년~1870년 최초의 일본 정부 공문서로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건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탐서에 포함되어 있는 「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은 일본 외무성과 太政官이 사다 등 일행을 조선에 파견하면서 지령한 ‘조사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³³⁸⁾

그런데 일본 외무성이 사다 등의 출장자들에게 조사항목을 지령하는 문서를 기안하여 태정관 결재를 받은 『日本外交文書』 문서번호 574 「조선에 파견될 자가 알아 둘 사항의 하명 안(朝鮮へ被差遣候もの心得方御達之案)」(1869.11.1)에는 竹島와 松島에 대한 조사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³³⁹⁾ 『일본외교문서』에 실려 있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항목에서 ‘본 내탐서는 제2권 제3책 574에서 지령되었던 조사사항에 대한 복명서’라고 서술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본외교문서』 편찬 당시의 편집자가 註를 달은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외무성과 태정관이 사다 등의 출장자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 된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사다 일행은 출장 보고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 첨부하여 이 보고서의 대본이라 할 수 있는 『對州朝鮮交際取調書』³⁴⁰⁾를 함께 제출했다. 즉 『내탐서』는 보고용으로서 『취조서』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취조서』는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마지막 항목의 제목이 「竹島一件」이다. 이 문서에는 17세기 「鬱陵島爭界(竹島一件)」에 대해 자세히 신고 있는데, 竹島(울릉도)에 대한 내용만 상세히 실려 있고 松島(독도)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내탐서』에 「竹島·松島가

338) 신용하, 「朝鮮王朝의 獨島領有와 日本帝國主義의 獨島侵略-獨島 領有에 대한 實證的 一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58~64쪽; 신용하는 『日本外交文書』 제2권 제3책 1869년 11월 1일자 문서번호 574에 『외무성으로부터 태정관 관관에게의 질의서(外務省ヨリ太政官判官へノ伺書)』 「조선국에의 파견원에 대한 조사사항 지령에 관한 질의 및 이에 대한 태정관의 결정(朝鮮國へノ派遣員ニ對スル調査事項指令ニ關スル伺竝ニ之ニ對スル太政官ノ決定)」이 있고, 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는 ‘본 내탐서는 제2권(제3책) 574에서 지령되었던 조사 사항에 대한 복명서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내탐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곧 태정관이 지령한 ‘조사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339) 『日本外交文書』第2卷 第3冊 文書番號 574.

340) 『對州朝鮮交際取調書』(일본 國立公文書館 소장).

조선의 부속으로 된 경위(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를 적었지만 이 보고문에 기재된 대로 松島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취조서』의 「죽도일건」에는 竹島만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다 일행이 쓰시마와 조선과의 교제에 대한 자료로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朝鮮通交大紀』에는 「울릉도쟁계」에 관해 상세히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사항으로 하달되지 않았던 竹島와 松島에 대해 보고할 수 밖에 없었고, 「울릉도쟁계」에 관한 쓰시마번 작성 자료인 『竹島紀事』 등도 참고하여 竹島·松島가 조선의 부속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³⁴¹⁾

또한 일본 정부에서 사다 일행에게 조사 사항을 하달했던 1869년 시점에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에서는 1876년부터 울릉도 개척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처음 개척을 건의한 사람은 무쓰(陸奥) 지역의 士族 무토 헤이하쿠(武藤平學)로서 그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래하면서 松島(울릉도)가 있음을 주장하고, 「松島開拓之議」를 외무성에 제출했다. 이 밖에도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의 『竹島考證』(1881)에는 1876년부터 1878년까지 9건의 울릉도 開拓願이 소개되어 있는데, 울릉도를 松島로 기재한 것이 6건, 竹島로 기재한 것이 3건이 있는 등 울릉도에 대한 명칭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³⁴²⁾ 개척원의 주요 내용은 공통적으로 울릉도가 자원이 풍부하니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것과 열강이 이 섬을 노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이었다.³⁴³⁾

울릉도 개척원이 계속 이어지자 외무성 내에서는 松島와 竹島가 1도2명인지 2도2명인지, 그 소속은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³⁴⁴⁾ 이

341) 박명섭, 앞의 논문, 162~168쪽.

342) 『竹島考證』 下; 정영미, 「일본의 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섬의 명칭 혼란’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13~123쪽.

343)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朝鮮史研究會, 1987, 104~105쪽.

344) 당시 외무성에서의 竹島, 松島에 대한 논의 과정은 다음 논저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강만길, 「日本側 文獻을 통해 본 獨島」, 『獨島研究』,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295~319쪽;堀和生, 위의 논문, 104~105쪽;한철호, 「메이지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田辺太一)의 울릉도·독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9,

에 외무성 記録局長 와타나베 고키(渡辺洪基)는 竹島가 울릉도로서 조선령이라고 하면서 松島가 竹島라면 조선령이고, 松島가 竹島와 별도라면 이것은 일본령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公信局長 다나베 다이치(田辺太一)은 松島가 조선의 울릉도로서 松島를 개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1878년 나카사키(長崎)의 시모무라 와하치로(下村輪八郎)가 사이토 시치로헤(齋藤七郎兵衛)와 연명으로 松島開拓願을 제출한 것을 계기로 다시 외무성에서 竹島와 松島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공신국장 다나베 다이치는 松島 순시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갑, 을, 병 세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갑은 松島란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도이며, 이러한 松島를 개척하는 것은 이웃의 지경을 침범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을은 개척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한 이후에나 松島가 울릉도의 일부인지, 아니면 과연 우산인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하나의 주인 없는 땅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병은 영국 등의 열강들이 松島 같은 섬을 주목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들어 갑과 을이 말하는 개척 여부 논의보다는 그 섬의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³⁴⁵⁾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자 외무성에서는 결국 松島를 조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1878년 4월 28일 아마기함(天成艦)은 함경도, 전라도 해안 측량을 위해 일본 시나가와(品川)를 출항하여 5월 9일 부산을 출발, 개항장 후보지인 원산, 덕원 등을 측량한 다음 6월 28일 신포를 출발하여 松島(울릉도)로 향하였다. 항해 중에 ‘竹島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그곳이 위치하는 곳을 찾았지만 이내 실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판정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竹島는 해도상에 잘못 표기되었던 아르고노트(argonaut)섬³⁴⁶⁾이었으며,

2008, 215~225쪽; 정영미, 위의 논문, 123~141쪽.

345) 『竹島考證』 下(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Ⅱ』, 다다미디어, 2006, 477~491쪽).

346) 아르고노트(argonaut)섬은 1791년 영국인 콜넷(J. Colnett)이 아르고노트(argonaut)호를 타고 동해에서 울릉도를 발견하고 배 이름으로서 울릉도에 붙인 이름이다. 그런데 섬의 위치를 북위 37도52분, 동경 127도33분으로 잘못 측정하여 내륙과 울릉도 사이에 架空의 섬으로 서양 지도상에 표기되기 시작했다(최석우, 「歐美側 文獻에

이 섬이 가공의 섬임을 일본 최초로 확인했던 것이다. 아마기함은 6월 29일 松島(울릉도)에 도착하여 주변을 돌면서 측량 조사했다.³⁴⁷⁾

아마기함은 1878년에 이어 1880년에도 재차 울릉도 측량을 실시했다. 아마기함은 1880년 5월 18일 부산항을 출발해 원산, 강원도 통천 등을 지나 6월 5일 울릉도에 도착하여 측량 등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松島가 울릉도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울릉도 주변의 ‘竹嶼’·‘호-루암’(空岩)·‘北亭嶼’ 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림지도를 첨부하였다. 당시 조사 내용은 해군 소위 미우라 시게사토(三浦重郷)가 작성한 보고서로서 『水路雜誌』에 실려 있다.³⁴⁸⁾ 또한 외무성으로부터 조사를 지시받았던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는 松島가 조선령인 울릉도로서 겐로쿠(元祿) 12년(1699) 竹島라고 칭했던 섬이며, 竹島는 울릉도 북쪽에 위치한 일개 암석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은 『竹島考證』과 이를 요약한 「竹島版圖所屬考」를 외무성에 보고했다(1881.8).³⁴⁹⁾

17세기 조선과 일본 정부 간 「울릉도쟁계」이 일본의 「竹島 도해금지령」(1696.1)으로 정리되면서 일본인들은 더 이상 울릉도 방면으로 어업을 나갈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울릉도,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부족해졌고, 자연스럽게 19세기 竹島, 松島 지명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울릉도 개척원에 따른 일본 외무성의 울릉도 조사 과정을 보면, 외무성은 1876년부터 1878년 기간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 울릉도 지명은 1880년 아마기함의 현지 조사 결과인 기타자와 마사나리의 보고(1881)에 의해 종래 독도를 가리키던 명칭인 松島로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반면 독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인식이나 일본 명칭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³⁵⁰⁾

나타난 獨島, 『獨島研究』,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344쪽).

347) 정영미, 앞의 논문, 153~155쪽. 한철호,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동북아역사논총』 50, 2015, 22~24쪽.

348) 三浦重郷, 「朝鮮水路略記」, 『水路雜誌』 제41호, 34~39쪽.

349) 『竹島考證』 下(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Ⅱ』, 다다미디어, 2006, 503~512쪽);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350) 일본에서 독도 명칭은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1849년 독도를 발견하고 자신의 배 이름을 따서 명명한 ‘리앙쿠르암(Rochers Liancourt)’을 따랐다. 예를 들어 가쓰 가이슈(勝海舟)의 「大日本國沿海略圖」(1867), 하시모토 교쿠란(橋本玉蘭)의 「大日

또한 외무성의 竹島·松島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 실려 있는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가 조선에 부속되었다는 사다 등의 출장 보고가 외무성 차원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그렇더라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일본 외무성 출장자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에 부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식 출장 보고서로서 상부에 보고한 문서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울릉도·독도 領有 否認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는 1870년대 들어 울릉도와 독도 소속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그 첫 시작은 外務省 출장자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이 작성한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의 「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1870)이었으며, 竹島·松島(울릉도)에 대한 개척원이 제출됨에 따라 소속 위치에 대한 외무성과 水路部の 조사도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외무성과 수로부의 조사와는 별도로 內務省과 太政官 차원에서 竹島·松島 소속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내무성 地理寮 12等出仕 다지리 겐신(田尻賢信) 등은 지적편찬 조사를 위해 순회하던 중 시마네현(島根縣)에서 竹島라고 부르던 외딴섬이 있음을 전해 들었다. 이에 따라 내무성 지리료 다지리 겐신과 地理大屬 스기야마 에이조(杉山榮藏) 등은 竹島(울릉도) 조사 건에 대해 옛 기록과 고지도(舊記 古圖 等) 등을 조사하여 내무성에 보고하라는 조회를 시마네현에 보냈다(1876.10.5).³⁵¹⁾

내무성의 조회에 대해 시마네현은 竹島가 에이로쿠(永祿) 연간(1558~1570)에 발견되었으며 1618년부터 1695년까지 돗토리번령(鳥取藩領) 내의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兩家が 구 막부의 허가를 받아 왕래했었다고 보고했다. 또 “대체로 [시마네현] 관내 오키국의 서북 방향에

本四神全圖(1870) 등은 울릉도를 ‘松島’, 독도를 ‘리양고오루도롯구(リヤンコフルトロツク)’로 표기하였다.

351)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綱」, 欄外 乙 弟貳拾号, 明治 9년(1876) 10월 5일 (일본 國立公文書館 소장).

해당하며 산인(山陰) 일대의 서부에 소속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는데…”라는 답변과 함께 “본현 國圖에 표기하여 지적에 편입하는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지령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 시마네현 縣令 사토 노부히로(佐藤信寬), 參事 사카이 지로(境二郎) 명의의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를 내무성에 보고했다(1876.10.16).³⁵²⁾

아울러 시마네현은 내무성에 보고하면서 17세기 「鬱陵島爭界(竹島一件)」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서술하고 관련 부속문서 4부 및 「磯竹島略圖」를 첨부했다. <부속문서 제1호>는 에도 막부에서 「竹島(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린 경위를 서술했다. <부속문서 제2호>는 쓰시마번 奉行 平眞顯 등이 동래부 訓導別差 등에게 보낸 서신(1696.10), 즉 쓰시마번정(對馬藩政)을 책임지고 있는 소 요시자네(宗義眞)가 조선 譯官들에게 건네 준 「竹島 도해금지령」과 安龍福의 일본 밀항 呈文事件(1696.5~8) 등에 관한 일문 口述書를 한문으로 요약 정리한 서신이다. <부속문서 제3호>는 예조참의 李善溥가 울릉도와 竹島가 1島2名임을 들어 그 정당한 인식을 촉구하는 한편 安龍福 등은 漂民에 불과하다고 소 요시자네에게 보낸 서계(1698.3월자)이다. <부속문서 제4호>는 소 요시자네가 상기 조선의 서계를 막부에 보고했다고 이선부에게 보낸 회답 서계(1699.1월자)이다. 또 막부가 竹島를 조선령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소 요시자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주장한 口上書(口上之覺, 외교문서)도 첨부했다.³⁵³⁾ 부속문서의 내용은 모두 「울릉도쟁계」와 관련된 것으로 그 핵심은 17세기에 이미 에도 막부가 竹島(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竹島 소속에 대해 문의한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에는 「原由之大畧」과 「圖面」을 첨부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첨부물인 「원유지대략」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이 밖에 한 섬이 있으니 松島라고 한다. 둘레는 30町 정도로 竹島와

352)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明治 9년(1876) 10월 5일(일본 國立公文書館 소장).

353) 위와 같다.

동일 線路에 있다. 오키(隱岐)에서 80리 정도 떨어져 있다. 樹竹은 드물다. 그리고 漁獸도 있다(次ニ一島アリ松島ト呼フ 周回三十町許竹島ト同一線路ニ在リ 隱岐ヲ距ル八拾里許 樹竹稀ナリ 亦魚獸ヲ産ス).

앞서 내무성 지리로 관리가 시마네현 측에 지시한 것은 竹島와 관련된 ‘舊記 古圖 等’을 조사하여 품의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마네현의 품의서 이름은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라고 하여 ‘竹島外一島’에 대해 내무성에 문의하고 있다. 이는 시마네현이 竹島와 관련된 ‘구기 고도 등’을 조사하다 보니 竹島뿐만 아니라 松島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³⁵⁴⁾ 그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위의 「원유지대략」에 서술된 松島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시마네현이 「원유지대략」과 함께 첨부한다고 내무성에 보고한 「도면」인 「磯竹島略圖」에도 松島가 표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마네현에서는 내무성에서 ‘竹島’를 문의했지만 그 밖의 ‘一島’인 ‘松島’도 포함하여 문서를 올릴 수 밖에 없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시마네현의 품의서나 이를 받은 태정관 지령의 문서명에 ‘竹島 松島’가 아닌 ‘竹島外一島’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내무성에서는 시마네현에서 제출한 「원유지대략」과 「기즉도약도」 및 17세기 「울릉도쟁계」에서 울릉도가 조선령으로 인정되었던 사실 등을 모두 검토하고, ‘竹島外一島’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무성은 “版圖의 취사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문의합니다”라고 하며 태정관에 ‘竹島外一島’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내무성 판단에 대한 결정을 문의했다(1877.3.17).

내무성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태정관 조사국은 ‘竹島外一島’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내무성의 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령안(指令按[案])을 작성했다.

질의한 竹島 외 1도 건에 대해 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

354) 池内敏, 앞의 책, 145쪽.

심할 것(伺之趣竹島外一嶋之義本邦關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이 지령안은 태정관 參議를 거쳐 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의 승인을 받아 1877년 3월 29일자로 내무성으로 하달되었고, 4월 9일자로 시마네현에 전달되었다.

「太政官指令」(1877)이 처음 공개된 것은 일본 호리 가즈오(堀和生)에 의해서였다. 호리는 ‘竹島外一島’에서의 ‘外一島’는 부속문서에 松島가 명시되었고 그 위치와 형상도 올바르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라고 보았다. 또 「태정관지령」에 대해 당시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시마네현과 내무성이 상신한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를 한 세트에 이해한 기초에서 두 섬을 일본령이 아니라고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³⁵⁵⁾ 이러한 호리의 평가는 이후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등과 같은 일본인 연구자들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³⁵⁶⁾

‘外一島’가 松島(독도)라는 점이 더욱 분명한 것은 「태정관지령」에 첨부된 「磯竹島略圖」³⁵⁷⁾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가 ‘磯竹島’, 독도가 ‘松島’로 표기되어 있다. 이소다케시마(磯竹島)는 일본에서 울릉도를 일컫던 옛 이름으로서 「기죽도약도」는 울릉도의 약도인 셈이다. 그런데 「기죽도약도」에는 기죽도가 지도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오히려 松島(독도)가 중앙에 위치하며 羽毛式으로 물가 표시를 했으며, 조선 내륙과 일본 오키섬은 간략한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세트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外一島’를 松島라고 인정하더라도 松島를 독도가 아닌 것으로 보

355) 堀和生, 앞의 논문, 103~104쪽.

356) 内藤正中, 앞의 책, 131~132쪽; 池内敏, 앞의 책, 137~149쪽.

357) 「磯竹島略圖」는 일본 교회 목사인 우루시자키 히데유키(漆崎英之)에 의해 학계에 알려졌다. 그에 의하면 태정관지령이 실려있는 『公文錄』(일본 국립공문서관)의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의 원본에는 마이크로 필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기죽도약도」가 봉투 안에 접어서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5년 5월에 발견했다고 한다; 漆崎英之, 「태정관에 의한 竹島 외일도 판도 외 지령」(박병섭·나이토세이쥬 지음, 호사카 유지 옮김, 『독도=竹島 논쟁』, 보고서, 2008, 303~305쪽에 수록).

려 하는 견해가 있다. 기존에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는 ‘外一島’를 에도 시대에 도해했던 松島, 즉 오늘날의 독도로 보고, ‘형식적으로 松島(오늘날의 독도)도 「본방과 관계없다」로 되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³⁵⁸⁾ 그런데 쓰카모토는 앞서의 입장을 바꿔 ‘외일도’가 松島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서양에서 제작된 지도·해도에 의해 울릉도를 松島로 불렀기 때문에 중앙(내무성·태정관)에서는 竹島, 松島가 모두 울릉도라는 인식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³⁵⁹⁾

쓰카모토가 ‘外一島’에 대해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외1도는 松島이며 현재의 독도라는 입장을 가졌다가, 외일도가 松島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울릉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쓰카모토의 입장이 바뀐 것은 스기하라 다카시(杉原隆)의 주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스기하라는 19세기 일본의 竹島·松島에 대한 도명의 혼란에 착안하여 ‘外一島’를 松島로 보면서 「태정관지령」이 ‘竹島·松島로 불리는 섬(울릉도)은 일본령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시작했다.³⁶⁰⁾ 이러한 점에 착안한 스기하라는 1881년 시마네현의 士族 오야 겐스케(大屋兼助) 외 1명이 제출한 松島(울릉도) 개간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1881년 11월 오야 겐스케(大屋兼助)는 ‘일본해내 松島 개간원(日本海内松島開墾之儀)’을 시마네현에 제출했고(1881.11.12), 이에 대해 시마네현은 내무성·농상무성에 「일본해내 松島 개간의 건에 첨부된 건의」를 제출했다(1881.11.14). 시마네현의 건의를 받은 내무성은 「태정관지령」(1877)을 첨부하여 ‘일본해에 있는 竹島·松島の 일은 별지 갑호와 같이 메이지 10년 중 본방과 관계없다고 질문서에 대한 회답이 있고…(日本海ニ在ル竹島松島之義ハ別紙甲号之通去明治十年中本房關係無之事ニ伺定相成爾…)’라고 시작하는 질의서를

358) 塚本孝, 「竹島領有權問題の經緯」, 『照査と月報』(ISSUE BRIEF) 244, 國立國會圖書館, 1994, 4쪽; 「竹島領有權問題の經緯(第2版)」, 『照査と月報』(ISSUE BRIEF) 289, 國立國會圖書館, 1996, 4~5쪽.

359) 塚本孝, 「竹島領有權問題の經緯(第3版)」, 『照査と月報』(ISSUE BRIEF) 701, 國立國會圖書館, 2011, 4~5쪽.

360) WEB竹島問題研究所 홈페이지(URL: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sugi/take_04g08.html) 게재일: 2008.6.17, 검색일: 2016.12.14.

외무성에 보냈다(1881.11.29). 질의 내용은 竹島·松島가 본방과 관계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시마네현으로부터 이곳에 도항해 별목을 했다는 정보를 들었으니, 근래에 조선과 무슨 담판이나 약속이 있었는가 하는 조회이다.

내무성의 조회를 받은 외무성은 ‘조선국 울릉도 즉 竹島·松島의 건에 관해 문의하신 일인데…(朝鮮國蔚陵島即竹島松島之儀ニ付御聞合之趣)’라고 하며, 조선 정부로부터 이 섬으로의 일본인 도해에 대한 조회가 있어 이들을 철거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1881.12.1). 이에 따라 내무성은 시마네현에 ‘서면의 松島 건은 가장 앞의 지령대로 본방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따라서 개간 청원을 허락하는 일은 없다(書面松島ノ義ハ最前指令ノ通本邦關係無之義ト可相心得依テ開墾願ノ義ハ許可スヘキ筋ニ無之候事)’는 지령을 내렸다(1882.1). 스기하라는 내무성이 ‘竹島·松島’라고 기재해서 외무성에 전달한 것을 외무성이 ‘조선국 울릉도, 즉 竹島·松島’라고 이해하여 내무성에 전달했고, 이를 내무성이 ‘松島’로 간주했다는 데 착안하여 「태정관지령」의 ‘외일도’가 松島로 인식되었고, 이는 곧 울릉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한 것이다.³⁶¹⁾

쓰카모토는 스기하라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는 최근 시마네현 竹島문제연구회가 발간한 『竹島問題100問100答』(2014)에서 「태정관지령」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그는 여전히 ‘외일도’를 松島로 보면서도 이를 시마네현의 ‘외일도’와 내무성의 ‘외일도’로 구분했다.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첨부한 문서에 있는 松島는 오늘날의 竹島(독도)임을 인정하나, 이 松島를 당시 중앙에서는 울릉도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1881년의 울릉도 개척원과 같은 해 내무성 조회에 대한 외무성의 답신서를 제시하고 있다.³⁶²⁾ 쓰카모토의 주장은 「태정관지령」(1877)은 竹島(울릉도) 및 명칭상 또 하나의 섬(松島, 울릉도)이

361) WEB竹島問題研究所 홈페이지(URL: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1/takeshima04_j.html), 게재일: 2009.11.6, 검색일: 2016.12.14; 杉原隆, 「明治10年太政官指令-竹島外一島之儀ハ本邦關係無之-をめぐる諸問題」,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中間報告書』, 第2期島根縣竹島問題研究會, 2011, 15~17쪽.

362) 竹島問題研究會, 『竹島問題100問100答』 WILL 3月號, 2014, 190~193쪽.

본방과 관련이 없다는 스기하라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이처럼 스기하라와 쓰카모토는 「태정관지령」(1877)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연구자들 및 한국 정부의 견해에 대해 반박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당시 일본이 竹島, 松島에 대한 도명의 혼란을 이용해서 논리를 폈지만, 도명의 혼란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을 간과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스기하라와 쓰카모토가 「태정관지령」에서의 ‘外一島’를 분석하면서 활용한 문서 4건을 섬의 명칭 표기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울릉도 개척원 관련 시마네현-내무성-외무성 문서

연번	발신기관	수신기관	문서연월	섬 명칭	비고
1	시마네현	내무성,농상무성	1881.11.14	日本海内松島	
2	내무성	외무성	1881.11.29	日本海ニ在ル 竹島松島	태정관지령 첨부
3	외무성	내무성	1881.12.1	朝鮮國 蔚陵島 卽 竹島松島	
4	내무성	시마네현	1882.1.	書面 松島	

[출전]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이상의 과정을 보면 첫째, 시마네현은 울릉도에 대해 松島라고 표기하여 내무성에 문의를 했다. 이것은 도명의 혼란이 있던 시기에 오야 겐스케(大屋兼助)가 제출했던 ‘일본해내 松島 개간원(日本海内松島開墾之儀)’에서의 표기를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마네현의 개간에 대한 문의를 받은 내무성은 「태정관지령」을 첨부하면서 동 지령의 ‘日本海内 竹島外一島’를 ‘일본해에 있는 竹島·松島(日本海ニ在ル竹島松島)’라고 표기해서 외무성에 질의했다. 내무성으로서는 竹島와 松島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태정관의 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개간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중요한 점

은 내무성이 「태정관지령」의 ‘外一島’를 ‘松島’로 본 것이다.³⁶³⁾ 여기서의 松島가 독도임은 「태정관지령」의 부속 문서 및 「기죽도약도」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셋째, 외무성은 내무성의 조회에 대해 ‘朝鮮國 蔚陵島 卽 竹島松島’라고 답변했다. 이는 내무성이 「태정관지령」까지 첨부했음에도 외무성은 竹島, 松島가 조선의 울릉도를 가리키는 일본 이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竹島·松島 지명 혼란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서술했듯이, 외무성에서는 1878년 시모무라 와하치로(下村輪八郎)가 사이토 시치로헤(齋藤七郎兵衛)와 연명으로 제출한 松島開拓願을 계기로 竹島, 松島의 지명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그 결과 松島를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1880년에는 아마기함(天成艦)이 현지로 파견되었다. 그 결과 1881년 松島가 조선령인 울릉도로서 겐로쿠(元祿) 12년(1699) 竹島라고 칭했던 섬이며, 竹島는 울릉도 북쪽에 위치한 일개 암석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은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의 『竹島考證』과 이를 요약한 「竹島版圖所屬考」가 외무성에 보고되었다(1881.8).³⁶⁴⁾ 이에 따라 외무성이 내무성에 답변을 한 1881년 12월 시점에 외무성에서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과거엔 竹島, 현재에는 松島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상기 문서에서 외무성이 竹島·松島를 울릉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보인다. 또 외무성은 내무성 조회문 중 ‘일본해에 있는 竹島·松島’ 대신에 ‘조선국 울릉도 竹島·松島’라고 하여 울릉도를 가리키는 두 이름이 조선국 울릉도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넷째, 외무성의 답변을 받은 내무성은 시마네현에 회신하면서 ‘書面松島’라고만 표현했다. 여기서의 松島도 곧 울릉도를 가리키는데, ‘書面’을 넣어 앞서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조회한 문서대로 표기했음을 나타냈다.

상기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스기하라, 쓰카모토 등의 주장

363) 이에 대해 「太政官指令」을 처음으로 소개한 호리 가즈오(堀和生)는 내무성이 竹島, 松島를 판도 밖으로 한 태정관지령을 첨부하여 외무성에 울릉도의 현상을 조회했고, 이에 대해 외무성은 아무런 異論을 내세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堀和生, 앞의 논문, 104쪽).

364) 『竹島考證』 下(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Ⅱ』, 다다미디어, 2006, 503~512쪽);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과는 달리 외무성 문서에서의 松島는 「태정관지령」과 연관시켜 볼 성격이 아니다. 더욱이 메이지 정부 초기 단계의 중앙에서는 울릉도에 대한 통일된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호리 가즈오(堀和生),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등에 의해 이미 지적되었다.³⁶⁵⁾ 스기하라, 쓰카모토 등의 주장은 19세기 메이지 정부의 竹島·松島에 대한 지명 혼란을 이용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태정관지령」의 핵심을 비껴나간데 불과하다.

2. 조선의 울릉도 檢察使 파견

1) 1881년 울릉도 搜討使의 일본인 적발

1837년 2월 일명 하치에몬(八右衛門) 사건으로 인해 일본 幕府가 울릉도를 비롯한 異國으로의 도해금지를 전국에 다시 내린 이후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일본인들이 다시 울릉도에 도해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인지는 불분명하지만, 1882년 鬱陵島 檢察使 李奎遠이 울릉도를 검찰하면서 長斫之浦에서 桶邱尾로 가는 도중 ‘大日本國松島楓谷’, ‘明治二年二月十三日’, ‘岩崎忠照 建之’라고 새겨진 길이 6척, 너비 1척의 표목을 발견했다.³⁶⁶⁾ 이에 의하면 메이지 2년인 1869년 이와사키 다다테루(岩崎忠照)가 울릉도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 사건에 대해 1884년 야마구치현(山口縣)에서 ‘蔚陵島一件’이라 불리며 조사를 담당하던 야마모토 오사미(山本修身)의 「復命書」에는 이 표목의 건립년이 ‘明治 13년(1880)’으로 기술되어

365) 堀和生, 앞의 논문, 103~106쪽; 池内敏, 앞의 책, 147~149쪽.

366) 李奎遠, 「鬱陵島檢察日記」; 이혜은·이형근, 『만은(晚隱)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195쪽.

한편,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는 이선근이 이규원의 후손李建雄에게 제공받아 그 전문을 처음 소개했다(이선근, 「近世 鬱陵島問題와 檢察使 李奎遠의 探險成果-그의 檢察日記를 中心한 若干의 考察-」, 『大東文化研究』 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3).

있다. 더욱이 “이와사키 아무개가 도항의 건을 발의하고… 벌목과 어획에 종사하게 된 것은 12년이다”라는 기술과 연관지어 보면 이규원의 기록인 1869년보다 1880년이 더 사실과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³⁶⁷⁾

한편, 야마구치현 야마모토의 상기 「복명서」에 의하면,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는 주러시아공사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에노모토 공사가 러시아에 도항할 때 울릉도를 발견하여 그의 처남 하야시 신지로(林紳二郎), 도쿄부 평민 치카마쓰 마쓰지로(近松松二郎), 이와사키(岩岐) 아무개 등이 울릉도 도항을 발의했다. 1878년(明治 11) 먼저 치카마쓰가 시험적으로 기선 다카오마루(高尾丸)을 타고 울릉도를 다녀왔으며, 이듬해 본격적인 울릉도 벌목과 어업이 이루어졌다. 1880년(明治 13) 도쿄 오오쿠라 구미가 많은 자본금을 내고 함께 도항을 도모하였으며, 에노모토 공사가 다키노(滝野) 함장에게 부탁하여 군함 이와키호(磐城號)로 인부와 직공 등을 도항시켰다. 그러나 울릉도 벌목 사업의 수익이 기대에 못 미쳐 사업을 그만두고 해군선 用船 가이소마루(廻漕丸)로 목재 및 인부 등을 되돌려 보냈다고 한다.³⁶⁸⁾ 이렇듯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에 주러시아공사가 개입되고, 군함 등이 활용된 것은 단순히 민간 주도가 아닌 관민 합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가 조선 관리에 의해 적발된 것은 1881년(고종 18) 울릉도 搜討使에 의해서였다. 강원도관찰사 林翰洙의 狀啓에 따르면, 울릉도 수토사가 울릉도에서 무단으로 벌목한 나무를 해안가에 쌓아두고 있던 일본인 7명을 적발했는데, 그들은 나무들을 원산과 부산으로 반출하려 했다고 한다.³⁶⁹⁾ 당시(1881) 울릉도 수토사가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던 것은 일본 측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울릉도 수토관

367) 야마모토 오사미(山本修身)의 「복명서」에는 “大日本帝國 松島 榎谷 岩崎忠照 紀元二千五百一一年 明治十三年ニ当ル”라는 표목이 섬 남쪽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14쪽).

368) 山本修身, 「復命書」, 『明治十七年 蔚陵島一件錄』, 山口縣文書館 소장; 박병섭, 위의 책, 11~12:93~94쪽; 송취영,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도항금지령’」, 『독도연구』 19, 2015, 89~92쪽.

369) 『承政院日記』 133책, 고종 18년(1881) 5월 22일.

이 일본인들에게 울릉도가 조선에 속함을 알리고 그들의 이름과 직함을 물었는데, 일본인들은 풍파 때문에 표착했으며 출신지를 속여서 답했다.³⁷⁰⁾ 아마도 조선령인 울릉도를 침범한 일로 인해 자신들이 곤경에 처하게 될까 두려워서 거짓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 목적에 대해서도 조선과 일본의 기록이 차이를 보인다. 조선 측 기록인 『承政院日記』에는 일본인이 별목을 목적으로 울릉도에 침입한 데 대해 주목하고 울릉도 檢察使의 파견 결정을 서술하고 있다.³⁷¹⁾ 이에 반해 일본 측 기록(「복명서」)에는 일본인이 울릉도 수토사에게 풍파 때문에 표착했다고 변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수토사가 일본인이 섬에 체류 중인 것을 위로하기 위해 술과 안주를 내주었고, 일본인들은 수토사가 섬을 떠나려 승선할 때 축포로 해상의 안녕을 기원했으며 조선인도 배 위에서 화승총을 쏘아 답례했다고 한다.³⁷²⁾ 마치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가 아무 문제도 없으며, 조선 수토사도 이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서술한 것이다.

한편, 1881년(고종 18) 울릉도 수토사에 의해 적발된 일본인 울릉도 불법 벌목은 강원도관찰사를 거쳐 당시 국내외의 軍國機務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統理機務衙門에 보고되었다. 통리기무아문은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 벌목에 대해 일본 외무성에 서계를 보내 항의할 것과 副護軍 李奎遠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울릉도의 형세와 방어할 만한 곳인지를 조사하게 해달라고 국왕에게 건의했다(5.22).³⁷³⁾

高宗은 통리기무아문의 건의를 곧바로 받아들이고, 다음날 李奎遠을 울릉도 檢察使로 임명했다.³⁷⁴⁾ 그리고 예조판서 沈舜澤 명의의 서계를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게 보내 일본인의 울릉도 잠입을 항의했다(5월).³⁷⁵⁾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지금으로부터 189년 전인 1693년

370) 山本修身, 「復命書」, 『明治十七年 蔚陵島一件錄』, 山口縣文書館 소장; 박병섭, 앞의 책, 94~95쪽.

371) 『承政院日記』 133책, 고종 18년(1881) 5월 22일.

372) 山本修身, 「復命書」, 『明治十七年 蔚陵島一件錄』, 山口縣文書館 소장; 박병섭, 앞의 책, 94~95쪽.

373) 『承政院日記』 133책, 고종 18년(1881) 5월 22일.

374) 『承政院日記』 133책, 고종 18년(1881) 5월 23일.

(속종 19)에 일본인이 섬 이름을 착각한 일로 여러 차례 서계가 왕래한 끝에 마침내 바로잡혀 일본은 영구히 연해민들이 울릉도에서 고기잡는 것을 불허할 것임을 약속했다는 것, 둘째, 그럼에도 일본인들이 우리 경계 안에 들어와 벌목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변경 왕래 금지를 엄히 申飭(타일러 경계함)하여 선박들을 철수시키고 다시 그러한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선 측의 항의 서한을 접수한 일본 측은 그 즉시 회답을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일본 내의 竹島, 또는 松島 개척원에 따라 울릉도에 대한 島名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이었다.³⁷⁵⁾ 앞서 언급한 바대로 아마기함(天城艦)은 1878년에 이어 1880년에도 재차 울릉도에 도착(6.5)하여 측량 등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松島가 울릉도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울릉도 주변의 ‘竹嶼’·‘호-루암’(空岩)·‘北亭嶼’ 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림지도를 첨부하였다. 또한 외무

375) 『同文彙考』 4, 附編續, 邊禁 二, 국사편찬위원회(1978), 3902쪽;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日本外交文書』 14, 事項 10, 文書番號 160; 송병기, 앞의 책, 153~154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大朝鮮國禮曹判書沈舜澤 呈書大日本國外務卿井上馨閣下 謹茲照會者 卽接我江原道觀察使所報 則蔚陵島搜討官巡檢之際 有貴國人七名在其島 伐木積置 將送于元山釜山港云 盖此蔚陵島 粵自三韓 係在本國 土地物產 詳載於本國輿圖 逮我朝 以海路危險 撤其居 空其地 封殖長養 而派官審檢 歲以爲常 重藩蔽固疆圉之道 不得不然爾 前此一百八十九年癸酉 以貴國人 錯認島名事 屢度往復 竟至歸正 而自貴國飭于海民 永不許入往漁採 其書尙載在掌 故可按也 今此貴國人之懵然來斫 有欠入境問禁之義 且交隣貴誠信 梁灌楚菴 晉還吳獵 豈非今日之所相勉者乎 茲庸開陳 望貴政府 嚴申邊禁 俾還往船舶 更毋得昧例踵誤 益篤兩國之孚 永久無替 深所幸也 崑此前付 順祈台祉 敬具

辛巳年五月* 日 禮曹判書 沈舜澤

* 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자료 및 『일본외교문서』에는 6월로 씌어 있는데, 이는 양력으로 표기한 것임.

376) 송병기, 위의 책, 154쪽.

한편, 나이토 세이쥬(內藤正中)는 일본 정부가 이미 1877년 태정관이 ‘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라고 결정했고, 1880년 아마기함(天城艦)이 울릉도 현지를 조사하고 ‘古來我版圖外ノ地’라고 확인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일본 측이 즉시 회답하지 못한 것이 도명의 혼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竹島版圖所屬考」(1881.8)가 전년에 작성된 『竹島考證』의 요약본이라는 것을 모르고 생긴 오해라고 지적했다(內藤正中, 앞의 책, 159쪽). 반면에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는 울릉도 귀속을 확인하는 사실 여부 규명, 즉 「죽도판도소속고」의 보고를 받고 이노우에(井上) 외무경이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에게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금지를 포고해야 한다고 품의했다고 주장했다(池內敏, 앞의 책, 72~73쪽).

성으로부터 조사를 지시받은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는 松島가 조선령인 울릉도로서 元祿 12년(1699) 竹島라고 칭했던 섬이며, 竹島는 울릉도 북쪽에 위치한 일개 암석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은 『竹島考證』(1881.8)을 외무성에 보고했다.³⁷⁷⁾ 이어 『죽도고증』을 요약 정리한 「竹島版圖所屬考」를 외무성에 제출(양 8.20)했다.³⁷⁸⁾

「죽도판도소속고」는 ‘오늘날의 松島는 즉 元祿 12년(1699) 이후 竹島라고 칭했던 곳으로 예로부터 우리 판도 외의 땅임을 알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를 받아 울릉도의 소속 및 도명이 정리된 외무성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항의하는 조선 정부의 조화에 대해 외무경 대리 외무대보 우에노 가게노리(上野景範) 명의로 조선 예조판서 심순택에게 회답(8.20)했다. 그 주요 내용은 ‘귀국(조선) 울릉도에 일본인이 들어가 어채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므로 사실을 조사하여 양국간 厚好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를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에게도 보고(8.27)했다.³⁷⁹⁾

일본 외무성은 일본 어민의 울릉도 漁探에 관련된 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은 기타자와 마사나리가 보고한 「죽도판도소속고」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竹島, 일명 松島인 울릉도에 작년부터 우리 人民이 도항하여 어채하는 자가 왕왕 있었지만 차차 귀항할 것으로 들었다고 태정대신에게 보고했다(10.7). 이 외무성 보고에는 조선 측에 보내는 서계 문안의 초안을 첨부했는데,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지금 이미 철수하여 돌아갔으며 다시 금령을 申飭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보고를 받은 태정대신은 이를 곧 승인했다(11.7).³⁸⁰⁾

서계는 12월 15일 주조선일본공사관 사무서리 소에다 다카시(副田節) 명의로 經理總理機務衙門事 李載冕 앞으로 전달되었다.³⁸¹⁾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이 이미 철수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철수했던 것

377) 『竹島考證』 下(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Ⅱ』, 다다미디어, 2006, 503~512쪽).

378)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379) 『日本外交文書』 14, 事項 10, 文書番號 160.

380) 『日本外交文書』 14, 事項 10, 文書番號 161.

381)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 文書番號 75.

은 아니었다. 의무성으로서는 조선의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것이 대 조선 외교전략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허위 서계를 작성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³⁸²⁾ 또한 일본 정부는 울릉도 도항 금지를 다시 내리지도 않았다. 이듬해인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 때도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도항해 와 있었으며, 이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울릉도 도항 금지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금지 조치는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 후 조선 정부가 재차 항의한 결과 1883년에 서야 내려졌다.

2) 1882년 울릉도 檢察使 파견

1881년(고종 18) 울릉도 搜討使에 의해 적발된 일본인 울릉도 불법 벌목에 대해 統理機務衙門은 일본 外務省에 서계를 보내 항의할 것과 副護軍 李奎遠을 울릉도 檢察使로 임명하여 울릉도의 형세와 방어를 할 만한 곳인지를 조사하게 해달라고 국왕에게 건의했다(5.22).³⁸³⁾ 이에 대해 국왕 高宗은 다음날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했다.³⁸⁴⁾

이듬해(1882) 이규원은 울릉도 검찰을 떠나기 전에 국왕을 辭陞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왕은 울릉도 검찰의 주요 사항을 하교했다(4.7). 그 첫째는 松竹島와 芋山島가 울릉도 곁에 있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산물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각별히 검찰하고, 둘째는 울릉도에 읍을 설치할 것이니 지도와 함께 별단에 자세히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국왕이 언급한 송죽도와 우산도에 대해 이규원은 “우산도는 바로 울릉도로 우산은 옛 國都 이름이며, 송죽도는 하나의 작은 섬인데 울릉도와 떨어진 거리가 30리쯤 되고, 그 산물은 檀香과 簡竹이라고 합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해 국왕은 다시 “우산도라고도 하고 송죽도라고도 하는데 다 『輿

382) 『善隣始末』, 附錄 竹島始末; 『同文彙考』 4, 附編續, 邊禁 二, 국사편찬위원회 (1978), 3902쪽;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日本外交文書』 14, 事項 10, 文書番號 160; 송병기, 앞의 책, 153~154, 158~159쪽.

383) 『承政院日記』 133책, 고종 18년(1881) 5월 22일.

384) 『承政院日記』 133책, 고종 18년(1881) 5월 23일.

地勝覽』에 실려 있다. 또 松島·竹島라고도 하는데 우산도와 함께 이 섬을 통칭 울릉도라고 한다. 그 형편을 일체 검찰하라”고 명했다. 그러자 이규원은 삼가 깊이 들어가 검찰하겠다고 하면서 “혹 송도와 죽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있다고 하나 이는 송죽도 이외에 별도로 송도와 죽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³⁸⁵⁾

이상의 국왕과 이규원의 문답을 통해 국왕과 이규원의 울릉도와 그 주변 섬들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국왕은 첫째, 울릉도 옆에 송죽도와 우산도가 있다. 둘째, 우산도라고도 하고 송죽도라고도 하는데, 송도·죽도·울릉도 세 섬을 통칭하여 울릉도라고 한다고 생각했다. 이 언급에 의하면 국왕은 울릉도 주변 섬들의 명칭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정확한 지리적 지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규원에게 송죽도와 우산도가 울릉도 곁에 있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산물은 무엇인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다.

한편 국왕은 『여지승람』에 우산도, 송죽도가 실려 있다고 말했지만, 『여지승람』에는 우산도만 실려 있고 송죽도나 송도, 죽도는 실려 있지 않다. 다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에는 ‘우산은 왜가 이르는바 송도다(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역시 우산도와 송도만 언급될 뿐 송죽도나 죽도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현전하는 조선시대 지리서 중에도 송죽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종이 어떤 자료를 참고하여 송죽도, 송도, 죽도를 언급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언급했던 『여지승람』 외에 다른 서적들을 참고했거나 혹 누군가에게서 전해 듣지 않았을까 한다.³⁸⁶⁾

385) 『高宗實錄』 권 19, 고종 19년(1882) 4월 7일(壬戌). 원문은 다음과 같다.

敎曰… 且松竹島芋山島 在於鬱陵島之傍 而其相距遠近何如 亦有何物與否未能詳知 今番爾行 特爲擇差者 各別檢察 且將設邑爲計 必以圖形與別單 詳細錄達也 奎遠曰 芋山島卽鬱陵島 而芋山古之國都名也 松竹島卽一小島 而與鬱陵島 相距爲三數十里 其所產卽檀香與簡竹云矣 敎曰 或稱芋山島 或稱松竹島 皆與地勝覽所載也 而又稱松島竹島 與芋山島爲三島統稱鬱陵島矣 其形便一體檢察… 奎遠曰 謹當深入檢察矣 或稱松島竹島 在於鬱陵島之東 而此非松竹島以外 別有松島竹島也.

386) 고종의 울릉도와 주변 섬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 임영정은 “고종의 울릉도 부속도서 에 대한 그간의 지식은 『東國輿地勝覽』에 소개된 내용과 18세기 초반에 있었던 이른 바 「울릉도쟁계」 당시 일본인의 호칭, 즉 울릉도를 竹島라 하고 독도를 松島라 했던

국왕이 울릉도 외에 송죽도나 우산도, 또는 송도, 죽도 등이 있다고 인식했던 것과 달리 이규원은 우산도를 울릉도와 동일시하고, 우산은 옛 우산국의 國都로 인식했다. 송죽도에 대해서는 울릉도에서 30리쯤 떨어진 檀香과 簡竹이 나는 섬으로 인식했다. 조선시대 10리를 약 4km라고 했을 때, 울릉도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섬이 없기 때문에 이규원이 송죽도를 어느 섬으로 인식했는지는 불분명하며, 그가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인식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국왕이 “혹 그 전에 가서 搜檢한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규원이 “그 전에 가서 수검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고 대체적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³⁸⁷⁾라고 답했을 뿐이다. 이를 보아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울릉도 검찰은 검찰사 이규원, 中樞都事 沈宜琬, 軍官 출신 徐相鶴, 守門將 高宗八, 畫員 柳淵祐 및 員役沙格 등 82명과 砲手 20명 등 총 102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1882년 4월 10일 출발하여 4월 29일 강원도 평해군 구산포에서 3척의 배를 띄워 4월 30일 울릉도 서쪽 小黃土邱尾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5월 10일까지 11일 동안 울릉도 내륙 및 연안 곳곳을 조사했다.

검찰사 일행은 울릉도를 조사하면서 약 140명의 조선인을 확인했다. 이들은 대부분 下戶들로 포구와 가까운 小黃土邱尾(24명)·大黃土邱尾(23명)·倭船艙(41명)·道方廳(14명)·長斫之(13명)·通九味(23명) 등에 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 다만, 咸陽 출신 全錫奎, 坡州 출신 鄭二祐는 土族 출신으로 나리동에 초막을 짓고 약초를 캐며 생활하고 있었다. 전석규는 울릉도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어 섬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³⁸⁸⁾

지식이 혼합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혼란을 검찰사를 통하여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임영정, 「이규원 검찰사와 독도의 인지」, 『검찰사 이규원』, 국립제주박물관 특별도록, 2004)라고 평가했고, 김호동은 “고종과 이규원이 서로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은 일본이 울릉도를 ‘竹島’로 호칭하고 우산도, 즉 독도를 ‘松島’라고 호칭한 데서 나온 혼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호동,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7, 130쪽)라고 평가했다.

387) 『高宗實錄』 권 19, 고종 19년(1882) 4월 7일(壬戌). 원문은 다음과 같다.

敎曰 或有所得聞於曾往搜檢人之說耶 奎遠曰 曾往搜檢之人 未得逢著 而轉聞其梗概矣.

이들의 출신은 전라도가 가장 많아 興陽 94명(船主 5, 格卒과 格軍 89명), 樂安 21명(선주 1, 격졸 20명) 등 115명에 이르렀다. 다음이 강원도(平海) 14명(선주 1, 격졸 13명), 경상도 10명(慶州 7, 延日 2, 咸陽 1명)이었고, 이 밖에 경기(坡州)가 1명이었다.

전라도에서 온 115명은 造船, 採藿(미역 채취), 漁採 등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주로 봄에 울릉도로 와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고, 미역을 따거나 고기잡이를 한 후 가을에 전라도로 돌아갔다. 강원도에서 온 14명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인듯하고, 경상도에서 온 10명 중 8명(경주 7, 함양의 全錫奎)과 경기도에서 온 1명(鄭二祐)은 약을 캐고, 나머지 2명(延日)은 烟竹을 베고 있었다.³⁸⁹⁾

이규원은 울릉도에 읍을 설치할 것이라는 국왕의 명에 따라 농사지를 땅도 자세히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 섬의 중심지인 羅里洞은 들이 넓고 기름져 밭을 일군다면 1,000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지목되었다. 또 大黃土邱尾·黑斫支·千年浦·倭船艙·大苧浦·小苧浦·道方廳·長斫之·谷浦 등에도 논밭을 일굴 수 있어, 각각 100~300호쯤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꼽혔다. 산물로는 산삼을 비롯한 많은 약재와 水牛(可支魚, 강치) 등 풍부한 해산물이 있으며, 뽕나무·닥나무·苧草 등이 자라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포구로는 소황토구미, 대황토구미 등 14곳을 확인했는데, 파도가 심하고 사방이 절벽으로 에워싸여 있어 정박하기가 어려운 것을 아쉬워했다. 하지만 이규원은 울릉도의 뱃사람이나 약초 캐는 사람들이 모두 울릉도를 개척한다면 이를 따를 의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울릉도 검찰에서 돌아와 국왕에게 울릉도 개척을 건의하였다.³⁹⁰⁾

이규원은 특히 조사 마지막 날인 5월 10일³⁹¹⁾에는 道方廳(현재 도동

388) 李奎遠, 『鬱陵島檢察日記啓草本』 「鬱陵島檢察日記」와 「啓草本」에는 조선인 수 조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계초본」을 따랐다; 이하 울릉도 검찰 내용에 대해서는 송병기, 앞의 책, 149~153쪽 참조.

389) 李奎遠, 『鬱陵島檢察日記』; 이해은·이형근, 앞의 책.

390) 李奎遠, 『鬱陵島檢察日記』; 이해은·이형근, 위의 책; 『高宗實錄』 권 19, 고종 19년(192) 6월 5일(己未).

391) 이규원이 울릉도에 일본인을 적발하여 문답한 날짜는 『鬱陵島檢察日記』에는 5월 10일, 「啓草本」에는 5월 5일조에 기록되어 있어 정확히 어느 날인지는 알 수 없다.

리)에서 왜인 板幕을 발견하여 그 안에 있던 일본인 6~7명과 필담을 나누었다. 이규원의 질문에 일본인들은 東海道, 南海道, 山陽道 사람들로써 2년 전부터 벌목을 시작했으며 금년 4월에 다시 이곳에 와서 벌목하고 있다고 답했다.³⁹²⁾ 그들은 1881년에 조선 정부가 일본 외무성으로 照會를 보내 벌목 금지를 촉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에 대한 약속과 달리, 그 연해민들에게 울릉도 출입 금지를 지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南浦槻谷에 표목이 있고, 일본제국지도와 여지전도에 모두 松島라고 칭하고 있어 이곳을 일본의 松島로 알고 있다고 이규원에게 답했다.³⁹³⁾ 이 표목은 이규원이 5월 6일 長斫之浦에서 桶邱尾로 가는 도중 발견했던 ‘大日本國松島槻谷’ ‘明治二年二月十三日’ ‘岩崎忠照 建之’라고 쓰인, 즉 1869년(고종 6)에 세워진 길이 6척·너비 1척의 표목을 가리키는 것이다.³⁹⁴⁾

이규원은 울릉도에 일본인 78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하던 일을 그만두고 빨리 돌아가도록 타일렀다.³⁹⁵⁾ 이러한 사실은 일본 측 기록인 야마모토 오사미(山本修身)의 「復命書」에서도 확인된다. 이 복명서에 의하면, 이규원 검찰사 일행이 조선령인 울릉도에서의 일본인 수목 벌채에 대해 항의하자, 일본인 일행 중 후지쓰 마사노리(藤津政憲)가 설립한 아사히 구미(旭組) 에히메현(愛媛縣) 사람 우치다 히사나가(内田尚長)는 “만국공법에 의하면 무인도는 발견한 자가 3년간 그 땅에 거주할 때는 소유권이 있으니 벌채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항변했다. 그의 항변에서 국제법의 법리 일부를 활용하여 울릉도 벌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사 일행이 만약 그렇다면 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에 照覆할 일인데, 지금 남김없이 울릉도를 떠나면 일본 정부에 조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일본인들은 앞으로 울릉도에 도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물러났다고 한다.³⁹⁶⁾

392) 李奎遠, 「鬱陵島檢察日記」; 이해은·이형근, 앞의 책, 158쪽.

393) 李奎遠, 「鬱陵島檢察日記」; 이해은·이형근, 위의 책, 158~159쪽.

394) 李奎遠, 「鬱陵島檢察日記」; 이해은·이형근, 위의 책, 195쪽.

395) 李奎遠, 「鬱陵島檢察日記」; 이해은·이형근, 위의 책, 159쪽.

또 이규원은 울릉도 외에 송죽도나 우산도, 또는 송도, 죽도 등이 있으니 이를 살펴보라는 국왕의 명에 따라 울릉도를 돌면서 향목구미, 황토구미 등 포구는 물론 주변 섬들도 두루 살폈다. 船板邱尾(섬목)의 남쪽 바다에서는 竹島(땃섬)와 島項(현 관음도)이 있는데 소가 누워서 하나는 좌로 돌고 하나는 우로 도는 듯하며 서로 안고 있는 형세라고 표현했다. 이 섬에는 작은 대와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³⁹⁷⁾ 이규원은 배를 타고 울릉도를 도는 것 외에 聖人峰 정상에도 올랐다. 그곳에서 사방을 바라보았는데 한 점의 섬도 보지 못했다. 결국 이규원은 육안으로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다.³⁹⁸⁾

이규원은 울릉도를 검찰하고 돌아와 국왕에게 보고할 때에도 “맑은 날에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 천리를 엿볼 수 있으나 돌 한주먹, 흙 한줌도 보이지 않으므로 우산을 울릉이라 호칭하는 것은 耽羅를 濟州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아뢰었다.³⁹⁹⁾ 이 말은 제주도가 옛 탐라국이었던 것이 울릉도는 옛 우산국이었던다는 의미이다.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는 이규원이 울릉도에 ‘松島楓谷’이라고 쓴 일본 측 풋말을 국왕에게 보고했던 점에 주목하여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우산도=松島=울릉도’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이규원이 울릉도 이외에 우산도를 찾지 못하여 해당 시점에서 松島는 울릉도를 지칭한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우산도는 오늘날의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⁰⁰⁾

이규원이 독도를 찾지 못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앞에 서술했던 것처럼 이규원은 울릉도 검찰을 떠나기 전부터 국왕과 우산도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그런데 이규원의 보고를 국왕이 그대로 수용했다거나, 조선 조정

396) 山本修身, 「復命書」, 『明治十七年 蔚陵島一件錄』, 山口縣文書館 소장; 박병섭, 앞의 책, 95~96쪽.

397) 李奎遠, 「蔚陵島檢察日記」; 이혜은·이형근, 앞의 책, 157~158쪽.

398) 사실상 성인봉에서는 사방의 바다가 보이지 않으며, 독도가 있는 동쪽은 산등성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독도를 발견할 수 없다. 더욱이 이규원이 성인봉에 오른 날인 음력 5월 4일은 양력으로 6월 19일이므로 맑은 날이라도 습도가 높아서 독도 관측이 어려운 시기였다(이혜은·이형근, 위의 책, 174쪽).

399) 李奎遠, 「蔚陵島檢察日記」; 이혜은·이형근, 위의 책, 196쪽.

400) 池內敏, 앞의 책, 228~229쪽.

에서 독도가 조선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 같은 시기 일본 외무성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일행의 조선 출장 보고서인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의 「竹島·松島가 조선의 부속으로 된 경위(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는 松島(독도)가 조선의 부속이라는 점을 보고했다. 특히 당시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은 내무성에 ‘竹島 외 1도 건에 대해 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伺之趣竹島外一嶋之義本邦關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이라는 지령을 내렸다. 앞서 설명했듯이 여기서의 ‘1도’는 독도를 가리킴이 명백하다.

또한 메이지 정부의 관찬지도 중에도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기한 지도가 단 한 점도 없다. 예를 들어 육군참모국의 「大日本全圖」(1877), 문부성의 「日本帝國全圖」(1877), 내무성 지리국의 「大日本府縣管轄圖」(1879), 「大日本國全圖」(1880), 「大日本府縣分割圖」(1881) 등은 모두 독도를 일본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외에도 ‘水路誌’ 등 일본 메이지정부가 독도를 조선령과 동일하게 취급했거나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한 근거 자료들은 무수히 많다.⁴⁰¹⁾ 이에 반해 이규원의 보고를 받은 조선 조정은 이내 내륙민들의 울릉도 이주를 추진하여 울릉도 개척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극명히 대비되는 측면이라 할 수 있겠다.

3. 조선의 울릉도 개척과 일본의 「蔚陵島 渡航禁止令」

1) 울릉도 개척령 시행과 島長制 실시

401)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나는 울릉도, 독도 인식에 관해서는 한철호의 「일본 해군 수로부의 오키 측량과 독도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65,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일본 수로부 간행의 수로지와 해도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1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일본 수로부의 「조선전안」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한국사연구』 169, 한국사연구회, 2015;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동북아역사논총』 50, 동북아역사재단, 2015 등에 상세하다.

울릉도검찰사 李奎遠은 1882년(고종 19) 5월 27일 울릉도 검찰을 마치고 돌아와 書啓와 別單, 그리고 지도(鬱陵島內圖·外圖) 등을 국왕에게 제출했다. 이를 받아 본 국왕 高宗은 1882년 6월 5일 이규원을 召見했다. 이 자리에서 국왕은 (1) 나리동에 읍을 설치할 수 있는지, (2) 울릉도를 개척한다면 백성들이 즐거이 따를지, (3) 선박이 정박할 부두가 있는지 등 울릉도 개척 가능성을 이규원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이규원은 (1) 鎭이나 邑을 설치하기에 羅里洞이 가장 적합하고, (2) 현지에 있는 뱃사람이나 약재상에게 개척시 이주에 따를 것인지 물으니 대부분 즐거이 따르겠다고 답하며, (3) 여러 포구가 모두 돌과 자갈로 되어 있어 착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또 일본인들이 松島라는 뜻말을 세운 데 대한 국왕의 우려에 대해 이규원은 우선 주한일본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에게 公翰을 보내지 않을 수 없으며, 일본 外務省에도 서한을 보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규원의 건의를 받아들인 국왕은 “비록 작은 땅이라도 버릴 수 없다(雖片土不可棄也)”고 강조하면서 일본 측에 관련 사실을 통고할 뿐 아니라, 울릉도 개척도 속히 시행할 것을 명했다. 이에 대해 이규원도 “비록 한 치의 땅이라도 祖宗의 강토인데 등한히 내버려둘 수 없다”고 답하며 울릉도 개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⁴⁰²⁾

국왕의 울릉도 개척령에 따라 1882년(고종 19) 8월 20일 국왕과 대신들이 모여 울릉도 개척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영의정 洪淳穆은 울릉도가 바다 가운데 외딴 곳에 있는 미개척지로서 땅이 비옥하고 기름지다고 들었음을 언급하며, 울릉도 개척에 관해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첫째, 우선 백성을 모집해 개간하되 5년 후부터 세를 걷으면 저절로 취락이 형성될 것이다. 둘째, 영·호남의 漕船이 울릉도에 와서 나무를 베어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니 이것은 지금 도모할만한 일이다. 셋째, 만약 도맡아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면 온갖 폐단을

402) 『高宗實錄』 권 19, 고종 19년(1882) 6월 5일(己未); 『承政院日記』 134책, 고종 19년(1882) 6월 5일.

막기 어려우므로 검찰사에게 문의해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을 島長으로 差送하여 제도를 정하고 규범을 두어 후일에 鎭을 설치할 뜻을 미리 강구하도록 강원도관찰사에게 분부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⁴⁰³⁾ 영의정 홍순목의 건의를 받은 국왕은 이를 즉시 윤허했다.⁴⁰⁴⁾ 울릉도 개척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 확정된 것이었다.⁴⁰⁵⁾

영의정 홍순목의 건의대로 울릉도 개척을 위해 蔚陵島長을 임명했다. 초대 도장은 강원도관찰사의 명으로 울릉도에 거주하던 全錫奎가 임명되었다(8월 말).⁴⁰⁶⁾ 그는 울릉도에 들어온 지 이미 10년이 된 경상도 함양의 士族 출신으로 약초 캐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울릉도 사정에 밝았던 그를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이 천거하여 도장으로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⁴⁰⁷⁾ 또 10월경에는 平海郡守를 강원도관찰사 명으로 위촉하고, 울릉도 도장 전석규와 협의하여 개척사업을 주관하게 했다.⁴⁰⁸⁾

울릉도 개척을 담당할 관리의 임명을 마친 이듬해(1883) 3월에는 叅議 交涉通商事務 金玉均이 東南諸島開拓使兼捕鯨等事에 임명되었다.⁴⁰⁹⁾ 고종이 명한 김옥균의 임무는 개척과 捕鯨 외에 沿邊의 열읍을 일체 살펴 백성구제와 흥리, 폐단을 바로잡아 처리하는 일 등이었다.⁴¹⁰⁾

403) 『高宗實錄』 권 19, 고종 19년(1882) 8월 20일(癸酉); 『承政院日記』 134책, 고종 19년 8월 20일.

404) 『高宗實錄』 권 19, 고종 19년(1882) 8월 20일(癸酉); 『承政院日記』 134책, 고종 19년 8월 20일.

405) 송병기, 앞의 책, 177~178쪽.

406) 『江原道監營關牒』(奎章閣 소장), 壬午 9월 초6일 到付.

407) 송병기, 위의 책, 178쪽.

408) 『江原道監營關牒』(奎章閣 소장), 壬午 10월 일.

409) 『承政院日記』 134책, 고종 20년(1883) 3월 16일; 東南諸島의 범위에 대해서는 ‘東南道’가 경상도의 옛이름이기 때문에 이 지역 연안의 개척을 담당했을 것이라는 견해(이혜은·이형근, 앞의 책, 11쪽), 울릉도, 제주도 등을 비롯한 동·남해안 전체와 전라도에 접한 섬까지 고려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박은숙,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과 영토·영해 인식-울릉도·독도 인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6, 2012, 106~109쪽) 등이 있다.

410) 『承政院日記』 134책, 고종 20년(1883) 4월 20일; 이 외에도 이광린은 김옥균의 임무가 울릉도의 자원과 동해의 고래잡이를 담보로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얻는데 있었다고 하고(이광린, 『開化黨研究』, 1973, 일조각, 59~60쪽), 송병기는 울릉도 개척과 이민도 그 주요한 임무의 하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송병기, 위의 책, 178~179쪽).

4월부터는 내륙인의 울릉도 이주가 시작되었다. 1차로 약 30여 명의 이주가 있었다. 그들은 선박 4척, 沙格(선원) 40명, 벼·콩·조·팥 등의 씨앗, 30여 명이 9월까지 먹을 수 있는 백미 60석, 소 암수 각 1마리와 일상에 필요한 철물, 가마솥, 사기그릇, 수저, 돛자리, 무명베, 삼베, 삼신발, 짚신, 항아리 등을 준비했다. 또 총 3자루, 창칼 각 4자루, 철환 3백개, 화약 3근, 화승 50발, 銅爐口(군사용 작은 솥) 2좌 등 무기들을 준비하여 예기치 못한 일본과의 충돌을 대비한 것으로 생각된다.⁴¹¹⁾

4월경의 1차 이주에 이어 2차로 약 20여 명의 추가 이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관찰사 명의로 7월 작성된 「光緒 9年 7月 日 江原道 蔚陵島 新入民戶 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數 彙成冊」에 의하면, 이 해 내륙에서 울릉도로 이주한 정착민은 16호 54명이었다. 출신 도별로는 강원 39(江陵 26, 蔚珍 13), 경상 11(咸陽郡 安義面 5, 慶州 2, 大邱·善山·延日·安東 각 1), 충청 3(忠州), 경기 1명이었고, 남녀별로는 남 36, 여 18명이었다.⁴¹²⁾

울릉도 이주민들은 大黃土浦(태하 16명)·谷浦(남양 5명)·錐峰(송곳산 8명)·玄浦洞(현포 25명) 등지로 흩어져 터전을 잡고 개간과 영농에 종사하였다. 그 결과 310斗落(대황토포 100·곡포 45·추봉 80·현포동 85두락)의 농토를 개간하게 되었다.⁴¹³⁾ 이는 정부의 지원과 이주민들의 노력에 의하여 울릉도 개척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⁴¹⁴⁾

한편, 강원도관찰사 문서에 기록된 16호 54명은 새로 入居한 사람들의 명단이고 기존에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비공식적인 이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 거주민인 홍순철의 수기에 의하면, 그의 조부인 洪在現씨가 1883년 4월 초8일 강릉에서 4일간 뱃길로 북면 현포리에 당도했는데, 그때 두 가구의 주민이 있었다고 한다.⁴¹⁵⁾ 또 1882년 이규원

411) 「光緒 9年 4月 日 蔚陵島 開拓時 船格糧米雜物容入假量成冊」(규장각 소장).

412) 「光緒 9年 7月 日 江原道 蔚陵島 新入民戶 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數 彙成冊」(규장각 소장).

413) 「光緒 9年 7月 日 江原道 蔚陵島 新入民戶 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數 彙成冊」(규장각 소장).

414) 송병기, 위의 책, 178쪽.

이 울릉도를 검찰하던 당시 초막을 짓고 살고 있었던 초대 도장 전석규의 경우에도 새로 이주한 사람들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당시 울릉도 거주민은 새로 이주한 54명과 기존에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54명보다는 많은 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내륙민의 울릉도 이주가 계속되면서 1884년(고종 21) 3월 三陟營將을 鬱陵島僉使兼三陟營將으로 삼고 그가 직접 울릉도 현지 형편을 살펴 入駐를 도모케 했으며, 강원도관찰사가 배치에 관한 것을 조치토록 했다.⁴¹⁶⁾ 鬱陵島僉使制가 실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해(1884) 6월에는 삼척영장이 例兼하던 울릉도첨사를 平海郡守가 예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定州牧使 李暉를 平海郡守兼鬱陵島僉使로 임명했다.⁴¹⁷⁾ 울릉도 개척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제도적 정비와 함께 이주도 본격화되어 1884년 7월 울릉도 호수는 60여 호로 크게 늘어났다.⁴¹⁸⁾

1888년(고종 25) 2월 內務府는 울릉도가 해로의 요충지여서 개척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처음 개척시에 갖추어진 규제를 아직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애로가 많음을 국왕에게 아뢰고, 平海郡 三陟浦鎭管 越松浦水軍萬戶가 울릉도 도장을 예겸하고 울릉도에 왕래하며 검찰토록 할 것을 건의했다. 국왕은 이를 곧 윤허하였다.⁴¹⁹⁾ 울릉도 僉使制가 島長制로 변경된 것이다. 첫 도장에는 전 도장인 越松浦水軍萬戶 徐敬秀가 임명된 것으로

415) 홍순철,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철 대장 수기 이 땅이 뉘 땅인데!』, 13쪽; 김호동,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7, 146쪽~150쪽.

한편, 김호동은 홍재현 가구를 새로 이주한 16호 54명이 울릉도에 들어오기 이전 4월에 들어온 사람으로 분류하고 이처럼 개별적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홍재현의 후손인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증언에 의하면, 「光緒 9年 7月 日 江原道鬱陵島新入民戶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數爻成冊」에 기록된 洪景燮의 차남 洪在敬이 홍재현과 출생년이나 가족 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16) 『高宗實錄』 권 21, 고종 21년(1884) 3월 15일(庚寅); 『日省錄』, 고종 21년(1884) 3월 15일.

417) 『高宗實錄』 권 21, 고종 21년(1884) 6월 30일(壬寅); 『日省錄』, 고종 21년(1884) 6월 30일.

418) 『日省錄』, 고종 21년(1884) 7월 15일(丁巳); 『承政院日記』 134책, 고종 21년(1884) 7월 13일.

419) 『承政院日記』 136책, 고종 25년(1888) 2월 6·7일.

보인다.⁴²⁰⁾ 또 울릉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假島長 혹은 島首를 두기도 했다. 가도장으로는 金演泰가 임명되었다.⁴²¹⁾

울릉도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울릉도 첨사제, 도장제 등의 제도적 정비에 따라 울릉도 수토제도에도 자연스레 변화가 생겼다. 종래 삼척영장과 월송포만호가 하던 것을 평해군수가 울릉도첨사를 예겸(1884) 하게 되면서 평해군수와 월송포만호가 번갈아가며 수토하게 되었다. 또 1888년(고종 25) 울릉도 도장제가 실시되면서 월송포만호가 울릉도장을 겸임하면서 수시로 왕래하며 수토를 전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⁴²²⁾ 겸임 도장은 매년 울릉도를 수토하고, 그때마다 종래의 예처럼 지도, 토산물, 인구 호수, 남녀인구, 개간 면적 등을 보고하였다.⁴²³⁾

그런데 1893년(고종 30)에는 평해군수 趙鍾成이 다시 평해군수와 월송포만호가 번갈아가며 울릉도를 수토하는 것으로 복구하기를 건의하여, 평해군수를 수토관으로 임명 파견했다. 이듬해인 1894년(고종 31)에도 평해군수를 查檢官으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²⁴⁾

한편, 울릉도 개척이 본격화되었으나 아직 民務가 초창기여서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했다. 이에 따라 1892년(고종 29) 宣傳官 尹始炳을 울릉도로 파견하여 울릉도의 情形을 검찰하게 하고, 여러 사무를 선전관의 布諭에 따라 거행하게 했다.⁴²⁵⁾

1883년 내륙민이 첫 이주가 시작된 이래 울릉도 개척은 빠르게 진행되

420) 『江原道關草』, 丁亥(1887) 5월 22일·戊子(1888) 7월 10일.

421) 『江原道關草』, 戊子(1888) 7월 10일·戊子(1888) 11월 28일·己丑(1889) 8월 11일·庚寅(1890) 8월 10일; 송병기, 앞의 책, 180쪽.

422) 『江原道關草』, 壬辰(1892) 12월 9일·癸巳(1893) 3월 12일; 『承政院日記』 136책, 고종 25년(1888) 2월 6·7일.

423) 『江原道關草』, 戊子(1888) 7월 10일·己丑(1889) 7월 17일·庚寅(1890) 7월 19일·辛卯(1891) 8월 16일·壬辰(1892) 7월 14일.

424) 『江原道關草』, 壬辰(1892) 12월 9일·癸巳(1893) 3월 12일·9월 20일·11월 8일.

425) 『統椽日記』, 壬辰(1892) 1월 23일; 『江原道關草』, 壬辰 2월 1일; 동 관문에서는 울릉도 개척 시점을 1885년으로 기록했는데, 이는 다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관문에서도 동일하다(『江原道關草』, 壬辰 12월 9일). 아마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울릉도 개척이 본격화된 시점을 1884년 울릉도 첨사제가 실시된 이후로 여긴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선전관 윤시명을 鬱島檢察事宜, 또는 鬱陵島檢察使로 기록했다(『統椽日記』, 壬辰 7월 24일·8월 27일).

어 왔다. 그리하여 1896년(건양 원년) 9월경 울릉도에서 작성한 통계에 의하면, 도내 동리 수는 11동(저포동·도동·사동·장흥동·남양동·현포동·태하동·신촌동·광암동·천부동·나리동), 호구 수는 277호 1,134명(남 662·여 472), 개간 농지는 4,774.9두락에 이르게 되었다.⁴²⁶⁾ 1883년(고종 20) 첫 이주 당시의 16호 54명, 310두락과 비교한다면, 호구는 17배, 인구는 21배, 농지는 15.3배가 증가했다. 이와 같은 민호의 증가에는 부세와 요역의 감면 혜택도 상당수 영향이 있었을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책도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⁴²⁷⁾

이처럼 1894년(고종 31)을 전후하여 민호와 개간 농지가 늘어나는 등 울릉도 개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기존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1894년(고종 31) 12월 慶尙道慰撫使 李重夏는 강원도·경상도의 울릉도 搜討 船格·什物의 폐지를 건의했다. 이미 개척이 진행된 울릉도에 대한 수토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⁴²⁸⁾ 이에 따라 3년에 한번, 1888년부터는 해마다 실시되던 울릉도 搜討制度가 폐지되었다. 영의정 南九萬의 울릉도 수토 건의(1694) 후 수토가 정식화된 1697년(숙종 23년) 이래 197년만의 일이었다.

1895년(고종 32) 1월(양2월) 내부대신 朴泳孝의 건의에 따라 월송포만호의 울릉도장 겸임을 減下하는 대신 島長을 정하여 울릉도의 사무를 관할하게 하고, 매년 수차 배를 보내어 도민의 疾苦를 묻도록 했다.⁴²⁹⁾ 울릉도에 전임도장을 두도록 정한 것이다. 의정부는 평해군에 울릉도 수토제를 폐지하고 도민 중에 도장을 삼을 것이니 다시 지시를 기다리라고 통보했다(2.3).⁴³⁰⁾

전임도장제 실시 결정을 내린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1895) 8월

426) 『독립신문』, 建陽 2년(1897) 4월 8일 외방통신.

427) 울릉도민의 부세와 요역의 면제는 개척이 시작되는 1882년(고종 19)에 5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그 뒤에도 계속 부세와 요역이 면제되었다(『江原道關草』, 甲午(1894) 정월 7일). 다만 울릉도에서는 호남인으로부터 藿稅와 造船稅를 거두었을 뿐이었다(禹用鼎, 『鬱島記』); 송병기, 앞의 책, 182~183쪽.

428) 『高宗實錄』 권 32, 고종 31년(1894) 12월 27일(己巳).

429) 『高宗實錄』 권 33, 고종 32년(1895) 1월 29일(辛丑); 『奏本』 제94호, 개국 504년(1895) 정월 29일.

430) 『校正廳關抄』, 고종 32년(1895) 2월 3일 平海.

(양10월), 내부는 거주민들이 개척하고 취락을 이루었으나 정부의 통치가 없으면 어지러운 근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울릉도민 중에서 島監을 임명해야 한다는 請議書를 閣議에 올렸다(8.13). 이에 따라 내각은 울릉도에 도감을 임명한다는 내부의 청의를 결정하고 국왕에게 이를 건의했다(8.14). 도감의 봉급은 울릉도 세입을 查檢하여 酌定하기 전에 우선 頒放(녹봉)은 없는 조건이었다.⁴³¹⁾

국왕 고종은 내각에서 결정된 울릉도 도감 임명을 곧 재가하였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울릉도 도감제 실시를 반포했다(8.16).⁴³²⁾ 초대 도감에는 울릉도 거주민인 裴季周⁴³³⁾를 判任官 대우로 임명(9월 20일)했다.⁴³⁴⁾

431) 『議奏』(奎章閣 소장) 제514호, 개국 504년 8월 14일. 원문은 다음과 같다.

第五百十四號

蔚陵島에 島監을 置ᄃᆞ는 件을 謹上奏ᄃᆞ옵ᄃᆞ이다.

開國五百四年八月十四日

內閣總理大臣 臣 金弘集

內部大臣 臣 朴定陽

第三百二十九號

開國五百四年八月十四日

別紙 內部大臣 請議ᄃᆞ 蔚陵島에 島監을 擇置ᄃᆞ는 件은 案호니 該島가 海水中에 孤立ᄃᆞ고 舟楫通行이 極罕ᄃᆞ야 居民이 政府의 命令을 不知ᄃᆞ고 또 統率ᄃᆞ는 者도 無ᄃᆞ니 該島民中에서 島監을 擇任ᄃᆞ기도 不得已ᄃᆞ 事오 또 面執綱例로 官頒放은 無ᄃᆞ케ᄃᆞ다 ᄃᆞ니 官制와 國庫經費에도 關係치 아니ᄃᆞ야 無妨ᄃᆞ오니 請議ᄃᆞᄃᆞ로 閣議決定되오미 可ᄃᆞ므로 認ᄃᆞᄃᆞ이다.

指令案

蔚陵島에 島監을 擇置ᄃᆞ는 件은 請議ᄃᆞᄃᆞ로 閣議決定후 上奏ᄃᆞ야 裁可ᄃᆞ시ᄃᆞ 經함.

第一百三十三號

蔚陵島에 島監을 擇置ᄃᆞ는 請議書

右는 該島가 海水中에 孤立ᄃᆞ야 陸地에 距離는 絶遠ᄃᆞ고 舟楫의 通行은 極罕ᄃᆞ야 居民이 政府에 命令을 不知ᄃᆞ는 中에 官置ᄃᆞ 管攝者가 無ᄃᆞ야 于移住ᄃᆞ 民人이 榛蕪를 開拓ᄃᆞ고 聚落을 成ᄃᆞ나 統率ᄃᆞ는 權이 無ᄃᆞ면 散亂ᄃᆞ 患을 免치 못ᄃᆞ지니 本土人中에서 最其堪勝ᄃᆞ 者를 擇ᄃᆞ야 島監에 任하고 其俸給은 嗣後 該島歲入을 查檢ᄃᆞ야 酌定ᄃᆞ기 前에는 姑且地方面執綱例로 官頒放은 無ᄃᆞ게ᄃᆞ미 合當ᄃᆞ을 듯 此段을 閣議에 提出ᄃᆞ.

開國五百四年八月十三日

內部大臣 朴定陽

內閣總理大臣 金弘集 閣下 查照

432) 『高宗實錄』 권 33, 고종 32년(1895) 8월 16일(甲申); 『官報』, 개국 504년 8월 16일.

433) 배계주는 仁川 永宗島 출신으로 개척 초에 입거한 사람이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本省機密往信(明治 33年), 機密 第133號).

434) 『官報』, 개국 504년 9월 20일.

이로써 울릉도는 수토제도를 통해 통치하던 방식에서 울릉도에 상주하는 거주민 중에 공식적인 첫 수장을 뽑아 직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울릉도 통치에 획기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지방 관제에 편입된 것이 아니었다. 울릉도가 지방관제에 편입되는 것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 의해서였다.

2) 조선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의 「蔚陵島 渡航禁止令」 실시

1881년(고종 18) 조선 정부는 울릉도 搜討使가 울릉도에서 벌목 중인 일본인들을 적발한 후, 1881년 5월(양7월) 예조판서 沈舜澤이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항의하는 서계를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의 「竹島版圖所屬考」(1881.8)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이미 철수하여 돌아갔으며 다시 금령을 申飭하겠다고 하는 서계를 주조선일본공사관 사무서리 소에다 다카시(副田節) 명의로 해서 經理總理機務衙門事 李載冕에게 전달했다(12.15).⁴³⁵⁾ 그러나 실제 일본인들은 울릉도에서 철수하지 않았고, 1882년(고종 19) 울릉도 檢察使 李奎遠은 울릉도에서 벌목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적발하였다.

검찰에서 돌아온 이규원은 長斫之浦에서 桶邱尾로 가는 도중 ‘大日本國 松島槻谷’이라고 쓰인 표목을 발견했다고 국왕에게 보고하고, 주한일본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와 일본 외무성에 公翰을 보낼 것을 건의했다. 이규원의 건의를 받아들인 국왕은 “비록 작은 땅이라도 버릴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총리대신과 시임대신에게 울릉도 개척과 함께 일본 외무성에 항의할 것을 지시했다(1882.6).⁴³⁶⁾

국왕 지시에 따라 예조는 예조판서 李會正 명의로 일본 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게 조회했다(1882.6, 양8월). 그 주요 내용은 조선 조

435)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舊韓國 外交文書』 「日案」 1, 文書番號 75.

436) 『高宗實錄』 권 19, 고종 19년(1882) 6월 5일(己未); 『承政院日記』 134책, 고종 19년(1882) 6월 5일.

정이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항의하는 서계를 보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미 울릉도 벌목을 금지하고 철수하여 돌아갔다고 했으나, 울릉도검찰사 이규원 시찰에 따르면 일본인의 벌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는 법을 정하여 울릉도 벌목을 엄격히 방지해 전과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⁴³⁷⁾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의 위와 같은 항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회답 서계도 보내지 않았다.

이즈음 조선에서는 임오군란(6월)이 일어나서 일본공사관의 피습, 別技軍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 외 수 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興宣大院君이 청국에 피랍(7월)되는 등 정국이 요동쳤다. 일본 정부는 피해 보상과 거류민 보호 등을 내세우면서 무력을 배경으로 교섭을 추진하여 조선과 일본 사이에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었다(7.17, 양8.30). 제물포조약 비준을 위해 일본에 건너갔던 修信使 朴泳孝는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경에게 일본인의 울릉도 벌목에 대해 항의하고 이를 곧 엄금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⁴³⁸⁾

박규수를 통해 조선 정부의 항의를 재차 받은 이노우에 외무경은 태정 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에게 公第 272號로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1882.12).

우리나라 사람이 조선국 소속 蔚陵島(邦人は 竹島, 또는 松島라 한다)에 도항하여 함부로 伐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a)작년 7월에 조선 정부로부터 조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지하겠다고 회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別紙 甲號와 같이 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또 도항자가 있게 되면 조선 정부에 대해 교제상 모양새가 나쁠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禁葷이 인민에게 미치지 못함을 보여줄 염려조차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정부에는 다케조에(竹添) 辦理公使를 통해 도항을 금지하겠다는 답서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후 잘못된 생각이 없도록 乙號 초안의 취지를 바탕으로 內務卿이 각 府縣에 諭達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437)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承政院日記』 134책, 고종 19년(1882) 6월 16일(庚午).

438) 『修信使記錄』(『使和記略』, 고종 19년 9월22일); 이선근, 앞의 논문, 313~314쪽; 송병기, 앞의 책, 170~171쪽.

위의 유달 건은 최근 (b)京城變亂에 대하여 조선 정부와 조약을 교환하고자 하여 조선의 사절도 滯京 중이므로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인식되어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諭達文 가운데 該島에 관해서는 조선 정부와 議定했던 연월을 삽입해 둠으로써 옛날부터 조선국에 속해 있었으며, 새삼 오늘날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케 할 것이며, 유달의 뜻은 단지 해도의 위치를 명시하여 도항을 금지하는 것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령 건도 조선 사절이 귀국한 후가 되도록 할 것을 상신합니다.

明治 15년(1882) 12월 16일

外務卿 井上馨

太政大臣 三條實美 殿

추후 위의 (c)諭達을 어기고 該島에 들어가 몰래 매매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日韓貿易規則 제9칙에 근거하여 처분하며, 樹木을 盜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형법 제373조에 따라 처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취지를 미리 司法卿이 각 재판소에 內訓해 주시기 바랍니다.

「竹島版圖[所屬]考」 1책을 참고로 제출합니다.439)

439)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송병기,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출판부, 2004, 182~187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我邦人朝鮮國所屬蔚陵島^{我邦人竹島}へ渡航シ妄ニ伐木致候者有之趣 客歲 七月中朝鮮政府ヨリ照會有之候間 即チ申禁可致旨相答置候處 尙又今般別紙甲號之通り照會有之候就テハ今後尙渡航者有之候テハ彼政府へ對シ交際上不都合ノミナラス我政府ノ禁令人民ニ及ハサルヲ示スノ嫌ナキ能ハス 依テ朝鮮政府へハ竹添辦理公使ヲ以テ申禁可致旨返翰差遣ハシ可申候 且此末心得違無之様乙號草案之意ヲ以テ內務卿ヨリ各府縣へ諭達相成候様仕度候

尤モ右諭達之義ハ近時京城變亂ニ付彼國政府ト條約交換有之際ニテ同國使節モ滯京中ノ事ニ候へハ 其等ニ因緣候様ニ世上へ感觸ヲ來シ候テハ不都合ニ被存候間 諭達文中ニモ該島ニ付朝鮮政府トノ議定セシ年月ヲ插入致置從來朝鮮國ニ屬シ特ニ今日ニ定ムルモノニ非ラザルヲ引證シ 諭達ノ意ハ單ニ該島ノ位置ヲ明示シ渡航ヲ禁スルニ止マルモノニ有之候 右之次第二付 御發令ノ義モ朝鮮使節歸國相成候上ニ有之候様仕度此段上申候也

明治十五年十二月十六日

外務卿 井上馨[㊤]

太政大臣 三條實美 殿

追テ右諭達ニ背キ該島ニ至リ私ニ賣買ヲ爲ス者有之時ハ日韓貿易規則第九則ニ據テ處分シ樹木ヲ盜伐スル者有之時ハ我刑法第三百七十三條ニ據テ處分スヘキモノト被存候間右之趣ハ豫メ司法卿ヨリ各裁判所ニ內訓有之候様致度候

竹島版圖[所屬]考壹冊爲御參考差出候

일본은 1881년(고종 18)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에 대한 조선 정부의 항의를 받고 이미 일본인이 철수했다고 답변했었다(1881.12). 그러나 일본인은 철수하지 않았고, 1882년(고종 19)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의 일본인 적발로 재차 조선 측이 항의를 해오자 이노우에 외무경은 조선 정부에 대해 교제상 모양새가 나쁠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禁습이 인민에게 미치지 못함을 보여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a). 그러므로 조선 정부에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서계를 보내고, 일본의 각 부현에 유달토록 할 것을 태정대신에게 건의했다.

이노우에 외무경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금지를 태정대신에게 건의하면서 일본에 머물고 있던 수신사 박영효를 의식하여 유달문 가운데 울릉도에 관해 조선 정부와 議定했던 연월을 삽입할 것을 첨언했다. 이는 옛날부터 조선국에 속해 있었으며, 새삼 오늘날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박영효가 귀국한 후에 태정대신이 울릉도 도항금지령을 발령토록 건의(b)하는 등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노우에 외무경이 이러한 주의사항을 첨언한 것은 울릉도 도항금지령이 시기적으로 제물포조약(1882.7.7, 양8.30)과 관련하여 울릉도에 대한 새로운 협의가 있거나 이에 따른 보상으로 비취질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노우에 외무경은 추후 일본인이 울릉도 도항금지령을 어기고 몰래 울릉도에 들어가 매매 행위를 하면 日韓貿易規則(조일무역규칙, 1876.8.24) 제9칙440)에 근거하여 처분하고, 樹木을 盜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 형법 제373조에 따라 처분할 것도 태정대신에게 건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미리 司法卿이 각 재판소에 內訓토록 건의했다(c).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노우에 외무경은 태정대신에게 다음과 같이 諭達案을 건의했다.

440) 조일무역규칙 제9칙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 선척이 통상을 승인하지 않은 조선국 항구에 도착하여 사사로이 매매할 경우에는 該處 지방관이 조사하여 부근의 관리관에게 교부한다. 관리관은 모든 돈과 물품을 일체 몰수하여 조선국 관청에 넘겨준다”

諭達案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49분의 바다에 있는 蔚陵島(우리나라 사람은 竹島, 또는 松島라 부름)가 조선국의 관도임은 이미 겐로쿠(元祿) 연간(1688~1703)에 우리 정부와 조선 정부와의 사이에 議定한 바이다. 우리나라 인민이 함부로 該島에 도항하는 자가 있다고 하므로 앞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일이 없도록 管下 인민에게 告諭하고자 이를 전달한다.⁴⁴¹⁾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금지에 대한 외무성의 건의는 일본 정부의 방침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외무경의 훈령으로 주한일본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는 1882년 12월(1883년 양1월)에 예조판서 이병문(李秉文)에게 조회하여 벌목 금지를 약속했다. 그 요지는 이미 금령을 내렸으므로 이후 범법자를 조선 지방관이 색출해 부근의 일본 영사관에 인도하면 이들을 양국 修好條規 및 일본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한다는 것이었다.⁴⁴²⁾

參事院에서는 1883년 1월(양2월) 외무경이 건의한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금지 유달문을 심사 결의하여 태정대신과 사법경에게 울릉도 도항을 금하며, 금령을 범하여 밀무역과 盜伐을 하는 경우에는 무역규칙과 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는 이해(1883) 1월 22일(양3.1)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금지를 내무경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에게 다음과 같이 內達하였다.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49분에 자리 잡은 일본이 일컫는 松島(일명 竹島), 조선이 일컫는 蔚陵島는 중전에 彼我 정부 간에 議定한 바도 있다. 일본 인민이 함부로 도항하여 상륙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하여, 잘못

441)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송병기, 앞의 책, 182~187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諭達案

北緯三十七度三十分東經百三十度四十九分ノ洋中ニ在ル蔚陵島^{我國人竹島}ハ朝鮮國ノ版圖タルハ元祿年中既ニ我政府ト朝鮮國政府トノ間ニ議定スル所ニ有之候處我國人民妄リニ該島ニ渡航スルモノ有之趣ニ付今後心得違無之様管下人民へ告諭可致此旨相達候事

442)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日本外交文書』 15, 事項 10, 文書番號 159; 이선근, 앞의 논문, 315쪽;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172쪽.

오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각 지방 장관이 諭達할 것을 그 省에서 示達하도록 內達한다.⁴⁴³⁾

아울러 태정대신은 사법경 오키 다카토(大木喬任)에게도 울릉도에서 密商을 하는 자는 일한무역규칙 제9칙과 일본 형법에 의해 처벌한다고 다음과 같이 내달하였다.

이번에 別紙와 같이 內務卿에 지시한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該島에서 密商을 하는 자는 일한무역규칙 제9칙에 비추어, 중경죄를 범하는 자는 우리 형법에 비추어 처분하도록 각 재판소장에게 內訓해 둘 것을 내달한다.⁴⁴⁴⁾

위와 같이 태정대신은 울릉도 도항금지령을 내무경과 사법경에게 내달했다. 그런데 내무경에게 내린 내달은 1882년 12월 처음 외무경이 태정대신에게 상실했던 諭達案과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울릉도 지명이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다.

<표 3> 일본의 「울릉도 도항금지령」 관련 外務卿 諭達案과 太政大臣 內達

	外務卿 諭達案(1882.12)	太政大臣 內達(1883.3)
원문	蔚陵島(我國人竹島又ハ松島ト唱フ)	日本稱松島(一名竹島) 朝鮮稱蔚陵島
번역	蔚陵島(우리나라 사람은 죽도, 또는 송도라 부름)	일본이 일컫는 松島(일명 竹島), 조선이 일컫는 蔚陵島

[출전]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日本外交文書』 16, 事項 10, 文書番號 125; 송병기,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출판부, 2004, 182~187쪽.

443) 『日本外交文書』 16, 事項 10, 文書番號 125; 송병기,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출판부, 2004, 182~187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內達案

北緯三十七度三十分東經百三十度四十九分ニ位スル日本稱松島^{竹島}朝鮮稱蔚陵島ノ儀ハ從前彼我政府議定ノ儀モ有之日本人民妄リニ渡航上陸不相成候條心得違ノ者無之様各地方長官ニ於テ諭達可致旨其省ヨリ可相達此旨及內達候也

444) 위와 같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今般別紙ノ通內務卿へ上達候ニ付右ニ違反シ於該島密商ヲナス者ハ日韓貿易規則第九則ニ照シ重犯罪ヲ犯ス者ハ我刑法ニ照シ處分可致旨各裁判所長へ內訓可致置此旨及內達候也

외무경 유달안에서는 조선 명칭인蔚陵島를 앞에 두고 일본 명칭으로竹島, 松島를 註로 설명했던 반면, 태정대신 내달에는 일본 명칭인 松島와 조선 명칭인蔚陵島를 나열하면서도 일본 명칭에 ‘일명 竹島’라고 주를 달았다. 외무성은 1881년 8월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의 『竹島考證』과 이를 요약한 「竹島版圖所屬考」를 보고받았었다.⁴⁴⁵⁾ 두 보고서 모두 松島는 겐로쿠(元祿) 12년(1699)에 竹島라고 칭했던 울릉도로서 옛날부터 일본의 영역 밖의 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외무성은 태정대신에게 유달안을 상신하면서 울릉도가 소속한 조선의 명칭인蔚陵島를 먼저 언급하고, 일본의 옛 명칭인 竹島와 1881년 기타자와가 보고한 松島의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보다 한해 앞선 1881년 12월에도 내무성의 울릉도 개척 문의에 대해 회답하면서 ‘朝鮮國蔚陵島 卽竹島松島’라고 서술했었다.

그러던 것이 참의원 결정을 거치면서 태정대신의 내달문에서는 울릉도의 일본 명칭인 松島를 먼저 서술하고, 竹島라는 명칭을 주로서 설명하면서, 조선에서는 울릉도라고 칭한다는 사실만을 서술했다. 더욱이 태정대신의 내달문은 외무경의 유달문에서 서술되었던 울릉도가 “조선국의 판도임은 이미 겐로쿠(元祿) 연간(1688~1703)에 우리 정부와 조선 정부와의 사이에 議定한 바(朝鮮國ノ版圖タルハ元祿年中既ニ我政府ト朝鮮國政府トノ間ニ議定スル所ニ有之候處)”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다만 “중전에 彼我 정부 간에 의정한 바도 있다(從前彼我政府議定ノ儀モ有之)”라고만 서술하고 있다. 이노우에 외무경이 유달안을 상신하면서 일본에 머물고 있던 수신사 박영효를 의식하여 울릉도에 관해 조선 정부와 의정했던 연월을 삽입할 것을 건의했었으나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울릉도가 조선의 판도’라는 서술이 삭제되고, 어느 나라로 결정되었는지를 불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외무경이 유달안을 상신하면서 「죽도판도소속고」까지 첨부한 것을 감안할 때 울릉도가 조선령에 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후퇴된 표현

445) 『竹島考證』 下(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Ⅱ』, 다다미디어, 2006, 503~512 쪽);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임이 분명하다.⁴⁴⁶⁾ 그것은 아마도 참의원이 태정관에 내달안을 건의하면서 울릉도가 “그 위치를 보면 우리 오키국과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호칭도 우리 지명과 그다지 다르지 않으므로 순전한 우리 영역으로 오인하는 것 또한 심히 나무랄 수도 없다”고 한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금령을 어긴 일본인을 처벌은커녕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릉도가 조선령이라는 표현을 다소 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1883년 1월(양3월) 태정대신의 울릉도 도항금지 내달이 있었음에도 그해 후쿠오카현(福岡縣)의 하야세 이와헤(早瀬岩平) 등 80여 명이 울릉도에 潛入하여 수목과 어류를 密探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야마구치현(山口縣)의 사족(士族) 마쓰오카(松岡) 등 수십 명을 합쳐 일본 연해 각 현으로부터 울릉도에 잠입하는 자는 수백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조선 德源府使 鄭顯奭으로부터 일본인 울릉도 밀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고 받은 주원산 일본영사관의 소에다 다카시(副田節) 영사는 일본인 수백여 명이 계속해서 울릉도에 潛航하여 伐木 漁探를 하는 것은 조선 정부에 신의를 잃는 것은 물론 장차 조선 정부에서 항의해올 경우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며 본국 외무성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⁴⁴⁷⁾

소에다 원산 영사의 보고를 받은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는 우선 소에다 다카시에게 지시하여 하야세 이와쿠라 등 80여 명을 조속히 철수시킬 것임을 덕원부사에게 약속하도록 했다. 이어 하야세·마쓰오카 등의 原籍地인 후쿠오카현·야마구치현에 이들의 조속한 철수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울릉도에 잠입한 자 중에는 원적이 불명한 자도 있어 전원을 철수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노우에 외무경은 내무성이 관원을 파견하여 이들을 철수시킬 것을 태정대신에게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태정대신은 1883년 8월 일본인의 울릉도 철수를 내무성에 지시하였다(8.8 양9.8).⁴⁴⁸⁾

446) 이에 대해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외무성과 태정관 사이에 이 문제의 대응을 둘러싸고 온도차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池内敏, 앞의 책, 73~74쪽).

447)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日本外交文書』 16, 事項 10, 文書番號 126·127·128; 『善隣始末』, 附錄 「竹島始末」.

448) 위와 같다.

태정대신의 지시에 따라 내무성은 內務少書記官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技)와 隨員·巡檢 등 31명을 울릉도에 파견하였다(8월 하순, 양9월 하순). 히가키 일행은 기선 에치코마루(越後丸)를 이용하여 8월 27일(양9.27) 시나가와[品川]를 출발하여 9월 7일(양10.7) 울릉도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울릉도에서 벌목 어채를 하던 255명의 일본인을 에치코마루에 싣고 9월 14일(양10.14) 울릉도를 출발해 15일 바칸(馬關, 시모노세키)으로 돌아갔다. 내무성 관리들은 울릉도 島長 全錫奎로부터 단 한 명의 遺留者도 없다는 증서를 받기도 했다. 또 소에다 원산 영사는 9월 9일(양10.9)자로 덕원부사 정현석에게 조회하여 장차 일본 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해 울릉도의 일본인을 체포하여 처벌하겠다고 알리기도 하였다.⁴⁴⁹⁾

쇄환된 255명 중 243명은 야마구치현, 3명은 효고현(兵庫縣), 9명은 警視廳으로 인도되었다. 이들은 1886년(고종 23, 메이지 19)까지 해당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 조선 정부로부터 이들에 대한 여러 차례의 처벌 요구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 정부와의 약속과는 달리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다.⁴⁵⁰⁾ 판결의 주제는 “모든 재목 벌채의 건이 도둑질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해당 목재가 조선국 관리의 惠與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무죄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울릉도 도항에 대해서는 1883년 3월 1일자(양)의 태정대신 유달로 울릉도가 조선국에 속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입장을 취하며, 그 이전 시기의 울릉도 도항은 묵인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이노우에 외무대신도 불만을 표명하고, “울릉도가 구막부 때 이미 조선 정부와 왕복한 서류상에 그 소속을 공인한 事蹟을 불문에 부치고 도벌의 행위를 시인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판결을 비판하고,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국 교섭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처럼 공평치 못한 예를 만들어 그것 때문에 후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사법대신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⁴⁵¹⁾

449) 『日本外交文書』 16, 事項 10, 文書番號 130-131-132-133; 『善隣始末』, 附錄 「竹島始末」;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173~174쪽.

450) 『日本外交文書』 16, 事項 10, 文書番號 132-133;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 文書番號 204-277-316-479.

451) 『日本外交文書』 16, 事項 10, 文書番號 133, 메이지 19년(1886) 6월 22일부 야마다(山田) 사법대신의 이노우에(井上) 외무대신 앞 서한; 內藤正中, 앞의 책,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일본 정부는 대정대신의 울릉도 도항금지 유달이 있을 당시부터 외무성의 유달안과는 달리 울릉도가 조선 소속이라는 사실을 유달문에 애써 드러내지 않았다. 울릉도 잠입자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도 외무성과는 다른 입장을 취해 모두 무죄 방면했다.⁴⁵²⁾

요컨대 1883년은 국왕의 울릉도 개척 방침에 따라 내륙민의 첫 울릉도 이주가 시작되면서 개척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이와 아울러 울릉도에 잠입해 불법 벌목과 어채를 일삼던 일본인들의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즉 1883년은 조선의 울릉도 경영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던 해였던 것이다.

136~137쪽.

452) 나이토 세이쥬(內藤正中)는 판결에서 무죄의 명분으로 내세운 ‘惠與’의 배경으로 울릉도장과 일본인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들었다. 울릉도장 전석규가 울릉도의 일본인을 쇄환하기 위해 들어간 내무성 관리에게 서운함을 표했던 것과 덴쥬마루(天壽丸) 사건 때 일본인들에게 징표를 주어 재목 偷斫을 허가했던 일이 그것이다(內藤正中, 앞의 책, 136~137쪽).

덴쥬마루 사건은 1883년 에히메현(愛媛縣)의 무라카미 도쿠하치(村上德八) 등이 덴쥬마루호를 이용하여 울릉도 수목을 밀반출한 사실이 일본에 체류중이던 東南諸島開拓使 金玉均에 의해 적발된 일을 일컫는다.

IV. 대한제국의 울릉도·독도 행정 강화와 「勅令 第41號」(1900) 반포

1. 19세기 후반 일본의 울릉도 불법 渡海와 伐採를 둘러싼 갈등

1)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 渡海 재개

1883년 일본 太政大臣의 「蔚陵島 渡航禁止令」(양 3월)이 있었음에도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 伐木과 漁採는 계속되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 벌목과 어채가 그치지 않는다면 조선 정부에 신의를 잃고 난 처한 입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內務省 관리를 울릉도에 파견하여 일본인 255명을 철수시켰다(양 10월).⁴⁵³⁾ 하지만 일본인의 울릉도 潛航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덴쥬마루(天壽丸) 사건과 만리마루(萬里丸) 사건이다.

1883년 말경 에히메현(愛媛縣)의 무라카미 도쿠하치(村上德八) 등은 덴쥬마루호를 이용하여 울릉도 樹木을 밀반출했다. 당시 일본에 체류중이던 東南諸島開拓使 金玉均⁴⁵⁴⁾은 隨員 卓挺埴과 雇人 가이 군지(甲斐軍治)⁴⁵⁵⁾를 바칸(馬關, 시모노세키)으로 보내 이에 대해 조사하도록 했다(12월 초). 그들은 바칸에서 덴쥬마루를 찾아냈고 무라카미 등으로부터 울릉도 수목 밀반출 사실도 확인했다. 무라카미 등은 蔚陵島長 全錫奎가 발행한 證票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⁴⁵⁶⁾

453)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日本外交文書』 16, 事項 10, 文書番號 126·127·128; 『善隣始末』, 附錄 「竹島始末」.

454) 김옥균은 1883년 3월 東南諸島開拓使에 임명되어 차관교섭과 개척사 관련 활동을 위해 1883년 6월부터 1884년 4월까지 일본에서 체류했다. 隨員은 白春埴, 卓挺埴, 李誼果 등이었다(박은숙,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과 영토·영해 인식-울릉도·독도 인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6, 동북아역사재단, 2012, 112쪽).

455) 雇人 가이 군지(甲斐軍治)는 1883년 7월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에게 고용되었고, 1884년 1월부터 1885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울릉도에 내왕하면서 울릉도 개척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 文書番號 936,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4).

1883년 김옥균은 덴주마루 사건에 대해 조선 조정에 보고하면서 울릉도장 전석규가 일본인들을 금지시키지 않고 도리어 이익을 탐내어 법을 위반했으니 중한 죄를 내려줄 것을 건의했다(12.15).⁴⁵⁷⁾ 보고를 받은 조정은 울릉도장 전석규를 즉각 파면했다(1884.1.11).⁴⁵⁸⁾ 또 이 날짜로 督辦交涉通商事務 閔泳穆 명의로 일본 서리공사 시마무라 히사시(嶋村久)에게 공함을 보내 무라카미 등을 처벌할 것과 목재를 동남제도개척사에게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⁴⁵⁹⁾ 이 사건은 양국 간의 오랜 교섭 끝에 1886년(고종 23) 6월 일본 정부가 무라카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이 벌금과 목재 공매 대금을 조선 측에 보내음으로써 결말을 보게 되었다.⁴⁶⁰⁾

덴주마루 사건과 성격은 다르지만 1885년(고종 22)에는 반리마루(萬里丸) 사건이 발생했다.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은 일본에서 울릉도 개척을 위한 차관 교섭을 진행하면서 울릉도 楓木(물푸레나무)를 벌채하여 일본에 판매하는 계획을 추진했다.⁴⁶¹⁾ 이에 따라 김옥균의 수원 白春培는 1884년 8월 반리마루 선장 와타나베 스에치(渡邊末吉)와 규목 반출 계약을 체결했다. 반리마루 선장 와타나베는 1885년 봄에 울릉도로 가서 규목을 싣고 4월에 고베항(神戸港)으로 돌아갔다.⁴⁶²⁾

한편, 국내에서는 甲申政變(1884.10)이 발생했는데,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주도하다 일본으로 망명했다.⁴⁶³⁾ 갑신정변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1885년 초 일본에 건너간 전권대신 徐相雨, 부대신 뮐렌도르프(P.G. Möllendorff)는 울릉도의 목재 관리를 고베의 한 독일상회에 위탁했다. 이 독일상회는

456)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 文書番號 204·277·278; 『善隣始末』, 附錄 「竹島始末」.
 457)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 文書番號 204; 『承政院日記』, 고종 21년(1884) 정월 11일; 『善隣始末』, 附錄 「竹島始末」.
 458) 『承政院日記』, 고종 21년(1884) 정월 11일.
 459)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 文書番號 204; 『善隣始末』, 附錄 「竹島始末」.
 460)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 文書番號 207·277·278·293·316·438·604·702; 『善隣始末』, 附錄 「竹島始末」;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175~176쪽.
 461) 國史編纂委員會, 『尹致昊日記』 1, 1884년 2월 15일, 1974.
 462)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 文書番號 728; 『日本外交文書』 18, 事項 7, 文書番號 98; 19, 事項 6, 文書番號 116.
 463) 공석이 된 開拓使에는 전 검찰사 이규원이 임명되었다(『承政院日記』, 고종 21년 12월 17일;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 文書番號 483).

전권대신 일행에게 반리마루가 울릉도에서 盜奪한 규목을 신고 고베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이에 필렌도르프는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반리마루의 도탈을 항의하고 목재의 압류를 요청했으며,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도 주한일본대리공사 곤도 마스키(近藤眞鋤)에게 공함을 보내 같은 요청을 했다. 양국 간에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던 반리마루 사건은 1887년(고종 24) 일본 측에서 목재 공매 대금을 보내겠다는 공함을 조선 측에 보내음으로써 매듭지어졌다.⁴⁶⁴⁾

그 이후 일본 태정대신의 「울릉도 도항금지령」(1883)은 한동안 잘 지켜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88년(고종 25)부터 일본인이 울릉도로 다시 들어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일본 오이타현(大分縣)의 잠수기 회사 소속인 히메노 하치로(姫野八郎)⁴⁶⁵⁾는 1888년 7월 5일(양) 오키(隱岐)를 출발, 이튿날(6일) 울릉도에 도착하여 어업에 종사했다. 일본인들이 어업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越松浦萬戶兼鬱陵島長 徐敬秀는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려면 강원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히메노 일행이 가지고 있던 잠수기와 잠수복 두 벌을 압수했다. 울릉도장 서경수와 히메노는 각자의 배를 타고 강원도 平海郡 原里浦로 갔다. 히메노는 이곳에서 서경수를 통해 조선 정부에 어업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경수는 외국인의 울릉도 어업을 엄금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경수는 히메노 일행에게 울릉도 어업을 엄금하는 것이 정부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압수했던 잠수복 등을 되돌려 주고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엄명했다. 히메노는 일단 강원도에서 다시 울릉도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내부 관원 尹主事⁴⁶⁶⁾를 만났다. 윤주사는 이들에게 울릉

464)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 文書番號 479-480-597-732-866-885-886; 『日本外交文書』 18, 事項 7; 19, 事項 6; 송병기, 앞의 책, 175~176쪽.

465) 히메노 하치로(姫野八郎)은 『大日本水産會報告』 103호에 기록된 “(오이타현) 다이자이(大在) 지방에서 와서 사가노세키(佐賀關)에 머물고 있던 히메노 하치고로(姫野八五郎)라는 자가 있다. 그는 작년(1889) 조선 松島에 가서 약 5천엔 남짓의 순익을 얻었다”에서의 인물과 동일인으로 생각된다(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22쪽).

466) 尹主事는 『統緒日記』 2, 고종 25년 10월 13일조에 기재된 尹始炳으로 보인다(박병섭, 앞의 책, 21쪽). 그는 1892년(고종 29) 宣傳官으로 울릉도검찰관에 임명되어 울릉도에 파견되기도 했다(『江原道關草』, 壬辰 2월 1일·8월 28일).

도 어업을 일시 주선해 주었지만, 그 후 강원도로 갔던 울릉도장 서경수가 울릉도로 돌아오자 도장의 명령을 이행하라고 하며, 포획한 전복 1,250근과 일본인의 소유물 일체를 압수했다. 이에 따라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던 히메노를 비롯한 일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양9.5).⁴⁶⁷⁾

이 사건은 울릉도장 서경수가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강원도관찰사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보고하면서 조정에 알려졌다.⁴⁶⁸⁾ 이에 따라 督辦交涉通商事務 趙秉式은 주한일본 대리공사 곤도 마사키에게 조회하여 일본인 30명이 울릉도에 들어와 築室하고 旗를 올렸는데,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니므로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을 철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6.30, 양8.7).⁴⁶⁹⁾ 조선 측의 조회에 대해 주한일본 대리공사 곤도는 通商章程 제41조를 거론하며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서 축실하고 기를 올린 것은 잘못이나, 어업구역에 속하는 울릉도에서 고기잡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일본 영사관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울릉도장이 일본 어민들의 어획물(전복)을 압수한 것은 월권 행위이므로 압수한 전복과 잡수기 회사 사장 후루야 리쇼(古屋利涉)의 물건을 신속히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10.21, 양11.24).⁴⁷⁰⁾

1883년 7월 조·일은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를 체결했는데, 이 장정 제41조는 일본인의 전라·경상·강원·함경 4도 海濱에서의 어업을 허가하고 있다. 또 통상장정 체결과 함께 조·일은 「處辦日本人民在約定朝鮮國海岸漁採犯罪條規」를 체결하여 조선에 출어하는 일본 어민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했다. 이 조규의 제2조는 한국 관리가 범죄를 저지른 일본 어민을 체포했을 때에는 일본 영사관으로 인도하여 처벌을 요구하고, 일본 영사가 이를 심사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곤도 공사의 주장처럼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 근해에서 어업을 하는 것은 허가되었던 일이었고,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할 때에는 일본 영사관을 통하도록 규정되

467)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 文書番號 1315.

468) 『江原道關草』, 戊子 7월 10일; 『統椽日記』, 戊子 7월 13일.

469)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 文書番號 1229.

470)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 文書番號 1315.

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독판교섭통상사무 조병직은 곤도 공사에게 일본 어민들에게 압수한 전복과 잠수회사의 물건을 돌려줄 것을 약속했다(음 12.24, 양1889.1.25).⁴⁷¹⁾ 이로써 1888년 일본 잠수기 회사의 울릉도 어업에 대한 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듬해인 1889년(고종 26)에는 전복을 채취하는 대규모의 일본 어선단이 들어와 크게 소요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울릉도 검찰차 입도(3.7)한 越松浦萬戶兼鬱陵島長 서경수는 道傍浦 洞任 田在恒으로부터 대규모의 일본 어선들이 전복을 채취하기 위해 울릉도에 들어왔다(3.8)는 소식을 접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상부에 보고했다. 보고에 의하면, 일본 오이타현(大分縣)의 미야케 가즈야(三宅數矢), 쓰시마구니(對馬國)의 히사이 도모노스케(久井友之助), 야마구치현(山口縣) 나가토구니(長門國)의 이와사키 다다스케(巖崎忠助) 등 71명이 9척의 배를 나누어 타고 울릉도에 와서 築室하고, 채취한 전복을 팔고 도자기(畫器) 등의 물건을 콩으로 교환했다. 울릉도장 서경수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는租界가 아니기 때문에 축실하면 안 되고, 전복 채취가 어업 조규상 범죄에 해당하며, 不通商口이기 때문에 몰래 賣買하면 오십만文的 벌금을 내는 것이 통상장정 제33조에 실려 있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일본인들을 타일렀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방자하게 威嚇하며 끝내 돌아가지 않아 울릉도민들이 흩어질 지경에 이르렀으니, 일본 영사에게 조회하여 이 일본인들을 엄히 막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⁴⁷²⁾

보고를 받은 朝鮮 監理 釜山港 通商事務 李容植은 일본 領事 무로타 요시후미(室田義文)에게 조회하여 울릉도장 서경수의 보고 내용을 알리고, 일본인들을 嚴懲해 줄 것을 요청했다(음4.13).⁴⁷³⁾ 이에 대해 일본 영사 무로타는 울릉도에서의 전복채취는 문제가 없으며, 조약 위반이 있다면 규칙에 따라 위반자를 부근의 영사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⁴⁷⁴⁾ 무로타 영사는 「處辦日本人民在約定朝鮮國海岸漁採犯罪條規」(1883)의 제2조를

471)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 文書番號 1341; 박병섭, 앞의 책, 18~23쪽.

472) 『東來關牒外案』(奎章閣 소장); 『漁業關係雜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473) 『漁業關係雜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474) 위와 같다.

거론하며 일본인을 보호하려 한 것이다.

한편, 울릉도장 서경수는 울릉도에 들어온 일본인 수 및 어선 수 등을 재조사하여 보고했다(9.19, 양10.13). 보고에 의하면, 일본인 186명, 어선 24척에 달했으며, 長興洞 등지에서는 도민이 가꾸어 놓은 조(玉秫) 약 16石을 절취해 갔으며, 官庫와 民家를 때려 부수는 등의 행패도 부렸다. 보고를 접한 督辦交涉通商事務 閔種默은 9월 일본공사관으로 조회하여 일본 어민들의 불법 행위를 항의하고 그 처벌과 배상을 요구했다.⁴⁷⁵⁾ 조일통상장정 제41조는 일본인의 전라·경상·강원·함경 4도 海濱에서의 어업을 허가하고 있지만, 어업을 빙자한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제 33조에서도 일본 상선의 不通商口에서의 화물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⁴⁷⁶⁾

조선 측의 요구에 대해 일본공사관은 지난 4월 일본 영사 무로타와 비슷한 수준에서 대응했다. 즉, 일본 代理公使 곤도 마스키(近藤眞鋤)는 조선 측에 보내는 조회에서 상기 「漁探犯罪條規」 제2조를 거론하며 해당 지방관이 罪犯을 체포하여 부근 일본 영사관에 인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부산·원산 영사에게 조사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음9.26, 양 10.20).⁴⁷⁷⁾ 이렇듯 1889년 3월 울릉도에서의 일본 어선단 대규모 소요 사태는 실무급(4월) 및 고위급(9월) 등 두 차례에 걸친 조선의 공식 항의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정리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조일통상장정 제41조에 근거한 朝日通漁章程이 체결(1889.10)되었다. 이 장정에서는 일본 어선이 조선 연해에서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영사가 발행하는 漁業准單(허가증)을 발급받아 개항장 지방청에 면허장을 받고 대신 어업세를 내도록 했다. 이로써 일본 어민은 어업 면허세를 납부하면 전라·경상·강원·함경 4도 3해리 이내에서도 어업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어획 어류를 매매까지 할 수 있었다.⁴⁷⁸⁾ 이 규정에 따라 일본인들은 조선 연안에 대거 진출했고, 울릉도에

475) 「江原道關草」, 己丑 5월 28일, 7월 17일·25일, 8월 6일·11일;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 文書番號 1510.

476) 『高宗實錄』 권 20, 고종 20년(1883) 6월 22일(庚午).

477)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1, 文書番號 1523.

도 어업을 빙자한 일본 선박들이 더욱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인들이 해마다 울릉도에 들어와 말썽을 일으키자 1890년(고종 27) 윤 2월 국왕은 새로 부임하는 강원도관찰사 李源逸에게 울릉도가 우리 관도임을 강조하면서 몰래 벌목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검찰을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⁴⁷⁹⁾

그런데 1890년대 초반의 일본인 울릉도 출입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남아있지 않다. 다만 1900년 울릉도를 조사했던 부산영사관보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가 울릉도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청취한 보고에 의하면, 1891년(고종 28) 울릉도에 일본인 7명이 도항하여 ‘麩’(끈끈이, もち)를 만들었다. 그 후 일본인들은 계속 울릉도에 도항하여 들어갔으나 1892년부터 1895년까지는 확실하지 않고, 1896년 이후 200명 내외가 있었으며, 그 대부분은 벌목에 종사하는 자들이거나 그 부속원들이었다고 한다.⁴⁸⁰⁾

그러나 이미 이 시기에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의 대규모 어업 침탈이 준비되어가고 있었다. 1893년 울릉도에서 제일 가까운 시마네현(島根縣)의 오키(隱岐)의 치부군(知夫郡) 우가무라(宇賀村)의 마노테츠타로(眞野哲太郎)는 오키의 네 군이 공유하는 改良丸을 사용하여 울릉도에 시험 항해했다. 이 개량환은 구조가 단단하고 견고하여 풍랑을 헤치는데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었다.⁴⁸¹⁾ 오키에서 울릉도까지 장거리를 항해하는 만큼 어선을 개량하여 대형화했던 것이다.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은 1895년부터 다시 본격화되었다.⁴⁸²⁾ 이에 따라 1895년 5월 21일(양) 외부대신 金允植은 울릉도에 일본인이 欄入하여 나무 꺾질을 벗기고 온갖 作弊를 행하고 있으니 이를 엄히 단속할 것을 스

478) 『高宗實錄』 권 26, 고종 26년 10월 20일(壬辰); 이영학, 「개항 이후 일제의 어업 침투와 조선 어민의 대응」, 『역사와 현실』 18, 1995, 163쪽.

479) 『承政院日記』 137책, 고종 27년 윤2월 18일.

480) 『駐韓日本公使館記錄』(國史編纂委員會 소장), 各領事機密來信, 釜山領事館 機密 제 17호(明治 33年 6月 12日).

481) 『山陰新聞』 明治 27年 1月 14日; 内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 多賀出版, 2000, 154쪽.

482) 『統署日記』 3, 高宗 32年(1895) 5월 20일·21일, 閏 5월 30일;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3, 文書番號 3666-3688.

기무라 후카시(杉村 濬) 주한 임시대리공사에게 조회했다. 스기무라 임시대리공사는 조선 외부대신의 조회를 일본 외무성에 보고(6.25)하면서 울릉도에 잠입한 일본인들이 대부분 부산이나 원산항을 경유하지 않고 일본 야마구치(山口), 후쿠오카(福岡),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 시마네(島根) 등에서 직접 도항한 자들로서, 각 현에 이들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⁴⁸³⁾

2) 鬱陵島監 裴季周의 渡日 訴訟

울릉도에서 일본인 作弊는 18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다. 1898년(광무 2) 초 鬱陵島監 裴季周는 일본 돗토리현(鳥取縣)의 마쓰타니 야쓰이치로(松谷安一郎), 오이타현(大分縣)의 간다 겐키치(神田健吉) 등이 규목을 남벌하고 潛賣할 뿐만 아니라 島民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작폐도 심하여 도민들이 支保하기 어렵다고 內部에 보고했다. 배계주의 보고에 따라 내부는 주한일본공사관에 조회하여 이와 같은 일을 금단시켜 달라고 外部에 요청했다(2.9).⁴⁸⁴⁾ 그런데 외부에서는 일본인의 작폐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규목은 얼마나 작벌했고 어느 곳에서 잠매했는지 등이 상세치 못하여 일본 공관에 조회하기가 분명치 못하니, 울릉도감에게 더 상세히 보고하도록 할 것을 내부에 요청했다(3.29).⁴⁸⁵⁾ 내부는 울릉도감에게 보다 상세한 보고를 지시하겠다고 외부에 답했다(4.5)⁴⁸⁶⁾

그러나 현전하는 자료상 내부의 지시가 울릉도감에게 전달되었고, 울릉도감이 어떻게 보고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울릉도감 배계주가 정확히 언제 울릉도에서 일본을 향해 출발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사건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항(境港)으로 건너갔다(양8월). 그는 1898년 9월 12일 사카이경찰서장을 면담하면서 일본인의 울릉도에서의

483) 『日本外交文書』 16권, 事項 10, 문서번호 133.

484) 『內部來去文』 6, 光武 2년(1898) 2월 9일; 『外衙門日記』, 光武 2년 2월 10일.

485) 『內部來去文』 6, 光武 2년(1898) 3월 29일; 『外衙門日記』, 光武 2년 3월 29일.

486) 『內部來去文』 6, 光武 2년(1898) 4월 5일.

작폐에 대한 단속을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9.16).

左記 3명[돗토리현(鳥取縣) 사이하쿠군(西伯郡) 요나고정(米子町) 요시오 만타로(吉尾万太郎), 시마네현(島根縣) 마쓰에시(松江市) 사이카정(雜賀町) 타나카 오오나스(田中多造), 오이타현(大分縣) 난카이군(南海郡) 가미우라촌(上浦村) 간다 켄키치(神田健吉)]의 일본인은 해마다 도검, 총포를 가지고 島內를 횡행하며 인민을 협박하고 부녀자를 쫓아다니며 물품을 盜奪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여 그 때문에 도민이 크게 괴로움을 느끼고 있어 그 제지를 요구한다.⁴⁸⁷⁾

배계주는 일본 사카이경찰서에 가서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작폐를 제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사카이경찰서는 배계주의 면담 내용을 돗토리현 지사에게 보고했고, 돗토리현에서는 일단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배계주가 거론했던 당사자인 요시오 만타로는 ‘도감이 보고한 사실은 전혀 무근으로 날조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사이하쿠군(西伯郡) 사카이마치(境町)의 상인과 배계주 사이에 매매한 목재를 울릉도 해안에서 절취하여 은밀히 오키국에 은닉한 사실이 있어 마쓰에(松江)재판소에서 취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돗토리현 지사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내무·외무 양 대신에게 보고했다(10.18).⁴⁸⁸⁾

한편, 울릉도감 배계주는 사카이경찰서장과의 만남 이후 즉시 일본 도쿄로 향하여 주일한국공사관을 방문했다(9.15). 이곳에서 그는 駐劄日本特命全權公使 李夏榮에게 울릉도에서의 일본인 작폐를 금단시켜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청구했다는 것과 향후 京城에 가서 울릉도의 事機과 장래 方略을 세세히 廟堂에 稟達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일공사 이하영은 배계주의 보고 내용을 外部大臣署理 外部協辦 朴齊純에게 보고하면서 이를 잘 살피셔서 울릉도 개척의 사무를 완전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9.18).⁴⁸⁹⁾

487) 『日本外交文書』 32, 事項 9, 文書番號 165.

488) 『日本外交文書』 32, 事項 9, 文書番號 165.

489) 『駐日來去案』(규장각 소장), 「報告 第二十八號」, 광무 2년(1898) 9월 18일; 『外衙門日記』, 光武 2년(1898) 10월 8일.

아울러 배계주는 당시 도쿄에 재류하고 있던 朴泳孝에게 의뢰하여 배계주는 군수이니 마땅한 대우를 해줄 것을 사카이지방재판소 측에 요청하는 서신을 받기도 했다.⁴⁹⁰⁾

배계주는 한국 정부의 공문이 있는 후에 木料를 出給해 줄 수 있다는 일본 관리의 언급을 듣고, 목료 관련 사항을 일본 정부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외부에 보고했다(10.11).⁴⁹¹⁾ 이에 따라 외부대신 박제순은 주일공사 이하영에게 울릉도 목료를 울릉도감에게 給付할 것과 울릉도에서의 일본인 범작의 폐단이 없도록 說法防範할 것을 일본 외무성에 조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10.14).⁴⁹²⁾

울릉도감의 요청과 본국 외부대신의 훈령에 따라 주일공사 이하영은 11월 17일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외무대신에게 돛토리현과 시마네현 사람들이 울릉도에 들어가 수목을 潛伐하고 暴擧를 못하도록 두 현의 지사에게 타일러 줄 것을 요청했다.

주일한국공사로부터 조회를 받은 외무대신은 돛토리현과 시마네현 지사에게 사실 관계 조사를 지시했다(11.26). 이에 대해 10월 18일 이미 한 차례 보고를 했던 돛토리현 지사는 “同人들이 울릉도에 도향했던 일은 있어도 난폭한 거동을 하고 또 수목을 벌채했다는 등의 사실은 무근입니다”라고 보고했다(12.25).

시마네현 지사는 1899년 1월 28일 외무대신에게 관련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밝히는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1898

또한 배계주는 주일공사에게 울릉도에 학교를 설립하여 養蠶 및 製鹽 사업을 일으키는 것 및 한국 본토와 울릉도 사이에 항해선을 개량할 것 등도 건의했다(『日本外交文書』 32, 事項 9, 文書番號 165).

490) 일본 니시무라 게이조(西村銈象) 경부는 1902년 울릉도상황을 외무성에 보고하면서 배계주가 박영호의 서신을 이용하여 사카이지방재판소에서 수출한 규목의 반액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釜山領事館報告書2』, 『明治三十五年鬱陵島狀況』(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通商彙纂』 제234호, 1902.10.16; 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118~119쪽; 이상태, 『울릉도 초대군수 배계주에 관한 연구』, 『영토해양연구』 11, 동북아역사재단, 2016, 99쪽).

491) 『交渉局日記』, 광무 2년(1898) 10월 11일; 『駐日來去案』(奎章閣 소장), 「訓令 第十六號」, 광무 2년(1898) 10월 14일.

492) 『駐日來去案』(奎章閣 소장), 「訓令 第十六號」, 광무 2년(1898) 10월 14일; 『交渉局日記』, 광무2년(1898) 10월 15일; 『外衙門日記』, 광무 2년(1898) 10월 15일.

년 8월 울릉도감 배계주가 사카이항에 왔을 때 사카이 상인 이시바시 유자부로(石橋勇三郎)에게 梶板을 300엔에 매각하기로 약속하며 선금 160엔을 수취하고 잔금은 울릉도에서 규판으로 상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울릉도의 黃鍾海(배계주 부재시 도감 대리)로부터 일본인 다나카 미치노리(田中道德), 요시오 만타로(吉尾万太郎)가 사사로이 몰래 도래하여 어두운 밤을 틈타 규판 32장을 절취하여 오키국(隱岐國) 치부군(知夫郡) 우가무라(宇賀村)의 쓰루타니 지로(鶴谷次郎)의 배에 탑재하고 출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배계주는 사카이 상인 이시바시와 함께 오키국 우라고(浦郷)警察分署에 가서 울릉도 규판을 절취한 요시오, 다나카, 그리고 선주인 쓰루타니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이시바시의 명의로 제출했다. 우라고경찰분서는 이 사건을 마쓰에(松江)지방재판소 사이고(西郷)지부 검사에게 송치했다. 담당 검사는 오키 우가무라에 출장조사한 끝에 이곳에 정박해 있는 다마가와 기요와카(玉川清若)라는 사람이 소유한 배 안에 규판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 규판을 領置하고 본건을 예심에 부쳤다. 이 사건은 심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免訴 결정이 내려졌다.⁴⁹³⁾

돗토리현과 시마네현의 조사 보고를 받은 외무대신 아오키 슈조(青木周藏)는 1899년 2월 13일 관련 보고를 요약하여 주일 한국임시대리공사朴鏞和에게 회답했다. 이에 의하면, 1898년 9월 울릉도감 배계주가 신고한 요시오(吉尾), 다나카(田中) 등은 울릉도에 도항했던 일이 있지만 그곳에서 난폭한 거동을 하거나 수목을 벌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으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향후 사사로운 도항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엄중히 단속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⁴⁹⁴⁾

한편, 1899년 1월 28일 시마네현이 외무대신에게 올린 보고에는 1898년 12월 배계주가 제기한 또 한 건의 소송에 대한 진행 현황도 들어있다. 배계주는 1898년 12월 하순 도쿄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피해를 입은 규판 일부가 시마네현 히카와군(簸川郡) 우류우라(宇龍浦) 또는 사기우라(鷺

493) 『日本外交文書』 32, 事項 9, 文書番號 165.

494) 『日本外交文書』 32, 事項 9, 文書番號 165.

浦)항에 정박해 있는 和船 안에 은닉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규관을 찾아달라는 搜索願을 미호노세키(美保關)경찰분서에 제출했다. 배계주의 이 수색원에 대해서는 우류우라와 사기우라를 소관하는 기즈키(杵築)경찰분서가 조사한 끝에 마쓰에시(松江市) 기타호리정(北堀町)의 후쿠마 효노스케(福間兵之助)라는 자가 규관 약간을 화선에 적재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영치하여 마쓰에 지방재판소 검사에게 송치하여 예심중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 진술에서 이 규관이 울릉도의 前任島首 李樹信으로부터 정당한 수속을 밟아 매수한 것으로 그 증빙서류도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마쓰에 지방재판소는 피고와 원고의 주장이 어긋나기 때문에 正邪曲直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배계주 일방의 말만을 반드시 믿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았다.⁴⁹⁵⁾

시마네현의 보고를 받은 외무대신 아오키 슈조는 1899년 2월 13일 주일 한국임시대리공사 박용화에게 앞서도 언급했던 1898년 9월 배계주 소송에 대해 설명하면서, 1898년 12월 소송에 대해 현재 마쓰에재판소에서 예심중에 있다는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⁴⁹⁶⁾ 이 소송 사건은 피고 후쿠마(福間) 등에게 중금고 3개월, 벌금 10엔, 감시 6개월의 형에 처함과 동시에 원고 배계주에게는 청구한 대로 목재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⁴⁹⁷⁾ 이 소식을 들은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삼림 벌목 문제를 해결한 배계주를 가상히 여겨 外部로 하여금 서울로 올라오라는 전보를 일본으로 보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1899.4.25).⁴⁹⁸⁾ 그러나 1902년 울릉도 현황을 조사한 니시무라 게이조(西村鏗象) 경부의 보고에 의하면, 패소한 후쿠마가 히로시마(廣島)控訴院에 항소를 신청하여 히로시마공소원의 재심 결과 배계주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배계주는 후쿠마로부터 1,200엔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내입금으로 콩 20석을 지불했고 잔금은 증서로 남겨두었다. 이후 배계주는 잔금을 자주 청구받았으나 지불하지

495) 『日本外交文書』 32, 事項 9, 文書番號 165.

496) 『日本外交文書』 32, 事項 9, 文書番號 165; 한철호, 『한국근대 주일한국공사의 파견과 활동』, 푸른역사, 2009, 211~215쪽.

497) 『山陰新聞』 明治 32년(1899) 4월 26일; 內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 多賀出版, 2000, 142~143쪽.

498) 『황성신문』 광무 3년(1899) 4월 26일.

못하여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후 소송을 하지 않게 되었다.⁴⁹⁹⁾

3) 부산 해관 세무사 라포르트(E. Laporte) 울릉도 조사

앞서 살펴본 바대로 1898년(광무 2) 초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규목을 濫伐, 潛賣하고 島民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作弊가 심했던 상황에 대해 蔚陵島監 裴季周는 중앙 정부(內部)로 보고하는 한편,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이에 대한 대책을 일본 측에 촉구하기도 했다. 배계주의 보고를 받은 內部는 주한일본공사관에 조회하여 이와 같은 일을 금단시켜 달라고 外部에 요청(2.9)했으나,⁵⁰⁰⁾ 외부에서는 울릉도감에게 보다 상세히 보고하도록 해줄 것을 내부에 요청했다(3.29).⁵⁰¹⁾ 하지만 내부가 울릉도감에게 보다 상세한 보고를 지시하겠다고 외부에 답한(4.5)⁵⁰²⁾ 이후의 상황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울릉도까지의 불편한 교통을 감안한다면, 내부의 지시가 울릉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울릉도감 배계주가 소송을 위해 일본으로 출발하여 부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⁰³⁾ 왜냐하면 한국 정부(내부)는 일본에서의 소송 이후 부산에 있던 배계주를 이듬해(1899) 5월 다시 울릉도감에 還任시키고, 울릉도에서 일본인이 도민을 陵虐하고 삼림을 斫伐하는 상황 조사를 위해 해관 총세무사(브라운, J. Mc. Brown, 柏卓安)에게 부산해관 세무사(라포르트, E. Laporte, 羅保得)를 배계주와 함께 울릉도에 보내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조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⁵⁰⁴⁾ 다시 말해 한국 정부는 울릉도감 배계주가 일본 소송으로 인해 부재한 기간

499) 『釜山領事館報告書2』, 「明治三十五年蔚陵島狀況」(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通商彙纂』 제234호, 1902.10.16; 박병섭, 앞의 책, 118~119쪽

500) 『內部來去文』 6, 光武 2년(1898) 2월 9일; 『外衙門日記』, 光武 2년 2월 10일.

501) 『內部來去文』 6, 光武 2년 3월 29일; 『外衙門日記』, 光武 2년 3월 29일.

502) 『內部來去文』 6, 光武 2년 4월 5일.

503) 울릉도감 배계주는 이미 8월에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항(境港)에 가 있었다(『日本外交文書』 32, 事項 9, 文書番號 165).

504) 『外務衙門日記』 光武 3년(1899) 6월 27일·28일; 『內部來去文』 7, 光武 3년(1899) 9월 15일.

동안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가 그가 돌아온 이후부터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울릉도감 배계주, 부산세무사 라포르트, 부산 해관의 金聲遠과 아라키 하루하타(荒木春端)⁵⁰⁵⁾ 등의 일행은 1899년 6월 28일 부산에서 한국 선박인 현익(顯益)호를 타고 이튿날(6.29) 울릉도에 도착했다. 그들은 울릉도감 배계주의 안내를 받으며 섬의 동쪽부터 시작하여 배를 타고 서쪽으로 한 바퀴를 돌면서 항구가 있는 마을에 배를 대고 상륙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다.

조사단이 울릉도감 배계주의 조언에 따라 처음 도착한 곳은 섬의 동쪽, 즉 현재의 道洞이었다. 당시 도동항에는 5척의 일본식 범선과 2척의 동력선이 있었고, 그 이틀 전에도 큰 동력선이 값비싼 목재를 싣고 일본으로 떠났다고 한다. 이 중 3척의 범선은 사카이 세관에서 부산항 통관을 허락하는 허가장을 비치하고 있었다. 당시 도동에는 일본인이 40호 163명(남자 140명, 여자 23명) 거주하고 있었는데, 대다수가 오키섬에서 왔고 1894년 울릉도에 도착했다고 한다.

조사단은 도동을 지나 섬의 북쪽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10척의 일본 어선과 범선이 건조중이었고 대장간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었으며, 조사단은 일본인 25명과 15명이 거주하는 두 개의 거주지를 방문 조사했다. 이어 조사단은 남쪽으로 이동하여 해안에 일본인 30명이 거주하는 마을을 확인했으나 파도가 높아 상륙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조사단은 이틀간의 짧은 조사 일정을 마치고 6월 30일 울릉도를 출발하여 이튿날(7.1) 부산에 도착했다.⁵⁰⁶⁾

505)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라포르트 보고서에는 라포르트와 동행했던 사람으로 'Kim Long-won', 'Araki'를 거론하고 있는데, Kim Long-won은 당시 부산해관 參署 金聲遠의 오타로 추정된다. 김성원은 부산해관 3명의 조선인 내근직 직원 중 한 명으로 직책은 서기(clerk)였으며, 이듬해(1900) 내부시찰관 우용정의 울릉도 시찰 때에도 라포르트와 함께 울릉도에 조사갔던 인물이다. Araki는 부산해관의 외근직 직원으로서 직책은 감시원(watcher)이었다(홍성근, 「라포르트(E. Laporte)의 울릉도 조사 보고서와 1899년 울릉도 현황」, 『영토해양연구』 6, 동북아역사재단, 2013, 111쪽).

506) 『皇城新聞』, 光武 3년(1899) 9월 23일; 「Japanese treatment of natives at Dagelet, transmit report of Commissioner of Customs at Fusan」, 『Further

조사를 마친 부산해관 세무사 라포트트는 울릉도의 주민, 생산물, 영업 실태, 그리고 일본인 및 과세 관련 모든 사정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관 총세무사 브라운에게 제출했다(7.6). 총세무사 브라운은 외부대신 朴齊純에게 이 보고서의 草本과 영문본, 한문본 각 1부를 전달(7.30)했는데, 이보다 앞서 주한영국공사 조단(J. N. Jordan)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영국인인 브라운으로서는 당시 한국에 관한 주요 정보를 본국에 보고하기 위해 주한영국공사에게 제출했을 것이다. 영국공사 조단은 브라운에게서 전달받은 라포트트 보고서를 동봉한 서신을 영국 총리겸 외무장관 솔즈베리(R. Gasscoyne-Cecil, 3rd marguess of Salisbury)에게 보냈다(7.24). 조단의 서신에 의하면, “울릉도의 지방 관리가 그 섬 지역 주민들이 일본인 이주자들에게 당하고 있는 가혹 행위에 대해 최근 서울에 불평을 호소”해 와서 한국 중앙 정부가 총세무사 브라운에게 부산해관세무사를 파견해 울릉도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라포트트 보고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섬에 대한 몇가지 흥미로운 사항들이 있었고, 이 나라(한국)의 외딴 지역(울릉도)이 일본인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보고서를 동봉한 이유를 밝혔다.⁵⁰⁷⁾

주한영국공사 조단의 언급처럼 라포트트 보고서에는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의 피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본인들은 손닿는 곳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해(1899) 4월 일본인 몇 명이 한국인 여성을 폭행했는데, 한국인들이 배상을 요구하자 일본인들이 총칼로 무장하고 한국인들을 내쫓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승자(victors, 일본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감 배계주가 없는 동안 섬의 행정을 맡은 관리가 몇 그루의 벌목 허가장을 내줄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일본인들은 중개인이나 중간상인에게 주는 2%의 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세금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라포트트는 일본인들이 세금은

Correspondence respecting the Affairs of Corea, Part XIII(1899)』, 영국국립문서보관소; 홍성근, 앞의 논문, 110~127쪽.
507) 홍성근, 위의 논문, 106~108쪽.

물론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짜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울릉도의 관리나 주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일본인들을 빨리 퇴출시키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⁵⁰⁸⁾

한편, 라포르트와 울릉도 조사에 동행했던 울릉도감 배계주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정에 제출했다.⁵⁰⁹⁾ 하지만 현재 배계주의 보고서는 전해지지 않는다.

4) 러시아의 울릉도 森林伐採權 획득

1896년(건양 원년) 2월 俄館播遷을 계기로 한국 내 여러 이권이 러시아 측에 넘어갔다. 이때 鴨綠江·豆滿江 지역의 삼림 벌채뿐 아니라 울릉도의 삼림 벌채권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상인 브린너(Yu. I. Brynner)에게 특허되었다.⁵¹⁰⁾

러시아가 울릉도에 대한 삼림벌채권을 따낸 것은 울릉도의 삼림뿐 아니라 남하정책상에서 울릉도가 갖는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울릉도는 일찍이 1888년 이래로 비티아즈(Vitiaz)호 함장이던 마카로프(Makarov) 제독에 의해 러시아 측에 막연하게나마 그 전략적 가치가 알려졌었다.⁵¹¹⁾

그런데 울릉도에는 일본인들이 잠입하여 불법적으로 벌채와 어업을 일삼고 있었다. 그러므로 러시아 정부는 1899년 8월 주한러시아공사 드미트리프스키(P. A. Dmitrevsky, 德密特)를 통해 이미 러시아 회사에게 許與한 울릉도, 두만강, 압록강 등의 삼림을 일본인과 청인이 다 베어가고 있으니 해당 지방관에게 훈령을 보내서 삼림을 보존하는 법을 마련해 줄 것을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요구했다(8.3, 8.11). 이후 10월에도

508) 「Japancse treatment of natives at Dagelet, transmit report of Commissioner of Customs at Fusan」, 『Further Correspondence respecting the Affairs of Corea, Part XIII(1899)』, 영국국립문서보관소; 홍성근, 앞의 논문.

509) 『內部來去文』 7, 光武 3년(1899) 9월 15일.

510) 『高宗實錄』 권 34, 建陽 元年(1896) 9월 9일.

511) 崔文衡, 「러시아의 鬱陵島活用企圖와 日本의 對應」, 『獨島研究』, 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議會, 1985, 368~369쪽.

주한러시아공사 스타인(E. Stein, 師德仁)이 울릉도에서 일본인 벌채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조회를 외부로 보내왔다(10.11).⁵¹²⁾

아울러 러시아 정부는 1899년 8월 주일러시아공사를 통해 울릉도 삼림 벌채권이 러시아인에게 특허되었으니 일본인들의 벌채를 금지시킬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⁵¹³⁾ 이에 따라 일본 외무대신 아오키 슈조(青木周藏)는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에게 러시아의 울릉도 삼림벌채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훈령을 내렸다.⁵¹⁴⁾ 이에 대해 하야시 공사는 러시아의 울릉도 벌채권이 1896년에 허가되었고 이 사실을 이미 본국(일본)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한제국 외부에게는 이 특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특허장 전문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⁵¹⁵⁾

일본 정부는 주일러시아공사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하야시 공사에게 원산주재 2등영사 또는 부산주재 영사관보를 울릉도에 파견하여 이 사실을 통고하라는 훈령을 내렸다(8.19).⁵¹⁶⁾ 훈령을 받은 하야시 공사는 元山領事館 外務書記生 다카오 겐조(高雄謙三)의 울릉도 파견을 준비했다. 그리고 외부대신 朴齊純에게는 일본 정부가 타인의 기득권을 존중하는 정신에서 러시아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전했다(8.21).⁵¹⁷⁾

아울러 일본 외무대신은 시마네, 돗토리 두 현 지사에게 한국 울릉도 삼림은 러시아의 모회사가 벌목 특허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벌목을 엄중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8.30). 주일러시아공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⁵¹⁸⁾ 러시아의 울릉도 벌채권에 대해 시마네와 돗토리현에서의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이 지역신문인 『산인신문(山陰新聞)』은 메이지유신 이전에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인정했지만, 그 후 일본인이 계속해서 울릉

512) 『交渉局日記』, 光武 3年(1899) 8월 8일, 10월 17일; 『外衙門日記』, 光武 3年 10월 12일; 『舊韓國外交文書』, 『俄案』 2, 文書番號 1429-1433-1434-1460-1469.

513) 『外衙門日記』, 光武 3年(1899) 8월 16일;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261; 『日本外交文書』 32, 事項 9, 文書番號 166-168.

51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本省其他區文電報來控(明治 32년 8월 7일).

51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外部往信, 第83號(明治 32년 8월 11일).

51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本省其他區文電報來控(明治 32년 8월 19일).

51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外部往信, 第87號(明治 32년 8월 21일).

518) 『日本外交文書』 32, 事項 9, 文書番號 173.

도로 건너가 벌채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야말로 벌채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논설을 실었다.⁵¹⁹⁾ 또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비록 철수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울릉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러시아에 섬을 임대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논설을 펼치기도 했다.⁵²⁰⁾

일본 정부는 울릉도의 일본인 철수를 위하여 이 해(1899) 8월 26일 원산영사관 외무서기생 다카오 겐조를 마나(摩那)함 편으로 부산에서 울릉도로 파견했으나, 기상이 좋지 못하여 다카오 일행은 다시 부산으로 회항했다. 다카오 외무서기생은 9월 18일 다시 마나함을 타고 부산을 출항했지만, 이번에도 기상이 좋지 못해 蔚山에 잠시 머물렀다가 9월 24일 다시 울릉도로 향했다. 다카오는 9월 25일 울릉도 南陽洞에 도착하여 현지 일본인들에게 울릉도에 머물면서 수목을 남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11월 30일까지 모두 退去할 것을 엄히 시달렸다. 그리고 시마네현(島根縣) 오키(隱岐) 출신 하타모토 기치조(畑本吉藏) 및 돗토리현(鳥取縣) 도하쿠군(東伯郡) 아마노 겐조(天野源藏) 등 일본인 대표들로부터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御受書)를 받아 이튿날(9.26) 부산으로 돌아왔다.⁵²¹⁾

한국 정부가 부산해관세무사 라포르트, 울릉도감 배계주 등의 보고에 따라 일본 측에 울릉도 채류 일본인의 철수를 요청한 것은 외무서기생 다카오를 울릉도로 파견(8월 말)한 뒤인 이해(1899) 9월 중순이었다.⁵²²⁾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순순히 일본인을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했다(10.2).⁵²³⁾ 하지만 이 약속은 한국 정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앞서 1899년 8월 주일러시아공사가 일본인들의 벌채를 금지시킬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던 데 따른 것이었다.⁵²⁴⁾ 한편, 한국 정부는 울릉도의 일본인 대책을 촉구하는 러시아 정부의 조회(10.11)에 대해 주한러시아공사

519) 『山陰新聞』 明治 32년(1899) 8월 24일자 사설; 內藤正中, 앞의 책, 145쪽.

520) 『山陰新聞』 明治 32년(1899) 10월 5일; 內藤正中, 위의 책, 145쪽.

52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 各領事館往復, 元山領事館 公 제28호(明治 32년 10월 4일); 『日本外交文書』 32, 事項 9, 文書番號 171~176.

522) 『外衙門日記』, 光武 3年 9月 16日;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322.

523) 『外衙門日記』, 光武 3年 9月 21日·22日, 10月 3日;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323·5337.

524) 『外衙門日記』, 光武 3年 8月 16日;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261; 『日本外交文書』 32, 事項 9, 文書番號 166·168.

스타인에게 상기와 같은 일 측의 철수 약속을 설명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하는 회답을 했다(10.17).⁵²⁵⁾

한편, 『독립신문』, 『황성신문』 등에 의하면, 1899년 러시아는 울릉도 경영을 위해 함선을 파견하기도 했다. 러시아 고로니로후호는 11월 3일 林務官 가치예도니후 및 30여 명의 병사를 태우고 원산을 경유하여 주한 러시아공사관 부속 측량기사 마기시모후 및 블라디보스토크 해군기사 안드레또스랏프짜지를 탑승시켜 울릉도에 도착했다. 이들은 울릉도에 상륙하여 마침 일본인들이 天長節을 봉축하는 일본 국기를 게양하자 폭언을 하며 이를 방해하고, 울릉도가 러시아의 점령지라 일컬었다. 그리고 일본인 30명과 한국인 40명을 바닷가에 세워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고, 연안의 요충지 및 내륙을 정밀하게 답사 측량했다. 후일 병영과 水雷營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울릉도 경영을 위한 조사를 마친 러시아 함선은 병사 15명 정도를 울릉도에 남기고 떠났다.⁵²⁶⁾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12월 2일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외무 대신 아오키 슈조에게 울릉도에서 러시아인이 일본인에게 불온한 행동을 한다는 설이 있어 시찰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⁵²⁷⁾ 이를 보아 러시아 함선의 울릉도 방문 당시 러시아인과 일본인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00년 울릉도를 시찰한 내부시찰관 우용정은 1899년 10월 1일 러시아 함선 1척이 와서 장교 1명, 통역 1명, 병사 7명 등이 8일간 체류하면서 산천을 둘러보고 지도를 작성했는데, 그들은 규목 1주를 일본인으로부터 75兩에 구입하고 다음해 3월에 다시 오겠다는 뜻을 전하고 퇴거했다고 보고했다.⁵²⁸⁾ 우용정의 보고는 상기 언론 기사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러시아 함선이 울릉도에 정박하여 현황을 조사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525) 『舊韓國外交文書』, 『俄案』2, 文書番號 1469.

526) 『독립신문』, 광무 3년(1899) 11월 14일·11월 25일; 『皇城新聞』, 光武 3년(1899) 11월 28일·12월 1일·12월 5일·2월 7일·12월 25일.

52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 本省電報往信, 轉電(明治 32년 12월 2일).

528) 禹用鼎, 『嶺島記』.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주시했다. 당시 일본 언론은 러시아 함선의 동정을 기사화하여 러시아가 울릉도에 병영을 설치할 예정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독립신문』이나 『황성신문』 등 국내 언론 기사도 일본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언론들을 인용하여 기사화했던 것이다.⁵²⁹⁾

일본 측은 러시아가 울릉도 삼림벌채권을 획득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울릉도는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도 전략상의 주요 거점으로서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899년 원산영사관 외무서기생 다카오 겐조의 보고에 의하면, 1898년부터 1899년 봄까지 울릉도에 일본인이 150~160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 당시에는 100여 명의 일본인이 울릉도에 재류하며 벌채와 어업을 하고 있었다.⁵³⁰⁾

이 때문에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러시아의 울릉도 삼림벌채권을 양도받기를 꾀했다. 이를 위해 1899년 한국의 외무대신과 러시아 대리공사에게 울릉도 삼림벌채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러시아 측의 권리를 일본인들에게 매각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⁵³¹⁾ 실제 민간인을 내세워 러시아 회사로부터 삼림벌채권을 직접 양수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⁵³²⁾ 그러면서 러시아 측의 동향을 주시하여 성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전 주한러시아공사 마추닌(N. Matunine)이 10년간 30만 루블이면 상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벌채권 소유자인 브린너의 경성 대리인에게 전보했다고 아오키 외부대신에게 보고하기도 했다.⁵³³⁾

529) 『독립신문』, 光武 3년(1899) 11월 14일·11월 25일; 『皇城新聞』, 光武 3년(1899) 11월 28일·12월 1일·12월 5일·2월 7일·12월 25일.

53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 各領事館往復, 元山領事館 公第28號(明治 32년 10월 4일).

53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宮內府顧問리젠드르二三, 機密 第96號(明治 32년 10월 2일); 本省其他歐文電報往信(明治 32년 10월 18일).

53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宮內府顧問리젠드르二三, 機密 第103號(明治 32년 11월 2일).

53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 本省電報往信, 無號往電(明治 32년 12월 15일); 최문형에 의하면, 15년 기한에 20만 루블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교섭이 있었다고 한다(崔文衡, 「韓末 國際關係 속에서의 獨島」, 『獨島研究』, 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議會, 1985, 371쪽).

한편, 러시아는 울릉도 삼림벌채권만 획득했지, 실제로 벌채를 실시하지는 못했다. 1896년 벌채권을 획득하고 얼마 후 브린너는 우선 함경도 武山의 벌목에 착수했지만 날씨가 좋지 못해 두만강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목재가 운송 중에 유실되었고, 브린너는 두만강 유역 벌채에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1899년 브린너는 벌채권을 모두 마쉴린 전 주한러시아공사에게 양도했다. 그런데 마쉴린도 중국에서 義和團事件(1899~1901)이 발생하자 그 파동이 만주에까지 미치게 되어 사업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당초 1896년 러시아가 벌채권을 획득했을 때 착수 연한은 울릉도 및 두만강 상류 무산에서는 조약 조인 후 1년, 압록강변에서는 조인 후 5년이었으며, 전체 특허 연한은 통산 20년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날씨라던가 의화단사건 등으로 인해 벌목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로 울릉도와 무산은 착수 연한 1년이 이미 지났고, 압록강 착수 연한 5년도 끝나가자 1900년 마쉴린은 이미 경과한 연한을 앞으로 20년 간의 특허로서 연장하는 것을 러시아 주재 한국공사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주한러시아공사도 여러 차례 한국 정부와 교섭하고 황제를 알현하는 자리에서 이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러시아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4-5년의 사업 연기를 승인해 줌으로써 러시아는 다시 삼림벌채권을 마련하게 되었다.⁵³⁴⁾

2. 대한제국의 울릉도 문제 해결 노력과 한·일 공동조사 실시

1) 울릉도 視察委員 파견의 배경

한국 정부는 1899년 부산해관세무사 라포르트(E. Laporte, 羅保得), 鬱陵島監 裴季周 등의 보고에 따라 일본 정부에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철수시킬 것을 요청했다(9월 중순).⁵³⁵⁾ 이에 대해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

53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機密本省往信一·二, 機密 第114號(明治 33년 12월 3일); 16卷, 本省機密往信一·二, 機密 第34號(明治 34년 4월 2일).

535) 『外衙門日記』, 光武 3年(1899) 9月 16日;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케(林權助)는 일본인을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했었는데(10.2),⁵³⁶⁾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일본 정부는 다시 입장을 바꿨다. 한국 정부가 울릉도 예에 따라 내륙에 거주하는 일본인 철수도 요구(10.4)⁵³⁷⁾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 철수는 별목 금지만을 위한 것이고 주거권과는 관계없다고 주장을 내세웠던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내륙에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만 퇴거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10.25).⁵³⁸⁾

이처럼 한국 정부는 라포르트, 배계주 등의 보고에 따라 일본인의 울릉도 철수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내부대신 李乾夏의 주청에 따라 内部視察官을 鬱陵島調査委員으로 임명하고, 그를 울릉도에 파견하여 정황을 살피게 할 것을 결정했다(9월).⁵³⁹⁾ 내부시찰관 禹用鼎이 울릉도시찰위원에 정식 임명된 것은 그해(1899) 12월 15일이었다.⁵⁴⁰⁾

당초에는 한국의 내부시찰관만 울릉도에 파견될 예정이었는데, 1900년(광무 4) 초 울릉도에서의 일본인 作弊에 대한 울릉도감 배계주의 보고는 한일 공동조사로의 대전환을 이루게 했다. 배계주가 내부에 한 보고에 의하면, 첫째, 일본인이 전 도감 吳聖一이 발급한 문서를 빙자하여 1899년 8-9월 사이에 규목 1000여 板을 斫伐했고, 본인이 중앙 정부(漢城)에 가서 근본적인 사유를 보고하려고 하자 일본인들이 네 곳의 항구를 지키면서 출입하지 못하게 했으며, 둘째, 수년 전에 일본에 건너가 재판을 했는데 일본인들이 당시의 비용을 강요해서 島民들이 변상했다. 셋째, 규목의 작별을 금지하자 일본인들은 查檢 金庸爰과 별목 계약을 맺었다며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도민들이 3000여 냥을 갚으려 한다는 것이다.⁵⁴¹⁾

5322.

536) 『外衙門日記』, 光武 3年(1899) 9月 21日·22日, 10月 3日;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323-5337.

537) 『外衙門日記』, 光武 3年(1899) 10月 4日;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343.

538) 『外衙門日記』, 光武 3年(1899) 10月 26日;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383.

539) 禹用鼎, 「鬱島記」.

540) 『官報』, 光武 3年(1899) 12月 19日.

541) 『內部來去文』 8, 光武 4年(1900) 3월 14일; 『交涉局日記』, 光武 4年(1900) 3월 15

도감의 보고를 받은 한국 정부는 곧 일본공사관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항의했다(3.16). 아울러 일본인들이 아직도 퇴거하지 않은 채 종종 작폐를 저지르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며, 이들의 조속한 철수와 錢貨의 상환을 요청했다.⁵⁴²⁾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곧 이에 대해 회답했다(3.23). 이 조회문에서 하야시는 한국 측 조회의 사실이 명료하지 않고 이유도 석연치 않으므로 양측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공동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울릉도에 재류하는 일본인들로부터 도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허가를 받아 벌목에 종사했다는 진정이 있었다며, 일본인들은 도감과의 목계 하에 부지불식간에 왕래 거류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⁵⁴³⁾ 즉, 일측의 주장은 일본인들의 비행은 양국이 관리를 파견하여 공동으로 조사하되, 그들의 왕래 거류는 기정사실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⁵⁴⁴⁾

그런데 하야시 공사는 한국 정부가 울릉도 내부시찰위원으로 우용정을 임명하여 울릉도 현황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한국 정부에서 『官報』로 우용정의 임명을 공식 발표(1899.12.25)하기 전에 이 정보를 입수하여 『관보』 발표 이틀 전에 외무대신 아오키 슈조(靑木周藏)에게 보고했다. 보고에는 시찰위원 파견의 목적이 첫째, 울릉도의 호구 증가 및 토지 개발에 대한 제반 조사, 둘째, 러시아인들이 그 섬에 상륙하여 도민을 괴롭혔다는 情形 시찰, 셋째, 日本人 퇴거 실행 여부 등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⁵⁴⁵⁾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울릉도 현황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한국 정부 관리만 가서 울릉도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일본 정부 관원이 함께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한국 정부로서도 내부시찰관의 울릉도 파견 방침을 이미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이 제의한 공동조사안을 수락하여 일 측에 통보했다(5.4

일.

542) 『交渉局日記』, 光武 4년(1900) 3월 16일;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566.

543)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572.

544) 송병기, 앞의 책, 199~200쪽.

54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 本省往來信, 發第110호(明治 32년 12월 23일).

).⁵⁴⁶⁾ 울릉도에 파견하는 관리로는 울릉도시찰위원으로 임명된 우용정 외에 東萊監理署主事 金冕秀, 부산해관세무사서리 라포르트, 부산해관세무사 幫辦 金聲遠 등을 선임했다. 일본 측에서 파견하는 관리는 부산 주재 領事官補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警部 와타나베 다카지로(渡邊鷹治郎, 통역담당) 등이었다.⁵⁴⁷⁾

울릉도 한일 공동조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국 內部는 그해(1900) 초에 있었던 울릉도감 배계주의 일본인 작폐 보고의 세 가지 사항에 근거하여 울릉도 시찰시 조사 요령을 결정했다(5.14). 즉 첫째, 일본인들의 울릉도 亂斫이 더욱 심하여 울릉도감이 중앙 정부(漢城)에 가서 현황을 보고하려 하는데 일본인이 항구를 지켜서 못 가게 했다는 것, 둘째, 재판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인데 도리어 도감에게 배상을 독촉하고 협박했다는 것, 셋째, 일본인들은 김용원과 벌목 계약을 맺었다며 벌목을 금한다면 배상금을 줄 것을 요청하여 도민들이 3000여 냥을 갚았다고 한다는 것 등 세 가지 사항의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또 조사위원은 이상의 사실을 조사하여 복명하는 것 외에 어떠한 조처의 권리도 없으며, 한일 조사관이 복명하는 것을 기다려서 정부에서 辦理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⁵⁴⁸⁾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도 울릉도 조사 요령 4개항을 준비하여 외무대신 아오키 슈조에게 보고했다. 제1항은 한국 정부의 조회에 관계된 폭행 사실과 원인, 제2항은 울릉도에 있는 일본인의 인구 수, 原籍, 직업, 재류 연한, 소유 선박, 제3항은 목재, 곡물, 잡화 등의 수출입 개황, 제4항은 벌채한 목재 수출입 등에 대하여 島司와의 관계, 즉 대금 또는 세금의 징수 등에 대한 공식 허가 또는 묵인 사실 여부 등이었다. 이와 아울러 러시아 측으로부터 울릉도의 벌목권을 양수받을 수 있으므로 森林 상황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⁵⁴⁹⁾

546) 『交渉局日記』, 光武 4年 3月 27日·5月 4日;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652.

547) 禹用鼎, 「鬱島記」;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65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各領事機密來信, 機密 제6호(明治 33년 5월 21일)·17호(明治 33년 6월 12일).

548) 『內部來去文』 8, 光武 4년(1900) 5월 14일.

54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機密本省往信 一·二, 機密 제34호(明治 33년 5월 4일).

한편, 하야시 공사는 부산영사 노세 다쓰고로(能勢辰五郎)에게 러시아 벌목과 관련한 사항을 覺書로서 전달했다(5.4).⁵⁵⁰⁾ 이 각서 제1항은 조선이 1896년 브린너에게 울릉도 벌목권을 양여했다는 것, 제2항은 1899년 8월에 일본인의 벌목에 대하여 도쿄 주재 러시아공사로부터 항의가 있어 원산영사관 외무서기생 다카오 겐조를 울릉도에 파견했다는 것, 제3항은 1899년 9월 다카오 겐조가 울릉도에 가서 일본인들에게 11월 말까지 퇴거할 것을 명했는데, 이들로부터 도감의 허가를 받아 벌목하는 것이므로 盜伐이 아니라는 진정이 있었다는 것, 제4항은 러시아로부터 벌목권 讓受를 위한 內談을 했고 러시아 측도 대체로 이에 동의하여 目下 아직 교섭 중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4항은 한국인은 물론 울릉도 거주 일본인에 대해서도 비밀로 할 것을 요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이 각서 제4항을 통해 볼 때, 일본 정부는 러시아공사로부터 울릉도 벌목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비밀리에 러시아와 벌목권 양수를 교섭하기 시작했으며, 교섭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⁵⁵¹⁾

울릉도 공동조사에 대한 한일 양국의 준비가 마련되면서 外部大臣 朴齊純과 内部大臣 李乾夏 등은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外部에서 회동(5.21)하여 조사요령 4개항에 합의했다. 제1항은 1899년(광무 3) 7월 울릉도감 배계주, 부산해관세무사 서리 라포트 등이 보고한 일본인들의 범작·화물투운·무기사용 등의 비행 및 도감에 대한 木料 지불 여부 조사, 제2·3·4항은 그해(1900) 초 배계주가 보고했던 일본인들의 작폐 세 가지였다.⁵⁵²⁾ 일본 측은 한국 정부와 공동조사요령을 마련하면서 공식적으로는 한국 측의 제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야시 공사는 부산영사 노세 다쓰고로에게 한·일 간에 합의한 ‘鬱陵島在留日本人調査要領’을 울릉도 조사에 참여하는 아카쓰카 영사관보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⁵⁵³⁾ 동 조사요령에는 한일 간 합의된 내용뿐만 아

55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各領事機密來信, 機密 제5호(明治 33년 5월 4일).

551) 송병기, 앞의 책, 201~202쪽.

552) 『内部來去文』 8, 照會 제11호;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各領事機密來信, 機密 제5호(明治 33년 5월 4일).

55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各領事機密來信, 機密 제6호(明治 33년 5월 21일).

나라, 울릉도감 배계주의 보고에 근거해서 기술되었던 외무대신 박제순 조희(3.16)의 사실 관계가 매우 의심스러우니 이를 조사하라는 지시도 함께 있었다.

2) 한·일 울릉도 공동조사 실시 및 후속조치 협의

한·일 간 울릉도 공동조사 요령 및 조사 일자가 합의된 이후, 울릉도 視察委員 禹用鼎은 1900년(광무 4) 5월 25일 인천에서 일본 警部 와타나베 다카지로(渡邊鷹治郎)와 같이 소카와마루(曾川丸)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다(29일). 부산에서 다시 동래감리서주사 金冕秀, 부산해관세무사서리 라포르트(E. Laporte, 羅保得), 부산해관세무사방관 金聲遠, 부산주재일본영사 관보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한국·일본 순경 각 2명 등과 합류했다. 이들은 소류마루(蒼龍丸) 편으로 부산을 출발(5.30)하여 이튿날 울릉도 道洞 포구에 도착(5.31)했다.⁵⁵⁴⁾ 조사단 일행은 5일간 울릉도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6월 6일 울릉도를 출발했다.⁵⁵⁵⁾

우용정 시찰위원은 아카쓰카 영사관보와 함께 라포르트가 입회한 가운데 鬱陵島監 裴季周와 도민, 그리고 일본인들로부터 한·일 간 합의했던 공동조사요령 4개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자면, 제1항 일본인들의 범작·화물투운·무기사용 등의 비행 및 도감에 대한 木料 지불 여부 조사 건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도감의 官房에 침입한다든지 무기를 휘두르는 등의 비행이 있었으며, 도감은 일본인들로부터 稅太(세로 받는 콩)는 징수하지 않았으나 出口稅는 1896(건양 원년)·1897(광무 원년) 양년에 한하여 100분의 2를 징수했다.

554) 禹用鼎, 「鬱島記」;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各領事機密來信, 釜山領事館 機密 제 17호(明治 33년 6월 12일).

555) 禹用鼎, 「鬱島記」;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各領事機密來信, 釜山領事館 機密 제 17호(明治 33년 6월 12일). 전체 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 1일~3일. 일본인 및 울릉도감 査問(우용정 시찰위원 및 아카쓰카 쇼스케 일본 영사관보와 함께 회동 조사, 라포르트 부산해관세무사는 곁에서 조사 내용 청취

6월 4일. 조사선을 타고 섬 전체 순찰, 天府洞의 古仙浦, 玄圃洞, 台霞洞 등에 상륙

6월 5일. 각 洞 거주민들의 하소 청취

제2항 일본인의 울릉도 규목 亂斫과 배계주 도감의 상경 방해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전 도감 吳相鎰(또는 聖一) 등에게 楓木 2株의 값을 준 것을 빙자하여 규목 등을 남벌했으며, 도감 배계주의 상경을 방해했다. 제3항 일본인들이 도감에게 배상을 독촉하고 협박했다는 건에 대해서는 비록 闕席裁判이기는 했지만, 앞서(1899) 배계주가 일본 마쓰에(松江)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 패하여 피고인 후쿠마 효노스케(福間兵之助) 등에게 콩 400두를 지급했다. 제4항 일본인들이 金庸爰과 벌목 계약을 맺었다며 벌목을 금한다면 배상금을 줄 것을 요청하여 도민들이 3,000여 냥을 갚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농상공부로부터 규목 벌채 허가를 받은 東萊人 金希彦 등에게 3000여 냥을 주고 규목 80주의 벌채를 계약했고, 查檢 金용원은 이를 위하여 김희언 등이 파견한 사람이며, 일본인들은 80주를 다 벌채한 뒤 돌아가려 한다고 했다.⁵⁵⁶⁾

또 우용정 시찰위원은 동래감리서주사 김면수와 같이 일본인들의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일본인 수는 남녀 합하여 144명, 留泊 중인 선박은 11척이었다. 우용정이 체류하는 동안에도 伐木匠 40명 등 도합 70명을 태운 일본 선박 4척이 들어와 이에 대해 아카쓰카 영사관보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일본인들은 1899년(광무 3) 이후 규목 71주를 범작했고, 甘湯木을 베끼어 생즙 1000여 통을 만들었으며, 香木이나 雜木을 마구 베어 그릇을 만들어 가기도 했다. 그리고 늘 트집을 잡아 소요를 일으키고 이를 빙자하여 규목 許斫票를 얻어냈으며,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內庭에 뛰어들어 주민을 농락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폐해에 대해 우용정은 “일본인들이 만약 하루를 머문다면 하루의 피해가 있고 이틀을 머문다면 이틀의 피해가 있다”⁵⁵⁷⁾고 평가했다.

반면, 아카쓰카 영사관보가 출장에서 돌아와 일본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⁵⁵⁸⁾에는 울릉도에서의 일본인에 대해 우용정과 전혀 다르게 평가했다.

556) 禹用鼎, 「鬱島記」; 『鬱陵島ノ於ケル伐木關係雜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各領事機密來信, 釜山領事館機密 제17호(明治 33년 6월 12일); 송병기, 앞의 책, 202~203쪽; 박병섭, 앞의 책, 107~108쪽.

557) 禹用鼎, 「鬱島記」; 『東萊報牒』 4, 報告 제26호(光武 4년 6월 9일); 송병기, 앞의 책, 203~204쪽.

558)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의 보고서의 원본은 『鬱陵島ノ於ケル伐木關係雜件』(일본

그는 울릉도 도민들과 일본인들 사이에 감정이 매우 좋으며, 도민들은 일본인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받아 기쁘게 여긴다고 기술했다. 다만 울릉도 감 배계주와 일본인들은 감정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일본에 가서 규목의 가치를 잘 알게 된 배계주가 직접 울릉도 규목을 벌채하고 일본인 한 사람과 결탁하여 이익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카쓰카는 1899년부터 배계주가 한국 정부에 일본인 규목 도벌을 보고하면서 도민들이 규목 지키기를 목숨처럼 여긴다고 진술했던 것은 모두 이런 속셈에서 나온 말이라고 평가했다.

아카쓰카 영사관보는 울릉도에 대해 앞으로 전망이 그리 유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섬에 있는 일본인을 철수시키거나 入島를 금지시킨다 하더라도 그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금 1년간 이 섬의 일본인 문제를 미결로 남겨둘 방법만 있다면 규목은 거의 다 벌채될 것으로 전망했다.⁵⁵⁹⁾

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은 일본과의 울릉도 공동조사를 마치고 울릉도를 출발(6.6)하여 이튿날 부산을 거쳐 인천항을 통해 서울로 돌아왔다(6.15).⁵⁶⁰⁾ 그는 곧 일본 측과 공동으로 조사한 4개 사항과 그가 직접 조사하고 조치한 내용,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대신 李乾夏에게 제출했다.⁵⁶¹⁾ 이 보고서에서 우용정은 두 가지 대책을 건의했다. 첫째는 울릉도 도민을 보전할 수 있고 삼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인들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 둘째는 울릉도 도감이 권한이 없어 일본인이나 도민이 도감을 업신여기니 관제를 개편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⁵⁶²⁾

우용정의 보고를 받은 한국 정부는 곧 주한일본공사관에 조회(6.20)하

外交史料館 소장)이 있고, 사본은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各領事機密來信 釜山領事館機密 제17호(明治 33년 6월 12일)가 있다. 사본은 필사의 과정에서 誤記(예를 들어 보고서 제출날짜가 원본은 6월 15일, 사본은 6월 12일) 및 내용 누락도 다소 있다.

559) 『鬱陵島ノ於ケル伐木關係雜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560) 『皇城新聞』, 光武 4년 6월 18일; 『東萊報牒』 4, 報告 제27호, 光武 4년 6월 9일.

561) 禹用鼎, 「鬱島記」; 『內部來去文』 8, 照會 제12호, 光武 4년(1900) 6월 19일.

562) 禹用鼎, 「鬱島記」.

여 공동조사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6월 23일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⁵⁶³⁾ 그러나 일본 측은 아직 아카쓰카 영사관보의 보고서가 제출⁵⁶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일정을 늦출 것을 요청했다(6.21).⁵⁶⁵⁾ 이에 대해 한국 측은 26일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일본 측이 아카쓰카 영사관보의 보고서를 이유로 계속 늦추기를 요청하자 결국 6월 27일 한국 外部에서 회의를 개최했다.⁵⁶⁶⁾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내부대신 이견하, 외부대신 朴齊純, 내부 지방국장 鄭駿時, 일본 측에서 주한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서기관 고쿠부 쇼타로(國分象太郎) 등이 참석했다.⁵⁶⁷⁾ 외부대신 박제순은 일본인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면서 작년에 다카오 겐조(高雄謙三) 서기생이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에도 철수를 명했던 일도 있으므로 다른 이견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야시 공사는 작년의 경우 오로지 울릉도감의 보고만으로 한국 정부를 믿고 관리를 파견하여 퇴거를 명령했었다. 그런데 올해 양국의 공동조사 결과 한·일 양 국민에게 서로 잘못이 있으니, 본국 정부에 보고해서 훈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하면서 일단 울릉도에 訓飭하여 일본인의 侵害는 금지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인의 조속한 철수를 재차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오늘 철수한들 내일 다시 돌아오면 어찌겠냐고 답하며 철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다.⁵⁶⁸⁾ 한·일 양국이 울릉도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양국 대표가 어렵게 회의를 가졌지만, 이 회의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563) 『內部來去文』 8, 照會 제12호, 光武 4년(1900) 6월 19일; 『交渉局日記』, 光武 4년 6월 20일;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763.

564) 부산영사관의 아카쓰카 영사관보의 보고서는 6월 15일에 제출되었고, 주한일본공사관은 동 보고서를 6월 19일에 접수했다(『鬱陵島ノ於ケル伐木關係雜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565) 『交渉局日記』, 光武 4년 6월 20일;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764.

566) 『交渉局日記』, 光武 4년 6월 22·25·26일;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771~5774; 『內部來去文』 8, 照會 제13호, 光武 4년(1900) 6월 25일·照覆 제11호, 光武 4년 6월 26일.

567) 『交渉局日記』, 光武 4년(1900) 6월 27일; 『皇城新聞』, 光武 4년 6월 29일.

568) 『皇城新聞』, 光武 4년(1900) 6월 29일;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機密本省往信 一·二, 機密 제54호(明治 33년 7월 4일).

하야시 공사는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자신의 언급대로 외무대신 아오키 슈조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7.4). 이 보고에서 하야시는 일본인들이 도감의 黙許하에 울릉도에 거주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벌목도 전적으로 쌍방에서 합의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제안대로 일본인들을 철수시켜야 할지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일본인들이 철수하면 울릉도민들은 육지와 교통편 및 농산물 매매 대상이 없어지고, 수요 공급이 막혀서 심한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인들을 철수시켜보야 다시 재도항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국 정부가 단속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일본이 자진 퇴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했다. 하야시 공사의 보고는 일본인의 울릉도 거주를 묵인한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일본인 철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회신할 것을 아오키 외무대신에게 건의하면서 끝맺고 있다.⁵⁶⁹⁾

아오키 외무대신은 하야시 공사의 보고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인의 왕래, 거주를 용인하고 세관 관리를 파견해서 출입 화물에 관세를 부과하여 징수한다면 한국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도민의 편익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니, 이러한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제의할 것을 지시했다(7.18).⁵⁷⁰⁾

한편, 한·일 양국이 울릉도 공동조사를 펼쳤음에도 울릉도에서의 일본인 작폐는 계속되고 있었다. 울릉도감 배계주의 보고에 의하면, 우용정이 울릉도 조사를 마치고 떠난 다음날(6.7) 일본 선박 5척이 또 울릉도에 들어와서 그 전보다 더욱 심하게 남은 규목들을 작별했다. 배계주는 일본인들에게 규목 작별을 금지시키면서 이들을詰問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전 도감 吳相鎰의 許斫票와 田在恒의 伐木票가 있는데 왜 금지시키는지 도리어 배계주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오상일의 허작표는 일본인들에게 불과 규목 2株의 작별을 허가했던 것인데 이미 70여 주를 작별했고, 전재항의 허작표도 80주로 정했던 것인데 이미 83주를 작별하는데 이르렀다. 우용정과 아카쓰카 영사관보가 공동조사할 때도 이러한 사정을 소상히 조

56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機密本省往信 一·二, 機密 제54호(明治 33년 7월 4일).

57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機密本省來信, 機密送 제36호(明治 33년 7월 18일).

사했었다. 특히 아카쓰카는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일본인들에게 申飭 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인들의 작벌이 더욱 심해졌던 것이다.⁵⁷¹⁾

울릉도감 배계주는 일본인들의 이런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조선 정부는 1895년부터 울릉도 도민 중에 島監을 임명하여 배치했지만, 도감 외에는 단 한 사람의 書記나 私傭도 없었고 月俸도 없었다. 1898년 도감이 지방관제에 편입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점들은 도감의 체통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물론 도민들까지도 도감을 업신여기고 비행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있었다.⁵⁷²⁾

자체적으로 일본인들의 작폐를 금지시킬 능력이 없었던 울릉도감 배계주는 外部가 이 문제를 일본 측에 제기하여 일본인들이 물러나도록 조치해달라고 内部에 보고했다. 배계주의 보고를 받은 내부는 지난번 일본공사와 답판(6.27)할 때 일본공사가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기한을 정해 撤還할 뜻을 約定⁵⁷³⁾했으니, 주한일본공사관에 조회해서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을 철수시켜 달라고 외부에 요청했다(7.5).⁵⁷⁴⁾

그런데 내부의 요청을 받은 외부는 어찌된 일인지 두 달이 되어가도록 주한일본공사관에 이에 대한 조회를 하지 않았다. 내부는 외부에 공문을 보내 주한일본공사관에 울릉도의 일본인 철수를 즉시 조회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8.27).⁵⁷⁵⁾ 내부의 재요구를 받은 외부대신 박제순은 하야시 곤스케 주한일본공사에게 조회하여 부근(부산일본영사관)의 영사에게 電飭하여 울릉도의 일본인들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다시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9.5).⁵⁷⁶⁾ 이에 대해 하야시 공사는 만약 울릉도감

571) 『内部來去文』 8, 照復 제14호, 光武 4년(1900) 7월 5일;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5, 文書番號 5900.

572) 禹用鼎, 「鬱島記」.

573) 6.27 외부대신, 내부대신이 참석한 일본공사와의 답판에 대해 『皇城新聞』(光武 4년 6월 29일)은 일 측이 일본인 철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웠던 것으로 보도했었는데, 내부가 외부에 보낸 공문(『内部來去文』 8, 照復 제14호, 光武 4년 7월 5일)에는 일본공사가 일본인 철수를 약정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74) 『内部來去文』 8, 照復 제14호, 光武 4년(1900) 7월 5일; 『交涉局日記』, 光武 4년 7월 6일.

575) 『内部來去文』 8, 照復 제14호, 光武 4년(1900) 8월 27일; 『交涉局日記』, 光武 4년(1900) 8월 27일.

576)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5, 文書番號 5900.

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부근 영사에게 소환장을 발급하게 해서 일본인들을 일본 법정에서 심문 후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9.10).⁵⁷⁷⁾

한편, 한국 외부의 조회가 있던 날,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앞서 7월 18일자 아오키 슈조 외무대신의 훈령이 포함된 조회문을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전달했다(9.5). 그 주요 내용은 한·일 양측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첫째, 일본인은 10년 전부터 울릉도에 재류했으며, 둘째, 일본인의 벌채는 도감이 의뢰했거나, 적어도 매매 계약에 의한 것이며, 셋째, 일본인과 도민 사이의 교역은 수요 공급상 긴요할 뿐 아니라 도민의 바람에 의한 것이고 도감이 수출입세를 징수했으며, 넷째, 도민의 내륙 교통은 주로 일본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었다.⁵⁷⁸⁾

이 조회문에서 하야시 공사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퇴거를 명한다면 일본인들을 미혹시킬 뿐 아니라 울릉도는 도민들의 농산물 판매, 일용품 공급, 내륙과의 교통편을 잃게 되고, 한국 정부는 세수상의 결손을 보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퇴거를 강요한다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퇴거자를 위한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단 퇴거한 뒤 재도항자가 없으리라 보장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퇴거를 고집하기보다는 관세를 징수하고 수목 벌채에 관한 상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현상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일본 정부가 바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⁵⁷⁹⁾ 이 제안은 외무대신 아오키 슈조가 한국 정부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던 훈령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그 본의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재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이러한 요구를 즉시 거부했다. 한국 외부대신 박제순은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에게 회답조회(9.7)를 보내어 일본

577)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5, 文書番號 5907.

578) 『交渉局日記』, 光武 4년(1900) 9월 5일;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901.

579) 『交渉局日記』, 光武 4년(1900) 9월 5일;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901.

측에서 보내온 조회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일본인이 와서 거주한 것은 5-6년, 혹은 3-4년에 지나지 않고, 通商口岸이 아닌 곳에서의 거주·偷運은 조약에 위반되며, 도감이 여러 차례 일본인들의 퇴거를 신칙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으니 默許·懲憑이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둘째, 盜伐 관련해서 일본인들이 전 도감 등과 합의하여 매매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 도감들의 일시적인 과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이를 빙자하여 濫伐했으며, 셋째, 도감의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도감이 벌금으로 出口貨(수출화물)에 한해서 100분의 2를 징수했을 뿐 進口貨(수입화물)에 대한 세도 없으므로 수출입세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넷째, 도민들은 일본인들로부터 곤욕을 당하여 원수처럼 여기는데, 편의로 여길 이치가 만무하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 조회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상기의 일들을 정당한 행위로 여겨 죄를 징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습을 기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울릉도의 일본인들에게 기일을 정해 철수시켜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⁵⁸⁰⁾

한국 측의 울릉도 재류 일본인 철수 요구에 대해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강경한 어조의 조회문을 보내어 이를 거부했다(9.12). 이에 따르면, 하야시 공사는 일본 측이 지난번에 조회한 主意는 양국 공동 조사 결과에 비추어 서로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조약을 내세워 斷案을 강요하면 일본으로서도 조약을 원용하여 이 사건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조약 규정 이외의 지역, 즉 非開港·開市場에 산재하는 선교사 등 많은 외국인들은 그대로 둔 채 울릉도 재류 일본인만의 퇴거를 요구하는 데 동의할 수 없으며, 일본인들의 울릉도 재류가 조약 규정 외의 일이지만 그것이 관습화된 책임은 도감, 즉 한국 정부에 있다는 것을 또 다시 내세웠다.⁵⁸¹⁾

일본 정부는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계속 재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면서 조선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울릉도에 일

580) 『交渉局日記』, 光武 4년(1900) 9월 7일;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905; 『內部來去文』 8, 光武 4년 9월 12일.

581) 『交渉局日記』, 光武 4년(1900) 9월 12일;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4, 文書番號 5909.

본인들이 재류하게 된 책임은 모두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철수를 강하게 거부하고 나섰다. 외부대신 박제순은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던 일본 측과의 협상 결과를 내부대신 이견하에게 통보했다. 박제순은 이 통보에서 울릉도 재류 일본인들을 철수시켜 달라는 한국 측 요구에 대한 일본 측의 강경한 거부 입장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 안건의 해결이 아득하여 그 기약이 없사오며, 한갓 虛文만을 일삼는 것도 좋은 계책이 아닌 즉 참으로 걱정…”이라고 개탄하는 말로 끝을 맺었다.⁵⁸²⁾

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이 한·일 울릉도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⁵⁸³⁾를 통해 건의했던 울릉도 재류 일본인 철수에 대한 한·일 간의 협상은 이렇게 아무 성과 없이 일단락되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울릉도 재류 일본인들을 철수시킬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계속 재류시키려 한다는 것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신 한국 정부는 울릉도에 대한 행정력 강화를 위해 우용정이 울릉도 재류 일본인 철수와 함께 건의했던 울릉도 관제 개편을 서둘러 추진했다.

3. 대한제국의 「勅令 第41號」(1900) 반포와 독도 관할

1) 「勅令 第41號」(1900)의 제정과 반포

울릉도 시찰위원 禹用鼎은 한·일 울릉도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울릉도 재류 일본인 철수와 함께 울릉도 관제 개편을 건의했다.⁵⁸⁴⁾ 울릉도 관제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 그는 1894년 內部가 울릉도에 島監을 두어 섬 전체의 사무를 관할케 했는데, 도감 수하에 書記나 使傭 등이 없고, 月俸 및 대신 경작해 주는 廩料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인이나 도민들이 범법하는 것을 논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도감을 업신

582) 『內部來去文』 8, 照復, 光武 4년(1900) 9월 12일; 『內部來去文』 8, 照會(光武 4년 9월 15일); 송병기, 앞의 책, 209~211쪽.

583) 禹用鼎, 「鬱島記」; 『內部來去文』 8, 照會 제12호, 光武 4년(1900) 6월 19일.

584) 禹用鼎, 「鬱島記」; 『內部來去文』 8, 照會 제12호, 光武 4년(1900) 6월 19일.

여긴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관원, 서기, 사환의 월급은 섬 내 400여 호로부터 걷는 콩과 보리 80석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경비는 전라남도민에게 징수하는 미역 채취세의 세율을 5%에서 10%로 올리면 액수가 연간 1,000여 원이 되므로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⁵⁸⁵⁾

그런데 우용정이 이 보고서를 올릴 때인 1900년 6월 이전에 내부는 이미 울릉도 관제 개정에 대한 請議書를 議政府 회의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고 있었다. 비록 공문서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皇城新聞』(1900.3.1일자)에 소개되어 그 전모를 가늠할 수 있는 이 울릉도 관제 개정건은 島監을 임기 5년의 監務라 개칭하여 奏任官으로 정하고, 內部 地方局長의 지휘를 받게 했다. 감무 아래에는 島長 1명, 書記 2명, 通引 2명, 使令 2명을 두었다. 관리의 봉급은 울릉도 호구와 전결을 조사하여 打算한 후에 도민들의 公議를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⁵⁸⁶⁾

내부가 1900년 초반에 작성한 위의 울릉도 관제 개정건은 우용정의 울릉도 시찰(6월) 이후 도감 裴季周의 報牒, 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과 부산해관세무사서리 라포르트(E. Laporte, 羅保得)의 視察錄을 참작하여 감무 대신 군수를 파견키로 하는 등 대폭적으로 재정비되었다.⁵⁸⁷⁾ 이에 따라 내부는 재정비된 울릉도 관제 개정건을 1900년 10월 22일 設郡請議書, 즉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에 關한 請議書」로 議政府에 제출했다.⁵⁸⁸⁾ 이 설군청의서는 울릉도의 크기를 縱[縱] 80리, 橫 50리⁵⁸⁹⁾라고 하면서 郡을 설치해야 할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울릉도는 호수가 400여 호, 墾田이 1만여 두락, 1년 농산이 감자 2만여 包, 보리 2만여 포, 콩 1만여 포, 밀 5000여 포나 되어 내륙의 山郡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며,⁵⁹⁰⁾ 둘째, 외국인들이 왕래 교역하

585) 禹用鼎, 「鬱島記」; 송병기, 앞의 책, 208쪽.

586) 禹用鼎, 「鬱島記」; 『皇城新聞』, 光武 4년(1900) 3월 1일.

587) 『皇城新聞』, 光武 4년(1900) 10월 8일.

588) 『各部請議書存案』 17(奎章閣 소장).

589) 우용정은 보고서(「鬱島記」)에서 울릉도의 크기를 長 70리, 廣 40리, 周廻 140-150리라고 보고했다. 라포르트는 울릉도 면적만을 언급하여 25제곱마일(「Japanese treatment of natives at Dagelet, transmit report of Commissioner of Customs at Fusan」) 또는 75평방리(『皇城新聞』, 光武 3년 9월 23일)라고 기록했다. 따라서 청의서에 기록된 울릉도 크기는 배계주의 보첩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 있어 현행 도감 체제로는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었다.⁵⁹¹⁾

내부의 설군청의서를 접수한 의정부는 10월 24일 의정부 議政 尹容善의 주재하에 대신들이 참여한 의결⁵⁹²⁾을 거쳐 1900년 10월 25일에 光武 4년 「勅令 第41號」로 高宗 皇帝 재가를 받았고, 10월 27일자 『官報』(제 1711호)에 이를 게재했다. 당시 公文式(개국 504년(1895) 칙령 제86호)에 의하면 “무릇 법률 명령은 관보로써 반포할 事”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장 제10조 1항),⁵⁹³⁾ 10월 27일은 바로 「칙령 제41호」의 반포일이 된다. 그리고 「칙령 제41호」 부칙 제6조에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事”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칙령 제41호」는 1900년 10월 25일에 제정되었고, 10월 27일에 반포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⁵⁹⁴⁾

근대 행정체계에 맞게 독도 소속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울릉도 경영에도 획기적인 대전환을 보여주는 「칙령 제4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勅令 第四十一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호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호 件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호야 江原道에 附屬호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호야 官制中에 編入호고 郡等은 五等으로 할 事

第二條 郡廳 位寔는 台霞洞으로 定호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를 管轄호 事

第三條 開國 五百四年 八月 十六日 官報中 官廳事項欄內 鬱陵島 以下 十九字를 刪去호고 開國 五百五年 勅令 第三十六號 第五條 江原道 二十六郡의 六字는 七字로 改正호고 安峽郡下에 鬱島郡 三字를 添入호

590) 우용정 보고서(「울도기」)에는 墾田(田土)이 7,700여 두락으로 되어 있어 1만여 두락과는 차이가 있으며, 농산물 수확량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역시 배계주의 보첩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591) 『各部請議書存案』 17(규장각 소장).

592) 『奏本』 제187호, 光武 4년(1900) 10월 25일.

593) 「勅令」, 開國 504년(1900) 5월 7일; 『官報』, 開國 504년 5월 11일·12일.

594) 송병기, 앞의 책, 215쪽.

事

第四條 經費는 五等郡으로 磨鍊호되 現今間인 즉 吏額이 未備호고 庶事 草創호기로 該島 收稅中으로 姑先 磨鍊호 事

第五條 未盡호 諸條는 本島 開拓을 隨호야 次第 磨鍊호 事
附 則

第六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호 事

光武 四年 十月 二十五日 奉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 贊政 內部大臣 李乾夏⁵⁹⁵⁾

「칙령 제41호」(1900)의 제1조에 의하면, 울릉도는 울도군으로 개칭되고, 중앙으로부터 奏任官인 郡守를 파견하게 되었다.⁵⁹⁶⁾ 이전 울릉도 도감은 判任官 대우였고, 울릉도 사람이 임명되었다. 또 비록 최하급인 5등급의 郡이지만, 군수 외에 巡校 2명, 首書記 1명, 書記 4명, 通引 2명, 使令 4명, 使備 2명, 使僮 1명, 客舍直 1명, 鄉校直 1명 등 모두 19명의 직원을 둘 수 있게 되었다.⁵⁹⁷⁾

이 칙령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제2조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규정이다. 이에 의하면, 울도군은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를 관할한다. 울릉전도는 현재의 울릉도와 그 주변의 작은 섬과 바위들을 망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죽도는 현재의 竹島(덧섬, 竹嶼, Boussole rock)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일찍이 1882(고종 19) 檢察使 李奎遠이 울릉도를 검찰한 후 船板邱尾(섬목) 남쪽에 마주하여 바라보이는 죽도를 「鬱陵島外圖」에 섬 모양과 함께 표기하여 보고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石島가 어느 섬을 가리키느냐는 문제이다. 현재 울릉도 주변에는 석도라는 지명을 가진 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석도를 訓讀하면 ‘돌섬’이 되는데, 지금도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독섬’ 혹은 ‘돌섬’이라 부르고 있

595) 「勅令」(규장각 소장) 9, 光武 4년(1900) 10월 25일; 『官報』, 光武 4년 10월 27일.

596) 建陽 元年(開國 505년) 勅令 제37호 地方官吏職制(「勅令」, 建陽 元年 8월 4일; 『官報』, 建陽 元年 8월 6일) 참조.

597) 建陽 元年(開國 505년) 勅令 제36호 地方制度和 官制와 俸給과 經費의 改正에 關호 件(「勅令」, 建陽 元年 8월 4일; 『官報』, 建陽 元年 8월 6일) 참조.

다.⁵⁹⁸⁾ 그렇다면 독도는 ‘독섬’에서 借音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석도를 독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독도를 가리키던 조선시대의 명칭인 우산도가 석도와 독도로 명칭이 변이되어 가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가면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한편, 「칙령 제41호」 제3조는 법령 정비, 제4·5조는 經過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제3조 중 “개국 504년 8월 16일 관보 云云”한 것은 ‘울릉도에 도감을 置ᄃᆞ는 건’을 삭제한다는 것이며, “개국 505년 칙령 제36호”란 1896년(건양 원년) 8월 4일에 23府를 13道로 개편하면서 반포한 ‘지방제도와 관제와 경비의 개정에 관ᄃᆞ는 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됨에 따라 제5조의 강원도 26군을 27군으로 고치고, 제26군인 안협군 다음에 제27군으로 울도군을 넣는다는 것이다.⁵⁹⁹⁾ 또 제4조의 규정은 우용정이 울릉도에서 돌아온 직후에 건의한 울릉도 관제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경비와 월봉에 관한 대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 하겠다. 제4조에 보이는 ‘吏額’은 관리의 數, ‘庶事’는 제반 사무를 말한다.⁶⁰⁰⁾

2) ‘于山島=石島=獨島’論

光武 4년(1900) 「勅令 第41號」 제2조는 鬱島郡의 관할구역으로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를 규정했다. 여기서 석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독도를 일컫는 ‘독섬’ 혹은 ‘돌섬’을 한역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독도를 가리키던 명칭이었던 우산도가 왜 갑자기 석도로 표기되기 시작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19세기 후반의 우산도 인식을 살펴보고, 울릉도 개척(1883) 이후 울릉도와 그 주변 섬들의 지명이 어떻

598) 독도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돌섬이다. 이에 따라 서양에서 1849년 독도를 처음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捕鯨船) 리앙쿠르(Liancourt)호 선원들도 이 배 이름과 독도의 형상을 합쳐서 ‘리앙쿠르 암(Rochers Liancourt)’이라고 이름지었다; 田保橋潔, 「鬱陵島 その發見と領有」, 『靑丘學叢』 3, 1931, 11쪽 참조.

599) 「勅令」, 建陽 元年 8월 4일; 『官報』, 建陽 元年 8월 6일; 『高宗實錄』 권 33, 고종 32년(1895) 8월 15일(癸未); 『官報』, 開國 504년(1895) 8월 16일, 9월 20일.

600) 송병기, 앞의 책, 215쪽.

게 새롭게 정착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9세기 후반, 특히 1895년부터 울릉도에서의 일본인 불법 犯斫이 본격적으로 말썽을 빚기 시작했다.⁶⁰¹⁾ 그리고 이는 1897년 광무연간으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해져 울릉도의 규목을 남벌할 뿐만 아니라 島民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作弊도 매우 심했다.⁶⁰²⁾

이처럼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작폐가 심해짐에 따라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에서는 1899년(광무 3) 5월 부산에 머무르고 있던 전 島監 裴季周를 도감에 재임명했다. 그리고 부산 海關稅務司 브라운(J. Mc. Brown, 柏卓安)에게 서양인 1명을 파견하여 울릉도의 상황을 조사하게 했다. 이에 부산 海關세무사 서리 라포르트(E. Laporte, 羅保得)가 선정되어 1899년 6월 하순 배계주와 함께 울릉도로 떠났다.⁶⁰³⁾

1899년 9월 23일자 『皇城新聞』 「別報」에는 울릉도의 역사와 당시 라포르트의 조사 보고 내용을 「鬱陵島事況」이라는 제하에 소개했다. 기사 첫머리에는 울릉도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蔚珍之東海에 一島가 有호니 曰 鬱陵이라 其 附屬한 小六島中에 最著者는 于山島 竹島니 大韓地誌에 曰 鬱陵島는 古于山國이라.⁶⁰⁴⁾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울릉도에 부속된 작은 6개의 섬 가운데에서 가장 우뚝한 것으로 于山島와 竹島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죽도’는 바로 울릉도 동북쪽 가까이에 있는 오늘의 竹島(땃섬, 竹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울릉도에 부속된 가장 큰 섬의 하나로 거론한 ‘우산도’는 어느 섬을 가리키는 것인지 이 기사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601) 『統署日記』 3, 高宗 32년 5월 20일·21일, 閏 5월 30일; 『日案』 3, 文書番號 3666-3688; 송병기, 위의 책, 195쪽.

602) 「內部來去案」 6, 光武 2년; 『外衙門日記』(『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高麗大學校附設 亞細亞問題研究所, 1974), 光武 2년 2월 10·29일; 위의 책.

603) 「內部來去案」 7, 照會 제13호; 『俄案』 2(『舊韓國外交文書』 18, 高麗大學校附設 亞細亞問題研究所, 1969) 文書番號 1460; 『內衙門日記』, 光武 3년 6월 27일·28일; 위의 책, 195~196쪽.

604) 『皇城新聞』, 光武 3년(1899) 9월 23일.

그런데 울릉도 부속섬이 「칙령 제41호」(1900)와 거의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다. 즉 「칙령 제41호」 제2조에는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鬱陵全島, 竹島, 石島’를 명시했다. 여기서 죽도는 1899년 『황성신문』 기사상의 죽도와 동일하다. 석도는 『황성신문』 기사에 대입시켜 본다면 우산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1900년에 석도로 일컫는 섬을 그 전해인 1899년에는 왜 우산도라고 했을까. 이 의문을 풀어내기 위해 상기 『황성신문』 기사를 작성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들을 살펴보겠다.

우선 1899년 『황성신문』 기사는 라포르트 보고 내용을 게재하기는 했지만, 그 앞부분의 울릉도 역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기자가 작성한 것이다. 기자는 울릉도 역사에 대한 설명을 위 인용문과 같이 시작하면서 섬의 생산물, 땅의 성질, 可之魚(강치), 霍鳥(각새), 울릉도 搜討制度, 東南諸島開拓使兼捕鯨使 金玉均, 島監 裴季周 등에 대해 서술했다. 그리고 그해 봄에 울릉도감 배계주가 울릉도에서의 일본인 침탈에 대한 방어책을 세워주기를 내부에 보고했고, 내부에서는 부산해관세무사 브라운에게 서양인 한 명을 파견하여 조사케 했으니, 그 보고 내용을 소개한다고 했다.

기자는 울릉도를 설명하기 위해 조선에 전해지는 지지류를 우선적으로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 전기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1531), 조선 후기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지리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한 『東國文獻備考』(1770), 이 외에도 여러 지도류 등을 참조하지 않았을까 한다. 기자의 본문에는 『大韓地誌』를 인용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우산도라는 명칭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가 설명되어 있지만, 『황성신문』의 위 기사에 있는 울릉도 동북쪽에 소재한 죽도가 언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지리지만을 참고해서 기사를 썼다면 죽도를 울릉도 부속섬으로 거론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죽도 지명이 현전하는 기록상 처음 등장하는 것은 정조대 울릉도 搜討官 越松萬戶 韓昌國의 울릉도 수토 기록에 의해서이다. 그 다음으로는 1882년 울릉도감찰사 李奎遠이 울릉도를 감찰하고 작성한 「鬱陵島外圖」에 등장한다.

『황성신문』의 울릉도 기사 작성자가 위의 자료들을 열람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울릉도 부속 섬에 대한 정보가 중앙에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사상에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이나 울릉도감 배계주에 대한 언급 등이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사는 최근 현황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울릉도의 부속 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산도와 죽도를 열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울릉도 부속 섬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일본인에게도 전해졌다. 東亞同文會⁶⁰⁵ 간사이며, 한국에서 내각 고문을 역임한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의 보좌관으로서 기록, 편찬, 관보 등의 사무를 감독한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는 『朝鮮開化史』(1901)에서 울릉도 부속섬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대소 6도가 있다. 그 중 우뚝한 것을 于山島(일본인은 松島라고 이름한다)와 竹島라고 한다.⁶⁰⁶

저자인 쓰네야 세이후쿠는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친분이 있는 朴泳孝와 연계하여 갑오개혁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한국의 정황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가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우산도와 죽도를 거론한 것은 『황성신문』(1899.9.23일자)의 기사를 참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여기에 더해 우산도를 일본인은 松島라고 이름한다고 했다.⁶⁰⁷ 당시 일본에서 松島는 울릉도 또는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섬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동국문헌비고』(1770)의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다 우산국의 땅인데, 우

605) 동아동문회는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의 남하에 위기를 느끼고 조선 내에 친일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천지명, 「한말 일본 동아동문회의 조선 교육 진출」, 『동서사학』 9, 한국동서사학회, 2003; 채수도, 「초기 동아동문회의 정치적 성격과 정책 노선에 관한 연구」, 『대구사학』 90, 대구사학회, 2007).

606) 恒屋盛服, 『朝鮮開化史』, 1901, 博文館; 박병섭, 앞의 책, 7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大小六島アリ 其中著名ナルヲ于山島(日本人ハ松島ト名ク)竹島ト云

607) 다만, 『조선개화사』에 부속된 지도에는 竹島가 가공의 섬 아르고노트 위치에, 松島가 울릉도 위치에 잘못 표기되어 있다.

산은 왜가 이르는 바 송도다'라고 했다(輿地志云 鬱陵·于山 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는 기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쓰네야 세이후쿠는 조선의 여러 지지류와 신문 자료들을 참고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지를 비교적 정확히 작성했던 것이다.

그러면 왜 우산도가 석도로 명칭이 변천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칙령 제41호」(1900)의 근간이 되는 내부의 設郡請議書, 즉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에 關한 請議書」(1900.10.22)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⁶⁰⁸⁾ 이와 아울러 1883년 울릉도 개척 이후 울릉도 지역에 대한 지명이 새롭게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고찰하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울릉도 설군청의서는 울릉도 도감 배계주의 報牒, 울릉도시찰위원 禹用鼎과 부산해관세무사서리 라포르트의 視察錄을 참작하여 작성되었다. 내부시찰관 우용정의 보고서는 1900년 울릉도를 시찰하고 돌아와 작성한 『鬱島記』⁶⁰⁹⁾가 전해져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보고서가 공문서로서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 라포르트가 1899년 시찰하고 난 후 보고했던 문서와 이를 소개한 『황성신문』 기사가 전해지고 있지만,⁶¹⁰⁾ 1900년 울릉도 시찰 후의 보고서는 전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배계주(1851~1918)는 仁川 永宗島 출신으로 울릉도 개척 초(1883)에 입거하여 1895년 8월(양 10월) 내부대신 朴定陽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 島長制에서 島監制로 바뀌면서 判任官 대우로 島監에 임명되었다.⁶¹¹⁾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608) 「各部請議書存案」 17(奎章閣 소장).

609) 『鬱島記』는 內部用 野板 朱印紙에 필사한 것으로서 崔南善이 발굴한 것으로 짐작되며,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접근』, 역사공간, 2010, 191쪽).

610) 「Japanese treatment of natives at Dagelet, transmit report of Commissioner of Customs at Fusan」, 『Further Correspondence respecting the Affairs of Corea, Part XIII(1899)』, 영국국립문서보관소; 홍성근, 앞의 논문; 『皇城新聞』, 光武 3년(1899) 9월 23일.

61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本省機密往信(明治 33年), 機密 第133號; 『高宗實錄』 권 33, 고종 32년(1895) 8월 16일(甲申); 『官報』, 開國 504년 8월 16일·9월 20일; 송병기, 앞의 책, 2010, 183쪽; 이상태, 앞의 논문, 74~76쪽.

만, 그의 보고서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내부 청의서를 근간으로 작성된 「칙령 제41호」(1900)의 울도군 관할 구역은 이 세 사람 중 누군가의 보고에 의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보고에는 독도를 가리키던 명칭이었던 우산도가 아닌 석도로 표기됐을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 사람들에게 있어 우산도는 이미 잊혀져버린 섬 명칭이었기 때문이다. 『매일신보』(1913.6.22) 기사에 의하면, 울도군 서면 김원준이라는 사람이 울도로부터 동북 방향 약 4, 50리 거리에 우산도라는 무인도가 있다고 하여 탐험을 계획하다가 중지했다고 한다. 또 십 수 년 전에도 울릉도의 內鮮人이 우산도를 탐색했는데,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한다. 여기서 1913년을 기준으로 십 수 년 전 1900년 전후에 우산도를 탐사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다.⁶¹²⁾ 하지만 이 기사는 1900년 전후로부터 1913년 당시 울릉도 거주민들이 우산도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 상상 속의 섬으로 밖에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울릉도 거주민들이 우산도가 서술된 조선의 지지류들을 접하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울릉도 사람들이 우산도라는 섬 명칭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역시 「칙령 제41호」(1900)상의 울도군 관할 구역에서 우산도라는 명칭은 서술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울릉도 거주민들은 독도를 그 형상에 따라 ‘돌섬’이라고 불렀으며, 1900년의 울릉도를 시찰했던 우용정, 라포르트, 배계주 등은 공식 보고서에 돌섬을 한자로 표기했을 것이다. 「칙령 제41호」(1900)의 ‘石島’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돌섬=石島’, ‘독섬=獨島’를 모두 등치시켜 설명하는 것은 전라도 방언에 ‘돌’을 ‘독’이라고도 발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이다. 따라서 ‘돌섬=독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칙령 제41호」(1900)가 알려지기 훨씬 전인 1947년에 처음 제기되었다.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 일원이었던 방중현 교수는 독도를 답

612) 박병섭은 십 수 년 전 우산도를 탐사했던 사람을 1900년 내부시찰관으로 울릉도를 다녀왔던 우용정이라고 추정했다(박병섭, 앞의 책, 80~82쪽). 하지만 우용정의 『鬱島記』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하고 돌아와 기행문을 작성했다. 여기서 그는 ‘독도’라는 이름이 ‘석도’의 뜻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면서, 독도의 외형이 돌과 같고, 전라남도 해안에서 ‘돌’을 ‘독’으로도 발음한다는 데에 연결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석도의 뜻인 ‘독섬(돌섬)’이라는 것이다.⁶¹³⁾ 만약 그가 「칙령 제41호」(1900)에서의 ‘석도’를 먼저 접하고 이것이 독도라고 추론했다면 억지 논리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칙령 제41호」(1900)가 처음 세상에 공개된 것은 1966년李宗馥(당시 한양대 교수)에 의해서였다.⁶¹⁴⁾ ‘석도’라는 지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독도’라는 명칭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나온 결론이 ‘석도’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19세기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조선 후기 울릉도 搜討制度를 설명하면서 “倭奴뿐만 아니라 호남 연해에 사람들도 몰래 울릉도에 들어와 주거하면서 소나무를 벌채하여 배를 만들고, 蘆竹을 베어내고 전복이나 미역, 고기 등을 채취하는 것을 가끔 들어가서 搜檢한다”⁶¹⁵⁾고 기술하였다. 즉, 전라남도 연해민들이 울릉도에 몰래 들어가서 배를 만들고 어채하는 것을 울릉도수토사들이 수토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라남도민들이 울릉도에 왕래했던 기록은 많이 있다. 1882년 이규원은 울릉도를 검찰하면서 140여 명의 조선인을 조사했는데, 이들을 출신 지역별로 보면 전라도가 115명(홍양 94, 낙양 21), 강원도 14명, 경상도 10명, 경기도 1명 순이었다.⁶¹⁶⁾ 전라남도 지역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다.

613) 방중현, 「獨島의 하루」, 『京城大學 豫科新聞』 13, 1947(『一簣國語學論集』, 民衆書館, 1963에 재수록)

방중현의 독도=석도설은 이후 송병기에 의해 처음 인용되어 「칙령 제41호」(1900)의 석도가 독도임을 밝히는 데 중요한 논리로서 제시되었다(송병기, 「高宗朝의 鬱陵島·獨島 經營」, 『獨島研究』,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249~250쪽).

614) 홍종인, 「獨島를 생각한다」, 『週刊朝鮮』 427호, 1977.3.20; 한편, 「칙령 제41호」(1900)를 소개하면서 석도가 독도임을 처음으로 밝힌 논저는 1969년 이한기 교수의 『한국의 영토』(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250, 281쪽)인 것으로 보인다(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2010, 157쪽).

615)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1, 論史類 1, 「鬱陵島事實辨證說」.

616) 李奎遠, 『鬱陵島檢察日記』(이혜은·이형근, 『晚隱 李奎遠의 “鬱陵島檢察日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한편, 이규원의 검찰 결과를 토대로 1882년 8월 울릉도 개척령이 내려졌고, 다음해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내륙민들이 울릉도에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초기 정착민은 16호 54명으로서 출신 지역별로는 강원도 39명, 경상도 11명, 충청도 3명, 경기도 1명이었다. 초기 정착민들 중에 전라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이는 ‘돌=독’이라는 전라도 방언에 의해 독도 명칭이 발생했다고 하는 논리와 상반되어 보일 수도 있는 결과이다. 울릉도 거주민이라고 할 수 없는 내왕인인 전라도민들에 의해 울릉도 주변의 지명이 정착되었다고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883년 울릉도 개척 이후 울릉도의 각 지명이 새롭게 정착되는 과정에 전라도민들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 1923년 『開闢』지의 기자 李乙(필명으로 보임)은 울릉도 지명 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地形 及 物相과 인사의 移動的으로 작성된 本島地名의 유래는 일종 史談거리가 적지 않다. 이것은 開島이래 全南 麗水郡 三山面 三島方面의 어부의 다수가 本島 名産인 靑蘆을 채취키 위하여 매년 三四月에 來集하였다가 六七月이 되면 撤歸하여 이리케 來往이 頻數하는 동안 不知 中 그럭저럭 變稱된 것이 거의 전반에 互하였다 한다.⁶¹⁷⁾

이에 의하면, 울릉도 지명은 1883년 울릉도 개척 이후 전라남도 麗水郡 三山面 三島 방면의 어부가 3, 4월에 울릉도에 왔다가 6, 7월에 돌아가는 동안 ‘變稱’된 것이 거의 전반에 달한다고 했다. 여수군 삼산면은 巨文島·草島·異竹島를 포함하는 곳으로서, 三島는 이 세 섬을 일컫는다. 이 지역 사람들이 울릉도에 왕래했다는 것은 구전으로도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일찍이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에서도 홍양 삼도(거문도), 초도 사람들이 배를 만들며 미역을 따고 있다고 소개된 적이 있다.⁶¹⁸⁾

617) 李乙, 「동해의 一點碧인 鬱陵島를 찾고서」, 『開闢』 4권 41호, 開闢社, 1923년 11월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618) 李奎遠, 『鬱陵島檢察日記』(이혜은·이형근, 앞의 책).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거문도·초도·손죽도의 서북쪽으로 가장 인접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약 10번째로 큰 섬인 居金島(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지명이다. 거금도 오천리 동남쪽에는 조그만 돌섬이 하나 자리하고 있는데, 그 돌섬의 명칭이 ‘獨島’이다.⁶¹⁹⁾ 거문도·초도·손죽도를 비롯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돌섬에 대한 명칭을 독섬이라 일컫고, 한자로는 독섬의 음을 가져와 ‘獨島’로 표기하는 예를 실제 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독섬(돌섬)의 뜻을 가져와 한자로 표기했다면 거금도 동남쪽의 돌섬은 ‘석도’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개벽』지의 상기 기사는 기자가 그해 여름 실제 울릉도를 다녀와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기록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독도의 옛 명칭이었던 ‘우산도’가 19c 후반 이후 전라도 사람들에 의해 ‘돌섬’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칭되었고, ‘돌=독’이라는 전라도 방언에 따라 ‘石島/獨島’로 한자 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지명이 ‘돌=독’으로 표기되는 경우는 전라도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지명총람』(20책)에서 표준말 ‘돌(石)’과 동일하게 사용된 ‘독’이 독도의 경우처럼 순한국말 지명에서 가장 앞에 표기된 경우만 해도 총 319개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전라도가 251개(78.7%)로서 압도적이었고, 전라도와 인접한 충청도가 31개(9.7%), 경상도도 21개(6.6%) 확인할 수 있었다.⁶²⁰⁾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등 여타지역은 16개(5%)에 불과했다. 이를 보면, ‘돌=독’이라고 발음되는 전라도 방언의 특성과 19세기 후반 전라도 연해민들이 울릉도에 왕래하면서 울릉도 지명이 변칭되었다는 사실이 ‘독도’ 지명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독도가 독섬, 또는 돌섬으로도 일컬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면서 독섬, 돌섬으로 표기된 예는 여러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비록 1945년 이후의 기록이지만, 『남선경제신문』(1947.8.28)은 독도가 “울릉

61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3, 2004, 116쪽;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197쪽.

620) 이기봉, 「순한국말 지명과 한자 표기의 관계를 통해 본 石島·獨島 고찰」, 『문화역사지리』 24-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2, 111~112쪽.

도와 불가분의 관계로 현재는 ‘독섬’으로 호칭되고 있다”고 서술했다.⁶²¹⁾ 조선산악회 회장이자 1947년 울릉도학술조사대 대장이었던 宋錫夏는 『국제보도』에서 독도에 대해 서술하면서 “울릉도에서 다시 동편으로 48해리를 가면 때의 각광을 받은 ‘독섬(獨島)’이 있다”고 했다.⁶²²⁾ 특히 『새한민보』(1948.7) 기사 제목은 “獨島(原名은 돌섬)는 우리의 섬”이라고 하여 독도의 원래 이름이 ‘돌섬’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⁶²³⁾ 그렇다면 역시 독도의 원래 이름인 돌섬이 독섬으로 받음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를 한자로 표기할 때, ‘돌’의 뜻을 나타내서 ‘石島’, ‘독’의 음을 나타내서 ‘獨島’로 표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3) 石島 지명 논쟁 검토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했고, 이에 대해 일본 측이 1952년 1월 28일 항의 공문을 보내오에 따라 양국간 독도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었다. 독도 주변 일본 순시선 출현과 우리 측의 대응을 둘러싸고 많은 외교적 항의 공문이 오가는 가운데 독도에 대한 양국의 논리를 담은 외교문서가 1953년부터 1962년까지 10여 년 간 총 7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왕복되었다.⁶²⁴⁾ 「勅令 第41號」(1900)가 처음 알려진 것은 1966년 李宗馥(당시 한양대 교수)에 의해서였으므로 이때는 「칙령 제41호」가 언급되지 않았었다.⁶²⁵⁾

일본 정부가 공식 자료로서 「칙령 제41호」(1900)를 비판하기 시작한

621) 『南鮮經濟新聞』, 「독도는 이런 곳」, 1947년 8월 28일; 정병준, 『독도1947』, 돌베개, 2010, 151쪽; 박병섭, 앞의 책, 72쪽.

622) 宋錫夏, 「古色蒼然한 歷史的 遺跡 鬱陵島를 찾아서!」(1947.12.1), 국제보도연맹, (국제보도)『Pictorial Korea』10권(올림픽특집) 3권 1호, 10쪽; 정병준, 위의 책, 154쪽; 박병섭, 위의 책, 72쪽.

623) 『새한민보』 2-13, 「돌섬은 우리 섬」, 1948년 7월 상·중순호.

624) 外務部, 「일본정부견해」1,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3)-』, 1977; 일본정부견해1(1953.7.13), 한국정부견해1(1953.9.9), 일본정부견해2(1954.2.10), 한국정부견해2(1954.9.25), 일본정부견해3(1956.9.20), 한국정부견해3(1959.1.7), 일본정부견해4(1962.7.13) 등 총 7건이다.

625) 홍종인, 「獨島를 생각한다」, 『週刊朝鮮』 427호, 1977.3.20

것은 외무성이 발간한 팜플렛 「竹島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2008)에서였다. 여기서 일본 정부는 石島가 오늘날의 독도라면 왜 칙령에서 독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또 한국 측이 독도의 옛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于山島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더 나아가 독도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⁶²⁶⁾ 이러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분석 비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칙령 제41호」(1900)에서 왜 독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일본 측이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폈듯이 독도의 우리말 지명은 돌섬이었고, 돌을 독이라고 부르던 전라남도민들의 방언에 따라 독섬이라고도 했다. 즉, 돌섬/독섬이 石島/獨島로 한자표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칙령상에 石島는 당시 독도를 가리키던 우리말 지명인 돌섬에서 비롯된 한자 표기인 石島와 獨島 중 하나를 따랐을 뿐인 것이다. 칙령상에 석도라고 쓰든 독도라고 쓰든 둘 다 돌섬(독섬)을 한자 표기한 것이니,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둘째, 칙령에서 왜 우산도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도 學部 편집국에서 간행한 「大韓全圖」(1899)에서의 우산도 표기를 예로 들어가면서 의문을 표했다. 그는 「대한전도」에서의 우산도가 독도라면 울릉도 군수의 관할 영역으로 독도를 포함시킨다는 국가적인 의사표명을 한 「칙령 제41호」(1900)에서 우산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또 일부 지역민이 사용했던 데 불과한 ‘돌섬’, 더욱이 한자로 ‘石島’라고 표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섬 이름을 굳이 왜 채택한 것인지 물음을 던졌다.⁶²⁷⁾

그런데 이러한 의문이 발생한 것은 당시 「칙령 제41호」(1900)가 제정, 반포되는 과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데 있다. 앞서도 밝혔듯이 内部는 울릉도 관제를 개정하는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에 關한 請議書」(1900.10.22)⁶²⁸⁾를 의정부에 올리면서 이 청의서가 울릉

626) 일본 외무성, 「竹島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 2008.

627)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3, 262쪽.

도감 裴季周의 報牒, 울릉도시찰관 禹用鼎과 부산해관세무사서리 라포르트(E. Laporte, 羅保得)의 視察錄을 참작해서 작성되었다고 보고했다. 현재 이들의 보고서가 전해지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칙령 제41호」(1900)의 울도군 관할 구역은 이들의 보고서를 통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울릉도 사람들에게 있어 우산도는 이미 잊혀져버린 섬 명칭이었다는 것은 앞서 밝힌 대로이다.

아울러 1883년 울릉도 개척 이후 울릉도 지명이 全南 麗水郡 三山面 三島(巨文島·草島·異竹島) 방면의 어부가 3, 4월에 울릉도에 왔다가 6, 7월에 돌아가는 동안 ‘變稱’된 것이 거의 전반에 달했다.⁶²⁹⁾ 그렇기 때문에 「칙령 제41호」(1900)에 독도를 우산도라고 하지 않고 당시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를 가리켰던 이름인 돌섬/독섬을 한자 표기한 ‘石島’를 명기했던 것이다.

한편, 내부가 울릉도 設郡請議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울릉도 주변 섬 명칭에 대해 학부에 의견을 조회했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당시 학부대신 金奎弘이 1900년 10월 24일 의정부회의에 참석하여 「內部大臣請議 鬱陵島改稱鬱島島監以郡守改定事」에 대해 ‘개정이 마땅하다(改正似宜)’라는 의견을 표명한 기록만이 남아있다.⁶³⁰⁾ 한편, 「대한전도」(1899)는 학부 편집국에서 발간한 『大韓地誌』에 수록된 지도로서 여기서의 우산도는 울릉도 동쪽에 위치하나 매우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울릉도의 남쪽에도 4개 정도의 섬이 더 그려져 있어서 새로운 정보가 반영되지 못하고 예전 전통방식의 울릉도 지도를 답습한 형태이다.⁶³¹⁾ 우산도를 「칙령 제41호」(1900)에서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대한전도」와 같은 전통방식의 지도를 예로 들어가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칙령의 제정 과정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독도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이

628) 「各部請議書存案」 17(奎章閣 소장).

629) 李乙, 「동해의 一點碧인 鬱陵島를 찾고서」, 『開闢』 4권 41호, 開闢社, 1923.11.

630) 『奏本』, 「奏本 第187號」, 光武 4년(1900) 10월 25일(奎章閣 소장).

631) 오상학,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18:1, 2006, 97쪽.

다. 일 측이 이런 주장을 내세운 것은 현전하는 문헌상에 1900년 이후인 1904년 9월 일본 자료에서 독도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⁶³²⁾

일본 군함 니타카(新高)는 1904년 9월 울릉도와 죽변을 잇는 해저 전선선 부설을 위해 울릉도로 파견되었는데, 니타카호의 9월 25일 日誌에는 松島(松島, 울릉도)에서 리양코루도암(독도)을 직접 본 자료부터 청취한 정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리양코루도’암, 韓人은 이를 獨島라고 쓰고 本邦(일본) 어부들은 줄여서 ‘리양코’島이라고 부른다(「リアンコルド」岩 韓人之ヲ獨島ト書シ 本邦漁夫等畧シテ「リヤンコ」島ト呼稱セリ).⁶³³⁾

이 기록에서 특기할 점은 ‘韓人은 이를 獨島라고 쓴다(書)’이다. 이 표현은 독도를 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獨島이지, 부르는 이름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 어부들이 독도를 부르는 이름인 리양코도는 ‘呼稱’이라는 단어를 써서, 한인들이 독도라고 ‘書’하는 것과 구분했다. 물론 이 기록은 한인이 독도를 어떻게 부르는지, 또 언제부터 ‘獨島’라는 지명을 사용해 왔는지에 대해 기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獨島’를 부르는 우리말 이름이 독섬/돌섬이고, 돌섬을 한자 표기했을 때 ‘石島’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섬/돌섬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때는 「칙령 제41호」(1900)에서 울도군 관할구역으로 石島를 규정하기 이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더욱 보강시켜 주는 것은 19세기 후반 전라남도 여수군 삼산면 삼도(거문도·초도·손죽도) 방면의 어부가 울릉도를 왕래하면서 변칭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우산도라고 불렀던 독도가 1883년 울릉도 개척 이후부터 1900년 「칙령 제41호」 기간 사이에 삼도 방면 어부들에 의해 명칭이 변칭되면서 섬의 형상에 따라 ‘돌섬’과 ‘돌’을 ‘독’

632)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군함 니타카호의 독도 기록이 1904년 9월 시점에서 조선인이 독도라고 쓰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데 불과하며, 이러한 조선인의 인지가 1904년 어느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池内敏, 앞의 책, 246쪽).

633) 『軍艦新高行動日誌』(防衛廳 戰史部 所藏);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朝鮮史研究會, 1987, 111쪽.

이라 일컫던 그 지역 방언에 따라 ‘독섬’으로 일컫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 지방정부인 시마네현(島根縣)의 독도 관련 주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칙령 제41호」(1900)의 석도가 지금의 울릉도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觀音島를 가리키는 명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韓國水産誌』(1910)에서 울릉도의 속도로서 竹嶼(竹島)와 鼠項島(관음도)를 들고 있으며, 이를 답습하여 『日本水路誌』(大正 9년, 1920)에서도 죽도(죽서)와 双項礁(관음도)를 울릉도의 속도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서항도와 쌍항초는 일본 발음으로 각각 소코토, 소코쇼라고 읽히는데, 이것이 석도의 한국어 발음인 ‘소쿠토’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⁶³⁴⁾

관음도는 순우리말로 각세섬이라고도 하는데 까께새가 떼를 지어 살아 붙여진 이름이다.⁶³⁵⁾ 이 섬은 죽도의 서북쪽에 마주하는 작은 섬인데, 울릉도 본섬 가까이에 있는 섬으로는 죽도 다음으로 큰 섬이다. 관음도는 울릉도 검찰사 李奎遠의 「鬱陵島外島」에서 ‘島項’이라는 명칭으로 우리 문헌에 등장했다. 도항을 혼동하면 섬목이 되는데, 우리나라 지명에서 좁은 물살을 사람의 ‘목’에 비유해 ‘○○목’이라고 부르는 것은 흔한 예이다. 섬목을 뜻을 새겨 한자로 표기하면 ‘島項’이 되고, 음과 뜻을 각각 새겨서 한자로 표기하면 ‘鼠項’이 되는 것이다. 서항이라는 지명이 섬목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일본 수로부가 간행한 해도(1909)에 ‘鼠項島 Somoku Somu’라고 병기한 데서 잘 알 수 있다.⁶³⁶⁾ 이 해도에 의하면, 서항도의

634) 下條正男, 「獨島呼稱考」, 『人文·自然·人間科學研究』 19, 2008, 30쪽.

시모조 마사오는 双項礁를 죽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보았는데, 죽도를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다. 『일본수로지』에 의하면, 죽도의 북쪽에 있는 암초를 일컫는 双項礁의 誤記이다(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73~74쪽).

63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7(경북편IV), 95쪽; 이기봉, 「순한국말 지명과 표기의 관계를 통해 본 石島·獨島 고찰」, 『근대이행기의 한일 경계와 인식에 대한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2, 162쪽.

636) 水路部, 「海圖 第306号 朝鮮東岸 竹邊灣至水源端」, 1909; 박병섭, 앞의 책, 68~70쪽. 이 밖에도 일본 기록에 관음도를 표기한 것을 보면, 히가키 나오에(桧垣直枝)의 북명서(1883)에 島項, 觀音島, 아카쓰카 쇼수케(赤塚正助) 보고서(1900)에 島牧, 니시무라 게이조(西村銈象) 보고서(1902)에 島牧, 觀音島 등이 있다(박병섭, 위의 책, 71쪽).

음이 ‘소모쿠 소무’, 즉 ‘섬목섬’에서 온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 자료를 보면, 울릉도 주변 섬들이 순우리말 지명을 음이나 뜻을 따서 한자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竹島는 부산영사관 보고서(1902)에 ‘テッセミ(뎃세미)…竹島’ 및 ‘テッセミ(테쓰세미)…竹島’ 등으로 설명되어 있고, 수로부 해도(1909)에는 ‘Tei Somu 竹嶼’라고 표기되어 있다.⁶³⁷⁾ 모두 竹島가 순우리말인 뎃섬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예이다.

아울러 시모조 마사오는 석도의 한국어 발음이 소쿠토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석도가 순우리말 지명을 한자 표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그 자체만의 발음을 억지로 만들어낸 데 불과하다. 일본 정부가 작성한 『朝鮮水路誌』(1899, 1902, 1907)나 『일본수로지』(1911)에 石島라는 지명이 총 15차례 나온다. 횃수로는 15회지만 이것은 7개소의 석도를 기재한 것인데, 이 중에서 5개소의 石島에는 우리말 토가 달려 있다. 즉, 도루소무, 마쿠소무, 도루소무, 도리소무, 도토쿠소무 등이 그것이다.⁶³⁸⁾ 마코소무는 어떤 음인지 불분명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돌섬’ 또는 ‘독섬’의 발음을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37) 『釜山領事館報告二』(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水路部, 「海圖 第306号 朝鮮東岸 竹邊灣至水源端」, 1909; 박병섭, 위의 책, 68쪽.

638) 박병섭, 위의 책, 74~75쪽.

V. 대한제국의 일본 독도 영토 편입否認과 독도 관할

1. 20세기 초 러·일의 울릉도 침탈

1)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과 警察官駐在所 설치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울릉도에 침입하여 불법 벌목과 어업을 일삼았다.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일본 측에 일본인의 철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1900년 5월 内部視察官 禹用鼎으로 하여금 현지 시찰을 지시했다. 우용정의 울릉도 조사기간 동안 일본인의 불법 벌목은 일시적으로 잠잠했었는데, 그가 조사를 마친 다음날(6.7) 일본 선박 5척이 울릉도에 잠입했다. 이 일본인들은 그 이전보다 더 심하게 규목을 작벌해서 산에 櫟木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였다.⁶³⁹⁾ 일본인의 울릉도 벌목과 횡포는 나날이 심해졌다. 일례로 도민 尹殷中이 지붕을 덮기 위해 나무를 베어 판을 만들자, 일본인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한 그루의 나무나 풀이라도 한국인들이 베지 못하게 했을 지경이었다. 이에 따라 울릉도민들의 우려도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⁶⁴⁰⁾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의 폐해가 더욱 심해지자 1901년(광무 5) 8월 일본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을 다시 울릉도에 파견하였다. 조사단은 釜山海關의 스미스(Smith, D.H., 士彌須), 同 幫辦 金聲遠, 東萊監理署主事 丁寶燮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지 조사를 마친 스미스는 곧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8월). 그 요지는 첫째, 섬 안에 상주하는 일본인 수는 약 550명이며, 이 밖에도 매년 採魚, 伐採차 來島하는 수가 300~400명에 이른다는 것, 둘째, 도내 일본인의 2대 파벌인 ‘하타모토黨(畑本黨)’과 ‘와키타黨(脇田黨)’이 울릉도를 남북으로 分界, 森林을 스스로 領有하여 ‘認狀’ 없이 벌목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벌채를 금하여 위반자로부터는

639) 『内部來去文』 8, 照復 제14호, 光武 4년(1900) 7월 5일;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5, 文書番號 5900.

640) 『内部來去文』, 照會 제11호, 光武 5년(1901) 9월 25일.

별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 셋째, 도내 일본 선박 수는 板材를 싣고 출범 중인 5척을 포함하여 21척이며, 일본 부산영사관의 准單을 가진 어선 7척과 潛水夫艇 3척이 있다는 것 등이었다.⁶⁴¹⁾

이러한 조사 보고가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오히려 일본 측은 울릉도에 警察官駐在所를 신설하여 경찰을 상주 시킴으로써 울릉도에서의 일본인 재류를 더욱 확실하게 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901년 12월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에게 상신하여 울릉도에 일본인 재류민이 3~400명, 많을 때에는 1,0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행위를 감시할 목적으로 부산 또는 원산 영사관의 관할 내에 편입해서 警部 1명, 巡査 2명을 派駐시켜 6개월 내지 1년 교대로 근무시킬 것을 건의했다(12.10). 아울러 경찰관주재소 설치의 조약상 권능으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松都의 경우 한국 정부가 경찰관주재소 설치를 묵인하고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울릉도 경찰관주재소 설치 목적은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에서의 일본인 철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⁶⁴²⁾

고무라 외무대신은 하야시 공사의 울릉도 경찰관주재소 설치 건의를 승인하면서 원활하게 진행시킬 것을 당부했다(12.24).⁶⁴³⁾ 외무대신의 결정에 따라 1902년 3월 부산일본영사관의 니시무라 게이조(西村圭象) 경부와 순사 3명이 울릉도로 파견되어 경찰관주재소가 설치되었다.⁶⁴⁴⁾ 울릉도는 식량 확보가 어렵고 의료설비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울릉도 파견 경찰은 6개월마다 교대를 했다. 교대할 때는 형편에 따라 한국 기선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고무라 외무대신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군성의 협조를 받아 해군 경비함을 주로 이용하였다.⁶⁴⁵⁾

641) 『皇城新聞』, 光武 6년 4월 29일;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접근』, 역사공간, 2010, 230쪽.

642) 『駐韓日本公使館記録』, 本省機密往信 機密 第133號(明治 34년 12월 10일).

643) 「鬱陵島警官駐在所設置ノ件」, 『鬱陵島ニ於ケル伐木關係雜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644) 「鬱陵島郵便所沿革簿」(鬱陵郡郵便局 소장), 「鬱陵島警官駐在所設置ノ件」, 『鬱陵島ニ於ケル伐木關係雜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송병기, 앞의 책, 231쪽.

일본이 조선에 경찰관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은 「朝日修好條規」(1876)에 의해 부산, 인천, 원산 개항장에서 영사재판권을 갖게 됨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영사관경찰을 배치하면서부터였다. 개항장의 거류지 내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이었다. 영사관경찰은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한일 양국인 간의 분쟁을 단속하고 당시 군사상 중요하게 여겨졌던 철도공사 보호를 주업무로 삼았다. 이후 일본인 상인들이 거류지를 벗어나서 한국 내륙으로의 진출이 늘어나자 일본 정부는 내륙 각지에 경찰관주재소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한국 내 곳곳에 침투 거점을 마련한 셈이었다.⁶⁴⁶⁾ 그런데 울릉도에 경찰관주재소를 설치한 것은 이보다 빠른 1902년이었다. 울릉도가 일본의 한국 침탈에 침단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찰관주재소 설치를 인지한 것은 이해(1902) 9월 말 강원도관찰사 보고를 통해서였다. 보고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울릉도에 주재소를 설치했는데, 주재소 경찰관이 도민을 임의로 연행하기까지 하다 보니 도민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일본 경찰에게 호소하는 일조차 있었다고 한다.⁶⁴⁷⁾

사태의 증대함을 인식한 한국 정부는 조약에 저촉됨을 강조하며 울릉도 주재소의 폐지와 재류 일본인들의 철수를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10월).⁶⁴⁸⁾ 그러나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한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울릉도감 배계주가 개척을 위해 일본인의 울릉도 재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재류하는 것이며, 오히려 현재와 같이 울릉도가 개척된 것은 일본인들의 공인데 한국 정부가 이를 모른다고 하는 등 억지 주장을 폈다. 또 경찰서 설치에 대해서는 당시 신임 군수 姜泳禹의 부임에 즈음하여 일본 경찰 주재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었다고 답변하

645) 「鬱陵島警官駐在所設置ノ件」, 『鬱陵島ニ於ケル伐木關係雜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646) 양홍준, 『대한제국 후기(1905-1910) 경찰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6~17쪽.

647) 『交渉局日記』, 光武 6년(1902) 9월 30일.

648) 『交渉局日記』, 光武 6년(1902) 10월 11일; 『駐韓日本公使館記録』, 「日案」 6, 文書番號 7057-7501.

며 책임을 회피해 나갔다.⁶⁴⁹⁾

일본공사관의 서기관 고쿠부 쇼타로(國分象太郎)가 울릉도의 일본 경찰 주재 문제에 대해 신임 군수 강영우와 몇 차례 접촉하면서 협의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강영우는 到任을 앞두고 현지 일본인들의 작폐 때문에 크게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일본 측은 바로 이 점을 이용했던 것이다.⁶⁵⁰⁾ 그러나 군수에게 외국 경찰의 주재를 허가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당연히 한국 정부와 협의했어야 할 문제를 도입조차 하지 않은 군수와 협의하고, 이를 핑계로 타국에 경찰관주재소를 설치하는 것은 일본의 횡포가 그만큼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울릉도에서의 일본인 작폐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沈興澤 군수가 1903년 4월 20일 울도군에 도입했다.⁶⁵¹⁾ 그는 울도군에 부임하자마자 우선 울릉도의 형편을 살펴보고 일본인의 폐해가 심각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그는 일본인의 벌채가 한이 없기 때문에 몇 년 지나지 않아 남은 나무가 없고 산도 모두 황폐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울릉도에 이미 군을 설치했으니 자신이 군수로서 당연히 일본인의 불법 벌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심홍택 군수는 도입한 지 일주일만인 4월 27일 일본 경찰관 주재소를 방문하여 警部 아리마 다카노부(有馬高孝)와 대담했다. 심홍택은 아리마 경부에게 “타국인이 우리나라의 재목을 취하는 것은 이치로도 맞지 않는다. 또 울릉도가 전에는 일개 섬이었으나 지금은 군청이 설치되어 모두 군수의 관할이기 때문에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일본인의 벌목을 금할 것이다. 따라서 귀 경부부터 이 금단을 해야리라”고 항의했다. 당시 울릉도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일본인의 불법 벌채에 대해 신임 군수로서의 단호한 결의를 일본 경부에게 보여주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했던 것이다.

심홍택 항의에 대해 일본 경부 아리마 다카노부는 “이 섬에서 벌목하기 시작한 지 이미 수십 년인데, 한국 정부가 일본공사에게 조회하여 처리한

649) 『日案』, 公文 제165호(明治 35년 10월 29일).

650) 『駐韓日本公使館記録』, 本省機密往信 機密 第133號(明治 34년 12월 10일); 송병기, 앞의 책, 231~232쪽.

651) 『官報』, 光武 7년(1903) 8월 11일.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감히 함부로 금할 수 없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⁶⁵²⁾ 아리마 경부는 다음날(4.28) 곧바로 부산일본영사관에 군수와의 대담 내용을 보고했고, 부산일본영사관 측은 6월 23일자로 본국(일본) 외무성에 아리마 경부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⁶⁵³⁾

울도군수 심홍택도 일본 아리마 경부와 대담을 마친 이후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내부에서는 1903년 8월 12일 내부대신 金奎弘이 외부대신 李道宰에게 관련 내용을 조회했다. 내부는 이 조회에서 우선 심홍택의 보고 내용을 전제하고, 일본 정부는 1900년 내부시찰원이 부산 일본 영사와 함께 울릉도를 시찰한 후 일본인의 불법 벌목을 즉시 금지시키고 향후 정기적으로 撤歸시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벌목을 조금도 꺼리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경찰관주재소까지 설치한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울릉도에 일본 경찰관주재소를 설치한 것은 萬國約章에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양국 간의 교의에 크게 흠결되고 일본 정치상에도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일본공사에게 조회하여 경찰서 관원을 소환하고 잠월한 일본인들도 撤歸시킬 것을 교섭해달라고 외부에 요청했다.⁶⁵⁴⁾

외부는 곧 내부의 요청대로 일본공사에게 조회하여 울릉도 경찰관주재소의 철폐 및 울릉도 채류 일본인의 철귀를 요청했다(8.20).⁶⁵⁵⁾ 이에 대해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이미 1902년 10월 29일자 공문(제 65호)에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외부대신에게 답변했다(8.24).⁶⁵⁶⁾ 하야시 공사가 언급한 1902년 10월 29일자 공문은 앞에서 소개했듯이 울릉도 개척이 일본인의 공이고, 신임 군수 강영우와 경

652) 『皇城新聞』, 光武 7년(1903) 8월 10일; 『內部來去文』 照會 제8호, 光武 7년 8월 12일; 『江原道來去案』 報告書 第4號, 光武 7년 10월 15일.

653) 『鬱陵島ニ於ケル伐木關係雜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654) 『內部來去文』 8, 照會 제8호, 光武 7년(1903) 8월 12일; 『內部外部往來公牒摘要』, 光武 7년 8월 12일.

한편, 1903년 10월 15일자로 강원도관찰사 金貞根도 외부대신 李夏榮에게 울도군수 심홍택의 상기 보고 내용을 전하고 일본공사관에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한 문서가 있다. 이 심홍택의 보고는 앞서 8월에 심홍택이 내부에 보고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강원도관찰사를 거쳐 보고되면서 내부로 바로 보고된 것보다 시일이 늦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江原道來去案』, 報告書 第4號, 光武 7년 10월 15일).

655)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6, 文書番號 7501.

656)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6, 文書番號 7515.

찰서 설치를 협의한 바 있다고 하는 등 일 측의 책임을 회피한 답변이었다.

이처럼 심흥택의 보고로 다시 촉발된 울릉도 경찰관주재소 철폐 및 울릉도 재류 일본인 철거 문제는 일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울릉도 재류 일본인에 의한 폐해는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울도군수 심흥택은 일본공사관에 조회하여 울릉도의 일본 경찰관주재소 철수와 일본인들의 벌목, 토지 매입 등을 금지시켜 달라고 내부 및 강원도관찰사에게 요청했다.

심흥택 보고에 따라 1903년 11월 26일 내부대신 김규홍은 외부대신 李夏榮에게 일본공사관에 조회하여 울릉도 재류 일본인과 경찰관을 철수시켜 갈등을 면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⁶⁵⁷⁾ 한편, 심흥택 보고를 받은 강원도관찰사도 1903년 11월 27일 외부대신에게 일본공사관으로의 조회를 요청했다.⁶⁵⁸⁾

이에 대해 외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전하는 자료가 없어 알 수가 없다. 울도군수가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에 대해 보고한 것도 현전하는 자료상 위의 문서를 끝으로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러일전쟁의 전운이 감돌던 가운데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한국의 영토를 일본의 군사기지화 할 수 있는 韓日議定書가 체결(1904.2.23)되는 상황에서 외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울릉도에 대한 항의를 계속해 나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1905년 11월 17일 乙巳勒約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탈을 일본 정부에 항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빼앗긴 상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울릉도 침탈은 더욱 가속되었다.⁶⁵⁹⁾ 한편, 대한제국의 울도군 巡查駐在所가 설치된 것은 1910년 5월이 되어서였다.⁶⁶⁰⁾

657) 『內部來去文』 8, 照會 제16호, 光武 7년(1903) 11월 26일.

658) 『江原道來去案』 報告書 第7號, 光武 7년(1903) 11월 27일.

659) 홍정원, 「러·일의 울도군 침탈과 대한제국의 대응 연구」, 『軍史』 8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1, 142~147쪽.

660) 『官報』, 隆熙 4년(1910) 5월 4일.

2) 러시아 함선의 울릉도 현지 조사

1903년 러일관계는 러시아의 龍岩浦 점령(4월)과租借 요구(7월)로 인해 급속히 경색되어 갔다. 러일전쟁의 전운이 감돌던 1903년 9월, 러시아 함선 1척이 울릉도를 방문했다. 이 함선은 9월 2일 오전 4시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한 야쿠트(транспортЯкут)호로서 울릉도 삼림을 조사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함선에는 가르제브(В.А. Карцев) 대위와 메르꾸셰프(В.А. Меркушев) 박사, 레베제프(Е. Лебедев) 통역, 16명의 수병 등이 승선했다. 가르제브 대위는 1901년에도 까레이즈(Кореец)호를 타고 울릉도를 방문하여 조사했었다고 한다.⁶⁶¹⁾

한국 기록에 의하면, 러시아 함선이 南陽浦洞口에 정박한 후, 隊官 1인, 副官 2인이 兵丁 23인을 거느리고 상륙했다고 하여 병사 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들은 내륙을 측량하고 나무의 수를 세기도 했으며, 각 포구를 돌며 지형을 그리기도 했다. 9월 10일에는 러시아 함선의 대관이 병정 27명을 거느리고 鬱島郡廳을 에워싸고, 鬱島郡守 沈興澤에게 일본인의 울릉도 벌목과 警察官駐在所에 대해 문의했다. 다음은 러시아 대관과 심흥택 군수의 대담 내용이다.

러시아 대관 : 이 섬의 나무들은 5년 전에 러시아 회사에서 한국 정부와 약조를 했으니, 이 섬의 삼림은 러시아의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인의 타국인은 작별할 수 없거늘, 어찌하여 일본인의 벌목이 심한가? 일본인의 벌목이 한국이나 일본 정부의 허가 文字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회사의 허가 문자가 있는 것인가?

울도군수 : 전부 없다

러시아 대관 : 그 벌목을 어찌하여 금지하지 않는가? 또 일본 경찰서가 주재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정부와 조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울도군수 : 그 조약의 유무는 상세치 않고, 본직이 부임한 후 주재하고

661) 김영수,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 판례와 사료적 증거」, 『독도연구』 1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1, 102~103쪽.

있음을 알았다.

러시아 대관 : 그런즉 그 벌목을 금지하지 않는 연유와 일본 경찰서 주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약조 유무를 글로 밝혀 나에게 달라.

울도군수 : 1, 2일 후에 서신을 주겠다.

러시아 대관 : 輪船이 곧 출발하니, 오래 머무를 수 없다.

울도군수(서신내용) : 1903년 3월 23일(양력 4.20) 부임한 후 일본 경찰서가 本郡 道洞浦에 주재하고 있음을 들었는데, 우리 정부의 약조 유무는 알지 못하나 이미 본군에 주재함에 일단 서로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일본 경찰서에 가서 警部 아리마 다카노부(有馬高孝)를 만나 삼림 금단의 뜻으로 말했더니, 그가 한일 양국 정부의 문자가 없으니 금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런 까닭에 이 뜻을 우리나라 内部에 보고했다.⁶⁶²⁾

심홍택 군수와 대담한 러시아 대관은 까르제브 대위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심홍택에게 일본인의 벌목이 한국이나 일본 정부, 혹은 러시아 회사의 허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일본 경찰서의 울릉도 주재가 한국 정부의 허가 하에 있는 것인지 등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심홍택은 본인이 일본 경부를 만나 일본인 벌목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이를 내부에 보고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여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 심홍택의 답서를 받은 러시아 대관은 곧 군청 포위를 풀고 도동포로 내려가 지형을 촬영한 후 남양동으로 돌아가 함선을 타고 울릉도를 떠났다.

심홍택은 러시아 함선의 울릉도 방문과 대관과의 대담 내용을 즉시 강원도관찰사 金禎根에게 보고하며, 울도군의 상황이 실로 위태로움을 호소했다. 강원도관찰사는 외부대신 李夏榮에게 심홍택의 보고 내용을 전재하고, 일본과 러시아 공사관에 조회하여 앞으로 금단계 해 줄 것을 요청했다.⁶⁶³⁾ 강원도관찰사는 내부에도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를

662) 심홍택이 1903년 러시아 함선의 울릉도 방문과 대관과의 대화 내용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江原道來去案』, 報告書 第6號, 光武 7년(1903) 11월 28일; 『内部來去文』 8, 照會 第18호, 光武 7년 12월 5일; 『皇城新聞』, 光武 7년 11월 17일에 실려 있다. 이 중에서 『江原道來去案』이 가장 상세히 기술되었다.

받은 내부대신 金奎弘은 외부에 조회하며, 러시아의 울릉도 삼림벌채권에 대한 정부의 인가가 과연 있었는지를 문의했다.⁶⁶⁴⁾

러시아 함선의 울릉도 방문은 일본 측에서도 주시하고 있었다. 일본의 울릉도 주재 아리마 경부는 1903년 9월 12일자로 이 사실을 일본 부산 영사관에 자세하게 보고했고, 영사관에서는 10월 7일자로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및 본국 외무성에 이를 보고했다.⁶⁶⁵⁾ 그런데 이 보고는 울도군수 심홍택의 보고와는 날짜와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다. 러시아 함선이 다녀간 날을 심홍택은 양력 9월 3일에 와서 9월 10일에 돌아갔다고 했는데, 일본 아리마 경부는 양력 9월 2일에 와서 9월 11일에 돌아갔다고 했다.⁶⁶⁶⁾ 인원도 심홍택은 9월 3일 대관 1인, 부관 2인, 병정 23인이 남양동에서 상륙했다가 10일에는 대관이 병정 27인을 거느리고 울도군청을 에워쌌다고 보고했다. 아리마 경부는 9월 2일 해군 士官 2명과 水兵 19명이 남양동에서 상륙했고, 11일 사관 2명이 軍吏 같은 자 1명과 수병 16명을 거느리고 군청으로 왔다고 하여 조금씩 차이가 있다.

또 울릉도 아리마 경부는 러시아 사관과 심홍택 사이의 대담 중에 수병이 칼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사관이 심홍택에게 書證을 강요하니 심홍택이 이에 응했다고 보고했다. 이를 보아 심홍택은 러시아 병사가 무기를 소지하고 군청을 에워싸는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러시아 대관과 대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심홍택은 울릉도에서의 일본인의 불법 벌

663) 『江原道來去案』, 報告書 第6號, 光武 7년(1903) 11월 28일

심홍택 보고의 끝에는, 이 보고서를 나인 朴陽弘을 통해 선편으로 보냈었는데, 선박이 바다에 전복하여 다시 보고했다고 한다. 그래서 9월 중순에 발생한 사건이 11월이 돼서야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홍택의 보고를 요약한 기사가 『황성신문』 1903년 11월 17일자 기사에 실려 있다.

664) 『內部來去文』, 照會 第18號, 光武 7년(1903) 12월 5일.

내부에서 외부에 조회를 요청한 문서를 보면, 강원도관찰사 제66호 보고서에 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관찰사가 내부와 외부에 모두 보고했음을 알 수 있다.

66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0卷, 各館來信一·二, 韓第41号, 明治 36년 10월 7일.

666) 『東京朝日新聞』 1903년 10월 19일자에도 「鬱陵島の露艦」이라는 제하에 러시아 함선의 울릉도 방문 사실이 실려 있다. 이 기사는 10월 8일 일본 濟遠艦이 울릉도에 정박하고 돌아와 그곳에서 전해들은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는데, 러시아 함선이 8월 2일~8일까지 정박했다고 하여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다.

목과 경찰서 주재 사실에 대해 러시아 측이 한국 정부를 오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러시아 함선은 삼림 조사를 목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하여 군수 심홍택에게 삼림벌채권을 주장하며 일본인의 벌채에 항의하고 돌아갔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일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군사적 목적 하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들은 내륙 측량을 하고 나무의 수를 세기도 했으며, 각 포구를 돌며 지형을 그리기도 했다. 아리마 경부도 러시아인이 울릉도 지도를 제작하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로부터 반년 후에 러일전쟁이 발발했다(1904.2).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군의 만주를 향한 북진로인 압록강, 두만강 및 동해상의 울릉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⁶⁶⁷⁾ 이 지역은 모두 러시아가 삼림벌채권을 획득하여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 정부에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특권을 말소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1904.5.9). 그리고 하야시 공사는 5월 12일 李夏榮 외무대신을 만나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고, 1904년 5월 18일자로 高宗 皇帝의 勅宣書의 형식으로서 관보 호외로 발표하게 했다.⁶⁶⁸⁾ 칙선서의 요지는 첫째 한·러시아 간에 체결된 일체의 조약·협정을 폐기한다, 둘째,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인이나 회사와 체결한 特許合同(約定), 특히 두만강·압록강·울릉도 森林伐植權을 취소한다는 것이었다.⁶⁶⁹⁾

이 칙선서 제1항은 러시아와의 전쟁 수행상 당연한 규정이라고 할 수

667) 압록강 연안에서는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04년 2월 15일부터 전투가 시작되어 러시아군은 2,229명이 사망하고, 526명 내지 613명의 행방불명자가 생겨났으며, 약 2,775명 내지 2,48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일본군의 경우는 약 1/3 정도의 피해가 생겨 사상자는 889명에서 1,036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심현용, 「러일전쟁 시기 러일 양국군의 한반도 내 군사활동」, 『아시아문화』 21, 2004, 24쪽). 울릉도에서는 일본이 1904년 8-9월 망루를 건설하고 해저 전선을 부설하여 조선 본토에서 해군진수부가 있는 사세보(佐世保)까지 직접 교신하게 되어 일대 해역을 선점했다(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朝鮮史研究會, 1987, 114쪽).

668) 崔文衡, 「러시아의 鬱陵島 活用企圖와 日本의 對應」, 『獨島研究』, 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議會, 1985, 379~380쪽.

669) 『勅令』(규장각 소장), 光武 8년(1904) 5월 18일; 『官報』, 光武 8년 5월 18일 號外 24일.

있다. 그런데 제2항에서 러시아인이나 회사에 한 특허합동 가운데 브린너(Yu. I. Brynner)의 삼림 벌채권을 지적하여 무효화시킨 것이 주목된다. 당초 일본 측 계획은 압록강·두만강 삼림벌채권에 대하여 특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화시키자는 것이었는데, 한국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울릉도 삼림벌채권이 추가되었고, 그 이유가 ‘不法行爲’에서 ‘侵佔的 행위’로 바뀌었다.⁶⁷⁰⁾ 이는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울릉도의 전략상 가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⁶⁷¹⁾

러일전쟁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았다는 것은 러시아 제2태평양함대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Зиновий Петрович Рожественский) 중장이 의식을 잃은 채 포로로 잡힌 곳이 울릉도 부근이고, 그를 대신해서 함대의 지휘권을 장악했던 네보가토프(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Небогатов) 소장이 잔여 함대를 이끌고 일본에 항복한 곳이 바로 독도 동남방 18마일 지점이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⁶⁷²⁾ 당시 울도군수 심홍택은 郷長 田在恒으로부터 쓰시마해전에서 패한 러시아 군의 울릉도 상륙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음력 4월 28일(양력 5.28) 섬 서남 대양으로부터 멀리 우레 소리가 크게 들리다가 해가 저문 후에 雷火가 점점 가까워지고 대포가 연발했는데 잠시 후 밤 3경(밤11시~새벽 1시)이 되어서 병선이 앞바다에 정박하더니 러시아 군인들이 상륙했다고 한다. 그들과 問情을 시도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상륙한 러시아 군인들은 함장 1명, 부함장 1명, 병사 774명이었고, 이후 함선을 스스로 침몰시켰다. 그 다음날 러시아군은 백기 항복하고, 巳時(오전 9시~11시)에 일본 병선 1척이 저동에 정박하여 항복한 러시아 병사들을 모두 실어갔다고 한다.⁶⁷³⁾

상기는 러시아 드미트리 돈스코이호(Дмитрий Донской)가 울릉도에서 항복했던 사실을 보고한 것이다. 돈스코이호는 5월 28일 울릉도 근해에서 일본 순양함과 맞닥뜨려 전투를 벌였는데, 선체에 크게 손상을 입어

670) 『日本外交文書』 37 : 1, 文書番號 435-444-451.

671) 송병기, 앞의 책, 232~233쪽.

672) 崔文衡, 「露日戰爭과 日本의 獨島占取」, 『歷史學報』 188, 역사학회, 2005, 251쪽.

673) 『皇城新聞』 光武 9년(1905) 8월 10일.

울릉도에 전원 상륙했다. 러시아 병사들을 싣고 간 일본 함선은 가스카호(春日号)였다.⁶⁷⁴⁾ 당시 쓰시마해전이 있던 직후 러시아 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로 패주하는 과정에서 울릉도 주변 해역이 일대 격전지가 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⁶⁷⁵⁾

2. 일본의 ‘랴ngo도(リヤンコ島, 독도)’ 불법 영토 편입

1) 러일전쟁과 울릉도·독도의 전략기지화

1904년 6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조선 해협에 출현하여 일본 수송선을 차례로 침몰시키자 이 해역에서의 긴장이 한순간에 고조되었다. 일본 해군은 큐슈(九州), 혼슈(本州) 서부 지방의 연안 각지와 병행하여 조선 동남부의 죽변, 울산, 거문도, 제주도 등에 望樓를 건설하고 그것들을 해저전선으로 연결했다.⁶⁷⁶⁾

이와 더불어 일본은 동해상의 요충지인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나 해저전선을 설치하는 등 군사시설화하기 시작했다. 일본 해군은 1904년 7월 5일 울릉도 서북부 및 동남부에 각 1개소의 망루를 설치하고, 죽변-울릉도 간 해저전선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8월 8일 해군 19艇隊 사도쿠니마루(佐渡国丸), 니타카(新高)가 울릉도에 도착하여 망루 설치에 적합한 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서북부 망루는 玄圃, 동남부 망루는 道洞 남부가 적합한 곳으로 보고되었다.⁶⁷⁷⁾

울릉도 동망루(배치인원 6인), 서망루(배치인원 6명) 2개소는 8월 3일 건설에 착공, 9월 2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죽변-울릉도 사이 해저전선

674) 송원호, 「돈스코이호 자침 이후 승조원들의 행적」, 『대한토목학회지』, 51권 5호, 2003; 「돈스코이호 함장의 최후」, 『대한토목학회지』 53권 12호, 2005; 송원호·윤석구, 「러시아 해군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대한토목학회지』 55권 1호, 2007.

675) 홍정원, 앞의 논문, 150~155쪽.

676) 海軍軍令部 編, 『極秘 明治三十七年 八年海戰史』 제4부 4권, 1~27쪽, 218~276쪽; 堀和生, 앞의 논문, 114쪽.

677) 海軍軍令部 編, 앞의 책 備考文書, 339쪽.

은 오키나와마루(沖繩丸)가 파견되어 1904년 9월 8일 부설공사가 시작되어 9월 25일에 완성되었다.⁶⁷⁸⁾ ‘獨島’가 표기된 현전하는 가장 最古의 기록인 니타카(新高)호의 行動日誌 9월 25일조 “「리앙코루도’암, 한인은 이를 獨島라고 쓰고…(「リアンコルド」岩 韓人之ヲ獨島ト書シ…)”는 이때 오키나와마루를 호위하기 위해 니타카호가 울릉도에 파견되었을 때 작성되었던 것이다.⁶⁷⁹⁾

1905년 5월 울릉도와 독도 근해 해전에서 러시아 발틱함대와 격전이 벌어짐에 따라 두 섬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해군은 1905년 8월 울릉도 동북부 亭石浦에 새로운 망루 설치를 계획했다. 그리고 11월 9일에는 정석포 망루와 시마네현(島根縣) 마쓰에(松江) 사이에 해저전선이 완공되었다.⁶⁸⁰⁾

한편, 독도 망루는 1904년 5월 처음 계획되었지만 현지 조사는 울릉도에 망루와 해저전선이 먼저 설치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일본 군함 쓰시마(對馬)는 독도에 전신소 설치 가능 여부를 조사하라는 해군군령부의 명령(11.13)을 받았다. 독도를 현지 조사한 군함 쓰시마는 동도와 서도 각 1개소의 후보지가 적합하다고 보고했다(11.20). 하지만 실제 독도에 망루나 전선 설치에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 쓰시마호가 독도 전신소 설치에 적합한 곳을 보고하면서 “요컨대 이 섬은 척박한 민둥산으로 해양의 모진 바람에 노출되어 그 맹위를 피할만한 면적을 가지지 않으며, 불을 뿜 연료가 없고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다”는 보고를 부연한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⁶⁸¹⁾

독도에 망루나 전선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1905년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 대규모의 해전이 발생한 직후에 다시 추진되었다. 이 해전에 따라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678) 海軍軍令部 編, 위의 책, 48~57쪽.

울릉도 망루는 조선 본토를 경유하여 사세보(佐世保)의 해군 진수부와 직접 교신할 수 있게 되었다(堀和生, 앞의 논문, 114쪽).

679) 『軍艦新高行動日誌』(防衛廳 戰史部 소장); 堀和生, 위의 논문, 111쪽.

680) 『極秘 明治三十七年 電線關係』(防衛省防衛研究所 소장), 1058~1083쪽; 박병섭, 「러일전쟁과 독도의 가치」, 『獨島研究』 1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1, 222~225쪽.

681) 海軍軍令部 編, 앞의 책 備考文書, 366~367쪽.

1905년 5월 30일 일본 해군은 울릉도에 무선전신소 설치, 울릉도와 독도 사이 및 독도와 오키열도 다카사키야마(高崎山) 사이에 해저전선 부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단, 독도 망루는 일체 노출되지 않도록 은폐하여 설치하고, 필요할 때만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⁶⁸²⁾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 해군 군함 하시다케(橋立)는 해군 건축과 기사 미즈구치 기치고로(水口吉五郎) 등을 태우고 1905년 6월 13일 독도에 상륙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도는 높고 시야가 넓으나 구름이나 안개가 우려되기 때문에 망루를 건설하기에는 동도가 적당하고, 강치잡이 어부들의 예를 보아 한 달에 한 두 번씩 양식을 보급하면 생활은 가능하지만 겨울에는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 보고되었다.⁶⁸³⁾

일본 해군은 울릉도 북부에 대규모 망루(배치인원 9명)와 무선 전신소를 건설하고, 독도에도 망루(배치인원 4명)를 건설하여 두 섬의 망루를 해저전선으로 연결한 후에 이를 오키(隱岐) 망루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울릉도 신망루는 7월 14일 기공하고 8월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독도 망루는 7월 25일 기공하고 8월 19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해저전선은 1905년 9월 러일 간에 강화가 성립한 이후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독도-오키 사이가 아니라 독도-마쓰에 사이에 부설되었다(11.9).⁶⁸⁴⁾ 다만 독도 해저전선은 독도 망루에 연결되지 않았다. 독도가 모두 단애 절벽이기 때문에 울릉도로부터 연결되는 전선을 육지로 올릴 수 있는 곳이 그나마 한 군데 밖에 없는 상황에서 파도가 거칠어서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선을 매설할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 서쪽 1해리에서 2해리 사이 수심 100尋(1심 약 1.8m) 안팎 자갈 바닥에 일단 부설하고, 훗날 필요시 전선을 끌어올릴 구상을 했다.⁶⁸⁵⁾ 이렇게 해서 한국 본토(죽변)에서부터 울릉도-독도-마쓰에로 이어

682) 海軍軍令部 編, 위의 책, 20쪽.

683) 海軍軍令部 編, 위의 책 備考文書, 368~369쪽.

684) 海軍軍令部 編, 앞의 책, 20~21, 93~95쪽; 堀和生, 앞의 논문, 114~115쪽.

685) 『極秘 明治三十七年 電線關係』(防衛省防衛研究所 소장), 1058~1083쪽; 박병섭, 앞의 논문, 227쪽.

지는 군용 통신선 체계가 완성되었다.

(2) 일본의 독도 강치 어업과 ‘량고도(リヤンコ島, 독도)’ 영토 편입

일본 정부는 러일전쟁 발생에 따라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독도에 망루 및 해저전선을 건설하는 등 전략기지화했다. 한편, 민간에서는 독도에 다량으로 서식했던 강치⁶⁸⁶⁾ 어업지로서 가치에 주목했다. 강치는 가죽을 소금에 절이면 소가죽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채취한 기름은 품질과 가격 모두 고래 기름에 견줄 만 했다. 또 찌꺼기를 짜면 아교의 원료가 될 수 있고, 고기를 가루로 만들면 뼈와 함께 비료가 될 수 있는 등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했다.⁶⁸⁷⁾

독도에 강치가 군집해 있다는 사실이 일본에 알려진 것은 1894년⁶⁸⁸⁾이었지만 강치 어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03년이었다.⁶⁸⁹⁾ 오키(隱

686) 강치는 한국 기록상에는 可之, 可之漁, 嘉支漁, 可支漁, 强治, 水牛, 海驢, 海馬 등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울릉도에서는 嘉支, 北海人은 强治, 海馬, 可支로 불렀는데, 嘉支는 可之를 轉寫하다가 달라진 것이라고 한다(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 蟲魚類 魚, 「嘉支强治海馬鯧鱒辨證說」). 한철호는 울릉도에 가지도구미, 독도에 큰가제바위, 작은가제바위가 있는데 착안하여 울릉도 사투리로는 가지 혹은 가제, 가제 등으로 불렀기 때문에 오늘날의 강치를 독도 가지 혹은 가제로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한철호, 「독도-울릉도 ‘가지’(강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의미」, 『韓國史學報』 49, 고려사학회, 2012, 230쪽). 한편, 유미림은 ‘가지’는 동해, ‘강치’는 북해 사람의 호칭이라는 이규경(위의 책)의 기술을 바탕으로 ‘가지’와 ‘강치’는 호칭이 생성된 지역이 다르지만 둘 다 한반도 연안에 서식한 바다짐승에 대한 호칭이므로 ‘가지’에 제한하면 산지를 동해에 국한시킨다는 견해를 제시했다(유미림, 『일본 사료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5, 424쪽). 본고는 독도에 서식했던 강치를 당시 지역민들이 불렀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만, 오늘날 일 반적으로 일컫는 ‘강치’로 표기하고자 한다.

687) 中井養三郎, 「リヤンコ島領土編入並貸下願」, 『竹島資料』 7, 島根縣立圖書館 소장.

688) 『山陰新聞』 明治 27년(1894) 2월 18일.

689) 시마네현 총무과장으로서 독도에 대한 향토자료들을 수집하고 독도에 대한 저서를 발표한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清三郎)는 1903년 이전 독도에서의 강치어업에 대해서는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서술했다(田村清三郎, 『島根縣竹島の新研究』, 報光社, 1965, 83쪽). 다만, 1897년경 울릉도 근해에서 난파한 어선 수색을 했던 오키노시마 어민이 돌아오는 길에 독도에서 강치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것을 보고 50-60두를 잡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적이 있다(奥原碧雲,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1907, 7쪽; 田村清三郎, 위의 글).

岐)에 거주하는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는 울릉도에 왕복하던 중 우연히 독도에 기항하여 강치가 많이 서식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⁶⁹⁰⁾ 그는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다가 同鄉人 고히라 이와조(小原岩藏) 육군 보병 軍曹와 같이 협력하여 1903년 5월 시마다니 곤조(島谷權藏) 이하 장부 7명을 거느리고 독도에 도항했다. 그들은 독도에 漁舍를 짓고 국기도 내걸었다고 한다. 이때 우연히 오키 도젠(島前)의 이시바시 마쓰타로(石橋松太郎)도 독도에 도항하여 함께 강치를 포획했으나 사냥법과 제조법도 명확하지 않은 등 준비가 부족하여 자본만 잃고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키로 돌아갔다.⁶⁹¹⁾

나카이는 포기하지 않고 이듬해(1904)의 漁期를 기다리면서 비밀리에 다시 강치잡이 준비를 기획했다. 하지만 1903년에 함께 독도에 도해했던 고히라(小原) 육군 군조는 예비소집으로 인해 출정길에 올랐고, 시마다니(島谷)는 병에 걸리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그럼에도 나카이는 1904년 수 명의 어부들을 인솔하고 독도에 도해했는데, 일본 내에 이미 독도 강치잡이가 유망하다는 소문이 돌아서 처음에 3척 정박해 있었던 것이 나중에는 6척이 되는 등 여러 사람들이 독도 강치잡이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당시 독도에는 나카이 요자부로 외에도 오키섬에서 건너온 이시바시 마쓰타로(石橋松太郎), 이구치 류타(井口龍太), 가토 쥬조(加藤重藏) 등과 울릉도를 근거로 한 이와사키(岩崎)를 비롯한 조선인 일행 등이 강치잡이를 하고 있었다. 이들이 독도에서 포획한 강치의 수는 어림잡아 수컷 850마리, 암컷 900마리, 새끼 1천마리 등 2,750마리에 달

690)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1904년 9월 29일 내무·외무·농상부 3대신에게 제출한 「リヤンコ島領土編入並び貸下願」에는 울릉도를 왕래하던 중 우연히 독도에 기항하여 강치가 많이 서식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오키하라 헤기운(奥原碧雲)이 1906년 작성한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에는 그가 오키섬(隱岐島) 사이고(西郷)로 거주지를 옮기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던 중에 잠수기 어업자로부터 독도에 강치가 운집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본고는 나카이 본인이 작성한 기록을 따르겠지만, 그의 기록은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그의 행적을 제3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오키하라의 기록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691) 奥原碧雲, 앞의 책, 27쪽; 中井養三郎, 「リヤンコ島領土編入並び貸下願説明書」, 『竹島資料』 7(島根縣立圖書館 소장).

할 정도였으며, 강치가죽은 약 7,690貫에 이르렀다.⁶⁹²⁾

나카이는 독도 강치잡이를 이대로 방치하면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결국 강치가 절멸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는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믿고 독도 어장의 貸下를 청원하기 위해 1904년 어로기가 끝나자마자 도쿄로 상경했다.⁶⁹³⁾ 그는 오키 출신인 농상무성 수산국원 후지타 간타로(藤田勘太郎)에게 수산국장 마키 보쿠신(牧朴眞)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마키 국장은 나카이의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해군 水路部長을 만나 독도의 소속을 확인하도록 조언했다.

나카이는 마키 국장의 주의를 듣고 독도가 반드시 한국령에 속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생겨 수로부장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를 찾아갔다. 기모쓰키 수로부장은 나카이에게 독도 소속은 확실한 증거가 없고 한일 양국으로부터의 거리가 일본이 10해리 더 가까울 뿐 아니라 이 섬 경영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이상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주었다.⁶⁹⁴⁾ 이러한 기모쓰키의 권유에 따라 나카이는 경영상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여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내무·외무·농상무 세 대신 앞으로 제출했다(1904.9.29).

나카이는 우선 내무성 지방국에 출두하여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을 면담하여 그간의 사정을 진술했다.⁶⁹⁵⁾ 이에 대해 이노우에 서기관은 아래와

692) 中井養三郎, 앞의 책; 奥原碧雲,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竹島問題研究會,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2007, 71~74쪽에 재수록).

693) 나카이가 독도를 조선 영토로 믿었다는 사실은 그가 작성하여 1909년 오키도청에 제출한 「履歷書」의 부속서류인 「竹島經營の概要」 및 그와 함께 1906년 3월 독도에 도해했던 오키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작성한 『竹島及鬱陵島』(報光社, 1907)와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에도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다.

694) 기모쓰키는 1879년 오키열도를 포함한 북서안 측량 책임자로서 그 보고서인 『隱岐回航畧記』에서 오키의 범주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가 「朝鮮東岸」에 속한 섬이라고 서술한 1905년 2월 이전에 간행된 『조선수리지』와 『일본수리지』의 「序」를 쓰기도 했다(한철호, 「일본 해군 수로부의 오키 측량과 독도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65,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11~18쪽).

695) 中井養三郎, 「履歷書-竹島經營の概要」, 『竹島資料』 7(島根縣立圖書館 소장); 奥原碧雲,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1907;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竹島問題研究會,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2007, 71~74쪽에 재수록).

같이 답변했다.

이 시국에 즈음하여(러일전쟁 중) 한국 領地일지 모르는 황막한 일개 불모의 암초를 거둠으로써 사방에서 감시하고 있는 여러 외국에게 우리나라가 한국 병탄의 야심이 있다는 의심을 크게 불러 일으키는 것은 이익은 극히 작은데 반해 일이 결코 용이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변명과 진술을 하면서 청원하여도 각하될 것이다.⁶⁹⁶⁾

내무성 당국자는 독도가 한국 영토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그 배경에는 ‘竹島外一島’ 소속을 묻는 내무성 질의에 대해 일본과 관계없다는 「太政官指令」(1877)이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여하튼 내무성 당국자는 한국 영토로 보이는 독도를 편입하려고 하는 나카이를 돌려보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카이는 처음 아이디어를 주었던 농상공부 수산국장 마키 보쿠신을 다시 찾아갔다. 나카이는 마키 수산국장에게 독도 편입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했으나, 마키 국장도 외교상의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카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縣屬 農商 主任 후지타 유키토시(藤田幸年)가 지방관회의 출석을 위해 이하라 노보루(井原昂) 시마네현 지사와 함께 상경중이란 소식을 듣고 후지타의 숙소로 찾아갔다. 그러나 후지타 역시 성공의 전망이 없다고 충고했다. 나카이는 동향 출신 법학박사인 구와타 구마쥬(桑田熊藏)를 찾아가서 상의했다. 구와타 박사는 즉석에서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郎)에게 나카이를 소개하는 서신을 써 주었다. 나카이는 구와타 박사의 서신을 가지고 외무성으로 가서 야마자 정무국장을 면담했다.⁶⁹⁷⁾ 이때 나카이에게 독도 경영에 대한 설명을 들은 야마자 정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696) 中井養三郎, 위의 책.

697) 奥原碧雲,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竹島問題研究會,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2007, 71~74쪽에 재수록).

시국을 보더라도 그 영토편입이 시급히 요구되며 망루를 건축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 감시상 지극히 유리해 특히 외교 상으로는 내무성과 같은 고려를 요하지 않으니, 속히 원서를 본성에 회부시켜야 한다.⁶⁹⁸⁾

야마자 국장의 상기 언급은 일본의 독도 편입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카이가 독도 편입 시도를 위해 노력하던 1904년 가을은 러일전쟁이 한창 전개되던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성은 다른 나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 한국령일지도 모르는 독도를 편입할 경우 한국 병탄의 야심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외무성은 오히려 이와 같은 시국에 내무성과 같은 고려는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적 목적하에 독도 편입이 매우 시급함을 강조했다. 결국 독도 편입은 나카이 요자부호가 한국령이라는 인식하에 개인의 어업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일본 정부 단계로 넘어가면서 독도를 무주지로 취급하고 국가적 차원의 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적 목적에서 급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야마자 정무국장의 독도 편입 주장에 힘입은 나카이 요자부로는 1904년 9월 29일 내무성·외무성·농상무성 세 대신에게 「량고도(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リヤンコ島領土編入並貸下願)」을 제출했다. 일본 중앙 정부는 일단 시마네현청의 의견을 물었고, 시마네현은 내무부장 명의로 오키도사(隱岐島司)에게 독도를 오키도청(隱岐島廳) 소관으로 해도 차질이 없는지 조회하고, 섬의 명칭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11.15).⁶⁹⁹⁾

이에 대해 오키도사는 섬의 명칭은 ‘竹島’가 적당하다고 하면서 원래 조선 동쪽 해상에 ‘松竹’ 두 섬이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해지는데, 울릉도를 ‘竹島’라고 통칭하지만 실제로는 ‘松島’이며, 이

698) 中井養三郎, 앞의 책.

699) 「庶第1073号」, 明治 37년(1904) 11월 15일, 島根県公文書センタ 소장(‘竹島資料ポータルサイト’게재, <http://www.cas.go.jp/jp/ryodo/shiryo/takeshima/detail/t1904111500101.html>, 검색일: 2016.12.14.); 「庶第1073号」, 『竹島』, 明治 37년(1904) 11월 15일, 『竹島資料』7(島根縣立圖書館 소장).

는 해도에 의거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시마네현지사에게 답변했다(11.30).⁷⁰⁰⁾ 오키도사의 답변은 19세기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도명의 혼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면서, 1778년과 1880년 해군 아마기함(天成艦)의 울릉도 현지 조사 결과 울릉도가 松島로 정착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즉 ‘松竹’ 두 명칭 중에서 울릉도가 ‘松島’이기 때문에 독도는 ‘竹’, 즉 ‘竹島’가 적당하다는 논리이다. 이는 또한 도명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松竹’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존재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⁷⁰¹⁾

시마네현은 오키도사의 답변을 기초로 하여 중앙 정부에 보고했고, 정부는 이내 심의에 착수했다.⁷⁰²⁾ 그 결과 내무성은 1905년 1월 10일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無人島所屬ニ關スル件)」, 즉 랑고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여 竹島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할 것을 내각에 請議했다. 내각은 1월 28일 이 청의를 閣議 결정했다.⁷⁰³⁾

내무성은 각의 결정 사항을 관내에 고시하도록 시마네현지사에게 훈령했다(2.15).⁷⁰⁴⁾ 내무성의 훈령을 받은 시마네현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아래와 같이 지령했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隱岐島)를 距하여 서북 85浬에 있는 도서를 竹島라고 칭하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 오키도

700) 「乙庶第152号」, 『竹島』, 明治 37년(1904) 11월 30일, 『竹島資料』 7, 島根縣立圖書館 소장.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本月15日序第1073号で島嶼の所属などに関し問い合わせがありました 上は私たちの領土に編入した後に隱岐島庁の所管とすることにいかなる支障もありません 名称は竹島が適當だと考えます 本来朝鮮の東側海上に松島と竹島二島が存在するという事は一般に口伝される事実で 従来この地方で伐木、農事に携わる者が往来した鬱陵島を竹島だと通称するもののは松島であり 海図を見ても明瞭な由来があります それならばこの新島を置いて他に竹島に該当するものはありません したがって 従来間違えて称してきた名称を転用して竹島と通称するものをこの新島に付けることも可能だと考えます

701) 허영란, 「1905년 ‘각의결정문’ 및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와 독도 편입」, 『독도연구』 1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121~122쪽.

702)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66, 212쪽; 田村清三郎, 『島根縣竹島の新研究』, 報光社, 1965, 51쪽.

703) 『公文類聚』 第29編, 明治 38년(1905) 1월 28일(일본 國立公文書館 소장).

704) 川上健三, 위의 책, 213쪽.

사(隱岐島司) 소관으로 정한다.⁷⁰⁵⁾

아울러 시마네현은 오키도청에 대해서도 竹島가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명심(心得)하라는 훈령을 내렸다.⁷⁰⁶⁾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러일전쟁 수행의 전략적 목적하에 이루어진 일본 정부의 독도 영토 편입을 위한 행정적 처리가 일단락되었다.

3) 일본 독도 영토 편입 주장의 모순

1905년 일본의 랑고도(독도) 영토 편입은 오키섬(隱岐島)의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개인의 어업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어 러일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적 목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월 28일 내무대신이 정의한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無人島所屬ニ關スル件)」에 대한 각의 결정을 한 데 이어,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를 시행했다. 나카이는 처음에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인식하에 한국 정부로부터 임대하려고 했지만, 임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를 무주지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랑고도(독도) 영토 편입에 대해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라 할 수 있는 외무성의 「竹島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2008)에서는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이 섬(독도)을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하는 동시에 ‘竹島’로 명명하고, 그 취지를 내무대신으로부터 시마네현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각의결정으로 일본은 독도 영유

705) 「島根縣告示 第40号, 『島根縣告示』, 明治 38년(1905) 2월 22일, 島根県公文書センタ 소장(「竹島資料ポータルサイト」 게재, <http://www.cas.go.jp/jp/ryodo/shiryo/takeshima/detail/t1905022200301.html>, 검색일: 2016.12.14). 원문은 다음과 같다.

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隱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哩ニ在ル島嶼ヲ竹島ト稱シ自今本縣所屬隱岐島司ノ所管ト定メラル

明治三十八年二月二十二日

島根縣知事 松永武吉

706) 「島根縣庶第11号, 『竹島』, 明治 38년(1905) 2월 22일, 島根県公文書センタ 소장(「竹島資料ポータルサイト」 게재, <http://www.cas.go.jp/jp/ryodo/shiryo/takeshima/detail/t1905022200201.html>, 검색일: 2016.12.14).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⁷⁰⁷⁾

일본 정부는 랑고도(독도) 영토 편입을 위한 각의 결정(1.28)에 대해 ‘영유의사 재확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전후 내용에 독도가 ‘무주지’라거나, 독도를 ‘編入’했다거나 ‘先占’했다는 표현은 일체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과거 일본 정부가 독도 영토 편입에 대해 취했던 입장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토 편입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했던 것은 1954년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문서에서부터였다. 이때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에 대해 “근대 국제법상 영토 편입(acquisition)을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영토를 편입코자 하는 의사(intention)가 1905년 1월 28일 竹島를 일본의 영토로 추가(adding)하는 각의 결정으로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시마네현 고시(2.22)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이 영토 선점(occupancy of territory)할 때 관행으로 행하던 고시 방법”⁷⁰⁸⁾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국제법에서 말하는 ‘선점’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54년 “독도는 한국 영토의 일부였으며, 결코 국제법상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⁷⁰⁹⁾라고 반박하는 외교문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1956년 외교문서를 통해서도 “시마네현 편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으며, 지속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여 근대 국제법상 영유권의 필수 요건을 만족시켰다”⁷¹⁰⁾고 하며 시마네현 독도 영토 편입을 재차 강조했다. 일 측의 계속된 독도 영토 편입 강조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59년 외교문서에서 “1905년 당시까지 일본국이 독도를 그 영토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다는 하나의 유효한 반증을 제시하는 것”

707) 外務省, 「竹島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 2008.

708) 外務部, 「일본정부견해」2(1954.2.10),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55쪽.

709) 外務部, 「한국정부견해」2(1954.9.25),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90쪽.

710) 外務部, 「일본정부견해」3(1956.9.20),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76쪽.

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측 논리는 “독도가 시마네현에 정식으로 편입될 때까지 그것은 일본의 어느 현에도 속하지 않는 비정식의 일본 영토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⁷¹¹⁾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일 측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내세우면서 시마네현의 독도 영토 편입, 즉 국제법상의 선점을 주장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비판에 직면하자 일본 정부는 그 동안의 주장을 뒤집기 시작했다. 이때 등장한 새로운 논리가 ‘영유지사 재확인’이다. 일본 정부는 1962년 외교문서에 “각의 결정에 이은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근대 국가로서 竹島를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하고 이를 일본의 근대 행정구분에 편입하고, 이것을 공시한 것”⁷¹²⁾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독도가 예로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근대 국가로서 모습을 갖추면서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하여 근대 행정 구역상에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일본 정부에 의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은 1950-60년대 「往復外交文書」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핵심 쟁점은 각의결정에 이은 시마네현 고시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한 문제였다. 그런데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의 성격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은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문이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별지 내무대신 청의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함에 右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隱岐島)를 距하기 서북 85浬에 在한 무인도는 타국에서 이를 점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형적이 없고, 再昨 36년(1903) 本邦人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라는 자가 漁

711) 外務部, 「한국정부견해」3(1959.1.7),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194쪽.

712) 外務部, 「일본정부견해」4(1962.7.13),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245쪽.

숨을 構하고 人夫를 데리고 獵具를 갖춰 海驢獵에 착수하고 금번 영토 편입 및 貸下를 出願한 바 이에 소속 및 도명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該島를 竹島라 이름하여 지금부터 시마네현(島根縣) 소속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하려고 한다 하므로, 依하여 심사하건대 메이지 36년(1903) 이래 나카이 요자부로란 자가 該島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한 일은 관계 서류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본방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삼아도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依하여 정의와 같이 각의 결정함이 가하다고 인정함.⁷¹³⁾

밑줄 표시한 각의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독도는 무인도로서 다른 나라가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만한 형적이 없다. 그리고 1903년부터 일본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호가 어사를 짓고 어업을 실시했으니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각의 결정을 두고 일본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국제법상의 '선점'에 의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례로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는 선점의 법리를 국가의 영유 의사, 영유 의사의 표시, 대상이 무주지라는 것, 국가에 의한 점유의 所爲가 있다(또는 국가가 국민이 행하는 점유의 소위를 추인한다)는 것 등으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독도에 대해 영유 의사를 가지고 각의 결

713) 『公文類聚』第29編, 明治 38년(1905) 1월 28일(일본 國立公文書館 소장). 원문은 다음과 같다.

明治卅八年一月廿八日 ㊤ ㊥
 內閣總理大臣 可 法制局長官㊦
 外務大臣 署名 大藏大臣 署名 海軍大臣 署名 文部大臣 署名 遞信大臣 署名
 內務大臣 署名 陸軍大臣 署名 司法大臣 署名 農商務大臣 署名

別紙內務大臣請議無人島所屬ニ關スル件ヲ審査スルニ右ハ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隱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哩ニ在ル無人島ハ他國ニ於テ之ヲ占領シタリト認ムヘキ形跡ナク一昨三十六年本邦人中井養三郎ナル者ニ於テ漁舍ヲ構ヘ人夫ヲ移シ獵具ヲ備ヘテ海驢獵ニ着手シ今回領土編入竝ニ貸下ヲ出願セシ所此際所屬及島名ヲ確定スルノ必要アルヲ以テ該島ヲ竹島ト名ケ自今島根縣所屬隱岐島司ノ所管ト爲サントスト謂フニ在リ依テ審査スルニ明治三十六年以來中井養三郎ナル者カ該島ニ移住シ漁業ニ從事セルコトハ關係書類ニ依リ明ナル所ナレハ國際法上占領ノ事實アルモノト認メ之ヲ本邦所屬トシ島根縣所屬隱岐島司ノ所管ト爲シ差支無之儀ト思考ス依テ請議ノ通閣議決定相成可然ト認ム

정 및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그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카이 요자부로
의 강치 어업으로 영유의 소위를 각의 결정을 통해 국가가 추인했다고 주장
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독도가 무주지였는가⁷¹⁴)라고 했다.

1904년 9월 29일 내무성·외무성·농상공부 세 대신에게 「량고도(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リヤンコ島領土編入並貸下願)」을 제출했던 나카이 요
자부로는 처음에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카이에게 독도
편입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정리한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은
나카이가 량고도(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한 배경 및 조선 정부에 량고도
대하를 청원하려 했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海圖에 의하면 동 섬(독도)은 조선의 관도에 속하는 것으로 외인의
내습을 만나도 보호받을 길이 없으며, 이러한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동 섬 貸下를 조선 정부에 청원
하여 독점으로 어업권을 점유하고자 결심했다.⁷¹⁵)

이에 의하면,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조선 관도로 표시되어 있는
‘해도’를 보고 이 섬이 조선령이라고 믿었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참고했던
해도는 「朝鮮全岸」(1896)으로 파악되고 있다.⁷¹⁶) 「조선전안」은 일본 水
路部가 조선 전체 해안을 자세하게 그린 유일한 해도로서 1882년, 1896
년, 1906년 세 차례에 걸쳐 간행·개정되었다. 이 해도의 1882년판에는 조
선의 북부지역 일부와 동해안의 섬들이 표시되지 않았다가 1896년판에는

714) 塚本孝, 「竹島領有権紛争の焦点-国際法の見地から」, 島根県高等学校地理歴史・公民
科教育研究会研究大会講演, 2007, 2쪽; 「竹島領土編入(1905)の意義について」, 『島嶼
研究』 3卷2号, 島嶼資料センター, 2014, 51~54쪽.

715) 奥原碧雲,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竹島問題研究會,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
研究 最終報告書』, 2007, 71~74쪽에 재수록).

716) 佐々木茂, 「明治期における竹島問題」, 『竹島問題に関する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
會, 2007, 59쪽; 塚本孝, 「奥原碧雲竹島關係資料(奥原秀夫所藏)をめぐって」, 『竹島問
題に関する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會, 2007, 63쪽;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3, 268~272쪽; 김수희,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
강점」, 『독도연구』 1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87~88쪽; 한철호, 「일본 수로
부의 ‘조선전안’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한국사연구』 169, 한국사연구회,
2015, 247~254쪽.

울릉도와 독도가 들어갔고, 1905년 2월 일본의 독도 편입 이후 새로 개정된 1906년판에는 독도가 삭제되었다.⁷¹⁷⁾ 나카이 요자부로는 이 중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었던 1896년판을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선전안」 1896년판의 대개정·간행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수로부장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였다. 그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관되게 기재된 『조선수로지』(1894, 1899)와 독도가 오키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수로지』(1897) 등의 서문을 쓰고 편찬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⁷¹⁸⁾ 그럼에도 그는 1904년 독도를 한국령으로 믿고 한국 정부에 임대를 청원하려던 나카이에게 독도 소속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편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조언했다. 나카이는 그의 말을 믿고 독도 편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카이 요자부로만 해도를 참고하여 독도를 한국령으로 믿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전술했듯이 1904년에는 나카이 요자부로 외에도 오키섬에서 건너온 이시바시 마쓰타로(石橋松太郎), 이구치 류타(井口龍太), 가토 슈조(加藤重藏) 등과 더욱이 울릉도를 근거로 한 이와사키(岩崎)를 비롯한 조선인 일행 등이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하고 있었다. 울릉도민을 포함한 이들의 독도 소속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한국은 이보다 이전인 1900년 「勅令 第41號」로 독도를 울도군수의 관할하에 두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록 칙령 상에는 울도군수의 관할구역으로 ‘獨島’가 아닌 ‘石島’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석도의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 절에서 설명할 울도군수 「沈興澤 報告書」(1906)를 보면 당시 울도군수가 ‘獨島’를 자신의 관할구역으로 인식하고 통치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717) 한철호, 「일본 수로부의 ‘조선전안’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한국사연구』 169, 한국사연구회, 2015, 231~242쪽.

718) 한철호, 위의 논문, 245~247쪽.

3. 대한제국의 일본 독도 영토편입否認

1)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의 독도 시찰단 파견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제40호」로서 독도 영토편입을 시도한 후 1905년 8월 마쓰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시마네현 지사가 직접 竹島(독도) 순시에 나섰다. 당초 계획은 마쓰나가 지사가 8월 16일 아침 사카이미나토(境港)에서 제2오키마루(第二隱岐丸)를 타고 오키(隱岐)의 사이고(西郷)에 기항해서 오키도사(隱岐島司) 등을 일행에 합류시킬 예정이었으나, 8월 15일에 일정이 연기되었다. 그 후 갑자기 군용선인 교토마루(京都丸)로 가는 것으로 변경되어 오키에는 기항하지 않고, 마쓰나가 지사와 사토(佐藤) 警務長, 토다(藤田) 縣屬, 오쓰카(大塚) 警部 등 4명만이 8월 19일에 독도로 직행하여 섬을 시찰하고 돌아갔다.⁷¹⁹⁾

이듬해인 1906년에는 2차 시찰단이라 할 수 있는 시마네현 제3부장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 사무관을 책임자로 하는 官民 4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조사대가 독도에 파견되었다. 그 중에는 오키도사(隱岐島司) 히가시 분스케(東文輔), 영토편입 및 貸下 出願人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이 조사대의 보고서 『竹島及鬱陵島』의 작성자(저자)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 후쿠이치<福市>) 등도 들어 있었다. 이들은 3월 27일 독도에 도착하여 서도·동도를 차례로 조사하고, 기념으로 소나무를 심었다.

이어 조사대는 3월 27일 날씨를 핑계로 울릉도 道洞에 일부 인원만 상륙했고, 다음날(3.28) 9시경 전 인원이 상륙하여 우선 휴식을 취하였다. 10시경 진자이 요시타로 등은 조사단 중 통역(佐伯 순사부장)을 포함한 10여 명과 함께 울도군청으로 가서 군수 沈興澤을 방문했다. 당시 군청에

719) 『山陰新聞』 明治 38년(1905) 7월 14일·7월 15일·8월 5일·8월 16일·8월22일; 田村 清三郎, 『島根縣竹島の新研究』, 報光社, 1965, 58~60쪽; 川上健三, 앞의 책, 221~222쪽.

는 ‘鬱島衙門’이라는 편액이 걸려있었다. 진자이 부장은 심흥택에게 울릉도를 방문한 이유를 설명하고 독도에서 잡은 강치 한 마리를 선물로 주었다. 심흥택은 멀리서 온 데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선물에 대한 사례를 표했다. 오쿠하라가 보기에 심흥택은 말씨가 매우 세련되었으나 행정상의 질문에는 대부분 납득하지 못하는 듯 했다고 한다. 그리고 진자이 일행은 울릉도 사람들과 함께 군청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⁷²⁰⁾

이 자리에서 심흥택 군수가 진자이 부장의 강치 선물을 받은 것은 1950-60년대 「往復外交文書」상에서 논란이 되었다. 일본 측은 만약 울도 군수가 독도를 울도군 소속이라고 생각했다면 진자이 일행의 선물을 받았거나 감사의 예를 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⁷²¹⁾ 이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울릉도 방문 중 울도군수가 바다사자를 선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불법적이고 무효인 조약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한국을 조사하고 다녔으며, 1904년 2월 韓日議定書가 강요되었고 진자이 일행의 방문 한 달 전인 1906년 2월에 일본 統監府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⁷²²⁾

당시 울릉도에는 일본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었고, 군청이 있던 도동을 중심으로 300명 이상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자이 일행이 한국령인 울릉도의 호수와 인구, 지세 등을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⁷²³⁾ 이런 상황에서 설령 진자이 일행이 강치를 선물했고, 심흥택 군수가 감사의 예를 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진자이 일행에게 우호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던 교육지책의 하나였을 것이다. 더욱이 심흥택 군수는 진자이 일행과의 만남을 기념하고 일본으로의 항행의 안전을 기원하는 시를 써서 그들에게 전해주기도 했다.⁷²⁴⁾ 그럼에

720) 奥原碧雲, 『竹島及鬱陵島』, 附錄 「竹島渡航日誌」, ハーベスト出版, 2005(復刻板), 110쪽.

721) 外務部, 「일본정부견해」2(1954.9.9),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47~48쪽.

722) 外務部, 「한국정부견해」2(1954.9.25),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84쪽.

723) 堀和生, 앞의 논문, 119쪽.

724) “憐君報國一心丹 此地相逢意更歡 欲挽難留情万緒 爲言滄海去平安”(奥原碧雲, 『竹島及鬱陵島』, 附錄 「寒潮餘韻」, ハーベスト出版, 2005(復刻板), 116~117쪽).

도 불구하고 심홍택 군수는 행정상의 질문에는 대부분 납득하지 못했다는 오쿠하라 헤키운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심홍택 군수는 郡政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진자이 일행에게 답변을 회피하거나 호의적으로 응하지 않았다.⁷²⁵⁾

일본 시마네현 진자이 일행은 심홍택 군수에게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에 대한 사실도 알렸다. 『竹島及鬱陵島』나 그 부록 「竹島渡航日誌」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강원관찰사서리 춘천군수李明來의 보고서에 의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개 군수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본은 비로소 랑고도(독도)의 영토 편입을 한국 측에 알려왔던 것이다. 「시마네현고시 제40호」가 있는 지 1년 2개월 여가 지나서였다.⁷²⁶⁾

한편, 진자이 일행은 울도군 관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土商議所를 방문하여 소장 金光鎬, 고문 田在恒과 면회하여 여러 사항을 조사했다. 오후 1시부터는 일부는 배에 올라타 울릉도를 일주하고, 일부는 섬에 남아 조사를 계속했다. 그들은 하루간의 울릉도 조사 일정을 마치고 오후 8시 10분에 울릉도를 출발하여 3월 29일 오키에 도착했다.

2) 울도군수 沈興澤 보고와 대한제국의 대응

울도군수 沈興澤이 강원도관찰사에게 진자이 일행의 울릉도 방문과 일본이 ‘本郡 所屬 獨島’를 편입했다고 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이 일명 「沈興澤 報告書」(1906.3.29)이다. 이 보고서의 존재는 해방 이후 한국 언론상 처음으로 독도 문제를 제기했던 『대구시보』(1947.6.20)를 통해 알려졌다. 『대구시보』 기사 중에, “광무 10년 음력 3월 4일 일인들이 이 도서를 삼키려고 島根縣으로부터 대표단이 울릉도에 교섭 온 일이 잇었는데 당시 同島司는 도당국에 이 전말을 보고하는 동시 선처를 청탁해온 문서가 아직도 남아있슴”이라고 하여, 「심홍택 보고서」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

725) 홍정원, 앞의 논문, 155~157쪽.

726) 송병기, 앞의 책, 246쪽.

다. 이후 1947년 8월 한국산악회 주관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申奭鎬 교수가 울릉도청에 소장되어 있던 「심홍택 보고서」 副本을 제공받아 논문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다.⁷²⁷⁾

그 뒤 신석호는 1952년 1월 이후 한일 간 독도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외무부 外交史料調査委員會 위원으로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문서를 수차 작성했다.⁷²⁸⁾ 한국 측이 독도 영토주권 증거의 하나로 「심홍택 보고서 부분」을 제시한 것이라든지(1953.9),⁷²⁹⁾ 일본 측이 「심홍택 보고서」의 원본이 인용되지 않았음을 비판하자(1954.2), 한국 측에서 “원본은 현재 我國 정부의 공문서철 중에 보관하고 있다”(1954.9)⁷³⁰⁾는 답변을 한 것도 신석호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심홍택 보고서 부분」은 독도 영유권 증거의 하나로 제시될 만큼 중요한 문건이었다.⁷³¹⁾

1978년 4월에 결성된 독도연구모임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의 일원이었던 송병기는 「各觀察道案」1(議政府 外事局)에 편철되어 있는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李明來가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보낸 「報告書號外」를 발굴했다. 이 보고서에는 「심홍택 보고서 부분」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말미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를 부인하는 의정부 참정대신의 「指令 第3號」도 실려 있기 때문에 독도를 논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⁷³²⁾

독도에 있어 「勅令 第41號」(1900)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심홍택 보고서」가 그대로 실려있는 강원도관찰사서리 이명래의 「報告書戶外」 내용은 다음과 같다.

727) 申奭鎬, 「獨島 所屬에 對하여」, 『史海』 창간호, 1948, 96쪽.

728) 申奭鎬, 「獨島의 來歷」, 『思想界』 8, 1960, 16~17쪽.

729) 外務部, 「한국정부견해」1(1953.9.9),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33쪽.

730) 外務部, 「일본정부견해」2(1954.2.10),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47쪽; 「한국정부견해」2(1954.9.25), 84쪽.

731) 송병기, 「癡菴發掘 沈興澤報告書 副本에 대하여」, 『白山學報-癡菴申奭鎬博士誕生 100周年紀念 韓國史學論叢-』 70, 백산학회, 2004, 77~79쪽.

732) 「심홍택보고서」의 분석 및 의의에 대해서는 宋炳基, 「高宗朝의 鬱陵島·獨島 經營」, 『獨島研究』, 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議會, 1985 및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에 상세하다.

報告書號外

鬱島郡守 沈興澤報告書 내에

本郡 소속 獨島가 外洋 100여 리 밖에 있어있더니本月 초4일(양 3.28) 辰時(오전 7-9시) 쯤에 輪船 1척이 郡내 道洞浦에 來泊했는데, 일본 官人 일행이 官舍로 와서 스스로 이르기를, “독도가 이제 일본 領地가 된 고로 시찰차 來到하였다”고 하옵는 바, 그 일행은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오키도사(隱岐島司) 히가시 분스케(東文輔) 및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 稅務監督局長 요시다 헤이고(吉田平吾), 分署長 警部 가게야마 간파치로(影山巖八郎), 巡查 1인, 會議 1인, 醫師·技手 각 1인, 그 밖에 隨員 10여 인이 먼저 戶總·인구·토지·생산의 다소를 묻고 또 인원 및 경비가 얼마인지를 물으며 제반 사무를 조사할 양으로 錄去이옵기 이에 보고하오니 밝게 살피심을 伏望합니다.

라고 하였기에 이에 准하여 보고하오니 밝게 살피심을 伏望합니다.⁷³³⁾

이상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 내용은 첫째, 본군 소속 독도가 울릉도 外洋 100여 리에 있다는 것, 둘째, 시마네현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시마네현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 등 일본 관리 약 20명이 군아를 방문하여 독도가 일본 영지로 되었다고 하며 시찰차 왔다고 하는 것, 셋째, 이들은 도내 호구·토지·생산량, 군아의 인원·경비·제반 사무 등을 질문하고 조사하여 갔다는 것 등이다. 이 보고서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本郡 所屬 獨

733) 議政府外事局, 「各觀察道去來案」 1(奎章閣 소장). 원문은 다음과 같다.

報告書號外

鬱島郡守 沈興澤報告書 內開에 本郡所屬 獨島가 在於外洋 百餘里 外 이살더니 本月初四日 辰時量에 輪船一隻이 來泊于郡內道洞浦 而日本官人 一行에[이] 到于官舍호야 自云 獨島가 今爲日本領地 故로 視察次 來到이다 이온바 其一行 則日本島根縣 隱岐[岐]島司 東文輔 及事務官 神西田[由]太郎 稅務監督局長 吉田平吾 分署長 警部 影山巖八郎 巡查一人 會議一人 醫師·技手 各一人 其外 隨員十餘人이 先問戶總·人口·土地·生産 多少호고 且問 人員 及經費 幾許 諸般事務을 以調査樣으로 錄去이옵기 茲에 報告호오니 照亮호시를 伏望等 因으로 准此 報告호오니 照亮호시를 伏望

光武十年 四月 二十九日

江原道觀察使署理 春川郡守 李明來

議政府 叅政大臣 閣下

島'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독도 명칭 사용 및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알려진 한국 자료 중에서 '독도'가 표기된 最古의 문서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⁷³⁴⁾

심홍택 군수가 보고서를 올린 것은 일본 시마네현 진자이 사무관 일행이 독도를 방문했던 3월 28일의 바로 다음날(3.29)이었다. 수신은 강원도 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李明來였다. 울도군수로부터 일본에서 독도를 자기네 領地가 되었다고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강원도관찰사서리는 4월 29일 의정부 叅政大臣에게 심홍택의 보고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여 보고했다. 당시 의정부 참정대신은 朴齊純이었다.⁷³⁵⁾ 의정부는 강원도관찰사서리의 보고를 5월 7일에 접수하여 과장, 국장을 거쳐 참정대신에게까지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참정대신 박제순은 5월 10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指令 第3号」를 내렸다.

來報는 閱悉이고 獨島 領地의 說은 全屬 無根하니 該島의 形편과 日 本인이 어떠한 行동을 했는지 다시 調査하여 報告할 것⁷³⁶⁾

당시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의 참정대신은 지령을 통해 “獨島 領地之說은 全屬無根”하다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지가 되었다는 것을 否認했다. 다시 말해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을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한편, 울도군수 심홍택이 보고서를 올리면서 '獨島'라고 명기한 것이 다

734) 일본 측 자료에는 『軍艦新高行動日誌』(防衛廳 戰史部 所藏)에 1904년 9월 25일 '한인은 이를 독도라고 쓰고(韓人之ヲ獨島ト書シ)…'라고 한 것이 최초의 독도 명칭 기록이다(堀和生, 앞의 논문, 111쪽).

735) 의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議政大臣이나, 1905년(광무 9) 1월 7일 李根命이 사임하면서 의정대신은 공석으로 있었다. 후임 의정대신 閔泳奎가 임명되는 것은 1906년(광무 10) 5월 28일에 가서였다. 참정대신은 1905년 11월 28일 이후 박제순이 재임했는데, 1907년 5월 22일 이완용으로 교체되었다(『高宗實錄』 권 45, 光武 9년(1905) 1월 7일-권 47, 光武 10년(1906) 5월 28일;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접근』, 역사공간, 2010, 251쪽).

736) 議政府外事局, 「各觀察道來案」 1(규장각 소장); 원문은 다음과 같다.

來報는 閱悉이고 獨島領地之說은 全屬無根하니 該島 形편과 日人如何行動을 更爲查報할 事.

소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공식 보고서인 만큼 「칙령 제41호」(1900)상에 실려 있는 정식 행정 명칭인 ‘石島’라고 해야 정상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공문서상에 정식 행정 명칭 외의 지명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을 예로 들어보겠다.

현재 서울의 공식 행정 명칭은 서울특별시이다. 조선시대나 대한제국시대에는 漢城府였다. 그런데 한성 외에도 漢陽, 京兆, 京都, 京城, 首善, 長安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조선시대 관찬서에는 이러한 서울의 여러 이름들이 다양하게 쓰여 있다. 「심홍택보고서」(1906)와 비슷한 시기의 한성부 공문서를 보아도 한성, 한양, 경성 등의 지명이 쓰여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⁷³⁷⁾ 공문서인 만큼 서울의 공식 행정 명칭인 ‘한성’만 쓰였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공식 행정 명칭 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명도 별다른 구분 없이 공문서에 표기되었던 것이다.

오히려 ‘서울’이라는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서울이라는 지명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 예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든지,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 등 서울과 관련된 속담들은 상당히 많다.⁷³⁸⁾ 이 속담들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민간에서는 한성이라는 공식 명칭보다 서울이라는 지명이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문으로 표기하는 조선시대 문헌 기록의 특성상, 문헌상에서는 ‘서울’이라는 한글 표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柳本藝의 저술로 전해지는 『漢京誌略』(19세기 초)에 ‘徐苑’이라고 한자 표기한 예가 있는 정도이다.⁷³⁹⁾

이러한 현상은 독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돌섬’, ‘독섬’ 등과 같은 순한글 민간 지명은 문헌 기록에 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신

737) 『漢城府去來案』, 「報告書」第23號, 光武 6년(1902) 12월 8일.

738) 『우리말속담큰사전』, 송재선 저, 서문당, 1984; 이복규, 「속담에 나타난 서울 인식」, 『온지논총』 27, 온지학회, 2011.

739) “지금 사람들이 京師를 徐苑이라고 이르는 것은 신라의 옛 이름이 徐耶伐이라고 한 데서 후의 사람들이 京都를 徐伐이라고 하고, 후에 전칭하여 徐苑이라고 한 것이다(今人稱京師曰 徐苑者 古号新羅爲徐耶伐 浚人仍稱京都曰 徐伐 後轉爲徐苑耳)”(『漢京誌略』 卷1 沿革,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56초판, 2000재판); 임동석, 「‘서울’(首爾)名稱 淵源考」, 『중국어문학논집』 47,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311~312쪽.

돌섬을 한자 표기한 ‘石島’라든가 독섬을 한자 표기한 ‘獨島’가 기록에 전할 뿐이다. 석도로 쓰였든 독도로 쓰였든 이는 혼독하여 돌섬, 음독하여 독섬을 가리키는 지명 표기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칙령 제41호」(1900)에서의 석도를 심홍택이 독도로 표기했다고 해서 석도에서 독도로 법제상의 지명이 바뀐 것이 아니다. 이는 모두 돌섬을 가리키는 한자 표기였던 것이다. 그리고 한성, 한양, 경성 등의 서울 지명이 혼용되어 사용된 한성부 문서의 예처럼, 칙령상 석도라고 해서 공식 보고서에 꼭 석도라고만 써야했던 것은 아니었다.

울도군수 심홍택의 보고서는 『대한매일신보』·『제국신문』(1906.5.1일자)과 『황성신문』(1906.5.9일자) 등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기도 했다. 『대한매일신보』에는 “울도군수 심홍택씨가 내부에 보고하되…”라고 시작되어 울도군수가 강원도관찰사와는 별도로 内部에도 보고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황성신문』에는 심홍택의 보고 내용만 실린 반면에, 『대한매일신보』와 『제국신문』에는 기사 말미에 내부 지령도 함께 실려 있다. 내부 지령은 공문서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시 언론상에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매일신보』(1906년 5월 1일자)

…내부에서 指令하기를 遊覽道 次에 地界戶口之錄去는 客或無怪⁷⁴⁰어니와 獨島之稱云 日本 屬地는 必無其理니 今此所報가 甚涉訝然이라 ㅎ얏더라.

『제국신문』(1906년 5월 1일자)

…너부에서 훈령하기를 일인이 호구 도샤는 용혹무괴흔 일이어니와 攄령ㅎ였다는 말은 무기흔 일이니 쟁이상지ㅎ거든 일본리스에게 교섭ㅎ야 攄단ㅎ라 ㅎ였다더라.⁷⁴¹

740) 『대한매일신보』의 ‘客或無怪’를 『제국신문』에서는 ‘용혹무괴’라고 했다. 이는 ‘혹시’, ‘아마도’라는 의미의 ‘容或’이 맞는 표현이고, ‘客或’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에 의하면, 내부는 일본인이 독도를 일러 일본 속지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이 보고가 매우 아연할 일이라고 지령했다. 『제국신문』의 기사는 『대한매일신보』와 비슷하기는 하나, ‘일본리스’에게 교섭하여 처단하라는 『대한매일신보』에 없는 지령 내용이 실려 있다. 여기서 ‘일본리스’는 1906년 2월 설치된 統監府의 지방기구인 理事廳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청의 수장이 理事官이었다.

현재로서는 관련 문서가 발견되지 않아 의정부 참정대신 및 내부의 지령이 울도군에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또한 울도군이나 내부에서 통감부로 조회를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내부 지령이 있는 지 두 달여 후에 통감부에서 내부로 울도군의 소속도서를 문의해 온 기사가 있어 주목된다. 통감부가 울도군의 소속 도서에 관심을 가진 데 대한 기록은 이때가 유일하기 때문이다.⁷⁴²⁾

이 기사는 1906년 7월 13일자 『皇城新聞』 「鬱島郡의 配置顛末」이라는 제하의 보도로서, 통감부 통신관리국장 이케다 주자부로(池田十三郎)가 내부에 울도군의 소속 도서와 군청 設始 연월을 示明하라는 公函을 보내, 내부에서 이를 알려줬다는 내용이다. 내부는 통감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울도군의 연혁을 밝히고, “울도군의 소관 도서는 竹島, 石島이고, 동서 60리, 남북 40리, 합 200여 리”라고 답했다.⁷⁴³⁾

741) 『제국신문』(1906.5.1)에는 내부 지령을 소개하기 앞서 “일본 관인 일행이 본군에 락도호야 호구와 토디를 도스호며 말호기를 울도는 일본에서 점령호 고로 도사호다 혼지라…”라고 기술하여 ‘울도는 일본에서 점령’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울도’는 ‘독도’의 誤記로 보인다.

742) 홍정원, 앞의 논문, 158~161쪽.

743) 『皇城新聞』, 光武 10년(1906) 7월 13일; 『대한매일신보』, 光武 10년(1906) 7월 13일; 상기 『황성신문』 기사는 2008년 2월 22일자 일본 『山陰中央新聞』에 의해 일반에 알려졌다. 『山陰中央新聞』에서는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죽도, 석도를 언급하면서 울도군의 동서 거리를 60리라고 한 것은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즉 석도가 독도라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가 87.4km이기 때문에 60리보다 훨씬 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거리는 전통적인 관념에서의 울릉도 섬 크기라고 할 수 있다. 金正浩 「大東輿地圖」(1861)의 울릉도 주기에는 섬 크기를 설명하면서 동서 60리, 남북 40리라고 했다. 아마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홍정원, 「근대 문헌에 보이는 독도(우산도, 석도) 연구」, 『근대 이행기의 한일 경계와 인식에 대한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2, 131쪽; 유미림, 『

당시 내부는 약 두세 달 전에 독도가 일본령이 되었다고 한다는 심홍택 보고를 접했고, 이에 대해 지령을 내렸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내부는 ‘독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독도 영토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울도군의 소관 도서를 독도가 아닌 ‘석도’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오히려 석도가 곧 독도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더욱이 외부 기관이라 할 수 있는 통감부에 보내는 공문인 만큼 ‘독도’가 아닌 공식 행정 명칭대로 「칙령 제41호」(1900)의 ‘석도’를 명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기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1906년 7월에 왜 통감부가 내부에 울도군의 소속 도서를 밝혀달라고 했는가 이다. 통감부 통신관리국장의 질의였기 때문에 울릉도, 독도의 망루나 해저전신선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울릉도, 독도의 망루나 해저전신선은 이미 1904년과 1905년에 걸쳐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⁷⁴⁴⁾ 혹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에 대해 통감부 이사청에 교섭하여 처단하라고 했던 내부 지령(『제국신문』(1906.5.1))이 실제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통감부가 울도군 소속 도서에 관심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 조사가 뒷받침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 조사단 일행이 독도가 일본 영지가 되었다고 알려왔다는 울도군수 심홍택 보고를 통해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일본 측에 항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을사늑약(1905.11.17)으로 인해 외교를 담당하던 外部가 폐지(1906.1.16) 등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⁷⁴⁵⁾ 이후 일본 정부에 의해 통감부가 설치되었지만, 상기 『황성신문』 기사(1906.7.13)에서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144~148쪽).

744) 울릉도 망루는 1904년 8월 3일 건설에 착공하여 9월 2일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해저전신선은 9월 8일 공사에 착공하여 9월 25일 완성되었다. 러일전쟁이 종결된 이후에 착공된 울릉도 신망루도 1905년 7월 14일 착공되어 8월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독도 망루는 7월 25일 착공하여 8월 19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독도의 해저전신선은 1905년 10월 말 공사를 시작하여 11월 9일 독도와 마쓰에 사이를 연결하였다(堀和生, 앞의 논문, 114~115쪽; 홍정원, 앞의 논문, 132쪽).

745) 송병기, 앞의 책, 253쪽.

울도군의 소속 도서가 실린 것 외에는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다.

한편, 심홍택의 보고는 일반인에게도 과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黃玟은 『梅泉野錄』, 『梧下記聞』 등 자신의 저서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領地라고 勒稱한다며 비판했다.

3) 대한제국과 울도군수 沈能益의 독도 관할 인식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정부나 내부의 지령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 이후에도 대한제국의 독도 관할 인식이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增補文獻備考』(1908)가 있다. 『東國文獻備考』(1770)를 새롭게 증보한 『증보문헌비고』는 1906년 3월에 초출작업이 완료되었으며, 1908년(융희 2) 7월 1일에 간행되었다. 이 책의 「輿地考」 蔚珍條는 기존 『동국문헌비고』에 기술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 다만 울릉도와 우산도의 소속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 가지 내용이 추가되었다.

우산도(于山島) 울릉도(鬱陵島)…두 섬으로 하나가 우산(芋山)이다. 罽(罽) 지금은 울도군(鬱島郡)이 되었다.⁷⁴⁶⁾

‘罽(罽) 지금은’이란 『증보문헌비고』를 간행한 1908년 현재란 뜻으로, 우산도와 울릉도가 모두 1900년의 「칙령 제41호」를 통해 鬱島郡에 소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킨다.

『증보문헌비고』 「여지고」의 편찬에는 金澤榮과 張志淵이 참여했다. 김택영은 1903년(광무 7) 문헌비고 續撰委員에 임명되었으며, 1905년에는 학부편집위원을 겸직했다가 그해 겨울 모두 사직하고 중국으로 망명했다. 따라서 김택영은 자료의 초출작업에 관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746) 『增補文獻備考』 上 31, 輿地考 19, 海防 1, 東海 蔚珍. 원문은 다음과 같다.
于山島 鬱陵島…二島 一卽芋山 ‘續’ 今爲鬱島郡

장지연은 1906년 2월 황성신문 사장직을 사임하고 문헌비고 편집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그해 6월 朝陽報의 편집원이 되면서 사임했다. 따라서 그가 『증보문헌비고』의 수정작업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⁷⁴⁷⁾ 그렇다면 장지연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을까. 장지연은 『大韓新地志』(1907)⁷⁴⁸⁾의 「경상북도」편에서 鬱島를 설명하며 그 말미에 “于山島는 其東南에 在하니라”라고 하여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음을 밝히고 있다.⁷⁴⁹⁾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섬은 거리 관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독도 밖에 없다. 특히 저자 장지연은 『황성신문』 사장으로 활동했었던 인물로서, 그가 재직하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1906년 5월 9일자의 『황성신문』에는 「심흥택 보고서」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 또 그가 『대한신지지』를 저술하면서 참조했다고 추정되는 일본의 지리서로는 다부치 도모히코(田淵友彦)의 『韓國新地理』(1905)가 있다. 그 이유는 서술 체제상 地文地理와 人文地理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도 있고, 한국 경위도 서술도 서로 동일하며, 서술 내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다.⁷⁵⁰⁾ 『한국신지리』 제3편 處誌 제5장 「江原道」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코도(독도)를 설명했다.

본도(울릉도)에서 동남쪽 약 30리 되는 지점에 우리(我が) 오키도(隱岐島)와 거의 중앙 지점에 하나의 무인도가 있는데, 세간에서는 이 섬을 일러 ‘양코도(ヤンコ島)’라 칭한다.⁷⁵¹⁾

이 기사는 비록 양코도의 소속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울릉도 항목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오키도에만 ‘我が’라는 표현을 써 일본의 영토임을

747) 박인호, 『조선후기 역사지리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6, 228~233쪽.

748) 『대한신지지』라는 제목이 언뜻 현재의 『대한지리』의 신판처럼 보이지만, 저자 서문에 의하면 옛 서적과 구별하기 위해 ‘신지지’로 했다고 한다.

749) 張志淵, 『大韓新地志』序, 徽文館, 1907.

750) 장보웅, 「개화기의 지리교육」, 『대한지리학회지』 5, 대한지리학회, 1970, 53쪽.

751) 田淵友彦, 『韓國新地理』, 博文館, 1908, 308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本島より東南方約三十里我が隱岐島との胎んど中央に當り無人の一島あり 俗に之れをヤンコ島と稱す

분명히 하고 양코도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 점으로 보아 조선령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장지연이 『한국신지리』를 참조했었다면, 울릉도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양코도를 우산도로서 서술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증보문헌비고』 「여지고」의 편찬을 담당했던 김택영이나 장지연은 독도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다만 그 옛 이름인 우산도라고 했을 뿐이다. 이는 과거 『동국문헌비고』에서 기술했던 우산도를 굳이 독도라고 변경해서 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울릉도 사람들에게 우산도가 생소할지는 몰라도 조선시대 지지류의 서적들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래도록 사용되었던 우산도가 더 잘 알려진 명칭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명칭에 대한 변경 없이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지금은 울도군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독도의 소속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1908년 편찬된 『증보문헌비고』 끝으로 1910년 일본의 강제병합이 있기까지 독도, 석도, 우산도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독도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지만,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이후에도 울도군수가 지속적으로 독도를 관할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울도군수의 보고서가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다.⁷⁵²⁾

이 보고서의 제목은 「慶尙南道鬱島郡地方狀況」⁷⁵³⁾(이하 심능익 보고서)으로서 『宮內府雜綴』이라는 표제의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다. 작성된 날짜는 1909년(융희 3) 1월 일이고, 작성자는 ‘鬱島郡守 臣 沈能益’이다.⁷⁵⁴⁾

보고서가 작성된 1909년 1월은 대한제국의 純宗 皇帝가 경상도 지역을

752) 홍정원, 「울도군수 심능익 보고서(1909)를 통해 본 울도군 상황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58,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홍정원, 「근대 문헌에 보이는 독도(우산도, 석도) 연구」, 『근대 이행기의 한일 경계와 인식에 대한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2, 140~148쪽 참고.

753) 울도군은 원래 강원도에 속하다가 부산과의 교통관계로 1906년부터 경상남도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 경상북도 포항과의 항로로 인해 우편물뿐 아니라 모든 물자를 포항과 유통했다. 이에 따라 울도군은 「총독부령 제111호」(1913.12.29공표, 1914.3.1시행)를 통해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面廢合關係書類』, 「鬱島郡管轄變更ノ件」(1913.10.8), 국가기록원 소장).

754) 「慶尙南道鬱島郡地方狀況」(1909), 『宮內府雜綴』(藏書閣 소장).

순시했었던 때이다. 순종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질서 하에서 국내 정세의 불안과 백성들의 곤궁한 생활을 탐문하기 위해 경상도 巡幸, 즉 남순행을 실시했다고 한다.⁷⁵⁵⁾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統監府 統監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일본 정부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었다. 즉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직전에 순종의 순행을 통해 반일 감정을 완화시키거나 친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⁷⁵⁶⁾

순종은 1월 7일부터 13일까지 대구→부산→마산 등지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1월 10일 마산을 순시할 때는 오후 3시 10분 창원부 행재소에서 경상남도관찰사와 울도군 등 해당 지역 군수 17명이 순종을 陞見했다. 울도군수의 보고서는 이때 宮內府에 제출되었다. 울도군 외에도 機張郡, 密陽郡, 東萊郡 등이 해당 군의 ‘지방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⁷⁵⁷⁾

울도군수 沈能益⁷⁵⁸⁾은 이 보고서를 통해 울릉도의 크기와 위치를 서술하고, 울도군의 울도군의 면·동 수, 호구·인구 수, 교통상황, 토산물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 중에서 특히 울릉도의 위치 서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本島 地方 東西 35里, 南北 40里
 東 日本國 隱岐縣 海里 1千里
 西 三涉地 海里 8百里
 南 釜山港 海里 1千里
 北 元山港 海里 1千里⁷⁵⁹⁾

여기서 本島는 섬을 가리키므로 울도군 전체가 아닌 울릉도만을 가리킨

755) 『南巡行日記』 권1, 隆熙 3년 1월 10일.

756) 이왕무, 「대한제국기 純宗의 南巡幸 연구」, 『정신문화연구』 30권 2호, 2007, 59~60쪽.

757) 『南巡行時日記』 권2, 「第九號 進獻品明細表」; 『內閣日記』 권7, 隆熙 3년 1월 14일. 이 중에서 『궁내부잡철』에는 울도군과 기장군의 지방상황 보고서만 편철되어 있고, 밀양군과 동래군은 실려 있지 않다.

758) 沈能益은 1907년 8월 22일 울도군수에 임명되어 1909년 8월 4일 龍南郡守로 전임되었다(『官報』, 隆熙 1년(1907) 8월 22일-隆熙 3년(1909) 8월 4일).

759) 「慶尙南道蔚島郡地方狀況」(1909), 『宮內府雜綴』(藏書閣 소장)

다고 할 수 있다. 1900년 「勅令 第41號」에는 울도군이 ‘鬱陵全道, 竹島, 石島’를 관할한다고 규정했는데, 여기서 울릉전도는 죽도, 석도를 제외한 울릉도 본섬 및 그 주변 작은 섬과 바위들을 포함한 것이었다.⁷⁶⁰⁾ 그러므로 심능익 보고서에서 本郡이라 하지 않고 본도라 칭한 것은 울도군의 관할구역인 죽도, 석도를 제외한 울릉도 본섬만을 가리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울릉도의 섬 크기는 동서 35리, 남북 40리라고 했다. 10리를 약 4km라고 했을 때, 동서 35리의 길이는 약 14km로서, 실제 거리인 10km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남북 40리 또한 약 16km로 실제 거리인 9.5km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측량에 의한 섬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오차는 인정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울릉도 위치를 설명하면서는 동쪽으로 일본 오키(隱岐)⁷⁶¹⁾를 들었고, 서쪽은 정서쪽에 해당하는 삼척을 들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은 울릉도와 항로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산항과 원산항을 들었다.

그런데 울도군의 크기와 위치를 설명한 위와 같은 서술에는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는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 구역이라면 독도를 포함한 울도군 전체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왜 울릉도만을 중심으로 언급했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대한제국 정부나 울도군수가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1905)을 인정했다면, 동쪽 지점으로 오키가 아니라 일본령이 되어 버린 ‘竹島’를 거론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울도군의 지방상황에 대한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왜 울도군 전체가 아닌 울릉도만을 중심으로 위치를 설명했는가 하는 점이다. 울도군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울릉도뿐 아니라, 칙령에 명기된 죽도와 석도의 위치도 모두 함께 보고해야만 하지 않았을까 한다. 죽도는 울릉도에서 약 2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760) 송병기, 앞의 책, 214쪽.

761) 당시 오키(隱岐)는 시마네현(島根縣) 소속으로 오키도가 정식 행정 명칭이었다. 심능익이 오키현이라고 한 것은 오키도의 오류이다.

않아도 되었을지 모르지만, 87.4km나 떨어져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르다. 울도군수가 독도를 자신의 관할구역으로 인식했다면 당연히 울릉도만이 아닌 독도를 포함한 위치를 보고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같은 시점에 보고된 다른 지방 군의 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순종의 남순행 때 울도군 외에 기장군, 밀양군, 동래군 등이 해당 군의 ‘지방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궁내부에 제출했는데, 이 중에 밀양군과 동래군은 전해지지 않고 기장군의 보고서가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機張郡守 具然浩의 「慶尙南道機張郡地方狀況」(1909.1) 보고서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기장군 보고서는 울도군과 마찬가지로 기장군의 크기 및 위치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地方 四表 東西 60里, 南北 60里
 東接 梁山界 40里
 西接 東萊界 20里
 南 海門 20里
 北接 梁山界 40里⁷⁶²⁾

기장군 보고서도 울도군과 마찬가지로 군의 크기와 위치를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동서남북 각 접경지까지의 거리는 군청 소재지의 관문을 중심으로 계산한 것이다. 1872년에 작성된 기장군의 지방지도를 보면, 지도의 서남쪽에 ‘東萊界 自官門十五里’라고 명기되어 있다.⁷⁶³⁾ 즉, 기장군의 서남쪽은 관문으로부터 15리 거리인 동래와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장군 지도는 1909년 기장군의 보고와 각 경계나 거리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두 관문으로부터의 거리를 중심으로 계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울도군도 관문이 있던 곳을 중심으로 울도군의 크기와

762) 「慶尙南道機張郡地方狀況」(1909), 『宮內府雜綴』(藏書閣 소장).

763) 「機張地圖」(1872, 奎章閣 소장).

위치를 밝혔을 것이다. 그렇다면 울도군의 관문이 있던 道洞으로부터 울도군 전체의 크기와 위치를 표현해야 하는데, 사방이 모두 바다인 울도군은 섬의 크기만 표현될 뿐 육지와 같은 동서남북 경계 지점이 없다. 따라서 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울릉도를 중심으로 군의 크기와 위치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죽도 및 석도(독도)의 위치는 울도군의 위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심능익은 1907년 8월 울도군수에 임명되었다.⁷⁶⁴⁾ 이때는 심홍택 보고가 있던 1906년 3월과 의정부 참정대신이 지령을 내렸던 1906년 5월부터 약 1년 후이다. 그런데 전 군수였던 심홍택이 1907년 3월 황성군수로 임명되었었기 때문에 심능익은 심홍택으로부터 직접 업무 인계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이 1907년 7월 具然壽가 울도군수로 임명되었지만, 같은 달에 警務使로 전임되어 실제 도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⁷⁶⁵⁾ 심홍택이 전근을 간 3월부터 심능익이 임명되는 8월까지의 울도군 행정 공백은 울도군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田在恒이 鬱島郡主事로 임명되어 郡政을 담당했었다.⁷⁶⁶⁾ 그렇기 때문에 업무 인계상의 차질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군 관할구역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던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에 대한 내용을 새로 부임한 군수가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심홍택 보고서」는 군수가 일본 측의 방문을 받자마자 상부에 긴급 보고했을 정도로 울도군에서 중요도가 높은 보고서였다. 더욱이 「심홍택 보고서」의 副本은 1947년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이 울릉도에 방문했을 때까지도 울릉도청에 보관되어 있었다.⁷⁶⁷⁾ 따라서 심능익 군수는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과 이를 부인했던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인정했다면, 울도군수가 울

764) 『官報』, 隆熙 1년(1907) 8월 22일.

765) 『官報』, 光武 11년(1907) 7월 1일·7월 22일.

766) 『官報』, 光武 11년(1907) 4월 24일.

767) 제1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일원이었던 申奭鎬 교수는 울릉도청에 소장되어 있던 심홍택 보고서 부분을 찾아 자신의 논문을 통해 처음으로 전문을 공개했다(申奭鎬, 「獨島 所屬에 對하여」, 『史海』 創刊號, 朝鮮史研究會, 1948, 96쪽).

릉도의 동쪽으로 뭔가 지점을 찾을 때 오키도보다는 독도가 울도군과 맞닿아 있는 경계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 경계는 단순한 군의 경계가 아니라 국가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보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심능익 군수는 울도군의 동쪽 경계로 일본과 접하는 지점을 독도로 하지 않고, 오키로서 설명한 것이다. 이는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울도군수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독도는 작은 무인도이기 때문에 오키를 기점으로 했을지도 모른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즉, 심능익 보고서에서 울릉도의 동서남북은 단지 울릉도의 위치만을 알리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비교적 잘 알려진 큰 지역들을 언급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함께 보고되었던 기장군의 경우 라든가 기타 여러 지리지들과 비교해 보면 이것이 해당 군의 경계를 기본으로 해서 그 거리를 표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장군 보고서의 경우 東接, 西接, 北接 등 ‘接’이라는 표현과 梁山界, 東萊界 등 ‘界’라는 표현을 써서 기장군과 인접한 경계를 밝힌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남쪽의 경우에만 바다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계라고 하지 않고 ‘海門’이라는 표현을 썼다. 앞서 1872년 기장군 지도에서도 군의 서남쪽 경계면에 ‘東萊界 自官門十五里’라고 주기했다. 1899년 전국 邑誌 上送令으로 『機張郡邑誌』가 작성되었는데, 여기서도 첫 시작을 동서남북 각 접경지와의 경계와 거리로서 설명하여 東至, 西至 등 ‘至’와 梁山界, 東萊界 등 ‘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⁷⁶⁸⁾ 그러므로 기장군 보고서의 ‘계’라는 표현은 군의 경계임이 분명하다. 이는 당시 해당 군의 경계를 보고서의 앞머리에 밝힌다는 문서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768) 『機張郡邑誌』(1899), 규장각 소장(奎10857). 원문은 다음과 같다.

“東至海岸八里 西至梁山界三十里 南至東萊界十四里, 北至蔚山界四十九里”

『기장군읍지』에는 동서남북 경계 지점을 「경상남도 기장군 지방상황」 보고서와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방위상 경계는 『기장군읍지』가 정확하고, 「경상남도 기장군 지방상황」 보고서는 방위보다는 교통로상 연결된 경계 지점에 더 중점을 두고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기장군의 동쪽을 바다가 아닌 ‘梁山界’라고 한 것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군의 위치를 설명할 때, 동서남북 경계지를 들어 설명한다는 기본 원칙은 모두 같다.

앞서 언급했던 장지연의 『대한신지』(1907)는 도 단위로 서술했는데, 각 도를 설명하면서 가장 앞부분에 ‘위치·경계’ 항목을 두었다. ‘위치·경계’ 항목은 동서남북으로 접하는 도명을 서술하고, 동서·남북의 길이, 위도·경도 순으로 서술했다.⁷⁶⁹⁾ 이러한 양식은 조선시대 지리지에서 공통된 서술 형태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방지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울도군의 경우에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의 위치와 경계를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대한신지』의 부록 「各郡沿革及距里方面結戶境界標」에서도 울도군의 경계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른 섬의 경우에는 인접한 내륙의 행정구역명이나 海, 海岸이라고만 표기하기도 했다.

울도군의 경계를 굳이 언급한다면 동서남북 모두 ‘海’라고 하거나, 아니면 각 방향에 인접해 있는 다른 행정구역과 경계까지의 거리를 제시해야 한다. 울도군수 심능익은 울릉도의 동쪽 기점으로 일본의 오키를 표기하면서 해리 1천리라고 했다. 이는 울도군수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고 울도군이 독도를 관할하고 있음을, 즉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1905년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토 편입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지방관은 1909년 시점에서도 여전히 독도를 울도군 관할하에 있는 대한제국령으로 인식·보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769) 張志淵, 『大韓新地誌』附錄, 徽文館, 1907.

VI. 결 론

1950-60년대 한·일 정부 간 독도에 대한 외교문서상의 논쟁이 시작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독도 역사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勅令 第41號」(1900), 「沈興澤報告書」(1906), 「指令 第3號」(1906)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1696), 「太政官指令」(1877) 등 여러 중요한 자료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발굴되었음에도 쟁점이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쟁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더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자료의 부재 및 객관적인 사료 해석 태도의 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로 기존 연구성과를 보강해서 조선의 울릉도·독도 인식과 관할 역사를 고찰했다. 그 결과 조선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할을 지속하고 있었던 반면에, 일본에서는 1905년 독도를 불법 편입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領有를 否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한·일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핵심 사항들에 대한 해결도 저절로 도모할 수 있었다. 이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독도 지명 문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 부인, 일본의 랑고도(リヤンコ島, 독도) 편입 시도와 이에 따른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 등으로 나누어 본고의 결론을 내고자 한다.

첫째, 독도 지명 문제이다. 조선시대 독도 지명이 于山島였다는 사실은 『世宗實錄』 「地理志」(1454)의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이 서로 떨어져 떨어져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실록』 「지리지」 이후 울릉도와 우산도를 거리 개념으로서 서술했던 기사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蔚珍縣丞을 역임했던 鄭必達(1611~1693)은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우산도를 설명했다. 정필달의 詩 주석에는 “울릉도를 정면으로 마주하여 또 우산도가 있다. 海氣가 지극히 맑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하여 우산도가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에만 보이는 섬, 즉 독도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울진이 내륙과 울릉도를 왕래하는 주요 거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민들은 울릉도와 우산도를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울진을 중심으로 강원도 동해안 출신들의 문집 등에서 우산도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우산도에 대한 인식은 安龍福 사건 이후 더욱 심화되어 『東國文獻備考』(1770)는 “울릉과 우산은 다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왜가 이르는바 松島다”라고 해서 우산도가 일본이 일컫는 松島로서 지금의 독도임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大韓帝國 정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에 대한 대응으로 울릉도 행정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勅令 第41號」(1900)를 반포했다. 칙령 제2조에는 울도군 관할구역을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라고 규정했다. 울릉전도는 울릉도 본섬, 竹島는 울릉도 동북쪽에 자리한 땃섬(竹嶼)인데, 石島는 독도이다. 일찍이 1947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방중현 교수는 ‘독도’라는 이름이 ‘석도’의 뜻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독도의 외형이 돌과 같고, 전라남도 해안에서 ‘돌’을 ‘독’으로도 발음한다는 데 착안하여 독도는 석도의 뜻인 ‘독섬(돌섬)’에서 유래했다고 고증했다.

전라도 방언에서 독도 명칭이 유래했다는 사실은 19세기 후반 全羅南道 麗水郡 三山面 三島(巨文島·草島·巽竹島) 방면의 어부가 울릉도에 왕래하면서 지명이 ‘變稱’되었다는 『開闢』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울릉도에 거주한 사람이거나 왕래하던 사람들에게 우산도는 잊혀진 지명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거문도·초도·손죽도의 서북쪽으로 가장 인접 지역에 居金島가 있는데, 거금도 동남쪽 조그만 돌섬의 지명이 ‘獨島’라는 점이다. 이를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은 돌섬을 독섬으로 부르고 한자로는 ‘獨島’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의해서 ‘우산도’ 지명이 변칭되어 ‘독섬·돌섬(石島·獨島)’이라는 명칭이 새로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기가 다소 지난 뒤의 기록이지만, 『새한민보』(1948.7)는 기사 제목에서 “獨島(原名은 돌섬)는 우리의

섬”이라고 하여 독도의 원래 이름이 ‘돌섬’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조선의 여러 고문헌은 조선이 독도를 관할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수차에 걸쳐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밝혀 왔다. 그 처음은 安龍福 被拉 사건으로 촉발된 「鬱陵島爭界(竹島一件)」(1693~1699) 결과인 「竹島(울릉도) 渡海禁止令」(1696.1.28)이었다. 일본 幕府가 「竹島 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된 데에는 돛토리번(鳥取藩)의 답변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幕府는 1696년 12월 에도(江戸)에 있는 돛토리번저(鳥取藩邸)에 竹島 소속과 일본 어민의 渡海에 대해 7가지 사항의 질의서를 보냈다(12.24). 이에 대해 에도 돛토리번저는 그 다음날(25일) 즉시 “竹島·松島 그 밖에 [어떤] 두 나라의 부속섬도 없습니다”라고 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돛토리번, 즉 일본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고했다. 돛토리번의 답변을 통해 松島(독도)의 존재를 알게 된 막부는 1696년 1월 「竹島 도해금지령」(1.28)을 내리기 직전, 돛토리번저에 松島에 대해 질의를 했다(1.23). 이에 대해 돛토리번은 “松島는 어느 國에 부속되는 섬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1.23 또는 25)하여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보고했다. 돛토리번으로부터 竹島와 松島가 일본령이 아님을 재차 보고받은 막부는 결국 일본인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는 「竹島 도해금지령」(1696.1.28)을 내렸다.

「竹島 도해금지령」에 松島(독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17세기 울릉도에 도해했던 오야가(大谷家)의 후손이 1740년 가문의 곤란을 해결해 줄 것을 막부에 요청했던 탄원에서도 잘 드러난다. 오야가의 탄원을 받은 4명의 지사부교(寺社奉行)는 오야가 후손(오야 구에몬)과의 일문일답에서 “‘竹島·松島 두 섬의 도해금지를 명받은 이후는 하쿠슈 요나고 성주가 도와주셔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탄원서에 적었는데, 돛토리번 요나고 家老부터 祿米라도 받아 왔는가”라고 질의했다. 즉 오야가 후손이나 이를 면담한 막부 관리나 모두 「竹島 도해금지령」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의 도해가 금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이 「竹島 도해금지령」을 지속적으로 준수했던 것은 울릉도에 도해했던 하치에몬(八右衛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하치에몬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던 1836년 7월, 막부는 쓰시마번(對馬藩)에 竹島, 松島의 소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쓰시마번은 松島가 竹島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이 건너가 어로활동 하는 것을 정지한 섬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 조선 지도로 말하자면 울릉·우산 2섬이라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즉, 쓰시마번은 「竹島 도해금지령」에 松島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우산도가 松島, 즉 독도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막부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파악한 후에 1837년 하치에몬을 사형에 처하고 異國에 대한 도해금지령을 전국 연안에 내렸다.

막부를 계승한 메이지(明治) 정부도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일본령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의 내정을 시찰했던 외무성 출장자는 竹島·松島가 조선에 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1870)했다. 또 당시 일본 최고 행정통치 기관인 太政官은 ‘竹島外一島’, 즉 울릉도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 인정한 「太政官指令」(1877)을 내무성에 내렸다. 「태정관지령」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시마네현에서 보고한 「竹島 도해금지령」과 관련된 자료들이 참고되었다. 따라서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막부의 인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랑고도(독도) 편입 시도와 이에 따른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하기 이전에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했었다. 반면, 조선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1900) 등으로 알 수 있듯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할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 등 군사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동해 해전이 임박해오자 독도의 전략적 측면에 주목하여 독도를 불법 편입(1905.2)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은 1906년 3월 울도군수 沈興澤에 의해 중앙에 보고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本郡 所屬 獨島”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수의

관할하에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에 대해 議政府는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 제3호」(1906.5)를 내렸다. 또 『제국신문』(1906.5.1) 기사에 의하면 內部도 심홍택에게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본 理事와 교섭하여 처단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문서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아 의정부와 내부의 지령이 강원도관찰사나 울도군수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울도군수 심홍택의 후임인 沈能益 군수도 독도 관할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1909년 1월 純宗 皇帝가 경상도 지역으로 南巡行했을 때 창원부 행재소에서 경상남도관찰사와 울도군 등 해당 지역 군수 17명이 순종을 陞見했다. 당시 울도군수 심능익은 宮內府에 「慶尙南道鬱島郡地方狀況」을 보고하면서 울릉도의 위치를 동서남북 경계를 들어 설명했다. 만약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인정하여 독도가 대한제국과 일본의 국경이 되었다면, 울릉도의 동쪽 경계는 당연히 ‘竹島’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능익 군수는 울릉도의 동쪽 경계를 일본 오키(隱岐)로서 울릉도로부터 거리가 1천해리라고 기술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독도 옛 지명이었던 ‘우산도’는 20세기 후에도 문헌상에 계속 남아있었다. 『東國文獻備考』(1770)를 새롭게 증보한 『增補文獻備考』 「輿地考」 蔚珍條(1908)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소속에 대해 「續 今爲鬱島郡」이라고 해서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와 우산도가 鬱島郡에 소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증보문헌비고』 「여지고」 저술에는 “于山島는 其 東南에 在호니라”고 기술한 『大韓新地志』 저자인 張志淵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이 높다. 「증보문헌비고」는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 후인 1908년 발간된 관찬 문헌이라는 점에서 울릉도와 우산도가 지금은 울도군이라는 기술은 더욱 의미가 깊다.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인정하지 않고 우산도, 즉 독도를 대한제국 울도군의 관할로서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竹島 도해금지령」(1696)에 이어 「태정관지령」(1877) 등 수차례 걸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를 부인해 왔다. 반면,

조선은 『실록』, 관찬 『지리지』 등에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를 강원도 소속으로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영유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1900)를 반포하면서 근대 행정체계로서 독도를 관할했다. 그럼에도 일본 측은 17세기부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되었고,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독도 역사에 대한 한·일 간 논쟁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독도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가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 그동안 난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결정적인 자료의 발굴만이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 새롭게 소개한 자료들은 독도 역사에 대한 그동안의 쟁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그 논리를 강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지면 독도 역사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 독도에 대한 한·일 간 불필요한 논쟁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한국 자료

가) 奎章閣 소장

- 『各觀察道去來案』.
- 『各部請議書存案』.
- 『江原道監營關牒』.
- 『江原道關草』.
- 『江原道來去案』.
- 『官報』.
- 「光緒 9年 4月 日 蔚陵島開拓時船格糧米雜物容入假量成冊」.
- 「光緒 9年 7月 日 江原道蔚陵島新入民戶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數爰成冊」.
- 『光海君日記』.
- 『交涉局日記』.
- 『校正廳關抄』.
- 『機張郡邑誌』(1899)
- 「機張地圖」(1872).
- 『內部來去文』.
- 『內部外部往來公牒摘要』.
- 『東來關牒外案』.
- 『東萊報牒』.
- 『同文彙考』.
- 『梅泉野錄』(黃玿).
- 『邊例集要』.
- 『備邊司謄錄』.
- 『世宗實錄』.
- 『肅宗實錄』.
- 『承政院日記』.
- 『英祖實錄』.
- 『五洲衍文長箋散稿』(李圭景).
- 『外衙門日記』.
- 「蔚陵島圖形」.
- 『議奏』.

『日省錄』.
『雜同散異』(安鼎福).
『正祖實錄』.
『駐日來去案』.
『竹老先生文集』(申活).
『增正交隣志』.
『春官志』.
『勅令』.
『太宗實錄』.
『統署日記』.
『統椽日記』.

나) 藏書閣 소장

『高宗實錄』.
『宮內府雜綴』.
『南巡行時日記』.
『南巡行日記』.
『內閣日記』.
『西溪雜錄』(朴世堂).
『梧下記聞』(黃玟).
『頤齋亂藁』(黃胤錫).
『青城雜記』(成大中).

다) 國立中央圖書館 소장

『開闢』(開闢社).
『南鮮經濟新聞』.
『大邱時報』.
『大韓新地志』(張志淵, 徽文館, 1907).
『독립신문』.
『東國文獻備考』.
『東亞日報』.
『새한민보』.
『星湖僊說』(李翼).
『順庵集』(安鼎福).
『乘槎錄』(元重舉).
『新編大韓地理』(金建中 譯, 普成館, 1907).
『鵝溪遺稿』(李山海).

『漁村集』(沈彦光).
 『朝鮮開化史』(恒屋盛服, 博文館, 1901).
 『朝鮮地誌』(學部 編輯局, 1895)
 『朝鮮地誌資料』(朝鮮總督府, 1911).
 『增補文獻備考』.
 『初等大韓地誌』(安鍾和, 徽文館, 1907).
 『八松先生文集』(鄭必達).
 『漢城日報』.
 『海東繹史續』(韓鎮書).
 『皇城新聞』.

라) 其他

『疆界考』(申景濬)(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소장).
 『高麗史』(東亞大學校 博物館 소장).
 『舊韓國外交文書』(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4).
 『面廢合關係書類』(國家記錄員 소장).
 『三國史記』(誠庵古書博物館 소장).
 「書契」, 『對馬島宗家文書』(國史編纂委員會 소장).
 『旅菴全書』(申景濬)(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소장).
 『研經齋全集』(成海應)(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소장).
 『鬱島記』(禹用鼎)(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소장).
 『蔚陵島檢察日記』(李奎遠)(國立濟州博物館 소장).
 『蔚陵島事蹟』(張漢相)(國史編纂委員會 소장).
 『駐韓日本公使館記錄』(國史編纂委員會 소장).
 『漢京誌略』(서울市史編纂委員會, 1956초판, 2000재판).

2. 일본 자료

『公文錄』(일본 國立公文書館 소장).
 『公文類聚』(일본 國立公文書館 소장).
 『控帳』.
 『軍艦新高行動日誌』(防衛廳 戰史部 소장).
 『極秘 明治三十七年 八年海戰史』(일본 海軍軍令部 編).
 『磯竹島覺書』.
 『磯竹島事略』.
 『大谷家文書』.

『大日本外交文書』(일본 外務省 調査部, 1938).
 「島根縣告示 第40号」, 『島根縣告示』, 明治 38년(1905) 2월 22일(일본 島根縣公文書センタ 소장).
 「島根縣庶第11号」, 『竹島』, 明治 38년(1905) 2월 22일(島根縣公文書センタ 소장).
 『東京朝日新聞』.
 『明治十七年 蔚陵島一件錄』(山口縣文書館 소장).
 『釜山領事館報告二』(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山陰新聞』.
 『山陰中央新聞』.
 『善隣始末』.
 『善隣通交事考』.
 『漁業關係雜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御用人日記』.
 『蔚陵島ノ於ケル伐木關係雜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因府歷年大雜集』.
 『日本外交文書』.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일본 國立公文書館 소장).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ノ日本人ヲ引戻處分一件』(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朝鮮通交大紀』.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奧原碧雲)(竹島問題研究會,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2007).
 『竹島考證』(北澤正誠)
 『竹島考』(岡嶋正義).
 『竹島及蔚陵島』(奧原碧雲, 報光社, 1907).
 『竹島紀事』.
 『竹島問題調査資料』(일본 外交史料館 소장).
 『竹島資料』 7(島根縣立圖書館 소장).
 「竹嶋之書付」.
 『通商彙纂』.

3. 단행본

가) 국내

김경옥, 『朝鮮後期 島嶼研究』, 혜안, 2004.
 김호동,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7.
 內藤正中 저, 광진오·김현수 역, 『한일간 독도·죽도 논쟁의 실제』, 책사랑, 2009.
 大韓公論社, 『獨島』, 1965.

- 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자료집Ⅱ-죽도고증』, 2006.
- 朴炳涉, 『안용복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 _____,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 박인호, 『朝鮮後期 歷史地理學 研究』, 이회문화사, 1996.
- _____, 『조선시기 역사가와 역사지리인식』, 이회, 2003.
-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출판부, 1999.
- _____,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4.
- _____, 『고쳐쓴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5.
- _____, 『재정판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7.
- _____,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접근』, 역사공간, 2010.
-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 _____, 『독도, 보배로운 한국영토』, 지식산업사, 1996.
- _____,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_____,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4, 독도연구보전협회, 2001.
- _____,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출판부, 2003.
- _____, 『신용하교수의 독도이야기』, 살림출판사, 2005.
- _____,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6.
- _____,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2011.
- 송재선, 『우리말속담큰사전』, 서문당, 1984.
- 유미림, 『박세당의 「울릉도」와 장한상의 「울릉도사적」 역주 및 비교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 _____,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 _____, 『일본 사료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5.
- 이한기,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 이혜은·이형근, 『만은(晩隱)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 외무부, 『獨島問題概論』, 1955.
- _____, 『獨島關係資料集 I -往復外交文書(1952~76)-』, 1977.
- 정병준, 『독도1947』, 돌베개, 2010.
-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獨島研究』, 1985.
- 한국사학회, 『鬱陵島·獨島學術調查研究』, 197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독도연구』, 1996.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86.
- 한일관계사연구회,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1996.
- 호사카 유지, 『우리역사 독도』, 책문, 2009.
- _____, 『대한민국 독도』, 책문, 2010.

나) 국외

- 內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 多賀出版, 2000.
_____, 『竹島=獨島問題入門-日本 外務省『竹島』批判』, 新幹社, 2008.
朴炳涉·內藤正中, 『竹島=獨島論爭』, 新幹社, 2007.
山邊健太郎, 『日韓併合小史』, 岩波書店, 1966.
森須和男, 『八右衛門とその時代』, 浜田市教育委員會, 2002.
外務省 條約局, 『竹島の領有』, 1953.
田村清三郎, 『島根縣竹島の研究』, 島根縣, 1954.
_____, 『島根縣竹島の新研究』, 報光社, 1965.
池內敏,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學出版社, 2005.
_____,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3.
_____, 『竹島 -もうひとつの日韓關係史』, 中公新書, 2016.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66.
下條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藝春秋, 2004.

4. 논문

가) 국내

- 강만길, 「日本側 文獻을 통해 본 獨島」, 『獨島研究』,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강세구, 「柳馨遠·李瀾과 安鼎福의 學問的 傳承關係」, 『實學思想研究』 5·6, 母岳實學會, 1995.
강철성, 「현재의 대한지지 내용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2),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6.
구선희, 「해방 후 연합국의 독도 영토 처리에 관한 한·일 독도연구 쟁점과 향후 전망」, 『한국사학보』 28, 고려사학회, 2007.
국제보도연맹, 『국제보도』(Pictorial Korea)10권(올림픽특집) 3권 1호.
김병렬, 「일학자에 의해 억지주장 입증되었다」, 『韓國論壇』 109, 1998.9.
김선희,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 《다케시마문제란 무엇인가?(竹島問題とは何か)》(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部, 2012)」, 『일본역사연구』 38, 2013.
김수희,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어업」, 『인문연구』 5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_____, 「개척령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38, 한일관계사학회, 2011.

- _____, 「흑룡회의 독도 침탈 기도와 ‘양코도 발견’ 기록의 재검토», 『전북사학』 41, 전북사학회, 2012.
- _____, 「독도는 무주지인가?-1905년 일본의 죽도영토편입 조치와 ‘무주지선점’ 설 비판», 『일본문화연구』 47, 동아시아일본학회, 2013.
- _____, 「일본식 오징어어업의 전과 과정을 통해서 본 울릉도 사회의 변화과정», 『대구사학』 115, 대구사학회, 2014.
- _____,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 강점», 『독도연구』 1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 _____,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과 오키도(隱岐島) 어민들의 독도 진출», 『한일관계사학회』 51, 한일관계사학회, 2015.
- _____, 「19세기 일본 산음지방의 울릉도·독도 기록과 ‘송도개척론(松島開拓論)」, 『독도연구』 19,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5.
- _____, 「동해상에서 무주지 선점 법리를 이용한 섬 ‘발견’과 ‘명칭 변경」, 『영토해양연구』 10,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5.
- 김영수, 「근대 독도·울릉도 명칭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시각」, 『역사와 현실』 73, 한국역사연구회, 2009.
- _____,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 판례와 사료적 증거」, 『독도연구』 1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1.
- 김호동, 「조선 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공도정책’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3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5.
- _____, 「독도 영유권 공고화와 관련된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 『대구사학』 98, 대구사학회, 2010.
- _____, 「조선시대 독도·울릉도에 대한 인식과 정책」, 『역사학연구』 48, 호남사학회, 2012.
- 남상준, 「개화기 근대교육제도와 지리교육」, 『지리교육논집』 19,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988.
- 朴炳涉,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 『獨島研究』 8,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0.
- _____, 「러일전쟁과 독도의 가치」, 『獨島研究』 1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1.
- _____,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 -새 자료 및 연구를 중심으로-」, 『獨島研究』 12,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2.
- _____,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獨島研究』 13,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2.
- _____, 「17세기 일본인의 독도 어업과 영유권 문제」, 『獨島研究』 15,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3.
- _____,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獨島研究』 1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 _____, 「1953년 일본순시선의 독도 침입」, 『獨島研究』 1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 _____, 「광복 후 일본의 독도 침략과 한국의 수호 활동」, 『獨島研究』 18,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5.

- _____,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獨島研究』 19,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5.
- 박성준, 「1880년대 조선의 울릉도 별목 계약체결과 별목권을 둘러싼 각국과의 갈등」, 『동북아역사논총』 43, 동북아역사재단, 2014.
- 박은숙,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과 영토·영해 인식-울릉도·독도 인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6, 동북아역사재단, 2012.
- 박인호, 「柳馨遠의 東國輿地志에 대한 一考察 - 歷史意識과 關聯하여」, 『淸溪史學』 6, 1989.
- 박중효, 「한·러 관계사에서 본 러시아와 독도(獨島)」, 『軍史』 96, 군사편찬연구소, 2015.
- 박진희, 「戰後 韓日관계와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 『한국사연구』 131, 한국사연구회, 2005.
- 방중현, 「獨島의 하루」, 『京城大學 豫科新聞』 13, 1947(『一簣國語學論集』, 民衆書館, 1963 재수록).
- 배성준, 「울릉도·독도 명칭 변화를 통해서 본 독도 인식의 변천」, 『진단학보』 94, 2002.
- 백충현·송병기·신용하, 「독도문제 재조명」, 『한국학보』 24, 1981.
- 손승철, 「1696년 안용복의 제2차 도일 공술자료」,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
- _____, 「중·근세 조선인의 島嶼 경영과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39, 한일관계사학회, 2011.
- 송병기, 「高宗朝의 鬱陵島·獨島 經營」, 『獨島研究』, 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議會, 1985.
- _____, 「朝鮮後期·高宗朝의 鬱陵島 搜討와 開拓」, 『崔永禧先生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탐구당, 1987.
- _____, 「朝鮮初期 地理志의 于山·鬱陵(武陵)島記事 檢討」, 『龍巖車文燮博士華甲紀念論叢 朝鮮時代史研究』, 신서원, 1989.
- _____, 「日本の ‘량고’島(獨島)領土編入과 鬱島郡守 沈興澤 報告書」, 『尹炳奭教授華甲紀念韓國近代史論叢』, 지식산업사, 1990.
- _____, 「鬱陵島の 地方官制 編入과 石島」, 『國史館論叢』 23, 國史編纂委員會, 1991.
- _____, 「資料를 통해 본 韓國의 獨島領有權」,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1996.
- _____, 「朝鮮後期の 鬱陵島 經營-搜討制度의 確立-」, 『震檀學報』 86, 1998.
- _____, 「癡菴發掘 沈興澤報告書 副本에 대하여」, 『白山學報-癡菴申奭鎬博士誕生 100周年紀念 韓國史學論叢-』 70, 백산학회, 2004.
- _____, 「安龍福의 活動과 鬱陵島爭界」, 『歷史學報』 192, 2006.
- _____, 「獨島(竹島)問題의 再檢討」, 『東北亞歷史論叢』 18, 2007.
- _____, 「安龍福의 活動과 竹島(舍陵島)渡海禁止令」, 『東洋學』 43, 2008.
- 송석하, 「古色蒼然한 歷史의 遺跡 鬱陵島를 찾아서!(1947.12.1).

- 송원호, 「돈스코이호 자침 이후 승조원들의 행적」, 『대한토목학회지』, 51권 5호, 2003.
- _____, 「돈스코이호 함장의 최후」, 『대한토목학회지』 53권 12호, 2005.
- 송원호·윤석구, 「러시아 해군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대한토목학회지』 55권 1호, 2007.
- 송희영, 「근대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대구사학』 106, 대구사학회, 2012.
- _____, 「독도 관련 일본 고문서의 연구동향과 자료 검토」, 『일본문화연구』 50,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 _____, 「'죽도외일도'의 해석과 메이지 정부의 울릉도·독도 인식」, 『일본문화연구』 52,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 _____,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도항금지령」, 『독도연구』 19,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5.
- _____, 「天保竹島一件」을 통해 본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일본문화연구』 68, 동아시아일본학회, 2016.
- 신석호, 「獨島 所屬에 對하여」, 『史海』 창간호, 1948.
- _____, 「獨島의 來歷」, 『思想界』 8월호, 1960.
- 신용하, 「朝鮮王朝의 獨島領有와 日本帝國主義의 獨島侵略-獨島 領有에 대한 實證의 一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_____, 「일제하의 독도와 해방 직후 독도의 한국에의 반환과정 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4, 한국사회사연구회, 1992.
- _____, 「韓國의 獨島領有와 日帝의 獨島侵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 _____, 「歷史的 側面에서 본 獨島問題」, 『독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_____, 「獨島·鬱陵島의 名稱變化 연구-명칭 변화를 통해 본 獨島의 韓國固有領土 증명-」, 『한국학보』 91-92, 일지사, 1998.
- 심헌용, 「러일전쟁 시기 러일 양국군의 한반도 내 군사활동」, 『아시아문화』 21, 2004.
- _____, 「러일전쟁 최후의 해상전투, '동해해전' 재구성」, 『軍史』 97, 군사편찬연구소, 2015.
- 양홍준, 『대한제국 후기(1905-1910) 경찰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오상학,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 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18:1, 2006.
- 유미림, 「“우산도=독도”설 입증을 위한 논고-박세당의 「울릉도」와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8.
- _____, 「일본의 울릉·우산 ‘二島’설 부정과 지리지 규식」, 『영토해양연구』 1, 동

- 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1.
- _____, 「근대기 조선 지리지에 보이는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호칭의 혼란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2,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1.
- _____, 「1900년 칙령 제41호 제정 전후 울릉도 ‘수출세’의 성격」, 『영토해양연구』 7,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4.
- _____, 「1905년 전후 일본 지방세와 강제어업, 그리고 독도」, 『영토해양연구』 9,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5.
- _____, 「한국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기술과 그 계보에 관한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52, 동북아역사재단, 2016.
- _____, 「공문서 작성 절차로 본 독도 관련 법령의 의미」, 『영토해양연구』 11,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6.
- 윤소영, 「1900년대 초 일본 측 조선어업조사 자료에 보이는 독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 _____, 「근대 일본 관찬 地誌와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 윤유숙, 「18~19세기 전반 朝日 양국의 울릉도 도해 양상」, 『동양사학연구』 118, 동양사학회, 2012.
- _____, 「근세 돛토리번(鳥取藩) 町人の 울릉도 도해」, 『한일관계사연구』 42, 한일관계사학회, 2012.
- _____, 「1693년 조선인의 돛토리번(鳥取藩) 연행사건과 쓰시마번(對馬藩)」, 『동양사학연구』 123, 동양사학회, 2013.
- 이계황,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와 조·일 외교교섭」, 『일본역사연구』 33, 2011.
- 이광린, 『開化黨研究』, 일조각, 1973.
- 이규태,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둘러싼 러일의 정책」, 『사충』 79, 2013.
- 이기봉, 「순한국말 지명과 표기의 관계를 통해 본 石島·獨島 고찰」, 『근대이행기의 한일 경계와 인식에 대한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2.
- _____, 「순한국말 지명과 한자 표기의 관계를 통해 본 석도·독도 고찰」, 『문화역사지리』 24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2.
- 이병도, 「獨島 名稱에 對한 史的 考察-于山·竹島 名稱考-」, 『佛敎史論叢』, 1963.
- 이복규, 「속담에 나타난 서울 인식」, 『온지논총』 27, 온지학회, 2011.
- 이상태, 「울도군 초대군수 배계주에 관한 연구」, 『영토해양연구』 11, 동북아역사재단, 2016.
- 이선근, 「近世 鬱陵島問題와 檢察使 李奎遠의 探險成果-그의 檢察日記를 中心한 若干의 考察-」, 『大東文化研究』 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3.
- _____, 「獨島의 名稱에 對한 史的 考察」, 『獨島』, 대한공론사, 1965.
- 이영학, 「개항 이후 일제의 어업 침투와 조선 어민의 대응」, 『역사와 현실』 18, 1995.
- 이왕무, 「대한제국기 純宗의 南巡幸 연구」, 『정신문화연구』 30권 2호, 2007.

- 이을, 「동해의 一點碧인 鬱陵島를 찾고서」, 『開闢』 4권 41호, 開闢社, 1923.11.
- 이훈, 「조선 후기의 독도 영속 시비」,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1996.
- 임동석, 「'서울'(首爾) 名稱 淵源考」, 『중국어문학논집』 47,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 장보웅, 「개화기의 지리교육」, 『대한지리학회지』 5, 대한지리학회, 1970.
- 장순순,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對日談論으로서 울릉도·독도」, 『韓日關係史研究』 51, 한일관계사학회, 2015.
- 정두희, 「조선 초기 지리지의 편찬(I)」, 『역사학보』 69, 1976.
- 정병준, 「영국 외무성의 對日 평화조약 草案·부속지도의 성립(1951.3)과 한국독도영유권의 재확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2005.
- _____, 「윌리엄 시볼드(William J. Sebald)와 '독도 분쟁'의 시발」, 『역사비평』 71, 역사문제연구소, 2005.
- _____, 「시론:한일 독도영유권 논쟁과 미국의 역할」, 『역사와 현실』 60, 한국역사연구회, 2006.
- _____, 「독도영유권 분쟁을 보는 한·미·일 3국의 시각」, 『史林』 26, 首善史學會, 2006.
- _____, 「1953~1954년 독도에서의 한일충돌과 한국의 독도수호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 _____, 「미국 정보기관의 독도 관련 자료와 독도문제 인식-중앙정보국(CIA) CREST 비밀해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 _____,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독도연구』 18,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5.
- 정선희, 「위암 장지연의 지리적 사고와 한계-생애와 역사적 환경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37,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997.
- 정영미, 「일본의 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섬의 명칭 혼란’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정태만,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조성훈,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대일전략과 독도 귀속문제」, 『국제지역연구』 17-2, 서울대국제학연구소, 2008.
- _____, 「1954년 벤 플리트 사절단 보고서와 미국의 독도 인식」, 『동양학』 4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9.
- 진재교, 「元重擧의 「安龍福傳」 연구-‘안용복’을 기억하는 방식-」, 『震檀學報』 108, 진단학회, 2009.
- 채수도, 「초기 동아동문회의 정치적 성격과 정책 노선에 관한 연구」, 『대구사학』 90, 대구사학회, 2007.
- 천지명, 「한말 일본 동아동문회의 조선 교육 진출」, 『동서사학』 9, 한국동서사학

- 회, 2003.
- 최남선, 「鬱陵島와 獨島」, 『六堂崔南善全集』2, 高麗大學校 六堂全集編纂委員會, 1973.
- 최문형, 「러시아의 鬱陵島 活用企圖와 日本의 對應」, 『獨島研究』, 韓國近代史資料研究協議會, 1985.
- _____, 「露日戰爭과 日本의 獨島占取」, 『歷史學報』 188, 2005.
- _____, 「일제의 외침야욕과 울릉도·독도 점취」, 『독도연구』 9,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0
- _____, 「일제의 외침야욕과 울릉도·독도 점취 -발틱함대 내도에 대비한 망루 구축을 위하여-」, 『독도연구』 9,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2.
- 최진옥, 「독도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 『獨島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漆崎英之, 「태정관에 의한 竹島 외일도 관도 외 지령」(박병섭·나이토세이츄 지음, 호사카 유지 옮김,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서, 2008에 수록).
- _____, 「「太政官指令」 付図 「磯竹島略図」 発見の経緯とその意義」, 『獨島研究』 14,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3
- 한철호, 「明治時期 일본의 독도정책과 인식에 대한 연구 쟁점과 과제」, 『韓國史學報』 28, 고려사학회, 2007.
- _____,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4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 _____, 「메이지 초기 일본 외무성 관리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의 울릉도·독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9, 2008.
- _____, 「明治시기 일본의 도서선점 사례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그 의미」, 『서울국제법연구』 16권 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9.
- _____, 「독도·울릉도 ‘가지’(강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의미」, 『韓國史學報』 49, 고려사학회, 2012.
- _____, 「일본 해군 수로부의 오키 측량과 독도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65,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 _____, 「일본 수로부 간행의 수로지와 해도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1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 _____,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동북아역사논총』 50, 동북아역사재단, 2015.
- _____, 「일본 수로부의 ‘조선전안’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한국사연구』 169, 한국사연구회, 2015.
- 허영란, 「독도 영유권 문제의 성격과 주요 쟁점」, 『한국사론』 34, 2002
- _____,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13, 동북아역사재단, 2006.
- _____, 「1905년 ‘각의결정문’ 및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와 독도 편입」, 『독도연구』 1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 홍성근, 「라포르트(E. Laporte)의 울릉도 조사 보고서와 1899년 울릉도 현황」, 『영토해양연구』 6,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3.
- 홍정원, 「울도군수 심능익 보고서(1909)를 통해 본 울도군 상황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58,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 _____, 「러·일의 울도군 침탈과 대한제국의 대응 연구」, 『군사』 8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1.
- _____, 「근대 문헌에 보이는 독도(우산도, 석도) 연구」, 『근대 이행기의 한일 관계와 인식에 대한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2.
- 홍중인, 「獨島를 생각한다」, 『週刊朝鮮』 427호, 1977.3.20.

나) 국외

-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朝鮮史研究會, 1987.
- 内藤正中, 「隱岐の安龍福」,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2, 鳥取短期大学, 2005.
- _____, 「竹島一件と安龍福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6-37, 鳥取短期大学, 2013.
- 木村幹, 「池内敏著 竹島問題とは何か」 『東洋史研究』 72卷4号, 2014.
- 朴炳涉, 「明治政府の竹島=独島認識」,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8, 鳥取短期大学, 2008.
- _____, 「安龍福事件と鳥取藩」,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9, 鳥取短期大学, 2009.
- _____,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独島問題(1)」,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1, 鳥取短期大学, 2010.
- _____,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独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 鳥取短期大学, 2010.
- _____, 「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5, 鳥取短期大学, 2012.
- _____,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1)」,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8, 鳥取短期大学, 2014.
- _____,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2)-(3)」,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9, 鳥取短期大学, 2014.
- _____, 「元禄・天保竹島一件と竹島=独島の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40, 鳥取短期大学, 2015.
- 寺尾五郎·吉岡吉典·桑谷桑男, 「竹島問題」, 旗田巍 等, 『アジア·アフリカ講座Ⅲ:日本と朝鮮』, 勁草書房.
- 杉原隆, 「八右衛門, 金森建策, 松浦武二郎の‘竹圖地圖’について」,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會, 2007.
- _____, 「明治10年太政官指令-竹島外一島之儀ハ本邦關係無之-をめぐる諸問題」,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中間報告書』, 第2期島根縣竹島問題研究會, 2011.
- 田保橋潔, 「鬱陵島 その發見と領有」, 『青丘學叢』 3, 1931.

- 田川孝三, 「竹島問題研究資料: 文獻に明記された韓國領土の東極」, 1953.11.
- _____, 「竹島問題研究資料: ‘獨島’なる島名について」, 1953.11.
- _____, 「竹島問題研究資料: 朝鮮政府の鬱陵島管轄について」, 1953.11.
- _____, 「竹島問題研究資料: 竹島渡海禁制と松島」, 1953.11.
- _____, 「竹島問題研究資料: 于山島について」, 1953.12.
- _____, 「竹島問題研究資料(歴一): 三峯島について」, 1954.12.
- _____, 「竹島問題研究資料(歴二): 于山島と鬱陵島名について」, 1954.12.
- 佐々木茂, 「明治期における竹島問題」, 『竹島問題に関する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会, 2007.
- 竹島問題研究会, 『竹島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2007.
- _____, 『竹島問題100問100答』 WILL 3月號, 2014.
- 池内敏, 「竹島渡海と鳥取藩-元祿竹島一件考・序説-」, 『鳥取地域史研究』 1, 1999.
- _____, 「17~19世紀 鬱陵島地域の生業と交流」, 『歴史學研究』, 756, 2001.
- _____, 「前近代竹島の歴史學研究序説」, 『青丘學研究論集』 25, 2001.
- _____, 「竹島,獨島 論争とは何か」, 『歴史評論』 733, 2011.
- 塚本孝, 「竹島領有權問題の経緯」, 『照査と月報』(ISSUE BRIEF) 244, 國立國會圖書館, 1994.
- _____, 「竹島領有權問題の経緯(第2版)」, 『照査と月報』(ISSUE BRIEF) 289, 國立國會圖書館, 1996.
- _____, 「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國際法の適用事例-先占法理と竹島の領土編入を中心に-」, 『東アジア近代史』 3, ゆまに書房, 2000.
- _____, 「竹島領有權紛争が問う日本の姿勢」, 『中央公論』, 2004.10月号.
- _____, 「竹島領有權紛争の焦点-國際法の見地から」, 島根県高等学校地理歴史・公民科教育研究会研究大会講演, 2007.
- _____, 「奥原碧雲竹島關係資料(奥原秀夫所藏)をめぐって」, 『竹島問題に関する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会, 2007.
- _____, 「竹島領有權問題の経緯(第3版)」, 『照査と月報』(ISSUE BRIEF) 701, 國立國會圖書館, 2011.
- _____, 「竹島領土編入(1905)の意義について」, 『島嶼研究』 3卷2号, 島嶼資料センター, 2014.

朝鮮の鬱陵島・独島認識と管轄

洪政阮

韓国学中央研究院 韓国学大学院

韓国史学 専攻

独島歴史の研究が始まってから70年余りが過ぎたものの、韓日間の争点は時間が経てば経つほど増える傾向にある。これは独島に関する第1次史料が限定的だという問題もあるが、客観的ではない史料解釈も主な原因といえよう。本稿ではこのような問題意識を持って朝鮮が鬱陵島と独島を管轄していた歴史を考察するために、これまでの研究成果を踏まえつつ、これまで知られなかった史料、即ち于山島が独島であることを示す蔚珍縣令・鄭必達(1611～1693年)の記録、「勅令第41号」(1900年)の石島をめぐる地名問題をある程度解決できる『開闢』(1923年)の記事、「沈興澤報告書」に対する内部の指令を紹介した『帝国新聞』(1906年5月1日)の記事、独島に対する鬱陵島郡守の管轄認識を窺うことができる「沈能益報告書」(1909年)などを分析しておきたい。加えて、韓日間の争点である于山島・石島などの独島の地名問題、「竹島(鬱陵島)渡海禁止令」(1696年)・「太政官指令」(1877年)などに見える日本による独島領有の否定、日本の不法編入への大韓帝国の対応などを重点的に考察する。対象とする時期は、史料に于山島が本格的に登場し始めた朝鮮初期から日本による強制併合が行われた1901年までである。

独島は昔、于山島と呼ばれていた。「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との『世宗實錄』「地理志」の記事からもよく分かる。同じく鬱陵島と独島の距離概念を用いて両島を説明したのが、蔚珍縣令・鄭必達の詩についている注釈「正對鬱陵島 又有于山島 不緣海氣極清 不得見」である。蔚珍が鬱陵島へ行き来する拠点であったことを踏まえると、詩を読んだ鄭必達の「鬱陵島・于山島認識」を正確に示すものである。

朝鮮初期、その住民を刷還して鬱陵島を空島化した政策は、倭寇の侵略に備えるための対策であり、日本が主張するように同島を放棄したものではなかった。17世紀末、安龍福事件に端を発した「鬱陵島争界」(1693～1699年、日本では竹島一件と呼ぶ)の結果、日本の江戸幕府が鬱陵島が朝鮮領であると外交文書で公式に認めたからである。その過程で、幕府は松島(独島)が日本領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再三確認し、日本人の鬱陵島方面への渡海を禁止する「竹島渡海禁止令」を出した。そして明治政府の太政官は「竹島外一島」すなわち、鬱陵島と独島が日本領でないことを公式に認めた「太政官指令」(1877年)を出して江戸幕府の決定をそのまま受け継いだのである。

にもかかわらず、19世紀後半日本人は鬱陵島に潜入し、不法に森林伐採と漁業に従事し始めた。これに対して大韓帝国は鬱陵島の行政権を強化するために1900年「勅令第41号」を制定・頒布し、その第2条では鬱島郡の管轄区域に鬱陵全島・竹島・石島を規定した。石島とはドルソムの意味(石の島)を漢字で表記したものである。また、全羅南道の海岸地域ではドル(石の韓国語の音読み)をドクとも発音するが、その「ドク」という音を漢字で表記すると独島になるのである。『開闢』(1923年)の記事によると、鬱陵島は19世紀後半全羅南道麗水郡三山面に位置する三島(巨文島・草島・巽竹島)地域の漁業者が行き来するようになり、その地名が変わったという。その時、于山島も全羅南道の人々によってその名前が変わり、ドクソム・ドルソム(独島・石島)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と思われる。

一方、日本政府は日露戦争の中戦略的な目的で独島を不法に編入した(1905年2月)。このことは1906年3月鬱島郡守・沈興澤によって中央に報告されたが、その報告書では「本邦所属独島」とし、独島が鬱島郡守の管轄下にあったことを明白に示している。この報告を受けた大韓帝国の最高行政機関の議政府は日本の独島編入を否定する「指令第3号」(1906年5月)を出した。また、『帝国新聞』の記事によると、内部も日本の独島編入に関する沈興澤からの報告を受け、日本理事と交渉して処断するよう指示した。しかし、当時すでに、乙巳勅約三年(第二次日韓協約、1905年11月)の締結により外交権を剥奪された大韓帝国は外交的に何らの対応もできなかった。

日本による独島の不法編入後にも、大韓帝国は引き続き独島を管轄していた。これは沈興澤に次いで鬱島郡守として在任した沈能益の報告書(1909年)でよく分かる。彼は鬱島郡の現状を純宗皇帝に報告した上、東側の境界を日本が不法編入した独島ではなく、日本の隠岐と表記して独島が鬱島郡の管轄であることをはっきりと示し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鬱陵島、独島、于山島、石島、ドクソム、ドルソム、安龍福、沈興澤、沈能益、鬱陵島争界、竹島(鬱陵島)、渡海禁止令、太政官指令、勅令第41号